

연구보고서 2021-08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곽윤경

이병재·김기태·고민경·김경환·김규찬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연구책임자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이병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고민경	경북대학교 지리교육학과 교수
	김경환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김규찬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연구보고서 2021-08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인 이태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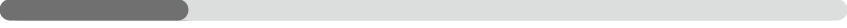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ISBN 978-89-6827-805-1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1.08>

발|간|사

한국 대학교 캠퍼스에서 유학생을 찾기란 더 이상 어렵지 않다. 2003년 유학생은 12,314명에서 2020년에는 153,695명으로, 약 10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유학생이 학교 현장에서 많아진 만큼, 이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법도 하지만, 기존 연구는 이들의 학습권 등을 위주로 진행되어 온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아시아 유학생이 직면하는 다층적인 문제를 파악함으로써,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유학생 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대학교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탄생되었다. 우리가 만난 아시아 유학생은 모두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다. 그렇기에 처음 보는 연구진에게 이들은 담담하고도 진정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들이 공유해준 경험은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측면의 이야기를 최대한 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곽윤경 부연구위원 주도 하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뜻을 함께해준 경북대학교 고민경 교수, 강릉원주대학교 김규찬 교수, 고려대학교 김경환 박사와 원내 김기태 부연구위원과 이병재 연구원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연구의 각 단계마다 귀중한 의견을 주신 원내외 자문위원과 익명의 원내외 평가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를 빌어, 본 연구에 참여해주신 유학생 분들과 대학 관계자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위하여 음으로 양으로 응원하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



들의 기대와 응원이 무색하지 않도록, 이 연구가 시발점이 되어 유학생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주기를 소망한다.

2021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2
제2장 이론적 배경	27
제1절 사회권의 개념과 토대	29
제2절 복지국가 발전과 사회권	35
제3절 이민자의 사회권	41
제4절 소결	49
제3장 국내·외 유학생 관련 현황과 정책	53
제1절 전 세계의 유학생 이동 현황	55
제2절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64
제3절 유학생 관련 정책	76
제4장 해외 외국인 유학생 정책	99
제1절 영국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	101
제2절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	120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39

제5장 양적 분석: 아시아 유학생의 실태	143
제1절 조사 개요	145
제2절 분석 결과	152
제3절 소결 및 정책제언	198
제6장 아시아 유학생 심층 면접 분석	209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문제 제기	2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12
제3절 분석 결과	215
제4절 소결 및 정책 제언	250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257
제1절 결론	259
제2절 정책적 제언	265
참고문헌	281
부록	305
[부록 1]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조사표(국·영·중문)	305
[부록 2]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기초통계	332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1-1〉 유학 목적에 따른 체류자격	26
〈표 2-1〉 국가별 복지레짐과 이민정책레짐	43
〈표 2-2〉 한국 복지국가의 이민자 사회권 형성	45
〈표 3-1〉 코로나19 전 후, 외국인 유학생 현황 비교	57
〈표 3-2〉 연도별 유학생 수	65
〈표 3-3〉 유학 형태별 유학생 수	67
〈표 3-4〉 우리나라 지역별 유학생 수	68
〈표 3-5〉 학위 과정별 유학생 수	70
〈표 3-6〉 출신 지역별 유학생 수(2020)	72
〈표 3-7〉 아시아 국가별 유학생 수	73
〈표 3-8〉 전공계열별 유학생 수	75
〈표 3-9〉 교육부, 공고 제2020-327에 제시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지표	80
〈표 3-10〉 교과부의 유학생 공동기숙사 건립계획 목표	87
〈표 3-11〉 외국인 유학생 공동기숙사 현황	88
〈표 3-12〉 외국인 유학생 취업 허용 및 제한 분야	92
〈표 3-13〉 한국어 능력별, 학위 과정별 허용시간	93
〈표 3-14〉 외국인 건강보험료	97
〈표 4-1〉 영국 고등교육 학위 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입학 및 졸업 기준), 2010/11-2019/20	104
〈표 4-2〉 영국 고등교육 외국인 유학생 출신 국가별 현황, 2006/07-2019/20	105
〈표 4-3〉 외국인 유학생의 NHS 이용 경험에 관한 지역별 현황(2017년)	110
〈표 4-4〉 호주 고등교육 외국인 유학생 현황, 2010-2019	122
〈표 4-5〉 호주 고등교육 외국인 유학생 출신 국가별 현황, 2019-2020	123
〈표 4-6〉 국적별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 형태(2012)	132
〈표 4-7〉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 검색방법	133
〈표 4-8〉 주거 형태별 외국인 유학생의 만족도: 주거의 질 및 비용(2012)	134
〈표 5-1〉 유학생 및 이주민 대상 실태조사 참고문헌	147



〈표 5-2〉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조사 내용	149
〈표 5-3〉 조사 응답자의 특성	151
〈표 5-4〉 지난 한 학기 기준 학비 (장학금 포함)	174
〈표 5-5〉 지난 한 학기 생활비 (장학금 포함)	175
〈표 5-6〉 한국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데 힘든 점(복수응답)	186
〈표 6-1〉 면접대상자의 기본 인적사항	214

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1-1] 연구 흐름도	23
[그림 3-1] 고등교육기관에 등록된 외국인 유학생 현황 (1998-2018)	55
[그림 3-2] 출신 지역별 유학생 분포 (2018)	56
[그림 3-3] 고등교육기관에 등록된 세계 유학생 현황(2000, 2020)	57
[그림 3-4] 유학생 이동 흐름의 4단계 (1999-2020)	58
[그림 3-5] 코로나19 이후 학위 과정 진학 비율	64
[그림 3-6] 연도별 유학생 수	66
[그림 3-7] 자비 유학생을 제외한 유학 형태별 유학생 수	67
[그림 3-8] 우리나라 지역별 유학생 비율	69
[그림 3-9] 학위 과정별 유학생 수	71
[그림 3-10] 출신 지역별 유학생 수 (2020, 아시아 제외)	72
[그림 3-11] 아시아 국가별 유학생 수	74
[그림 3-12] 전공계열별 유학생 비율	75
[그림 3-13]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시기 구분	76
[그림 3-14] 한국유학종합시스템(스터디인코리아) 홈페이지 첫 화면	82
[그림 3-15] 외국인 유학생 취업 허가 절차	91
[그림 3-16] 보험가입 절차	96
[그림 4-1] 영국 입국목적별 이민자 수, 2011-2019	102
[그림 4-2] 고등교육과정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 형태, 2016/17	112
[그림 4-3] 대학교 및 민간 기숙사: 영국 국적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 2011/12-2016/17	113
[그림 4-4] 호주 영주비자(permanent visa) 발급 건수, 1996/97-2017/18	121
[그림 4-5] 호주 임시비자(temporary visa) 발급 건수, 1996/97-2017/18	121
[그림 5-1]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조사표 개발 과정	148
[그림 5-2] 한국으로 유학을 온 목적(1순위)	153
[그림 5-3] 유학(일상)생활 중 어려운 점(1순위)	154
[그림 5-4] 현재 가장 받고 싶은 지원(1순위)	155

[그림 5-5] 한국 유학생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56
[그림 5-6] 학교 졸업 후 계획	157
[그림 5-7]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주거 형태	158
[그림 5-8]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소개 경로	160
[그림 5-9] 집을 찾을 때 가장 큰 어려움	161
[그림 5-10] 한 학기(6개월) 기준 주거비	162
[그림 5-11] 최근 1년간 주거비 지출의 경제적인 부담스러움 정도	163
[그림 5-12]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64
[그림 5-13] 유학생 유형별 취업 경험 유무	165
[그림 5-14] 취업 경험이 없는 이유	166
[그림 5-15] 유학생이 구직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168
[그림 5-16] 일하다가 생기는 고충 유형별 경험률 I	169
[그림 5-17] 일하다가 생기는 고충 유형별 경험률 II	170
[그림 5-18] 일하다가 생기는 고충 유형별 경험률 III	171
[그림 5-19] 일자리와 관련한 문제점	172
[그림 5-20] 생활비 및 학비 조달 방법	176
[그림 5-21] 생활비 모자란 경험 비율	177
[그림 5-22] 생활비 모자랄 때 대처 방식	178
[그림 5-23] 전반적인 건강상태	180
[그림 5-24] 지난 1년간 참지 못할 만큼 아프거나 다쳤을 때 주된 대처방안	182
[그림 5-25]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복수 응답)	183
[그림 5-26] 한국의 의로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184
[그림 5-27] 한국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데 힘든 점(복수응답)	185
[그림 5-28] CES-D 척도로 측정된 유학생의 우울 수준	188
[그림 5-29] CES-D 척도로 측정된 유학생의 우울 점수	189
[그림 5-30] 최근 1년간 심리적/정신적 어려움으로 관련 전문가를 찾아가는 경험 유학생의 특성특성	190



[그림 5-31] 한국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 주된 상담자	191
[그림 5-32] 해당되는 사람 수-1)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193
[그림 5-33] 해당되는 사람 수-2)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194
[그림 5-34] 해당되는 사람 수-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195
[그림 5-35] 한국에서 건강보험 가입 여부	196
[그림 5-36] 국민건강보험이 본인에게 필요한 정도	197
[그림 5-37] 현재 및 향후 지불하는 건강보험료의 부담스러움 정도	198

부표 목차

〈부표 2-1〉 응답자 특성	332
〈부표 2-2〉 성별	333
〈부표 2-3〉 나이	334
〈부표 2-4〉 국적	335
〈부표 2-5〉 최초 입국 연도	336
〈부표 2-6〉 한국 거주기간	338
〈부표 2-7〉 한국 거주지	339
〈부표 2-8〉 학교 소재지	340
〈부표 2-9〉 학위 과정	342
〈부표 2-10〉 전공계열	343
〈부표 2-11〉 한국으로 유학을 온 목적(1순위)	345
〈부표 2-12〉 한국으로 유학을 온 목적(1+2순위)	347
〈부표 2-13〉 한국에서 일상(유학) 생활 시 애로사항(1순위)	349
〈부표 2-14〉 한국에서 일상(유학) 생활 시 애로사항(1+2순위)	351
〈부표 2-15〉 현재 가장 받고 싶은 지원(1순위)	353
〈부표 2-16〉 현재 가장 받고 싶은 지원(1+2순위)	355
〈부표 2-17〉 한국에서 유학생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357
〈부표 2-18〉 학교 졸업 후 계획	359
〈부표 2-19〉 졸업 후 한국에 계속 체류 시 추후 계획	360
〈부표 2-20〉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이유(1순위)	361
〈부표 2-21〉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이유(1순위)	363
〈부표 2-22〉 최근 1년간 한국에서 직장생활이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365
〈부표 2-23〉 한국에서 직장생활이나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없는 이유	366
〈부표 2-24〉 지난 1년간 한국에서 직장생활이나 아르바이트를 한 기간	368
〈부표 2-25〉 일을 하면서 경험 유무-1) 일하다 다쳤음	369
〈부표 2-26〉 일을 하면서 경험 유무-2) 과중한 업무량	370
〈부표 2-27〉 일을 하면서 경험 유무-3) 인격적 무시(감정적 폭력)	3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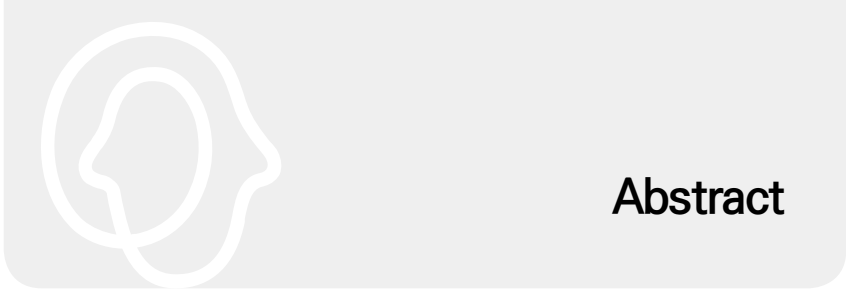
〈부표 2-28〉 일을 하면서 경험 유무-4) 해고	372
〈부표 2-29〉 일을 하면서 경험 유무-5) 외국인에 대한 차별	373
〈부표 2-30〉 일을 하면서 경험 유무-6) 약속된 임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뒤늦게 받음	374
〈부표 2-31〉 일을 하면서 경험 유무-7) 약속된 임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아예 받지 못함	375
〈부표 2-32〉 한국에서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376
〈부표 2-33〉 외국인 유학생이 구직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1순위)	378
〈부표 2-34〉 외국인 유학생이 구직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1+2순위)	380
〈부표 2-35〉 외국인 유학생의 일자리 관련 문제점(1순위)	382
〈부표 2-36〉 외국인 유학생의 일자리 관련 문제점(1+2순위)	384
〈부표 2-37〉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을 위한 절차 인지 여부	386
〈부표 2-38〉 지난 한 학기(6개월) 기준 비용(만 원)-학비(장학금 포함)	387
〈부표 2-39〉 지난 한 학기(6개월) 기준 비용(만 원)-필요 생활비(장학금 포함)	388
〈부표 2-40〉 지난 한 학기(6개월) 기준 비용(만 원)-지출 생활비(장학금 포함)	389
〈부표 2-41〉 지난 한 학기(6개월) 동안 사용한 학비/생활비 조달방식 비중 - 부모 혹은 가족	390
〈부표 2-42〉 지난 한 학기(6개월) 동안 사용한 학비/생활비 조달방식 비중 - 본인의 저금	391
〈부표 2-43〉 지난 한 학기(6개월) 동안 사용한 학비/생활비 조달방식 비중 - 한국에서 본인의 근로소득	392
〈부표 2-44〉 지난 한 학기(6개월) 동안 사용한 학비/생활비 조달방식 비중 - 장학금	393
〈부표 2-45〉 지난 한 학기(6개월) 동안 사용한 학비/생활비 조달 방식 비중 - 기타	394
〈부표 2-46〉 지난 1년 동안 생활비가 부족한 경험 유무	395
〈부표 2-47〉 생활비가 부족했을 때 대처방안(1순위)	396



〈부표 2-48〉 생활비가 부족했을 때 대처방안(1+2순위)	398
〈부표 2-49〉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주거 형태	400
〈부표 2-50〉 기숙사에 살고 있지 않은 이유	402
〈부표 2-51〉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소개 경로	404
〈부표 2-52〉 집을 찾을 때 가장 큰 어려움	406
〈부표 2-53〉 한 학기(6개월) 기준 주거비(월세, 공과금, 관리비 등) 부담 비용	408
〈부표 2-54〉 최근 1년간 주거비 지출의 경제적인 부담스러움 정도	409
〈부표 2-55〉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411
〈부표 2-56〉 전반적인 신체적 건강상태	413
〈부표 2-57〉 지난 1년간 참지 못할 만큼 아프거나 다쳤을 때 주된 대처방안	415
〈부표 2-58〉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복수응답)	417
〈부표 2-59〉 한국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419
〈부표 2-60〉 한국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데 힘든 점(복수응답)	421
〈부표 2-61〉 한국에서 건강보험 가입여부	423
〈부표 2-62〉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	424
〈부표 2-63〉 국민건강보험이 본인에게 필요한 정도	426
〈부표 2-64〉 현재 및 향후 지불하는 건강보험료의 부담스러움 정도	428
〈부표 2-65〉 지난 1주일간 경험 빈도-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430
〈부표 2-66〉 지난 1주일간 경험 빈도-2) 비교적 잘 지냈다	431
〈부표 2-67〉 지난 1주일간 경험 빈도-3) 상당히 우울했다	432
〈부표 2-68〉 지난 1주일간 경험 빈도-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433
〈부표 2-69〉 지난 1주일간 경험 빈도-5)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434
〈부표 2-70〉 지난 1주일간 경험 빈도-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435
〈부표 2-71〉 지난 1주일간 경험 빈도-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436
〈부표 2-72〉 지난 1주일간 경험 빈도-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437
〈부표 2-73〉 지난 1주일간 경험 빈도-9) 마음이 슬펐다	438
〈부표 2-74〉 지난 1주일간 경험 빈도-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439



〈부표 2-75〉 지난 1주일간 경험 빈도-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	440
〈부표 2-76〉 최근 1년간 심리적/정신적 어려움으로 관련 전문가를 찾아간 경험 유무 …	441
〈부표 2-77〉 한국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 주된 상담자 ……………	442
〈부표 2-78〉 해당되는 사람 수-1)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	444
〈부표 2-79〉 해당되는 사람 수-2)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	446
〈부표 2-80〉 해당되는 사람 수-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	448



Abstract

The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in South Korea

Project Head: Kwak, YoonKy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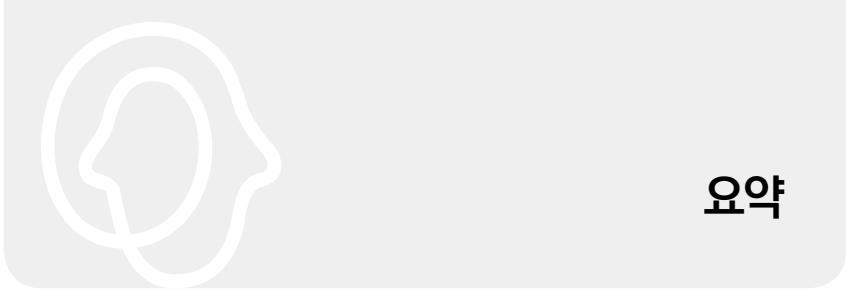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students from Asia enrolled in higher education in South Korea and to draw its policy implications. First, it provide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link between social rights, welfare state and international students. Second, it examines the trends and patterns of the international students, at both a global and domestic level, with its relevant policies and supporting systems. Third, it focuses on the UK's and Australia's policy development designed for international students. Specifically, it explores how their policies were begun and have undergone changes with the varying impacts of Covid-19 and its related supporting systems. Fourth, specifically designed to target international students from China, Vietnam and other Asian countries, the survey aims to find out their current status such as economic activities, income, housing, health, etc. Fifth, it presents the findings obtained from 14 international students from Asian

Co-Researchers: Lee, Byeongjae·Kim, Ki-tae·Koh, Minkyung·Kim, Gyuchan·Kim, Kyunghawn

2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countries. Lastly, from the findings, it draws the main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ractice setup.

Keyword : international students (foreign students), higher education (tertiary education), Asia, current status, social rights, social policy



1. 서론

이 연구에서는 아시아 출신으로서 한국 고등교육기관의 정규과정에 수학하고 있는 유학생을 중심으로, 이들의 경제활동, 소득, 주거, 건강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권'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유학생 관련 선행연구 및 정책을 검토한 뒤, 해외 유학생 사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아시아 유학생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주거, 소득, 건강 등의 영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로 포착되지 않거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분간해 내고자 하였다.

2. 주요 연구결과

제2장에서는 사회권의 개념을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로 넓게 정의하고, 이러한 사회권을 인정하고 실현하기 위한 근거로서 국제법적 토대(인권 및 사회보장 관련 국제 협약 및 권고 등)와 국내법적 토대(헌법 및 사회보장법)를 검토하였다.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과정에서 국민의 사회권은 빠르게 확장되어왔으며, 증가하는 이민자들의 관리와 정착지원을 위한 제도들도 빠르게 성립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유학생의 사회권에 대한 논의는 부재한 것이 현실이지만, 최근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여 정책적 측면에서 이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민자로서 유학생의 권리(사회권 포함)에 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4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유학생은 현재 및 잠재적 ‘노동력’일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주민’임을 고려할 때 사회권 부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사회권 부여의 정당화 논리, 방식,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들의 사회권을, 기여에 대한 보상이나 시혜적 차원에 국한하지 말고, 보편적 인권에 근거한 시민권의 재해석과 확장 그리고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으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국내외 유학생의 이동 현황과 국내 유학생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2020년 기준 유학생은 153,695명으로, 코로나 19 발생 전인 2019년의 160,165명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교육부, 2020a). 이들 다수는 자비 유학생으로 대다수가 서울과 경기 즉,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유학생 출신국은, 아시아 국가 내에서는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은 인문사회계가 모든 학위 과정을 통틀어서 가장 많았다. 공학 및 자연과학계 학생은 대학원 과정이 (전문)학사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한국의 유학생 정책은 주로 교육부와 법무부에서 담당하는데, 이들의 정책은 양적 확대 시기(2001-2007), 질적 관리 시기(2008-2013), 그리고 통합관리 시기(2014-2020)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시기별로 각 부처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여 국내 대학교의 국제 경쟁력 향상과 유학생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고 하였다. 또한, 우수 유학생에게는 국내에서 창업, 취업 및 장기적으로는 영주권 취득에 도움을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가 개선되기도 하였다.

또한, 유학생의 경제활동, 주거 그리고 건강에 관련한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간제 취업은 법무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허용되는 분야에서, 허용되는 시간 안에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에 2021년 3월부터 의무가입 대상자이고, 보험료는 향후 3

년간 계속 인상될 예정이다.

제4장에서는 영국과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검토하였다. 영국과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이 유학생(Tier 4) 비자의 신청 단계에서 이민보건부담금(IHS)을 지불해야 하지만, 영국에 입국한 이후에는 영국 국적 시민과 마찬가지로 국가보건서비스(NHS)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에,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은 호주의 공공보건의료제도(메디케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며,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OSHC)을 통해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하다.

한편, 영국과 호주 모두 외국인 유학생의 공공지원주택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대학교 기숙사 또는 민간임대주택의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 중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역시 학기 중 주당 20시간의 제한이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졸업 후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역시 보장하고 있다. 다만, 영국의 경우 졸업 후 취업(PSW) 비자가 2012년 폐지되었다가 2020년 재도입되었다.

제5장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담았다. 먼저, 아시아 유학생은 다양한 학문적 경험을 위해 한국 유학을 선택했으며, 유학생들의 어려움으로는 학점 관리 및 한국어 공부에 어려움이 있고, 학비 및 생활비 등 경제적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학생은 경제적 지원과 학업 지원을 가장 받고 싶어 했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유학생은 한국의 유학생 생활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였으며, 졸업 후 한국에 체류하거나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아시아 유학생의 주거 특성은 다음과 같다. 유학생이 머무르는 주거 형태는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집을 구하는 경로는 주로, 부동산중개업

소 혹은 친구 등 지인을 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높은 보증금과 관련 정보의 부족은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유학생의 한 학기 기준 주거비 지출은 평균 약 232만 원이었다.

다음으로 아시아 유학생의 노동 실태와 경제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한국어 소통,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거나 차별하는 것, 관련 정보의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외국인 유학생 중 약 절반이 지난 1년 동안 일을 한 경험이 있었다. 일한 경험이 있는 유학생의 경우, 평균 5.2개월 일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3명 중 1명은 일하다 다친 경험이 있었으며, 해고를 당한 비율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밖에 과중한 업무량, 감정적 폭력, 차별, 임금 지급 지연, 임금 받지 못함 등을 경험했다.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없는 학생에게 그 이유를 묻은 결과, 학업으로 인한 시간 부족이 주요한 이유였다.

아시아 유학생의 한 학기 평균 학비로는 6개월 기준 395.1만 원을, 생활비로는 510.4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장학금이 포함된 액수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학비 및 생활비는 주로 부모 및 가족을 통해 조달하고, 그 외 장학금, 본인 저금, 한국에서의 근로소득 등으로 조달하였다. 유학생의 약 3분의 2는 지난 1년 사이에 생활비가 모자란 경험이 있었다. 생활비가 모자랐을 때는 주로 식비를 줄였고, 기타 방법으로는 식비 외 생활비를 줄이거나 가족에게 지원을 요청하였다.

건강의 경우, 아시아 유학생 3명 중 1명은 병원에 방문하였다. 그렇지만 유학생들 중 아픈 적이 없거나 본국에서 가져온 약을 먹고 참는 이들도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의료기관에 방문한 이들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나, 한국어 소통과 치료비용 문제를 어려운 점으로 지적하였다. 유학생의 우울 수준을 확인한 결과, 경미한 우울 수준으로 나타

났으며, 즉시 전문가 개입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인지 지난 1년간 심리적 혹은 정신적 어려움으로 전문가를 찾아간 비율이 13.1%로 적지 않은 수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 친구나 본국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친구 등과 주로 상담하였다. 건강보험의 경우, 응답자의 대다수가 가입하였다고 응답하였지만, 응답자의 절반 정도만이 건강보험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응답자의 약 3분의 2 이상은 현재 건강보험료를 부담스러워하였다.

제6장은 아시아 유학생을 대상으로 유학 동기와 배경, 유학생생활, 경제활동, 주거 경험, 건강보험 가입과 의료기관 경험, 사회적 관계와 미래에 대한 계획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아시아 유학생 14명과 심층 면접을 하여 이들이 유학생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과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 유학생들의 국내 대학 선택은 장학금의 기회가 많고 생활비가 적게 들어가는 곳에 집중되었다. 즉, 유학생의 국내 대학 선택에는 경제적 요인이 작동하였다. 학생들은 학업에 있어 부족한 한국어 능력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학부생들은 주로 수업을 따라가는 것 자체를 힘들어했고, 대학원생은 과제나 논문 작성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대다수 학생들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자신의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한 것이다. 경제활동과 관련된 법무부와 교육부의 규정을 잘 알고 있지만, 여러 현실적인 문제로 규정을 지키지 않는 불법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모두 기숙사에서 처음 유학생생활을 시작하지만, 기숙사의 불편함으로 인해 학교 주변에서 자취를 하였다. 원룸 자취 또한 주거의 질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학생들은 모두 기숙사보다 자취를 더 만족해하고 있었다. 한편 학생들은 건강보험 의무가입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가격이 비싸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강보험에 대한 만족도는 국내 생활을 오래 할수록 크게 나타났고, 아직 보험을 이용하지 않은 학생들은 보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학생들은 유학생생활에서 매우 좁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었고, 특히 정기적으로 혹은 지속해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인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 어려움이 생기거나 고민이 있으면 본국 출신의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학생들은 졸업 이후 국내 취업을 고려하지만, 그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 취직이 안 될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국내에서 더 좋은 학교 혹은 서구권 국가로의 진학 등을 고려하고 있었다.

3.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종합제언

종합적인 정책 제언으로는 첫째,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유학생의 복합적이고도 다양한 차별 문제는 기존의 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국내에서 진행 중인 차별금지법 제정은 여전히 계류 상태이다(곽윤경·주유선·우선희, 2019). 이번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을 논의할 단계라고 언급한 기회를 활용하여 유학생을 비롯한 이주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 맞춤형 유학생 정책 (locally-tailored international students' policy)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대학 - 지역기업 - 지자체 세 주체 간의 긴밀한 협력과 조정 및 연계가 필요하다. 세 주체의 협력적 관계를 바탕으로 아시아 유학생이 지역 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구

조를 달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체계가 자칫 지역 사업장에서 값싼 노동력을 싸게 쓸 수 있는 경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유학생 노동시간이나 급여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 적용 및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둘째, 사업장의 업무 내용과 유학생 전공 내용의 연관성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졸업 이후 지역 정착 과정에서 비자 절차 관련한 적절한 규제를 마련한다. 넷째, 관련 제도 마련 과정에서 지역사회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하다.

2. 경제활동

경제활동 측면에서는 먼저 시간제 취업과 관련하여 아시아 유학생에게 허용되는 업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유학생이 선호하는 그리고 이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과외를 허가업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취업시간에 차등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현재 유학생은 학기 혹은 방학 등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러한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지역별로 한국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먼저 산출하고,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선에서 현실적인 시간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시간제 취업을 허용하는 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시간제 취업 신청의 복잡한 절차가 아시아 유학생의 불법 경제활동을 일으키는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시간제 취업 허가 절차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거나 단계를 축소하는 등의 접근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유학생에게 노동시장에서 보장 혹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안내할 필요가 있다. 유학생은 시간제 취업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경험해도 적절히 대응

하지 못하는 문제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 유학생 또한 노동시장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또한 유학생에게도 충분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업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업 중인 아시아 유학생을 대상으로 ‘이력서 작성법’, ‘면접법’, ‘의사소통법’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유학생 또한 졸업 후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 모교에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지원 측면의 정책 제언을 해보면 첫째, 유학생 본국에서 긴급 사태 발생 시, 긴급 학비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불확실한 외부 상황에서도 유학생이 학업에 매진하고 안정적인 대학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긴급학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 출신의 학생에게 지원해 줄 수 있다. 둘째,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 등과 같은 현금수당에서 지적되는 제한적 접근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외국인 유학생 또한 해당 지역에 주소를 신고하여 거주하는 주민이자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며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및 위기상황에서 지역사회 내 주민 간의 생활안정을 위해 연대의 범위를 확장해 갈 필요가 있다(김지혜, 2021, p.195).

3. 주거 및 건강

주거 측면에서는 우선 학교 기숙사의 거주 여건 개선과 공급 확장을 추진해야 한다. 학교는 현 기숙사 거주 여건을 개선하거나 유학생의 니즈를 반영한 기숙사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집을 구하는 과정에 대한 일련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더 많은 유학생들이 주거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집을 구하는 방법, 정보 검색 및 활용 방법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같은 사업에 유학생을 포함하거나,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번역 기능을 추가하는 것, 국적별 선호하는 주거유형 등의 정보를 축적하여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건강 측면에서는 우선 건강보험 적용 시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건강보험은 외국인 등록을 한 이후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 적용에 있어 일정 기간 공백이 발생한다. 유학생이 입국 전 보험료를 선납하여 입국한 시점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은 보장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둘째, 건강보험료 책정에 대한 정교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유학생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매기는 것보다는 유학 연수, 나이, 가족 동반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보험료 차등지급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의 의료 통역 서비스를 적극 홍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다. 언어 능력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접근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존재하는 의료 통역 관련 콜센터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AI 통번역기 등 첨단 기술의 발달 및 상용화로 언어 장벽은 크게 허물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유학생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인식 및 이해도를 높이도록 당국이 노력해야 한다. 유학생에게 건강보험제도의 설립배경, 원리 그리고 효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작업이 선결되어야 건강보험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의 대상이 되는 아시아 유학생은 전문가 개입이 필요한 경미한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정신건강 측면에서의 개입 또한 필요하다. 우선, 유학생에게 교내 상담센터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상담의 효과성 및 성공적인 체험담 등을 지속해서 홍보함으로써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 상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언어적 장벽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지원서비스의 대상을 유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직하다.

4. 학업 지원 및 학습 능력 강화

아시아 유학생의 학습 지원 혹은 학습 능력 강화 방안으로는 우선, 학위 과정별로 차별화된 학업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학부생과 대학원생으로 구분했을 때 학업 및 진로에 대한 욕구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생애진로 관점에서 유학생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김경남, 2021, p.76). 다음으로, 한국어 관련해서는 현재 수학하고 있는 아시아 유학생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한국어로 나타난 만큼, 읽기, 듣기, 쓰기 전반에 걸쳐 한국어로 공부를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고등교육 입학 조건 중 하나인 한국어 능력 요건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에 참여한 아시아 유학생들은 같은 국적 학생들끼리의 멘토링을 공통으로 제시했다. 한국어 능력에 차이가 있는 학생들 사이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능력과 학업 능력을 동시에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 용어 : 외국인 유학생, 아시아, 생활실태, 사회보장, 사회권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한국에서, 유학생은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하고도 소중한 존재이다. 정부는 인구감소가 생산인력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한국 대학의 경쟁력과 산업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를 범부처 제1, 2, 3기 인구정책 TF에서 명시한 바 있다. 이 TF는, 정부가 외국인력 활용의 측면에서 해외 우수인재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의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는 고등교육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권오영, 김아름, 2019; 김지하, 조옥경, 서영인, 문보은, 송효준, 김지은, 채재은, 2020).

법무부에서는 2016년 유학생을 위한 일·학습 연계 비자를 신설하여, 우수 유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본국에 바로 귀국하지 않고, 국내의 노동시장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였다(법무부 보도자료, 2018.02.21.). 또한, 국내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 중에서, 국내기업 등에 취직하기 위해 연수 또는 구직을 희망할 경우, 구직 비자(D-10)¹⁾를 취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 해당 비자로 전환한 이들은 영주비자로 전환 시 가점을 부여받고, 요구되는 연간 소득 요건도 면제하는 등 다양한

1) 원칙은 6개월 단위로 최대 1년 가능하다.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법무부 보도자료, 2018.02.21.). 2018년 발표한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서도 우수인재인 유학생의 적극적인 이민 허용을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신인철, 한지은, 박효민, 2018).

한편, 교육부는 2004년 ‘Study Korea Project’를 시행함으로써 유학생의 양적 확대를 목표로 하였고, 2008년에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과 2010년에는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유학생을 유치 및 관리하고자 하였다(류우선, 2019, p.7). 2011년에는 유학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제 평가체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김한나 외, 2016). 즉, 유학생의 선발부터 학업, 그리고 생활 지원까지 유학생 관리 전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였다. 그렇지만 일련의 정책은 유학생 유치에만 집중할 뿐 유학생이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고 수학하는 과정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김한나 외, 2016).

종합해 보면, 법무처 인구정책 TF는 우수인력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 정착을 유도하여 국내의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교육부는 유학생 유치와 학업과정 관리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있고, 법무부는 우수인재를 발굴 및 활용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김지하 외, 2020, p.i).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는 와중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리고 국내의 다문화 사회를 대비하여 유학생 정책의 체질 개선과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어떠한 사회적 위협에 직면하는지를 파악하고, 그 위협을 완화 및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유학생이 공부하는 동안의 수용도 경

험, 즉 만족스러운 경험이, 유학생이 학업에서 취업으로 이행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순탄한 이행과정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필요성

이번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회에서 유학생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집단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세를 완화하기 위해 대체 이민의 형태로 유학생을 받아들이고자 한다(정기선, 전광희, 은기수, 김석호, 강동관, 이정우, 최서리, 2011). 정부가 결혼이민자나 외국인근로자보다 유학생을 활용하여 생산가능인구에 대응하려는 이유는, 전자는 2010년을 넘어가면서 그 수가 정체되어 있고, 후자는 저숙련 직업군에 포진되어 있고 장기 체류자가 아닌 단순인력이라는 측면에서 국내 생산연령인구 감소세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유학생은 고학력자로 잠재적 전문(숙련, skilled)인력이자, 학위 과정 동안 한국 문화에 대해 습득하고 한국어가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점 등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고, 노동시장의 생산성 측면에서도 빠르게 기여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이창원, 김도혜, 최서리, 신소희, 2020, p.3). 그렇기 때문에 유학생이 일-학습 연계 비자를 활용하여, 졸업 후에도 한국에 계속 남아 노동시장에서 일정 정도 역할을 해주기 바라는 것이다(이규용, 김현미, 김철효, 주수인, 2019). 그렇지만 유학생 중 몇 명이 학생 비자에서 취업 비자로 전환되었는지, 그리고 과연 몇 명이나 양질의 일자리를 얻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현재 가용한 자료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발표하는 '2020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유학 비자(D-2)에서 구직 비자(D-10)로 자격을 전환한 이들은 7,64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 2020). 이를 통해 전체 유학생 중 구직비자로 전환한 이들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유학생 수가 해마다 약 15만 명을 웃도는 것에 비춰 봤을 때, 일부 소수의 학생만이 해당 비자로 전환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일-학습으로의 순조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어떠한 장애 혹은 촉진 요인들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유학생 삶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둘째, 유학생의 삶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국내 선행 연구에서는 유학생을 '학생'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보고, 이에 따라 학업 혹은 학습권과 관련된 연구가 다수 수행된 바 있다(김도혜, 2019; 류우선, 2019). 그렇지만 유학생은 '학생'이자 '노동자'이며 '초국가적 가족의 구성원'이자 '로컬 주민'이며, 때로는 '행동가'로 활동할 수도 있는 다양한 위치성을 가진 존재이다(Raghuram, 2013). 다시 말하면, 유학생은 공부하는 학생이기도 하지만, 대다수가 청년이기도 하며, 아르바이트하는 시간제 취업 노동자이기도 하고, 특정 지역 주민이기도 하며, 한국의 유적지를 방문하는 여행자이기도 하는 등, 하나의 정체성으로 이들을 규격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유학생의 다양한 위치성(positionality)을 반영한 삶의 궤적에 관해 고찰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Chacko, 2020), 삶의 영역 중 경제활동 상태, 건강 그리고 주거 3가지 영역에 초점을 두고 살펴볼 예정이다.

셋째, 유학생은 이주민 집단 중에서도 매우 취약한 집단이다. 일반적으로 유학생은 선주민과 달리 이주배경, 인종 및 민족, 사회경제적 배경,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차등대우를 받고 있다. 또한, 이주민 집단 중에서도 애매한 위치를 점유하며, 유사 관련 법이나 제도에서도 배제되어 있는 집

단이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과 혼인관계로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주민 및 그 자녀들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자원 및 서비스들이 구축되어 있다. 난민의 경우, 2018년 제정된 난민법에 따라 기초생활을 보장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렇지만 유학생은 다른 이주민 집단과 달리 법적 근거가 약해 이주 국가에서 사회적 소수자로서 사회 보장적 처우, 즉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보장받기란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비록 올해부터 유학생에게 건강보험 의무가입이 적용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이들을 어떤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보호한다면 그 범위와 대상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진지하게 고심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작년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유학생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유학생은 외국인 등록증과 건강보험증을 제시해야만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당시, 민간보험에 다수 가입되어 있던 유학생은 건강보험증을 제시할 수가 없어 공적 마스크 구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송하성, 2020.03.11.). 또한, 코로나19 관련 어려운 한국 용어들을 이해하지 못하여, 관련 정보를 받고도 정보에서 소외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였다(이화숙, 김정숙, 이용승, 2021, p.14). 그리고 감염병이 처음 발견된 국가나 감염자가 많이 발생한 국가 출신의 학생들은, 교내에서 코로나19 관련 낙인 및 편견으로 인해 교우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이화숙 외, 2021; 장이츠, 김민아, 2021). 그뿐만 아니라 자문회의에 참가한 유학생은, 비대면수업으로 인해 기숙사 등 실내에 있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많아짐에 따라,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상황하에 유학생 삶을 조망하는 연구가 일부 수행되고 있으나, 각 영역별 분절적 접근으로 인해, 이들의 삶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실

정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유학생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넷째, 이번 연구에서는 아시아 출신 유학생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아시아 출신이 전체 유학생 중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교육부(2020a)에서는 2020년 기준, 아시아 출신 유학생은 대학(전문대학 포함)이 72,018명(96.2%), 석사과정 22,336명(89.4%), 박사과정 12,122명(92.1%)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시아 내(inter-Asian) 유학은 문화적 유사성, 상대적 비용의 절감, 해외 우수 대학에서의 학위 취득 등의 이점으로 여겨진다(김도혜·최희정, 2019, p.129). 이렇게 아시아 출신 유학생 수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아시아 국가 출신 유학생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다시 말하면, 아시아 국가 출신 외국인 유학생의 다층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의 함의를 끌어내는 것이 정책 실효성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²⁾

마지막으로, 유학생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단지 정부의 기조를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인권 국가로서의 한국 위상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단시간에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지금은 원조를 주는 국가로 변모하였다. 경제적인 면에서 한국은 이미 선진국 대열에 섰으나, 아직 국제 수준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 뒤처져 있다(채인택, 윤석만, 박현영, 2021.03.23.). 예를 들면, 유엔 사회적규약위원회(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제4차 최종 견해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에 담긴 내용은 이를 잘 말해준다(국가인권위원회, 2017.10.06.). 유학생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도

2) 이번 연구의 대상을 아시아 유학생으로 한정하였지만, 가독성을 고려하여 본문에서는 '유학생' 또는 '외국인 유학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미리 밝힌다.

모하지 않고서는, 선진국으로 한 걸음을 나아갈 수가 없다. 이에 따라,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유학생을 위한 복지 제도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인권 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이다.

3. 연구의 목적과 기대효과

이 연구는 아시아 출신으로 대학교 이상의 정규과정에서 수학하는 유학생에 초점을 둔다. 즉,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유학생이 직면하는 다층적인 문제를 파악함으로써,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국내외 유학생 정책을 분석하여, 관련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유학생의 경제활동, 소득, 주거, 건강 등에 주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수학하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이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과 사각지대는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완화 혹은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유학생의 실태 연구가 매우 일정한 만큼, 유학생 복지 향상과 관련된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번 연구는 법무부의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23~2027)’과 인구정책 TF의 목표 중 하나인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전문인력 유치 및 확대를 위해 유학생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중장기적 시각에서 설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연구는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유학생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한국인들이 이민자들과 조화

롭게 공존하고, 나아가 다문화 사회에 진입할 한국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이 연구는 아시아 출신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에 대하여 구명하고자 한다. 연구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 내용 및 방법을 서술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사회권에 대해 살펴보고, 복지국가 발전과정에서 사회권이 어떻게 확대되어 왔으며, 이민자의 사회권과 관련된 동향과 쟁점은 무엇인지를 다루었다. 제3장에서는 유학생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유학생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유학생 관련 국내 정책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영국과 호주의 유학생 정책에 대해 다루었다. 영국과 호주에 주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19년 기준 영국과 호주는 세계에서 미국(98만여 명)에 이어 각각 세 번째(49만여 명)와 두 번째(51만여 명)로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국가일 뿐만 아니라(OECD, 2021, p.222), 중앙정부가 국가 경쟁력 및 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추진해왔다는 점(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 2010; MAC, 2018)에서 한국 사례에 함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양국의 유학생을 위한 주거, 경제활동, 그리고 건강보험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에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아시아 국가 출신으로 고등교육기관에 다니는 유학생의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주거 및 생활실태, 경제활동 상태 그리고 건강 영역을 다루었다. 제6장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학교에서 수학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 출신 유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마지막 장인 제7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고,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향후 정책들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주요한 영역별로 구체적인 정책 과제들을 제시한다.

[그림 1-1] 연구 흐름도



자료: 필자 작성

2. 연구 방법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문헌연구, 설문조사 실시, 심층 인터뷰 실시, 그리고 양적 및 질적 분석으로 구성된 혼합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학계 전문가, 유학생 관련 실무자, 그리고 유학생 당사자(졸업생 포함)와 자문회의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연구 초기에는 유학생 관련 연구를 진행한 학계 전문가들과 자문회의를 여러 번 개최하였다. 자문회의를 통해 유학생의 특성 등 기초적인 질문부터, 한국 유학생 정책 변화 양상 등 폭넓은 질문을 주고받았고, 이 회의에서 추천받은 국내외 선행연구를 읽으며, 연구 대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그리고 유학생과의 자문회의를 통해, 한국에서 수학하는 동안 경제활동, 주거, 그리고 건강 등에 대한 그들의 고민과 제언을 가감 없이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으로, 설문조사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연구진 간의 회의를 통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만들고, 이를 유학생 당사자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한국어 버전 외에, 영어와 중국어로도 번역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이들은 아시아 출신으로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에 정규과정으로 등록한 유학생이다. 다만, 어학연수생, GKS 장학생, 교환학생은 제외하였다. 또한, 2021년에 입학한 학부생 1학년은 제외하였다. 이번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생명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절차(승인번호: 제2021-028호)를 거쳐 총 7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반구조화된 면담지를 만들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면담지는 연구 과제를 반영하는 동시에, 설문조사에서 담지 못한 심층적인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유학생을 대상으로 파일럿 인터뷰를 진행하여 수정 보완할 점에 대해 피드백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함으로

써,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면담자는 학위 과정별(학부, 대학원) 그리고 지역별(수도권, 비수도권) 요소를 고려하여 모집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생명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절차(승인번호: 제2021-045호)를 거쳐 14명을 인터뷰하였다.

3. 연구의 범위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 4 제1항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우리나라에서 유학 또는 연수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학생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에서는 유학생을 유학 혹은 연수의 목적에 따라 체류자격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표 1-1>에 따르면, 법무부는 크게 유학 목적은 D-2, 연수 목적은 D-4로 구분한다. 전자는 전문 대학 이상의 교육·학술연구 기관에서 유학 또는 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을 지칭한다(<표 1-1> 참조). 후자의 경우, 일반연수생은 D-2 자격에 해당하는 자 외의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자, D-2 외의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연수원 등에서 기술·기능 등을 연수하는 자,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체 등에서 인턴(실습사원)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는 D-2 체류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하되, 어학연수생(D-2-5)과 교환학생(D-2-6)을 제외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 정부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국내에 입국한 GKS 장학생도 제외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전자의 경우 한국 내 체류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매우 제한된 경험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유학생 정책의 대상자로 보통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는, 한국 정부에서 선정한 장학생들

26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로, 정부는 이들을 위해 항공료, 정착지원금, 생활비, 의료보험료, 학비, 귀국준비금 등을 지원해주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문제로 인한 이슈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종합해 보면,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 고등교육기관에 정규 과정으로 입학한 아시아 출신의 전문학사(D-2-1), 학사유학(D-2-2), 석사유학(D-2-3), 박사유학(D-2-4) 체류자격을 가진 학생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표 1-1〉 유학 목적에 따른 체류자격

체류자격		체류자격 부여 대상
유학(D-2)	전문학사(D-2-1)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려는 사람
	학사유학(D-2-2)	
	석사유학(D-2-3)	
	박사유학(D-2-4)	
	연구유학(D-2-5)	
	교환학생(D-2-6)	
일반연수(D-4)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단, 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거나 유학(D-2),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초중고생(D-4-3)	
	외국어연수(D-4-7)	

자료: 법제처. (2021a). 외국인 유학생 - 사증 발급,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08&ccfNo=2&cciNo=1&cnpClsNo=1&search_put=에서 2021.08.22. 인출; 대한민국 비자포털. (2021). 입국목적별 비자 종류. https://www.visa.go.kr/openPage.do?MENU_ID=10102 에서 2021.8.22. 인출을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함.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2장

이론적 배경

- 제1절 사회권의 개념과 토대
- 제2절 복지국가 발전과 사회권
- 제3절 이민자의 사회권
- 제4절 소결

제 2 장 이론적 배경

이 연구는 다면적 속성을 가진 유학생들이 직면하게 되는 사회적 위험들과 이를 예방 및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들을 인간다운 삶에 대한 권리로서의 사회권적 관점에서 다층적으로 모색해 본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이에 본 장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이민자³⁾의 한 유형인 학생 이민자(student migrants)로 정의하고 이들의 사회권(social rights)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한다. 제1절에서는 먼저 사회권 개념을 정의하고 사회권의 국제법 및 국내법적 토대를 살펴본다. 제2절에서는 사회권을 복지국가 발달과 관련하여 조망하고, 사회권의 내용을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검토한다. 이어 제3절에서는 유학생을 포함한 이민자의 사회권 보장의 방식, 내용 및 쟁점을 토론하고, 결론에서는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한국 사례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제1절 사회권의 개념과 토대

1. 사회권의 개념

사회권(social rights)은 좁은 의미에서 사회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entitlement to welfare benefit)을 의미한다. 그러나 좀 더 넓은

3) 본 장의 전반에 걸쳐 이민자(migrants) 및 국제이민자(international migrants)는 자신의 국적국을 떠나 타국에 일정 기간 거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가치중립적인 표현이다.

의미에서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인간다운 삶’이란 간신히 생존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의 본래적 존엄성과 인간성이 온전히 보호되고 실현되는 차원의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인간다운 삶이 과연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떠한 조건을 수반해야 하는가는 문화적·역사적 맥락에서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사회권의 구체적 내용은 지리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다. 즉, 신체적 안전과 자유 및 먹고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극적 권리에서부터 상대적 박탈감과 자아실현의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수준의 권리까지 포함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회권은 기본적인 자유권의 토대 위에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 건강, 주거, 문화, 환경, 사회참여 등의 영역과 폭넓은 관련성을 갖게 된다. 또한 사회권의 대상과 내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전개와 사회변동과 함께 변화될 수 있는 동적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사회권의 국제법적 토대

사회권, 즉 인간다운 삶을 위한 권리를 천부인권(天賦人權)에 따른 자연권으로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사회권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준에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법적 토대 위에서 사회권 실현을 위한 국가의 제도적 개입의 내용, 방식 및 책임성이 도출될 수 있다. 개별 국가(한국)의 사례에 앞서 여기서는 사회권의 국제법적 토대를 살펴본다.

국제사회에서 사회권은 중요한 어젠다로 다루어져 왔다. 사회권의 실현은 보편적 인권 보장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제기

구 및 다자간 협의를 통해 사회권의 중요성과 사회권 보장방안이 선언문, 협약, 권고 등의 형태로 제시되어 왔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국내법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여러 민주주의 국가들의 법체계 내에서 사회권이 어떻게 이해되고 구현될 것인지 지침 역할을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사회권의 국제법적 토대는 단연 1948년 공포된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⁴⁾이라 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의 다음 조항들에서 다양한 유형의 사회권이 규정되고 있다. 제21조에는 국가의 공적 서비스(public services)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제22조에는 구체적으로 사회보장(social security)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2조에는 사회적 권리(social rights)가 경제적, 문화적 권리와 함께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불가결한 것으로서 이의 실현을 위해 국가와 국제사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더불어 제25조에는 모든 개인은 실업, 질병, 장애, 이혼, 노령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생계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음식, 의복, 주거, 의료적 케어 및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와 사회보장(security)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1966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다자간 조약인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⁵⁾은 세계인권선언보다는 사회적 권리가 훨씬 포괄적으로 규정되고 있어 ‘사회권 규약’ 또는 ‘A규약’이라고 불린다. 규약의 서문에서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계승하여 모든 인

4) UN. (2021). 세계인권선언. <https://www.un.org/en/about-us/universal-declaration-of-human-rights> 에서 2021.07.02. 인출.

5) UN OHCHR. (2021).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escr.aspx> 에서 2021.07.02. 인출.

간이 내재적 존엄성과 평등권을 가진 존재임을 전제하고, 자유로운 인간의 이상(ideal) 실현을 위해 시민적·정치적 권리(civil and political rights)와 더불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이하 규약의 본문에서는 의식주, 노동, 교육, 사회보장 등 사회권적 기본권의 제 측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제9조), 의식주를 포함한 생활 수준과 환경의 유지 및 기아로부터의 해방(제11조), 신체적·정신적 건강, 의료의 보장(제12조)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권 규약은 복지국가(the welfare state)의 이상과 잘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B규약'이 규정하는 시민적(자유권적) 기본권과 달리 사회권은 개별 국가의 조건을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PART IV).

한편 전문 국제기구들도 사회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협력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는 특별히 근로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보장을 위해 다양한 기준, 권고, 협약을 마련하고 있다. 노동3권(No.87, No. 98), 최저임금(No. 138), 아동노동(No. 182) 및 강제노동의 금지(No. 105), 차별금지(No. 111)에 관한 협약이 대표적이다. 특별히 「사회보장 협약(The ILO 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1952, No. 102)」⁶⁾은 9개의 사회보장 영역에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소한의)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현대 복지국가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본 협약이 다루는 영역으로는 의료, 상병, 실업, 노령, 산재, 가족, 모성보호 및 유족에 대한 급여(benefits)이다. ILO 회원국은 이 중 세 영역 이상

6) ILO. (2021). ILO 사회보장(최소기준)협약(1952년, 제102호). https://www.ilo.org/secsoc/areas-of-work/legal-advice/WCMS_205340/lang-en/index.htm 에서 2021.07.02. 인출

을 비준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받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표준을 충족할 것인가(급여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는 보편적 방법(수당),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방식 중에서 각국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과 같은 지역기구들도 회원국의 사회권 보장에 개입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한 예로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⁷⁾은 가족에 대한 보호(제33조), 사회보장 및 공공부조(제34조), 건강권(제35조) 등 유럽 내 합법적 거주자에 대한 포괄적 사회적 권리 보장을 천명하고 있다.

3. 사회권의 국내법적 토대

우리나라의 법체계 속에서 주요 사회권의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한민국헌법」⁸⁾을 보면 제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①항)”고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의무(②항)와 여성, 청소년 및 취약계층의 복지향상 책임(③, ④, ⑤항)이 규정되어 있다. 그 외에도 제31조(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근로의 권리), 제33조(노동3권),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 제3항(주거권), 제36조 제2항(모성보호), 제36조 제3항(건강권) 등을 사회권의 근거로 들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이러한 사회권 조항들을 통해 인간다운 삶(생존)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이상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7) European Commission. (2021). EU 기본권 헌장. https://ec.europa.eu/info/aid-development-cooperation-fundamental-rights/your-rights-eu/eu-charter-fundamental-rights_en 에서 2021.07.02. 인출.

8) 국가법령정보센터. (1988). 대한민국헌법.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에서 2021.07.02. 인출.

20세기 현대 헌법의 전형이 되었다고 평가받는 독일공화국의 바이마르(Weimar) 헌법에 그 맥이 닿아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⁹⁾

한국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¹⁰⁾에도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 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제2조).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의 범위는 소득과 건강보장뿐만 아니라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를 폭넓게 아우르고 있다(제3조). 특히 동법 제9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 즉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회권의 내용을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로서 구체화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 모두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인 사회권을 ‘국민의 권리’로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의 경우 제6조 ①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항에서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이 정하는 사회권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에서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가 상호주의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볼 때, 한국의 헌법과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들은 사회권을 국민 자격을 갖춘 자에게 우선해서 부여되는 권리로 보지만, 동시에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서 사회권을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설동훈, 2016). 이런 측면에서 사회권은 국가 내(국내법)뿐만 아니라 초국가적

9) 국가인권위원회. (2009). 바이마르 헌법. <https://www.humanrights.go.kr/hrletter/09121/pop06.htm>에서 2021.07.02. 인출.

10)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사회보장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기본법에서> 2021.07.02. 인출.

차원(국제법)에서도 논의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사회권과 비시민(non-citizen)과의 관계에서는 제3절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제2절 복지국가 발전과 사회권

1. 사회권과 복지국가

위에서 검토한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로서 사회권의 개념은 인간의 본래적이며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특히 국제법적 토대를 볼 때 더욱 그러하다. 한편 사회권은 인류애(philanthropy)적 구호와 상부상조의 행위를 국가 제도에 의한 권리적 차원의 것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개념적 도구이기도 하다(조흥식 외, 2016). 사회권을 복지국가(the welfare state)의 출현과 연결시킨 가장 영향력 있는 논의는 마샬(Marshall, 1950)의 시민권(citizenship) 이론이다. 그는 영국에서 복지국가의 출현을, 18세기 이후 시민권의 내용이 자유권적 기본권인 공민권(civic rights)으로부터 정치권(political rights)으로 확대되고, 20세기에 들어서는 생존권적 기본권인 사회권(social rights)까지 포괄하게 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안병영·정무권·신동면·양재진, 2018).

마샬의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의 관계는 단계적이면서도 상보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미쉬라(Mishra, 1981)도 공민권과 정치권은 사회권의 발달을 촉진하고, 사회권은 공민권과 정치권의 온전한 향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적절한 수준의 교육과 소득, 건강, 주택 등은 공민권과 정치권의 완전한 발휘를 위해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본 것이다. 핀커(Pinker, 1971) 역시 세 권리들의 관계가 항상 조화로운 것은 아니지만, 사회권은 자유권과 정치권과 더불어 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필수적 조건임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해는 국내외 인권법들과 사회보장 법률들의 이념과 맥이 닿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마샬의 시민권 개념은 본질적으로 현상 서술적이며 비록 서구 민주주의 사회(특히 영국)에 국한하여서만 적용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근대 국민국가의 정치·사회적 발전과 복지국가의 출현을 매우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유용한 개념으로 인정받고 있다(Mishra, 1981).

마샬의 시민권 개념은 유용성에 대한 폭넓은 인정만큼이나 다양한 비판을 받아왔다. 미쉬라(Mishra, 1981)는 사회복지의 발달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마샬의 사회권 개념이 가진 한계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첫째, 사회권의 내용이 모호하다는 비판이다. 마샬의 사회권은 공민권과 참정권에 비해 그 내용이 상대적으로 모호하다. 그는 사회권을 ‘소정의 경제적 복지와 보장의 권리(the right to a modicum of economic welfare and security)’로부터 ‘사회적 유산에 충분히 참여하고 한 사회의 지배적 기준에 부합하는 문명화된 삶을 살 권리(the right to share to the full in the social heritage and live the life of a civilized being according to the standards prevailing in society)’로 폭넓게 정의하였다. 이는 공민권과 정치권에 비해 그 내용이 매우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모호성은 사회권의 수준과 내용이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마샬은 실제 사회권의 내용이 계속해서 진화(확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둘째, 마샬의 사회권 개념은 ‘복지’의 개념을 법정 복지로 축소하였다는 비판이다. 사회권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법정 복지는 욕구 충족의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권의 제공 주체로서 국가

의 역할과 공적 사회서비스의 중요성을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조흥식 외, 2016). 달리 말해 마샬은 시민권 개념을 통해 사회보장(사회서비스)이 ‘권리’로서 주어질 수 있도록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Mishra, 1981). 실제 마샬은 다른 논문에서 개인이 가진 복지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welfare)는 사법적(judicial) 권리라기보다는 공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책임, 즉 행정적(administrative) 책무에 관련된 권리로 설명한 바 있다(Marshall, 1965). 물론 법적 제도(프로그램)가 없더라도 인간이 본연적으로 ‘인간다운 삶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제도가 존재할 때에야 비로소 사회권은 법적 권리(청원권을 포함한)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마샬의 이론은 백인 남성 근로자의 관점에서 기술되었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 적어도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백인 남성 근로자들이 주로 완전한 자유권과 정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새로 출현한 복지국가에서도 사회권에 접근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권의 발전이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의 순서로 단계적, 누적적으로 발전해 간다는 논리 역시 지나친 단순화이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우에는 복지국가 형성 이후에도 정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국적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제3절 참조). 이러한 한계는 마샬의 1952년 시민권 이론이 형성된 20세기 중엽의 유럽이라는 역사적·지리적 배경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 1990) 이후, 사회권을 실현하는 방식과 정도는 자본주의 체제를 가진 국가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요컨대 마샬의 사회권 개념의 가장 큰 기여는 무엇보다 국가가 시민의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위해 책임을 진다는 점과 시민은 국가에 대해 인간

다운 삶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회권을 시민권의 누적적, 단계적 진화의 결과로 해석하는 그의 관점으로 인해 사회권의 성격이 시대마다 지역마다 부침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사회권의 차별적 성격으로 인해 갈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사회권의 성격과 내용은 공민권이나 정치권처럼 직관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갈등, 타협 혹은 협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미쉬라(Mishra, 1981)의 주장처럼 후학의 장점을 가진 우리는 앞에서 언급한 마샬의 한계점들을, 이론을 발전시킬 잠재력과 과제로 보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이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보자면, 마샬의 시민권이론에서 개념적으로 배제된 비시민, 즉 이민자의 사회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그러한 과제의 하나일 것이다.

2. 사회보장과 사회권

법정 복지로서 사회보장제도는 사회권의 실현에 가장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사회권의 개념이 엄격하게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최소 수준의 복지를 달성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 전후 복지국가의 청사진으로 평가받는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The Beveridge Report)」의 문제의식 역시 자선으로는 충분치 않고 정부의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서만 소위 ‘5대 사회악’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UK Parliament, 1942). 이런 측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사회권을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민주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 할 만하다(George and Wilding, 1985).

한국의 「사회보장기본법」¹¹⁾은 사회보장의 개념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사회보장의 대상은 ‘국민’, 목적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및 삶의 질 향상’, 사회보장의 수단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이다. 사회보험은 건강과 소득보장을 위한 보험방식의 제도이며, 공공부조는 최저생활 보장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공적 지원제도를 의미한다. 끝으로 사회서비스는 정책의 분야(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및 방법(인간다운 생활 보장,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이 매우 광범위하다. 이런 포괄성으로 인해 오히려 개념적 혼란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있다(남찬섭, 2012). 그러나 사회보장의 한 축으로서 포괄적 사회서비스는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인한 욕구의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찍이 조지와 윌딩(George and Wilding, 1985)은 전문가나 관료들이 내린 결정에 기초한 서비스보다는 민주적 참여가 가능하고 실제 수혜자나 잠재적 수혜자들에 의해 표현된 욕구에 직접적으로 대응한 서비스가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운영방식과 상대적 중요도 면에서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현대 복지 국가의 사회복지에는 대체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제도는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 급여(서비스 포함)의 대상, 내용, 수준을 각기 다른 논리에 근거해 결정한다. 무엇보다 수급자 선정방식이 이 세 제도의 특성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길버트와 테렐

11)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사회보장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기본법에서> 2021.7.2. 인출.

(Gilbert and Terrell, 2005)은 사회복지 수급자 선정기준을 귀속적 욕구, 기여에 대한 보상, 전문가 진단, 소득 및 자산조사의 네 가지로 분류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수급자격 요건은 이들 중에서 두 개 이상의 기준들이 결합되어 사용된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경우를 보면, 사회보험에서는 사회보험료 납부(기여)를 공통조건으로 요구하며, 고용보험에서는 근로와 구직활동 조건을 추가로 요구한다. 공공부조에서는 국적 및 체류자격,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그리고 현재로서는 부양의 무자 조건을 결합하여 소위 자산조사(means-test)를 통해 수급자를 선정한다. 반면 사회서비스에서는 신청자의 욕구에 대한 사정을 근거로 하며 이 경우 서비스 제공자나 공무원의 재량(discretion)이 중요하게 작용한다(안병영 외, 2018).

자유권이나 정치권과 달리 사회권은 제한된 사회·경제적 자원을 배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권을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이다. 사회권에 대한 접근을 권리로서 부여하게 될 때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이런 측면에서 기여금에 대한 보상적 요소가 있는 사회보험은 정당화하기 유리한 반면, 일반조세로 제공되는 공공부조는 국적을 갖는 것 외에도 자신의 궁핍을 증명해야 수급권을 얻을 수 있게 설계한다. 한편 사회서비스는 표현된 욕구나 상대적 욕구를 가진 것만으로도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근거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비시민(non-citizen)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사회서비스에 접근하기가 가장 쉽고, 기여금을 낼 수 있다면 사회보험에도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공공부조에 대한 접근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복지국가가 비시민에게까지 사회권을 확장하려고 한다면, 앞에서 제시한 방식 외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논리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보편적 인권보호(국제법적 근거), 사회통합이나 인적

자원 개발, 사회적 위험 예방을 통한 장기적 비용절감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시민, 즉 이민자들과 사회권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 절에서 더 깊이 논의하기로 한다.

제3절 이민자의 사회권

1. 복지국가와 이민자의 사회권

기본적으로 사회권은 시민(citizen)의 권리로서 이해된다. 현대 복지국가는 시민들(citizen)의 사회권 실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국가로 정의할 수 있다(Baldock et al., 1999). 이 경우 이민자는 비시민이므로 복지국가의 사회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합리화될 수 있다. 실제 주류 복지국가 연구는 영토적 경계가 분명한 ‘국민국가(nation state)’를 분석 단위로 하고,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은 국민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시민권을 가진 자)이 대상임을 전제로 해왔다. 그 결과 복지국가 및 사회정책 분야에서 이민자나 그들의 욕구는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왔다(Sainsbury, 2012).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조차도 이러한 방법론적 국가주의의 한계를 보인다(Banting et al., 2006; van Oorschot and Uunk, 2007).

예외적으로 복지국가와 이민자의 사회권에 관한 주목할 만한 몇몇 연구 중에서(MacAuslan and Sabates-Wheeler, 2011; Mahon and Robinson, 2011; Sainsbury, 2012), 단연 세인즈베리(Sainsbury, 2012)의 연구가 돋보인다. 그녀의 연구는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 1990)으로 대표되는 주류 복지국가 레짐 연구의 틀을 그대로 쓰면서도 기존

의 연구와는 분석의 대상과 방향을 달리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즉, 복지국가의 유형별로 이민자의 사회권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분석함으로써 복지국가 연구의 지평을 이민자에게까지 확대했다.

이민자의 증가는 복지국가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음이 틀림없다. 실제 현대 대다수 국가들은 국적을 가진 '시민'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 세계인구의 3.5%는 이민자이며, 주요국의 인구 대비 이민자의 비중은 전통적인 이민 국가인 미국의 경우 13.7%, 서유럽의 경우 영국이 13.4%, 스위스는 29.6%의 이민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UAE의 경우 인구의 88.4%가 외국인이다(Castles et al., 2020). 한국도 90일 초과 체류 외국인의 인구 대비 비중이 4.6%를 넘어서고 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0). 중동국가의 극단적인 경우는 논외로 하더라도 대부분의 선진 복지국가들에는 국적자뿐만 아니라, 외국국적자, 무국적자, 다중국적자 등 다양한 정치적 성원권(membership)을 가진 구성원이 '실재'하고 있다. 만약 복지국가가 시민권자들을 위해서만 작동한다면 상당 규모의 인구가 복지국가로부터 배제되게 되고, 연대(solidarity)의 원리를 통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발전해 온 복지국가의 이상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고자 한다면 시민권과 사회권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는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복지국가가 시민뿐만 아니라 이민자를 위해서도 작동해야 할 당위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시민과 이민자 사이에는 사회권 부여의 근거와 방식, 사회권의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국제협약이나 '상호주의' 같은 추가적 정당화 논리가 동원되기도 한다. 또한 시민들과는 달리 이민자의 경우 공민권이나 정치권의 획득이 선행되지 않고도 사회권이 부여될 수 있다(Soyssal, 1994; Sainsbury, 2012). 실제 많은 국가가 이민 유형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차등화하여 이민을

통제하고 있다(Morris, 2001, 2003; Kim, 2018). 사회권 부여 요건에서도 기여나 자산조사 외에도 이민정책과 국적법 등에 의해 제한사항이 추가될 수 있다(김경환, 2021; 김규찬, 2020). 예컨대 최대 연속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달리함으로써 장기 거주자에게 부여되는 경제활동의 자유나 사회복지 급여의 수급권을 차등화한다. 이렇듯 이민자의 권리는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입국, 체류 및 귀화에 관련된 다양한 규제와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아래 <표 2-1>에 제시된 국가들의 예에서 보듯이, 이민자 사회권은 각 나라의 복지(국가)레짐(the welfare state regime)과 출입국정책과 편입정책을 포함한 이민(정책)레짐(the migration regime)의 특징을 함께 반영하여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표 2-1> 국가별 복지레짐과 이민정책레짐

국가	복지레짐	이민정책레짐
미국	자유주의 욕구에 기초한 권리	수용적 출생지주의(jus soli)에 근거한 권리
독일	보수주의 근로에 기초한 권리	배제적 혈통주의(jus sanguinis)에 근거한 권리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시민권에 기초한 권리	수용적 거주지주의(jus domicili)에 근거한 권리

자료: Sainsbury(2006: 231, Figure 1)로부터 필자 번역

이러한 접근법의 장점은 이민자 사회권 구성의 국가별 다양성을 보여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민자의 사회권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동'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진화와 함께 국민의 사회권이 변동되어 왔듯이, 이민자의 사회권 역시 복지국가레짐과 이민레짐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확장 혹은 축소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역동적 복지국가 발전과 이민 유입국가로의 유입을 겪고 있는 한국은 이민자 사회권 연구에 흥미로운 사례를 제공한다(Kim, 2017a; 김규찬, 2020).

2. 한국 복지국가의 이민자 사회권 구조

한국 복지국가는 이민자의 사회권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 위에서 논의한 레짐 간의 교차(intersections) 개념을 분석틀로 삼아 한국 내 이민자의 사회권이 한국 복지국가레짐과 한국 이민레짐의 접점(intersection)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살펴본다.

한국의 복지국가레짐은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보장제도를 특징으로 한다. 이것은 복지국가 발달 초기에 국가의 경제적 부담과 정치적 저항을 최소화하되 생산인력(근로자)의 보호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사회보험이 선호되었기 때문이다(Shin, 2000; Aspalter, 2006; Kwon, 2007a, 2007b). 1990년대 말부터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가 뒤이어 발전하기 시작했지만, 이러한 발전주의 복지국가의 유산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안병영 외, 2018). 일반적으로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국가에서는 기여(보험료 납부)가 가장 중요한 사회권 배분의 전제로서, 피보험자의 기여 기간과 규모에 의해 사회권의 수준이 결정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고용이 안정적인 임금근로자가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권을 누릴 수 있다. 한편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거나 비전형적 근로를 하는 인구는 사회권 부여가 제한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이민레짐은 출입국정책 면에서는 이민 유형별로 매우 세분화된 사증 체계를 특징으로 한다. 외국인 체류자는 체류의 기간과 목적뿐만 아니라 기술수준과 민족성(ethnicity)에 따라 더욱 세분화된다. 수용국 사회의 성원권 부여 및 사회통합과 관련된 편입정책의 측면에서는, 한국은 구분배제적 성격을 지닌다(Castles et al., 2020). 달리 말해, 특정 이민자 집단(결혼이민자, 동포, 전문직자 등)은 타 이민자 집단(특히 비전문 노동이민자)에 비해 더 높은 수준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포용된

다. 따라서 이들은 적극적 사회통합 및 정착지원 정책의 대상이 된다. 이 두 정책 영역의 교차점(intersection)에서 한국 내 이민자 사회권은 위계적 구조(stratification)로 형성된다(〈표 2-2〉 참조).

〈표 2-2〉 한국 복지국가의 이민자 사회권 형성

한국 복지국가레짐	이민자 사회권	한국 이민레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적 사회보험 중심 · 제한적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 가족(우선)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근거: 기술수준, 동민족성, 근로, 욕구, 상호주의 · 권리의 층화구조: 전문인력 > 동포 및 결혼이민자 > 비전문인력 > 불법체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분화된 사증 구조 · 전문인력, 동포, 결혼이민자 체류 및 활동상 특권부여 · 선별적 편입(사회통합) 정책

자료: 필자 작성

장기거주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임금과 고용안정성을 보장받는 전문 외국인력은 한국의 사회보험 중심 복지국가-선별적 이민정책에 의해 가장 높은 사회권을 누릴 수 있다. 더불어 폭넓은 경제활동 기회 및 장기체류가 가능한 동포들(F-4)도 상대적으로 사회권 접근이 용이하다. 한편, 비전문외국인력은 고용이 유지되는 한은 당연적용, 임의가입 및 상호주의에 입각해 사회보험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임금 수준이 낮고 장기체류가 불가능해 기여금을 낼 기간이 제한적이므로 사회권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될 수 있다. 체류 전망이 불투명하고 가장 열악한 고용조건에 처하게 되는 불법체류자는 비록 고용되었다 하더라도 권리의 층화구조의 최하층을 차지한다. 비전문 외국인력 중에서도 민족성을 공유하는 동포들(H-2 비자 소지자)은 사업장 선택의 자유 등으로 인해 여타 비전문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권리를 부여받는다.

한편 가족이민의 한 유형인 결혼이민자는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지만 고용되지 않는다면 사회보험에 의한 사회권은 제한된다. 반면 결혼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국의 편입레짐의 특성으로 인해 이들

은 심지어 국적취득 전에도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등 여타 이민자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사회권을 누릴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이민자 사회권 구조의 매우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김경환, 2021; 김규찬, 2020; Kim, 2018). 요컨대, 이민 수용국으로서 한국 복지국가는 근로를 통해야 사회권에 접근하기 유리하며, 그렇지 않다면 ‘동포’이거나 결혼을 통해 ‘가족’이 되어야 사회권에 접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내 이민자의 사회권(복지수급권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노동과 거주이다. 한국 내 외국인도 기여금에 의한 사회보험의 가입은 폭넓게 허용된다. 그러나 어느 나라의 국적을 보유하였느냐는 근로자에게도 여전히 중요하다.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및 수급이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¹²⁾ 많은 국가에서 공공부조는 사회보험료가 아니라 국가재정을 재원으로 사용하므로 다양한 법 규정을 통해 복지에 관한 권리를 자국민으로 제한한다(안병영 외, 2018: 248-50). 한국도 미성년자녀 양육 등 긴급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외국인의 공공부조 수급은 제한한다. 사회서비스는 ‘육구’가 우선해서 급여의 조건으로 고려되지만 재원이나 프로그램의 성격과 운영방식에 따라 특정 외국인은 이용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라면 계층에 따라 사회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것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복지국가레짐과 이민레짐이 진화하는 것처럼 이민자의 사회권도 이와 연동하여 변화한다. 한국 복지국가는 저출산·고령화로 상징되는 국가 위기 대응으로서 2000년대 중반 이후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특별히 가족의 재생산권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05). 그 결과 소위 ‘다문화가족’은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대상이 되었다

12)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노호창(2016) 참조.

(여성가족부, 2018). 이민정책 역시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권리 확장은 선발 이민국가들에서 이미 경험되어 온 것이다. 민주적 정치제도가 정착된 나라에서는 시장의 수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민자를 유입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지만, 국가가 이민자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는 소위 ‘자유주의의 역설(liberal paradox)’ 상황에 놓이게 된다(Hollifield, 2004). 이 점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도 이제 사회권은 국민만의 전유물로 볼 수 없다. 또한 특정 이민자를 사회권 부여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에 대한 지지가 정서적, 규범적, 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 그동안 사회권 논의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던 불법체류자의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이민 유형으로 ‘학생 이민자’의 사회권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3. 외국인 유학생의 사회권

‘학생 이민자(student migrants)’는 국제이민자의 한 유형이라 볼 수 있다. 이들은 입국 시 체류 목적 기준으로 분류하면 학업 목적 이민자이며, 체류기간 기준으로는 중·장기 이민자에 해당한다. 외국인 유학생은 최근 한국으로의 이민 유입 흐름에서 점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규모뿐만 아니라 이들의 독특한 성격으로 인해 중요한 이민정책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선 이들은 이민정책적 측면에서 매우 독특한 대상이다. 이들은 한국 외국인정책상 노동이민정책에서 특별히 ‘인재정책’의 대상이다. 2008년 수립된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중 ‘국가 차원의 우

수인재 유치 지원' 과제의 한 하위 항목이 '우수 유학생 유치 및 활용 지원 강화'였다(법무부, 2008). 제2차 기본계획에서도 인재 유치 목표의 중점과제로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유학생 유치'가 제시되었고(법무부, 2013), 제3차 기본계획에서도 기본적으로 인재 유치 차원에서 유학생 정책이 언급되고 있다(법무부, 2018).

이와 동시에 이들은 정착지원정책의 대상이다. 이들의 입국 목적이 비록 학업이지만 향후 국내 취업을 통해 장기체류(정착)를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국형 인재인 유학생”이라는 표현부터(법무부, 2013: 26), 유학생 한국 사회 적응지원, 생활 여건 개선, 한국문화프로그램 제공, 기숙사 등 정주 여건 개선 등의 세부 정책안을 볼 때 이들은 잠재적으로 노동력이자 주민(인구)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학생은 현재로서는 전문인력(근로자)도 아니고 가족 형성을 위한(결혼)이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으로 전문인력이자 한국에 호의적인 주민이기 때문에 이들의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사회권을 포함하여 이들의 권리는 실제 확대되고 있다. 우수 유학생에 대한 가족 초청범위 확대, 건강보험 당연적용 등은 대표적인 이들에 대한 사회권 확대의 예이다. 한국 복지국가가 결혼이민자 외에 시민권도 없고 근로자도 아닌 이민자에게 이런 포용성을 보인다는 것은 사회권의 진화(확장)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실제 정부가 사용하는 '적응 및 정착지원', '생활지원',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등의 표현을 보면, 유학생정책이 거주와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결혼이민자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발견된다. 이는 한국 이민레짐과 복지국가레짐에서 유학생은 수용(inclusion)의 대상이자 사회권 부여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태도로 판단된다.

이들의 사회권은 적어도 세 가지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다. 첫째, 사회보장의 일차적 기능은 '보호'이므로, 합법적 사회구성원인 유학생을 다양

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인간존엄성 보호를 위한 국가의 윤리적 책무이자 장기적으로 비용효율적이다. 둘째, 유학생은 학생 신분으로 시간제 근로를 하거나, 졸업 후 취업하는 경우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가짐은 물론, 국가의 생산성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사회보장의 정당한 대상이 될 수 있다. 셋째, 유학생은 정착 가능성이 높은 인구라는 측면에서 사회통합 목적으로 사회보장에 포섭될 당위성도 있다. 유학생의 사회권 확장을 통해 이들의 사회통합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실제 사회권은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효과적인 참여, 연대감, 소속감을 증진한다. 윤찬영(2004)이 지적한 대로, 사회법의 성립 논리 자체가 공동의 이익을 위한 시민법의 공동체주의적 수정행위이므로 중요한 잠재적 사회구성원인 유학생을 사회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유학생이 잠재적으로 도움이 될 인구이니 지원하자는 식의 도구적인 접근만으로는 사회권의 배분 원리로서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인권, 기여, 욕구, 상호주의 등 다양한 각도에서 이들의 사회권의 근거와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낼 필요가 있다.

제4절 소결

본 장은 사회권의 개념을 좁게는 ‘복지에 대한 권리’로 정의하고, 넓게는 인권 실현의 필수적 요소인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사회권을 인정하고 실현하는 국제법적 토대로는 인간존엄성과 인권 의식에 뿌리를 두고 국제사회가 그간 발전시켜 온 다양한 인권 및 사회보장 관련 협약, 권고 및 기준을 들 수 있다. 한편 헌법과 사회보장법 등 국내법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만, 국제법과 상호주의를 통해 외국인에게도 사회권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민자의 사회권 보장에 있어서는 국제법이 국내법에 비해 더 명확한 토대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국제법은 보편적 인권보장을 위해 인종이나 국적에 따른 차별을 극복하고자 함으로써, 국민이 아니더라도 단지 ‘인간’으로서, 혹은 적어도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주민’이라는 자격만으로도 사회권을 부여할 근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설동훈, 2016).

그러나 강제력이 없는 국제법의 태생적 한계를 고려할 때, 사회권의 구체적 실현은 (복지)국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20세기 들어 국가는 자유권적 기본권만을 소극적으로 보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복지국가로 발전해왔다. 특히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되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사회권을 제도화하는 노력을 해왔다. 사회권의 제도화 유형과 수준은 다양성과 역사성을 동시에 가진다.

복지국가의 사회권은 기본적으로 시민(국적자)의 권리로서 제도화되었다. 이는 정당한 접근이지만 국민국가의 구성원이 국민만으로 구성되지 않고 다양한 성원권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시민권의 한 요소로서 사회권의 변화와 확장을 요청한다. 사회권의 성립과 발전이 애초에 계급적 이해를 배경으로 했고, 완전한 평등 실현을 담보하기 위한 시도 역시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사회권이 보편적 인권(인간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근거하여 사회변동 과정에서 수반되는 차별(에 따른 사회악)을 완화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촉진하기 위한 시도였다는 점 역시 분명하다. 인간의 국제적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국가의 구성원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국가의 사회권의 대상을 국민으로만 제한한다면 복지국가의 사회통합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 만약 이민자들

이 사회적 배제와 차별에 지속해서 노출된다면 이민자의 유입 증가는 사회적 분열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Schierup et al., 2006; Castles and Schierup, 2010).

한국은 지난 한 세대 동안 복지국가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국제이민자 유입이 급속히 증가하는 것을 동시에 겪었다(Kim, 2017b). 특별히 이민자의 급속한 유입 및 정착 증가는 오랜 기간 단일문화성의 신화를 유지해온 한국으로서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회적 변동의 하나라 할 만하다(Kim, 2017a). 한국 복지국가 발전과정에서 국민의 사회권은 빠르게 확장되어왔으며, 지금도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통해 사회권의 확대가 계속되고 있다. 증가하는 이민자들의 관리와 정착지원을 위한 제도들도 빠르게 성립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다문화사회’라는 수용적 수사(rhetoric)에도 불구하고, 사회권을 포함한 시민권적 접근 없이 단지 시혜적 정책을 펴으로써 오히려 국민과 이민자 간 또 이민자들 간의 분리, 차별,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왔다(김정선, 2011; 황정미, 2011; 이미영, 2017).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 이민정책의 중요한 대상임이 틀림없다. 정부는 무엇보다 이들을 잠재적 인재(전문인력)로서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할 대상으로서 여기고 있다. 이는 비전문인력이 95%를 차지하는 한국 노동이민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 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이들은 이미 한국어와 문화에 익숙하므로 장기 정착 시에도 적응이나 사회통합의 실패가 적다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대학 포함)와 국민들도 외국인 사업가나 투자자 다음으로 유학생의 증가를 원할 정도로 매우 호의적이라는 점에서(법무부, 2013: 59), 유학생 중심 인력정책은 정치적으로도 매우 안전한 선택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유학생은 단기순환적 노동력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정착할 ‘주

민'으로도 접근되어야만 사회권 부여의 대상으로 유학생이 가지는 정당성을 공고히 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사회권 부여의 정당화 논리, 방식,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정당하고 합의된 사회권 배분의 근거 및 방식이 없는 상태에서 지원 조치만을 나열한다면, 기존 결혼이민자(다문화가족) 정책이 받는 비판을 반복할 위험이 있다. 정부가 희망하는 유학생의 학업과 직업의 원활한 연계 및 주민으로서의 장기적 정착이라는 정책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들의 사회권을 기여에 대한 보상이나 시혜적 차원에서만 보지 말고, 보편적 인권에 근거한 시민권의 재해석과 확장 그리고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제3장

국내·외 유학생 관련 현황과 정책

제1절 전 세계의 유학생 이동 현황

제2절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제3절 유학생 관련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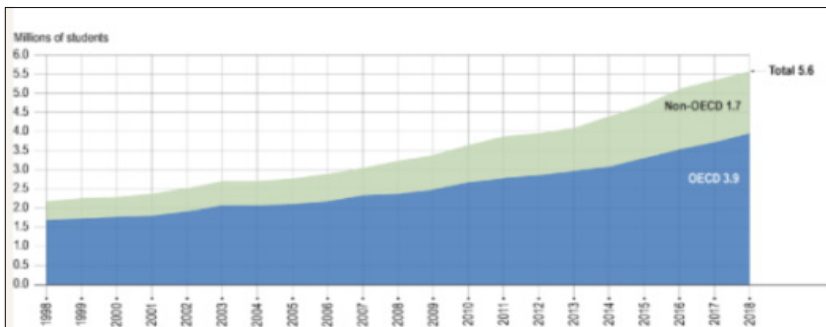
제 3 장 국내·외 유학생 관련 현황과 정책

제1절 전 세계의 유학생 이동 현황

1. 전 세계 유학생 현황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전 세계 유학생은 1998년과 2018년 사이 매년 약 4.8%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OECD, 2020). [그림 3-1]에 따르면,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 모두 유학생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OECD 비회원국의 유학생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OECD, 2020).

[그림 3-1] 고등교육기관에 등록된 외국인 유학생 현황 (1998-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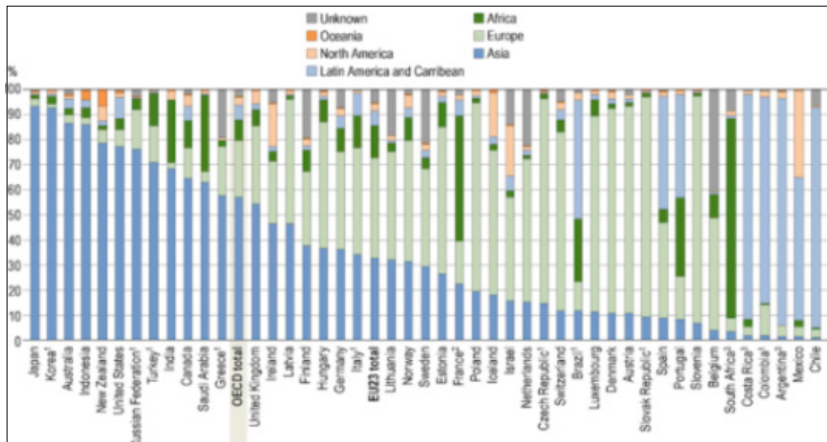


자료: OECD. (2021). 외국인 유학생 현황. <https://www.oecd-ilibrary.org/sites/974729f4-en/index.html?itemId=/content/component/974729f4-en>에서 2021.08.13. 인출

[그림 3-2]는 2018년 기준으로 출신 지역별 유학생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등은 아시아 출신 유학생이 절대 다수를 차

지하는 반면, 유럽연합의 경우, 이동의 자유로 인하여 인근 유럽연합 국가에서 공부를 하는 경향이 짙었다. 중남미 지역인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멕시코, 그리고 칠레는 인근 라틴 아메리카 지역 및 카리브해 인근 지역 출신 유학생이 많았다. 프랑스와 남아공은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이 전체 유학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 캐나다 등은 인근 아메리카 대륙 국가보다 아시아 지역 출신 유학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 이유는 영어가 전 세계 인구 4명 중 1명이 사용할 정도로 만국 공통어로서(Sharifian, 2013), 영어권 국가는 유학생들에게 매력적인 유학 목적국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OECD, 2020).

[그림 3-2] 출신 지역별 유학생 분포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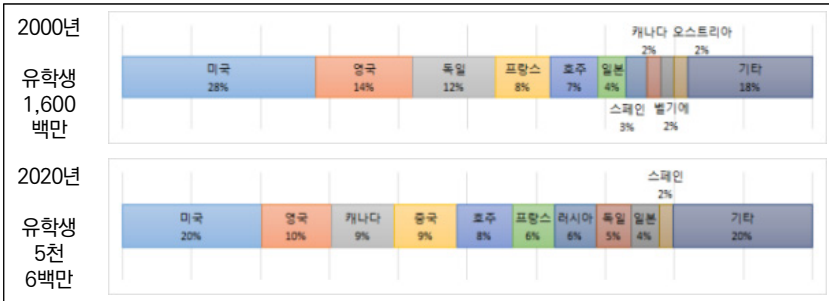
자료: OECD. (2021). 국가별 유학생 현황. <https://www.oecd-ilibrary.org/sites/974729f4-en/index.html?itemId=/content/component/974729f4-en>에서 2021.08.13. 인출

다음으로, 국가별 유학생 현황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아래 <그림 3-3>에 따르면, 유학생이 가장 많은 나라로는 2000년에는 미국(28%), 영국(14%), 독일(12%), 프랑스(8%), 호주(7%), 일본(4%) 등의 순이었고, 2020년은 미국(20%), 영국(10%), 캐나다(9%), 중국(9%), 호주(8%), 프랑스(6%)

등의 순이었다. 20여 년 동안 유학목적국이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이나, 중국이 최근 들어 유학배출국에서 유학목적국으로 전환된 점은 흥미롭다.

[그림 3-3] 고등교육기관에 등록된 세계 유학생 현황(2000, 2020)

(단위: %)



자료: IIE. (2020). 2020 Project Atlas Infographics. <https://www.iie.org/Research-and-Insights/Project-Atlas/Explore-Data/Infographics/2020-Project-Atlas-Infographics>에서 2021.08.16. 인출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전후, 주요국의 유학생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3-1>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학생 수는 증가하였다. 특히, 캐나다, 호주, 일본 그리고 네덜란드로 유입되는 유학생 수는 10% 내외로 증가 폭이 큰 반면, 미국,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코로나19 전 후, 외국인 유학생 현황 비교

(단위: 천 명, %)

국가	2019년	2020년	% 증감률
미국	1,095,299	1,075,496	-1.8%
영국	524,250	551,495	5.2%
캐나다	435,415	503,270	15.6%
중국	492,185	-	-
호주	420,501	463,643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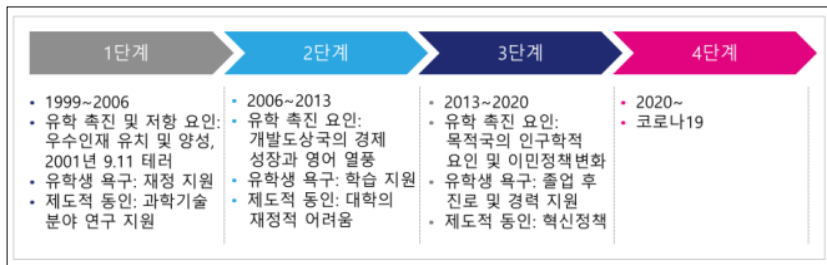
58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국가	2019년	2020년	% 증감률
프랑스	343,400	358,000	4.3%
러시아	334,497	353,331	5.6%
독일	282,002	302,157	7.1%
일본	208,901	228,403	9.3%
스페인	120,991	125,675	3.9%
네덜란드	85,955	94,236	9.6%
폴란드	72,743	78,259	7.6%
뉴질랜드	61,240	52,995	-13.5%
스웨덴	37,888	38,334	1.2%
덴마크	32,106	30,733	-4.3%
노르웨이	24,155	21,199	-12.8%

자료: IIE. (2020). 2020 Project Atlas Infographics. <https://www.iie.org/Research-and-Insights/Project-Atlas/Explore-Data/Infographics/2020-Project-Atlas-Infographics>에서 2021.08.16. 인출

2. 시기별 유학생의 이동

[그림 3-4] 유학생 이동 흐름의 4단계 (1999-2020)



자료: Choudaha, R. (2017) Three waves of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1999.2020), *Studies in Higher Education*, 42:5, pp.826

가. 첫 번째 시기 (1999-2006)

유학생은 지난 수십 년간 존재해 왔으나, 1990년대에는 이전과 달리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OECD 국가에서는 정보통신 산업이 각광받

게 되자, 해당 분야의 고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었다. 이처럼 산업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산업의 노동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과학기술을 전공한 유능한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연구 예산 확보, 연구의 질 관리, 그리고 장학금을 제공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Choudaha, 2017, p.826). 특히, 국가 및 대학 연구기관에서는 풍부한 재정을 바탕으로 유학생들에게 장학금과 같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였다(Choudaha, 2017, p.826). 이로 인해, 과학기술 관련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들은 졸업 후 본국에 귀국하여 자국의 과학기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였다(Choudaha, 2017, p.826).

특히, 1999년 유럽연합은 볼로냐 프로세스(Bologna Process)를 발표함으로써, 유럽 내 혹은 비유럽 지역으로부터 국제학생 이동 유입이 촉진된 바 있다(박정수 외, 2009; EUA, 2021). 볼로냐 프로세스는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교육부 장관들이 모여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후 유럽 내 다른 국가들이 참여하여, 유럽 내 통합된 고등교육 지역(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으로 개편되었다(박정수 외, 2009). 그 결과, 유럽연합 가맹국 내에서는 한 국가의 대학 졸업장이 다른 국가에서도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되고, 이는 유럽인들이 유럽 내 여러 국가에 취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등 유럽연합의 통합 대학 시스템 마련을 구축할 수 있게 해 주었다(박정수 외, 2009). 볼로냐 프로세스에서는 유학생을 유치하려는 목표를 직접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유럽연합 국가와 여러 협력을 통해, 유학생 유입을 촉진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Teichler, 2012).

나. 두 번째 시기 (2006-2013)

이 시기에는 경기침체로 인해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되자, 유학생 이동 흐름은 큰 변화를 겪게 된다(Eggins and West, 2010).

이 시기의 주요한 특징으로는 자비 유학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이다(Choudaha and Li, 2012; Schulte and Choudaha, 2014). 대학 및 우수 연구기관들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최소한의 재정 지원 및 장학금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자비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대학 내 재정 부족분을 메우고자 하였다(Choudaha, 2017, p.828; Choudaha and Li, 2012; Schulte and Choudaha, 2014). 실제로 이 시기에는 중국 및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중산층의 증가로, 이들 국가의 부모들은 기꺼이 자비를 지불하며 자녀의 해외 유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Choudaha, 2017, p.828). 중국 외에도 인도, 한국 등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하기도 하였다(Choudaha, 2017, p.828).

두 번째 특징으로는 국비 유학생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사상 유례없는 경기활황과 오일머니 획득으로 인해 세계 우수 대학으로 국비 유학생을 상당수 배출하였다(Choudaha, 2017, p.828). 일례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2007년 82명의 국비 유학생을 한국으로 보내기 시작하였고, 2008년부터는 500명 규모로 확대하여 유학생을 파견하는 등 한국에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유학생이 크게 증가하였다(최중혁, 2007.10.01.).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는 2010년 이후, 오일 머니 수익의 감소로 정부의 장학 제도 예산을 삭감하였고, 이는 곧 세 번째 시기(2013-2020)에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자비 유학생 숫자 감소로 이어졌다(Choudaha, 2017, p.828).

다음 특징으로는 유학생이 선호하는 전공 분야 및 학위 과정이 기존과 많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이전 시기에는 과학기술 분야가 유학생의 선호 전공이었다면, 두 번째 시기에는 경영학과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Choudaha, 2017, p.828). 또한, 이전처럼 석박사가 아닌 학사 학위 과정에 등록하는 이들 역시 크게 늘어났다(Choudaha, 2017, p.828).

정리하자면, 북미 및 유럽의 고등교육기관은 “유능한 글로벌 인재를 유치(attracting global talent)”하는 것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recruiting international students)”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었다고 볼 수 있다(Choudaha, 2017, p.828).

하지만 이러한 유학생 정책은 학업 능력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유학생을 양산하였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즉, 대학은 유학생이 지불하는 등록금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다 보니, 일부에서는 유학생에게 요구하는 영어성적 기준을 다소 완화하기도 하였다(Redden, 2013). 다시 말하면, 기준에 요구했던 혹은 기대한 영어성적보다 낮은 영어 시험 점수를 입학 자격요건으로 내세우는 학교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Benzie, 2010, p.451). 낮은 영어 성적은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에도 큰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학교 측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마련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였다(Andrade, Evans and Hartshorn, 2014; Bista and Foster, 2016, p.xxii; Matthews, 2016).

다. 세 번째 시기 (2013-2020)

세 번째 시기는 중국의 경기 둔화, 신흥국의 경제 성장, 영국의 브렉시트(Brexit)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그리고 인구학적 요인

등이 특징인데, 이 시기에 외국인 유학생 이동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중국의 지속적인 경기 둔화로 인해 중국인 유학생 수는 차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Choudaha, 2017, p.830). 또한, 중국 학생들 사이에서 해외 유학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한몫하였다. 중국인들은 유학 갈 국가의 이민정책이나 대학에서 제공하는 진로서비스가 충분치 않다고 느끼게 되면, 해외 유학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Choudaha and Hu, 2016). 이처럼 차츰 해외 대학 혹은 기관에 유학하는 학생이 감소하기는 하나, 아직 중국은 인도와 더불어 해외 유학생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이다(Choudaha and Hu, 2016).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중국은 한국, 일본 등과 더불어 외국인 유학생을 끌어들이는 주요 목적지 국가로 변모하였다(김도혜, 2019; 류유선, 2019;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2014). 실제로, 2018년 기준 중국에서 수학하는 유학생은 약 489,200명으로, 아시아 최대의 유학 목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화영, 2018.03.31.).

다음으로, 신흥 저개발 국가들의 급격한 경기성장은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을 촉진하였다. 예를 들어, 인도, 나이지리아, 베트남 같은 중저소득 국가들이 주요 외국인 유학생 송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대만, 중국, 독일, 러시아 등지에 많은 유학생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shwill, 2020). 경제적 영향 측면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베트남 학생들의 예상 기여도는 2018-2019년 기준 약 10억 달러 수준이었다(IIE, 2020). 미국에서 베트남 학생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학과는 경영 및 경제(28.5%), 공학(10.9%), 수학 및 컴퓨터 공학(14.2%), 물리 및 생명과학(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IIE, 2020).

한편,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역시 국제

학생 이동에 영향을 미쳤다. 영국과 미국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반이민 정서와 외국인 혐오가 도드라지며 외국인 유학생 관련 비자 및 정책들은 크게 선회하고 있다(Najar and Saul, 2016).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유학생의 안전, 학위 취득 후 현지에서의 취업 그리고 영주권 획득의 기회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Najar and Saul, 2016). 즉, 전통적인 유학 목적국 내의 상황이 외국인 유학생에게 비우호적으로 변하면서, 해당 국가에 유학을 준비하던 이들은 캐나다나 호주와 같은 다른 국가로 유학을 가기도 하였다(Choudaha, 2017, p.8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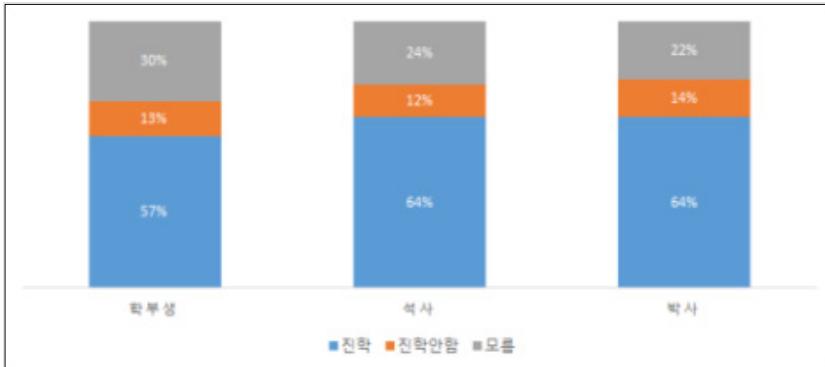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유학 목적국의 인구학적 요인은 해당 국가의 이민정책 방향을 개방적으로 전환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Choudaha, 2017, p.830; Hawthorne, 2010). 서유럽국가들, 특히 독일과 같이 저출산과 고령화를 경험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젊은 노동력 수혈이 시급한 이슈로 대두되었고, 이는 저개발 국가들의 유능한 젊은 인재에 대한 수요를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유럽연합에서는 과학기술 관련 인력 부족 및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학생을 미래의 인력으로 유치하고 활용하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6; 7).

라. 네 번째 시기 (2021~)

코로나19는 전 세계의 학생 이동성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한 개별 국가의 봉쇄조치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국가 간의 이동은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는 예비 및 현재 유학생의 학업 계획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아래 [그림 3-5]에 따르면, 예비 학부생의 경우 57%, 석사 진학을 앞둔 이들은 64%,

그리고 박사 학위 진학을 계획한 이들은 무려 64%가 코로나19로 인한 학사일정, 학업 등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QS, 2020).

[그림 3-5] 코로나19 이후 학위 과정 진학 비율



자료: QS (2020) How COVID-19 is Impacting Prospective International Students at Different Study Levels. <https://www.qs.com/portfolio-items/how-covid-19-impacting-prospective-international-students-different-study-levels/> 에서 2021.08.16. 인출

제2절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1. 연도별

아래 <표 3-2>와 [그림 3-6]은 연도별 국내 유학생 수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2003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2016년 유학생 수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게 되었고, 2019년에는 약 16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인 유학생 수가 2021년에 약간 감소하였기는 하였다. 하지만 2021년 현재 여전히 15만 명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연도별 유학생 수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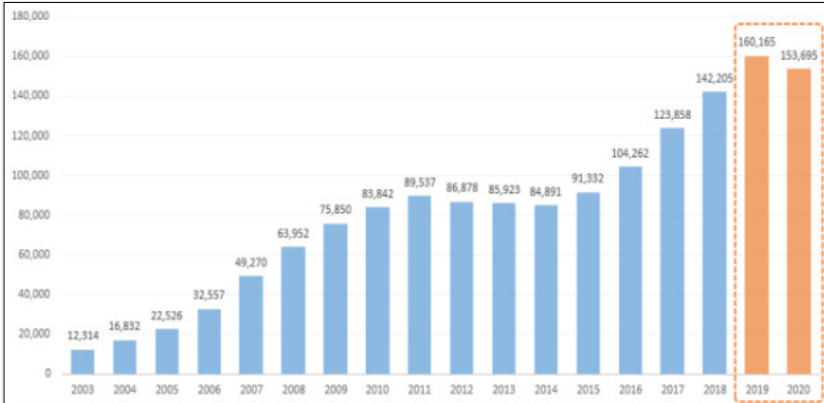
(단위: 명, %)

연 도	유학생 수	증감	증감률
2003	12,314	-	-
2004	16,832	4,518	▲ 36.7
2005	22,526	5,694	▲ 33.8
2006	32,557	10,031	▲ 44.5
2007	49,270	16,713	▲ 51.3
2008	63,952	14,682	▲ 29.8
2009	75,850	11,898	▲ 18.6
2010	83,842	7,992	▲ 10.5
2011	89,537	5,695	▲ 6.8
2012	86,878	- 2,659	△ 3.0
2013	85,923	- 955	△ 1.1
2014	84,891	- 1,032	△ 1.2
2015	91,332	6,441	▲ 7.6
2016	104,262	12,930	▲ 14.2
2017	123,858	19,596	▲ 18.8
2018	142,205	18,347	▲ 14.8
2019	160,165	17,960	▲ 12.6
2020	153,695	- 6,470	△ 4.0

자료: 교육부 (2020a) 2020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50&boardSeq=8291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9&opType=N> 에서 2021.01.21 인출

13) '03년도까지는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조사하였고, '04년도부터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대학, 원격대학,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모두 조사했다.

[그림 3-6] 연도별 유학생 수



자료: 교육부 (2020a) 2020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50&boardSeq=8291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9&opType=N> 에서 2021.01.21 인출

2. 유학 형태별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형태별 현황은 아래 <표 3-3>과 같다. 2019년에는 자비 유학생이 91.3%, 대학초청 장학생이 5.1%, 정부 초청 장학생이 1.8%, 자국 정부 파견 장학생이 0.3%를 차지하였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자비 유학생이 소폭 증가하여 92%, 대학초청 장학생은 소폭 감소한 4.2%, 정부 초청 장학생은 소폭 증가한 1.9%인 반면, 자국 정부 파견 장학생은 소폭 감소하여 0.2%를 차지하였다. 종합해 보면, 유학생의 유학 형태는 대체로 자비 유학생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유학 형태별 유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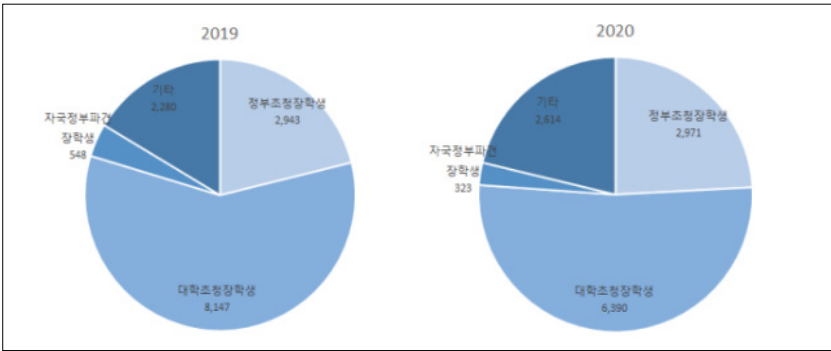
(단위: 명, %)

연도		자비 유학생	정부초청 장학생	대학초청 장학생	자국정부 파견장학생	기타	합 계
2019	명	146,247	2,943	8,147	548	2,280	160,165
	%	(91.3)	(1.8)	(5.1)	(0.3)	(1.4)	(100.0)
2020	명	141,397	2,971	6,390	323	2,614	153,695
	%	(92.0)	(1.9)	(4.2)	(0.2)	(1.7)	(100.0)

자료: 교육부 (2020a) 2020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50&boardSeq=8291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9&opType=N> 에서 2021.01.21 인출

〔그림 3-7〕 자비 유학생을 제외한 유학 형태별 유학생 수

(단위: 명)



자료: 교육부 (2020a) 2020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50&boardSeq=8291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9&opType=N> 에서 2021.01.21 인출

3. 지역별

유학생이 국내 어느 지역에 유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역별 분포 현황은 아래 〈표 3-4〉, [그림 3-8]과 같다. 2020년 기준, 약 절반 정도의 유학생이 서울과 경기, 즉 수도권 지역에 유학하고 있다([그림 3-8]). 특히, 〈표 3-4〉에서는 2020년 기준 서울에 있는 유학생은 총 41.3%, 경기

지역은 10.9%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산은 6.6%였고, 세종은 0.5%로 유학생이 가장 적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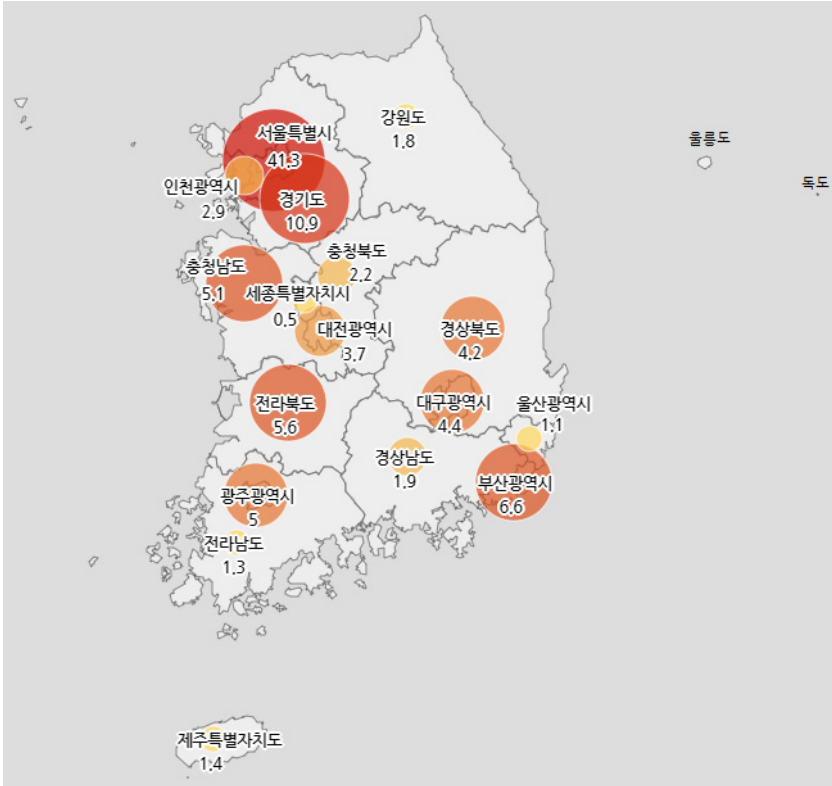
〈표 3-4〉 우리나라 지역별 유학생 수

(단위: 명, %)

국가	대학(전문대학)	석사과정	박사과정	합계
서울	32,521 (43.4)	12,332 (49.3)	4,123 (31.3)	63,418 (41.3)
부산	4,712 (6.3)	1,719 (6.9)	955 (7.3)	10,210 (6.6)
대구	2,764 (3.7)	682 (2.7)	478 (3.6)	6,824 (4.4)
인천	1,624 (2.2)	220 (0.9)	211 (1.6)	4,397 (2.9)
대전	3,281 (4.4)	1,115 (4.5)	1,393 (10.6)	7,747 (5.0)
광주	2,742 (3.7)	974 (3.9)	596 (4.5)	5,731 (3.7)
울산	648 (0.9)	279 (1.1)	297 (2.3)	1,706 (1.1)
세종	117 (0.2)	286 (1.1)	12 (0.1)	754 (0.5)
경기	8,573 (11.5)	2,237 (8.9)	1,430 (10.9)	16,677 (10.9)
강원	1,648 (2.2)	399 (1.6)	220 (1.7)	2,733 (1.8)
충북	1,367 (1.8)	588 (2.4)	379 (2.9)	3,339 (2.2)
충남	3,980 (5.3)	1,011 (4.0)	716 (5.4)	7,802 (5.1)
전북	3,646 (4.9)	1,660 (6.6)	1,318 (10.0)	8,657 (5.6)
전남	790 (1.1)	267 (1.1)	272 (2.1)	2,050 (1.3)
경북	3,338 (4.5)	676 (2.7)	385 (2.9)	6,489 (4.2)
경남	1,468 (2.0)	394 (1.6)	276 (2.1)	2,950 (1.9)
제주	1,632 (2.2)	157 (0.6)	95 (0.7)	2,211 (1.4)
전국	74,851 (100)	24,996 (100)	13,156 (100)	153,695 (100)

자료: 교육부 (2020a) 2020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50&boardSeq=8291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9&opType=N> 에서 2021.01.21 인출

[그림 3-8] 우리나라 지역별 유학생 비율



자료: 교육부 (2020a) 2020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50&boardSeq=8291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9&opType=N> 에서 2021.01.21 인출

4. 학위 과정별

국내 학위 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수를 살펴보면 <표 3-5>와 같다. 전반적으로, 학위 과정 유학생이 비학위 과정 유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9]를 보면, 전반적으로 전문학사/학사의 유학생은 석사 및 박사 학위 과정의 유학생보다 많았다. 또한, 코로나19 전후 학위 과정별

70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유학생 수는 변화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어학연수생과 기타 연수생을 포함한 비학위 과정에 등록된 유학생 비율은 2019년 37.4%에서 2020년 26.5%로 약 11%가량 감소하였다. 반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정규 학위 과정 등록된 유학생 비율은 2019년 62.6%에서 2020년 73.5%로 오히려 약 11%가량 증가하였다. 반면, 비학위 과정은 2019년 37.4%에서 2020년 26.5%로 상당히 감소하였다.

〈표 3-5〉 학위 과정별 유학생 수

(단위: 명, %)

구분	전체	학위 과정				비학위 과정		
		소계	전문학사/학사	석사	박사	소계	어학연수생	기타연수생
2010	83,842 (100.0)	60,000 (71.6)	43,709 (52.1)	12,480 (14.9)	3,811 (4.5)	23,842 (28.4)	17,064 (20.4)	6,778 (8.1)
2011	89,537 (100.0)	63,653 (71.1)	44,641 (49.9)	14,516 (16.2)	4,496 (5.0)	25,884 (28.9)	18,424 (20.6)	7,460 (8.3)
2012	86,878 (100.0)	60,589 (69.7)	40,551 (46.7)	15,399 (17.7)	4,639 (5.3)	26,289 (30.3)	16,639 (19.2)	9,650 (11.1)
2013	85,923 (100.0)	56,715 (66.0)	35,503 (41.3)	16,115 (18.8)	5,097 (5.9)	29,208 (34.0)	17,498 (20.4)	11,710 (13.6)
2014	84,891 (100.0)	53,636 (63.2)	32,101 (37.8)	15,826 (18.6)	5,709 (6.7)	31,255 (36.8)	18,543 (21.8)	12,712 (15.0)
2015	91,332 (100.0)	55,739 (61.0)	32,972 (36.1)	16,441 (18.0)	6,326 (6.9)	35,593 (39.0)	22,178 (24.3)	13,415 (14.7)
2016	104,262 (100.0)	63,104 (60.5)	38,944 (37.4)	17,282 (16.6)	6,878 (6.6)	41,158 (39.5)	26,976 (25.9)	14,182 (13.6)
2017	123,858 (100.0)	72,032 (58.2)	45,966 (37.1)	18,753 (15.1)	7,313 (5.9)	51,826 (41.8)	35,734 (28.9)	16,092 (13.0)
2018	142,205 (100.0)	86,036 (60.5)	56,097 (39.4)	21,429 (15.1)	8,510 (6.0)	56,169 (39.5)	41,661 (29.3)	14,508 (10.2)
2019	160,165 (100.0)	100,215 (62.6)	65,828 (41.1)	23,605 (14.7)	10,782 (6.7)	59,950 (37.4)	44,756 (27.9)	15,194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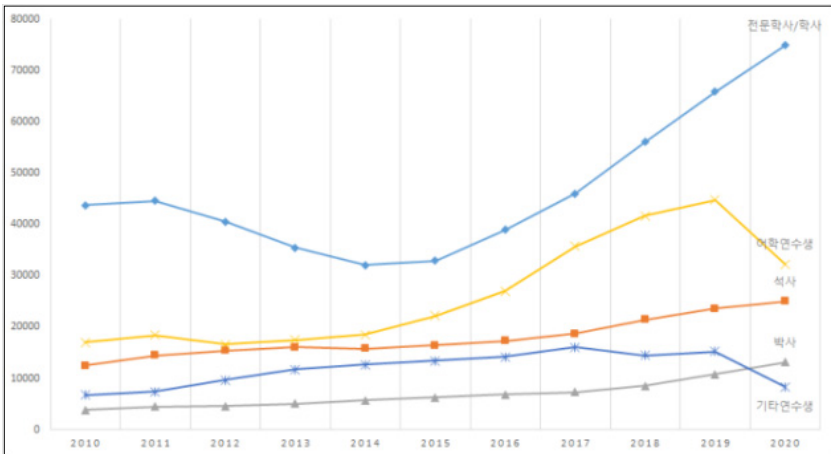
구분	전체	학위 과정				비학위 과정		
		소계	전문학사/학사	석사	박사	소계	어학연수생	기타연수생
2020	153,695 (100.0)	113,003 (73.5)	74,851 (48.7)	24,996 (16.3)	13,156 (8.6)	40,692 (26.5)	32,315 (21.0)	8,377 (5.5)

- 주: 1) 외국인 유학생 비율(%)=해당 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 /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
 2) 외국인 유학생 수에는 일반대학, 상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 대학원, 전공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기능대학의 학위/비학위 과정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포함됨
 3) 비학위 과정의 기타 연수생에는 교육과정공동운영생, 교환연수생, 방문연수생, 기타 연수생이 포함됨

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각 연도).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그림 3-9] 학위 과정별 유학생 수

(단위: 명)



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각 연도).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고등교육통계편. <https://kess.ke di.re.kr/publ/list?survSeq=2020&menuSeq=0&division=&itemCode=02> 에서 2021. 08.18. 인출

5. 출신 지역별, 출신 국가별

출신 지역별 외국인 유학생 수는 <표 3-6>과 같다. 우선, 아시아 지역 출신의 유학생은 학사, 석사 그리고 박사의 각 학위 과정에서 가장 많은

72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상당수가 아시아 지역 출신의 외국인 유학생인 셈이다. 그리고 북아메리카 출신의 외국인 유학생이 다음으로 많은 반면, 오세아니아 지역 출신의 외국인 유학생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출신 지역별 유학생 수(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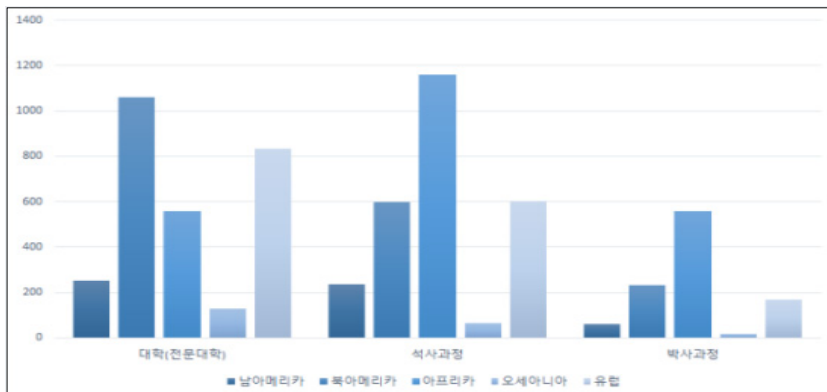
(단위: 명, %)

지역	대학(전문대학)	석사과정	박사과정
남아메리카	253 (0.3)	235 (0.9)	61 (0.5)
북아메리카	1,060 (1.4)	598 (2.4)	232 (1.8)
아시아	72,018 (96.2)	22,336 (89.4)	12,122 (92.1)
아프리카	558 (0.7)	1,161 (4.6)	557 (4.2)
오세아니아	130 (0.2)	65 (0.3)	17 (0.1)
유럽	832 (1.1)	601 (2.4)	167 (1.3)
합계	74,851 (100.0)	24,996 (100.0)	13,156 (100.0)

자료: 교육부 (2020a) 2020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50&boardSeq=8291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9&opType=N> 에서 2021.01.21. 인출

〔그림 3-10〕 출신 지역별 유학생 수 (2020, 아시아 제외)

(단위: 명)



주: 학위 과정별로 아시아 출신 유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그림에서 아시아를 제외함
 자료: 교육부 (2020a) 2020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50&boardSeq=8291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9&opType=N> 에서 2021.01.21. 인출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 출신의 외국인 유학생이 59,17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이 19,160명으로 2위를 차지하였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베트남 출신 외국인 유학생은 최근 몇 년 사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권오영, 김아롬, 2019). 다음으로는 우즈베키스탄이 7,441명으로 3위, 몽골이 5,230명으로 4위, 네팔이 2,246명으로 5위, 일본이 1,932명으로 6위, 파키스탄이 1,467명으로 7위, 방글라데시가 1,190명으로 8위, 인도네시아가 1,159명으로 9위, 인도가 996명으로, 10위, 그리고 대만이 989명으로 11위를 차지하였다.

〈표 3-7〉 아시아 국가별 유학생 수

(단위: 명, %)

국가	대학(전문대학)	석사과정	박사과정	합계
중국	38,695 (55.0)	12,504 (59.1)	7,978 (68.6)	59,177 (57.4)
베트남	16,012 (22.8)	2,175 (10.3)	973 (8.4)	19,160 (18.6)
우즈베키스탄	5,827 (8.3)	1,472 (7.0)	142 (1.2)	7,441 (7.2)
몽골	2,475 (3.5)	2,338 (11.1)	417 (3.6)	5,230 (5.1)
네팔	1,769 (2.5)	306 (1.4)	171 (1.5)	2,246 (2.2)
일본	1,697 (2.4)	177 (0.8)	58 (0.5)	1,932 (1.9)
파키스탄	352 (0.5)	533 (2.5)	582 (5.0)	1,467 (1.4)
방글라데시	555 (0.8)	375 (1.8)	260 (2.2)	1,190 (1.2)
인도네시아	524 (0.7)	359 (1.7)	276 (2.4)	1,159 (1.1)
인도	167 (0.2)	263 (1.2)	566 (4.9)	996 (1.0)
대만	759 (1.1)	197 (0.9)	33 (0.3)	989 (1.0)
카자흐스탄	580 (0.8)	136 (0.6)	41 (0.4)	757 (0.7)
말레이시아	596 (0.8)	69 (0.3)	42 (0.4)	707 (0.7)
미얀마	371 (0.5)	237 (1.1)	87 (0.7)	695 (0.7)
합계	70,379 (100.0)	21,141 (100.0)	11,626 (100.0)	103,146 (100.0)

주: 2020년 기준 500명 이상의 유학생이 있는 국가만 선별
 자료: 교육부 (2020a) 2020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50&boardSeq=8291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9&opType=N> 에서 2021.01.21 인출

[그림 3-11] 아시아 국가별 유학생 수



주: 2020년 기준 500명 이상의 유학생이 있는 국가만 선별했다.
자료: 교육부 (2020a) 2020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50&boardSeq=8291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9&opType=N> 에서 2021.01.21 인출

6. 전공계열별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계열별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 <표 3-8>과 같다. 우선, 모든 학위 과정을 통틀어, 인문사회계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많은 편이고, 또한 석사, 박사 과정 등 대학원으로 갈수록 유학생 수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인문사회계의 경우 대학(전문대학)에 수학하는 학생이 53,128명으로 전체 학부생의 71%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공학계, 자연과학계, 예체능계, 그리고 의학계는 석사과정에서 박사과정으로 갈수록 학생 수가 많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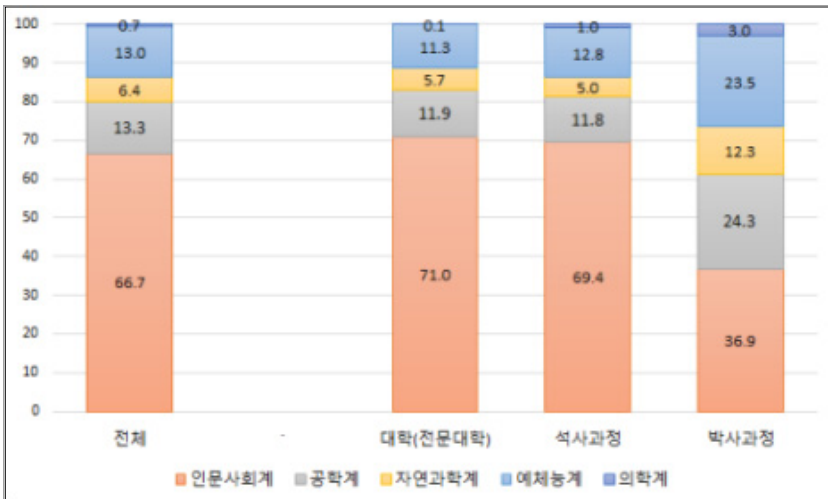
〈표 3-8〉 전공계열별 유학생 수

(단위: 명, %)

국가	대학(전문대학)	석사과정	박사과정	합계
인문사회계	53,128 (71.0)	17,340 (69.4)	4,854 (36.9)	75,322 (66.7)
공학계	8,870 (11.9)	2,951 (11.8)	3,194 (24.3)	15,015 (13.3)
자연과학계	4,297 (5.7)	1,262 (5.0)	1,621 (12.3)	7,180 (6.4)
예체능계	8,459 (11.3)	3,187 (12.8)	3,086 (23.5)	14,732 (13.0)
의학계	97 (0.1)	256 (1.0)	401 (3.0)	754 (0.7)
합계	74,851 (100.0)	24,996 (100.0)	13,156 (100.0)	113,003 (100.0)

자료: 교육부 (2020a) 2020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50&boardSeq=8291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9&opType=N> 에서 2021.01.21 인출

[그림 3-12] 전공계열별 유학생 비율



자료: 교육부 (2020a) 2020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50&boardSeq=8291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9&opType=N> 에서 2021.01.21 인출

제3절 유학생 관련 정책

1.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의 변화

이번 연구는 김지하 외(2020)의 연구를 참고하여,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 변화를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하였다. 시기 구분은 아래 [그림 3-13]과 같다. 각 시기에 법무부와 교육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참고로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교육을 담당하고, 법무부는 유학생의 국내 체류, 출입국 신고, 비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김지하 외, 2020, p.19). 본 절에서는 이번 연구의 초점 대상이 아닌 어학연수생이나 정부초청장학사업(Global Korea Scholarship, GKS)으로 한국에 입국한 유학생과 관련한 정책은 포함하지 않기로 한다.

[그림 3-13]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시기 구분



자료: 필자 작성

가. 2001~2007년: 양적 확대 시기

정부는 유학생을 본격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2001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 유학생은 2001년 11,646명에서 2004년 16,832명으로 무려 44.5%나 급격히 증가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4.12.07, p.1). 그러나 이러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저출산 문제로 인한 대학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대학에서는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유학생을 유치하게 된다(민숙원, 송창용, 윤혜준, 김혜정, 2020; 홍준현, 2020).

1) 교육부

당시 교육부는 ‘Study Korea Project’를 발표 및 시행하여 201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5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4.12.07., p.1). 이러한 목표하에, 정부는 유학생을 위한 수학·생활환경 등 인프라 개선과 한국 유학 홍보를 대대적으로 추진했다(임태경, 김상민, 2019, p.24). 다음 해,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인프라 개선, 네트워크 형성 및 활성화, 행정지원체제 구축 등을 실시하였다(민숙원 외, 2020, p.18). 해당 프로젝트는 3년 앞선, 2007년에 49,270명으로 목표를 달성하였다(이태식, 전영준, Zia Ud Din, 구자경, 2009, p.45).

2) 법무부

법무부에서는 2002년 유학생에게 시간제 취업을 허가하였다(이현주, 이미정, 2019, p.244). 이는 유학생이 한국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학교를 이탈하여 취업에만 전념하거나 불법체류자로 전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이현주, 이미정, 2019). 다음 해인, 2003년에는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가제도 확대 방안’을 발표하여 시간제 취업 허가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였다(이현주, 이미정, 2019, p.244). 구체적으로, ㄱ)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기관 등에서 1년 이상 재학한 자(기존)를 6개월 이상 재학한 자로 완화하고, ㄴ) 근무 장소는 1개(기존)에서 2개로 완화하고, ㄷ) 총(학)장 추천에서 담당 지도교수 추천으로 완화하였다(이현

주, 이미정, 2019, p.244). 2년 뒤인 2005년에는 출입국관리법령에서 대학교에 유학생의 관리책임과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이현주, 이미정, 2019, p.244). 2007년에는 유학생 기본권 보장과 종합적 대책 마련을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과 ‘유학생 취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기준을 한층 더 완화하고자 하였다(이현주, 이미정, 2019, p.244). 특히, 석사 이상 학위를 보유한 인문계 학생에게도 취업 비자로의 체류자격 변경과 추가 구직 기간을 허용하고, 공휴일에는 유학생이 시간제한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이현주, 이미정, 2019, p.244).

나. 2008~2013년: 질적 관리 시기

정부는 2010년까지 총 5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자 하는 목표를 조기 달성하자, 다음 단계로 유학생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했다(김지하 외, 2020; 이현주, 이미정, 2019).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고등교육의 국제화, 국가 경쟁력 향상, 외국 정부(대학)와의 협력을 통한 네트워킹 확대 등을 목표로 세부적인 전략을 세우게 된다(민숙원 외, 2020).

1) 교육부

교육부는 2008년 7월 ‘Study Korea Project 발전방안’에서 2012년까지 유학생 1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김지하 외, 2020, p. 22). 주요 내용으로는 유학생 유치 인원 확대, 유학생의 출신국 다변

화, 유학생 선발절차 강화, 한국 유학 홍보 다양화, 유학생 관리와 재정지원사업 연계 확대, 기숙사 수용률 향상, 문화·생활적응 지원, 유학생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외국인 유학생 DB 구축, 대학-기업연계 취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취업 지원을 위한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 기간 연장범위 확대 등이다(서영인, 김미란, 김은영, 채재은, 윤나경, 2012, p.75).

2010년에는 ‘국제화 거점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발표했는데, 이는 세계 수준의 전문직업기술교육의 거점 전문대학(Global Hub College) 육성을 목표로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p.1). 이 사업은 해외에 진출한 한국 산업체 등으로부터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상대국과의 협약 등을 통해 해당 국가의 학생을 위탁받아, 국내 대학에서 이들을 입학시켜 필요한 직업기술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p.2).

2011년에는 ‘유학생 유치 관리 역량 인증제(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IEQAS)’를 시범 도입하고 2012년에 본격 시행하였다(서영인 외, 2012). 아래 <표 3-9>는 2020년 교육부의 공고 제 2020-327에 제시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지표이다. 이 지표는 크게 각 대학의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역량에 대한 기본요건과 평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요건에서 불법체류율이 세부지표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일부 유학생이 학교를 이탈하여 생계유지를 위하여 취업을 하는 등 본래 목적과는 다른 행태가 적발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민숙원 외, 2020). 평가영역은 전략 및 선발, 유학생 관리 그리고 성과로 크게 구분된다. 전략 및 선발은 국제화 사업계획 및 인프라(조직·예산), 학생 선발 및 입학 적절성, 의료보험 가입률로 구성되어 있고, 유학생 관리 영역은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유학생 학업·생활 지원, 유학생 상담률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영역의 마지막 세부영역인 성과는 중도탈락률, 유학생 공인 언어능력 그리고 유학생 만족도 및 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부는 기본요건과 평가영역 3개를 모두 충족하는 대학에

인증을 부여한다(교육부, 2020b). 인증대학의 예비 입학생이나 재학 중인 학생들은 비자발급 절차가 간소화되며, 인증 대학원의 경우 정원 제한 없이 유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교육부, 2020b).

〈표 3-9〉 교육부, 공고 제2020-327에 제시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지표

분야	세부 지표	심사기준	
기본요건	불법체류율*	(선택 1) '18.7~'19.6 학위 과정 및 어학연수 과정 등 전체 불법체류율 2~4%** 미만	
		(선택 2) '19.7~'20.2 학위 과정 및 어학연수 과정 등 전체 불법체류율 2~4%** 미만	
		(선택 3) '19.7~'20.2 학위 과정 불법체류율 1.5%~2.5%*** 미만	
평가영역	전략 및 선발	1. 국제화 사업계획 및 인프라(조직·예산)	정성
		2. 학생 선발 및 입학 적절성	정성
		3. 의료보험 가입률	95% 이상
	유학생 관리	1.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80% 이상
		2. 외국인 유학생 학업·생활 지원	정성
		3. 외국인 유학생 상담률	60% 이상
	성과	1. 중도탈락률	6% 미만
		2. 유학생 공인 언어능력	신입: 30% 이상
			재학: 정성
3. 유학생 만족도 및 관리	졸업요건 언어능력 포함 여부 1건 이상/정성		

주 : * (선택 1) ~ (선택 3)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라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 유학생 모집제한 권고대학(비자발급제한대학)으로 지정

** (100명 미만) 4% 미만, (100명~500명 미만) 3% 미만, (500명 이상) 2% 미만

*** (100명 미만) 2.5% 미만, (100~1,000명) 2% 미만, (1,000명 초과) 1.5% 미만이며, 전문대학은 구간별 기준에 1%p 추가

※ 중도탈락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선택 3>의 불법체류율 4% 미만 가능

자료: 교육부, (2020b), 2020년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시행 공고」(교육부 공고 제2020-327).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3&boardSeq=81844&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501&opType=N> 에서 2021.08.17. 인출.

2012년에는 기존의 'Study Korea 2020 Project'를 수정 보완하여, 유학생의 유치부터 귀국까지 지원과 관리를 하고, 유학생 정주 여건 개선 및 취업 연계, 유학생 유치 관리 전문기관 육성, 한국어 교육 강화 등의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하였다(김지하 외, 2020, p.22; 김한나 외, 2016).

2) 법무부

법무부는 질적 관리시기에, 유학생을 포함한 우수한 외국인을 국내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다양한 플랫폼을 설치하고 체류자격 요건을 완화하였다. 2008년 법무부에서는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에 따라,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에 필요한 민원상담과 행정정보안내를 제공하는 다국어 민원안내 창구인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번)¹⁴를 시작하였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4.10.07.). 또한, 대학, 교육부 그리고 법무부 등 유관부처와 기관이 유학생 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방안으로 유학생 종합정보시스템(Study in Korea)을 도입하였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8). 해당 시스템은 입국 전 단계부터 출국 시까지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의 효율적인 유학생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8, p.4). 해당 시스템은 '한국유학종합시스템'으로 개편되었다.

14) 현재 20개 언어(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몽골어, 인니어, 프랑스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러시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스리랑카어)로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1)

82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그림 3-14] 한국유학종합시스템(스터디인코리아) 홈페이지 첫 화면



자료: StudyinKorea. (2021). 홈페이지 메인화면. <https://www.studyinkorea.go.kr/ko/main.do>에서 2021.08.01. 캡처 및 인출

2010년에는 우수 외국 인재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서 한국의 국가 경쟁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우수한 유학생을 특별귀화 대상자로 분류하여, 귀화에 필요한 국내 의무 거주기간(5년)과 귀화시험을 면제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09.03.26.). 이러한 특별귀화 대상자는 한국 국적 취득 시에도, 본국의 국적은 그대로 유지하는, 즉 이중국적이 특별히 허용된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09.03.26.).

2013년에는 우수한 외국인력의 국내 창업을 독려하기 위하여, 외국인 정책시행계획에서 창업비자제도를 도입하였다(강영주, 이승훈, 2015, p.8). 이에 따라, 기존 ‘기업투자(D-8)’ 비자 명칭을 ‘기업투자·창업’ 비자로 변경하였다(이현주, 이미정, 2019, p.245). 해당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내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해야 하고, 법인을 설립하

고,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여 관련 분야에서 창업한 외국인으로 확대하였다(이현주, 이미정, 2019, p.245). 2015년부터는 관계부처 협업으로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을 운영하여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이효상, 2017.11.15.). 그 결과, 2015년 이후 23명이 창업하였으며, 국내 유학 중인 유학생을 포함하여 약 1,200여 명의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창업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효상, 2017.11.15.).

다. 2014~2020년: 통합 관리 시기

정부는 2020년까지 우수 유학생을 20만 명 유치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가, 유학생 정체 현상이 발생하자 2015년에 목표달성 시기를 2023년으로 연장하였다(김지하 외, 2020; 민숙원 외, 2020). 동시에 한국 내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반한 감정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정부는 유학생 입국부터 취업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각종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하였다(고찬유, 2014.10.21.). 이를 통해,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한국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발 더 나아가 이들을 친한파(지한파) 고급인력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김지하 외, 2020, p.23; 김제관, 2011.01.25.).

1) 교육부

교육부는 한국유학종합시스템(Study in Korea)을 통해, 유학생에게 입학부터 졸업까지 유학 전 과정을 one-stop total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김지하 외, 2020). 또한, 입학 시 한국어 능력시험

(TOPIK) 기준을 3급에서 2급으로 낮추고,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를 도입하고,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다(임태경, 김상민, 2019).

2014년 9월에는 ‘아세안 지역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한 아시아 개발도상국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유학생의 구성을 다변화하고자 하였다(김한나 외, 2016, p.318). 이를 위해,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자격요건을 낮추고, 취업 지원 및 기타 요건을 완화하였다(민숙원 외, 2020, P.19).

2) 법무부

법무부는 잠재적 우수인력인 유학생의 취업 관련 정책을 보완 및 강화하였다. 대표적으로 2016년 일-학습 연계 유학비자(D-2-7)를 도입하였다(법무부, 2018.02.21.). 이는 정부초청장학생(GKS)으로 선발된 우수 유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국내에서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임태경 외, 2019: 29). 이 제도는 2년 뒤인 2018년에 이공계 우수 장학생에게까지 확대되었다(임태경 외, 2019, p. 29). 다만 대학이 선발하는 이공계 우수 장학생의 경우 입학 시 또는 입학 후 교비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정하였다(법무부, 2018.02.21.). 이처럼 일-학습 연계 유학 비자를 소지한 자는, 졸업 후에 고용계약만 체결하면 업체의 국민고용 비율을 면제하고 1회 3년씩 비자를 연장할 수 있다(이창원 외, 2020, p. 29). 또한, 영주자격으로 변경을 원할 시에는 연간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면제받을 수 있다(임태경 외, 2019, p.29).

같은 해인 2018년에는 유학생의 자격 외 활동허가 특례를 신설하였다.

원래 유학생(D-2)은 원칙적으로 외부 연구기관으로의 파견, 지원 근무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나, 이는 과학기술 분야 학술교류에 큰 장애가 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유학생이 정부출연연구기관¹⁵⁾에서 행하는 연구 활동 참여는 허용하였다(법무부, 2018.02.21.).

그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한국어 능력에 따른 시간제 취업 혜택을 차등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기존에는 한국어 능력, 성적, 출석률과 관계없이 시간제 취업이 가능하였으나, 이는 학업을 소홀히 하는 등의 여러 부작용이 초래되었다(법무부, 2018.02.21.). 따라서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¹⁶⁾ 출석률 및 학업성적¹⁷⁾을 참조하여, 시간제 취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다(법무부, 2018.02.21.).

2. 주거

유학생은 주로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나, 하숙,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서 지낸다. 혹은 지자체와 해당 지역사회 소재 대학교가 협력하여 설립한 유학생 전용 공동기숙사에서 지내기도 한다.

-
- 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연구원
- 16) 어학연수생은 토픽 2급 이상, 전문학사 및 4년제 학사과정 1·2년까지는 토픽 3급 이상, 4년제 학사과정 3학년 이상 및 석·박사과정은 토픽 4급 이상 필수(단, 학기 중에는 토 학위과정별 그리고 한국어 능력 수준에 따라 허용시간이 다름. 주말(공휴일)과 방학은 무제한, 인증대학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규정의 1/2 범위 내에서만 허용)
- 17) 어학연수생은 출석률 90% 이상, 학부생은 평균 C학점 이상 필수

가. 학교 기숙사

유학생은 정착 초기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향이 있다(김원중, 이상영, 2019). 학교에서는 해외에서 처음 입국하는 신입생 혹은 장학생에게 보통 기숙사를 우선 배정한다(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2021a). 학교에 따라서는, 내국인 기숙사와 별도로 외국인 유학생 전용 기숙사를 특별히 마련해 놓고 있기도 하다. 2018년 「외국인 유학생 한국생활 정착지원 우수 사례집」에 따르면, 기숙사에 거주하는 유학생 비율은 58.4%로 나타났다(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2018). 특히, 정부초청장학생(GKS)의 기숙사 입주율은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¹⁸⁾ 대학교는 기숙사를 대부분 자체 운영하고 있으며, 유학생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한다.

나. 외국인 유학생 공동기숙사

2000년대 초 정부는 유학생이 급격히 증가하는 데 반해 이들을 위한 기숙사 시설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유학생 기숙사 제공 확대를 추진하였다(김혜진, 2009). 아래 <표 3-10>을 보면, 2004년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수학·생활환경 개선사업 중 일부로서 유학생의 기숙사 수용률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김혜진, 2009). 2년 뒤인 2006년에는 고등교육의 국제화 전략의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유학생의 기숙사 수용률을 60.6%에서 2010년까지 80%로 끌어 올리하고자 하였다(김혜진, 2009). 이를 위해, 대전시의 외국인 유학생 공동기숙사 '누리관' 설립 등을 제시하였다(김혜진, 2009). 이후, 2008년에는 중국 유학생과의 간

18) 이 내용은 모대학교 국제교류팀(2021)과의 자문회의에서 나온 내용임.

담회를 통해 기숙사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2009년 교육부는 한국사학진흥재단 주도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글로벌교류센터인 공동기숙사 건립사업을 추진하였다(김혜진, 2009). 교육부의 글로벌교류센터사업은 지자체 컨소시엄으로,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투자를 하면 교육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매칭형 투자 방식이다(김혜진, 2009, p.16). 구체적으로, 국고보조금(25억 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사업지의 50%)을 재원으로 지자체 내의 학교 부지 혹은 공유지를 활용하여 유학생 기숙사 및 지원센터를 건립하였다(권오영·김아름, 2019, p.53).

〈표 3-10〉 교과부의 유학생 공동기숙사 건립계획 목표

사업명	일시	세부 사업	추진계획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	2004	유학생의 기숙사 확충 및 수용률 향상	
고등교육의 국제화 전략 2007년도 추진계획	2006.12	국제화 환경 조성 및 여건 개선	- 유학생의 기숙사 수용률 80%로 확대 · 대전시 외국인 유학생 공동 기숙사 '누리관', 경산 '한류 캠퍼스 복합타운' 벤치마킹
중국 유학생 간담회	2008.9	중국유학생 생활환경 개선	- 주요 거점 지역별 공동기숙사 건립 유도
신성장동력사업 세부 추진계획	2009.6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 외국인 유학생 공동기숙사 건립 지원
한국사학진흥재단 외국인 유학생 공동기숙사건립	2009.9	외국인 유학생 공동기숙사 건립	- 한국사학진흥재단 주도로 외국인 유학생 공동기숙사 건립 추진

자료: 김혜진. (2009). 외국인 유학생 공동기숙사 건립 타당성 연구, p.17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 결과, 대전시, 경북, 그리고 익산에서 외국인 유학생 공동기숙사가 설립되었다. 2007년 대전 소재 8개 대학(충남대, 한국과학기술원, 배재대, 우송대, 목원대, 한남대, 한밭대, 대전대)이 연합해 외국인 유학생 전용 기숙사로 '누리관'을 설립하였다(김원중, 2019.05.16; 김혜진,

2009). 또한, 2014년에는 경북글로벌교류센터를 설립하였다(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2014.09.17.). 이 센터는 영남대학교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교육부, 경상북도, 경산시, 한국사학진흥재단 그리고 5개 대학(영남대, 대구가톨릭대, 대신대, 대구한의대, 경일대)이 건립 재원을 지원하였다(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2014.09.17.). 2016년에는 전라북도 익산시, 한국사학진흥재단과 더불어 3개 대학(원광대, 원광보건대, 전북대)이 연합하여 기숙사를 설립하였다(양지원, 2016.05.25.).

〈표 3-11〉 외국인 유학생 공동기숙사 현황

명칭	설립년도	참여지자체, 단체 및 대학
대전시 누리관	2007	대전시, 8개 대학(대전대, 목원대, 배재대, 충남대, 우송대, 한남대, 한밭대, KAIST)
경북글로벌교류센터	2014	경상북도, 경산시, 한국사학진흥재단, 5개 대학(영남대, 대구가톨릭대, 경일대, 대구한의대, 대신대)
익산글로벌교류센터	2016	전라북도 익산시, 한국사학진흥재단, 3개 대학(원광대, 원광보건대, 전북대)

자료: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2014.09.17.).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경북글로벌교류센터' 개관. [보도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m=0201&s=moe&page=69&boardID=339&boardSeq=56751&lev=0&opType=N> 에서 2021.08.17. 인출

위의 3개의 외국인 유학생 공동기숙사는 관-학 협력 모델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렇지만 대전시의 누리관은 외국인 유학생의 기숙사 이용률이 예상과 달리 높지 않았다(김혜진, 2009, p.31). 결국, 교육지책으로 내국인 재학생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실률이 30%에 달하였다(김원중, 2019.05.16.).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기숙사의 위치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김원중, 2019.05.16.). 도보 통학이 불편하여 학교별로 셔틀버스가 상시 운행되기도 하였으나, 지리적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김원중, 2019.05.16.). 또한, 기숙사 주변에 학생들이 이용할 만한 편의시설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각

방에 취사시설이 없어서 기숙사가 단순히 숙박 기능에 그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김원중, 2019.05.16.). 결국 대전시는 누리관을 완전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하여, 2020년 12월에 명칭을 ‘대전 청년하우스’로 변경하고 청년 근로자의 주거시설로 탈바꿈시켰다(박기원, 2020.12.21.).

다. 기타 주거 형태

기숙사를 벗어나 스스로 자취하는 유학생도 있다. 실제로 2018년 「외국인 유학생 한국생활 정착지원 우수사례집」에 따르면, 응답자의 40.7%는 자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2018). 유학생들은 보통,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혹은 석사 및 박사 학위 과정일수록, 기숙사가 아닌 보증부 월세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다(김원중, 이상영, 2019). 구체적으로, 학부생 연령인 24세까지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지만, 석사 및 박사 학위 과정에 있는 25세 이상부터는 주로 학교 외부에 거주하며 보증부 월세 조건에 거주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김원중, 이상영, 2019).

유학생들이 기숙사를 벗어나 자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숙사에서 사는 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고향 음식을 요리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가 꼽혔다(김원중, 이상영, 2019). 방음 및 단열 처리 그리고 1인실 사용의 어려움 등이 기숙사를 떠나 자취하는 또 다른 이유로 꼽혔다(김원중, 이상영, 2019).

3. 경제활동

법무부(2020)는 외국인의 시간제 취업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학생이 원하는 시간제 취업(단수노무 등) 활동에 한정”(26쪽)한다는 원칙을 세워

놓고, 그에 따른 고용절차를 규정해 놓았다. 이러한 원칙하에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도 다소 복잡한 절차를 규정해놓았다. 이처럼 다소 복잡한 취업 규정의 목적은 유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고, 이들의 노동 활동에 대한 법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데 있다(손일연, 전환욱, 조아라, 최지현, 2020.01.26.).

가. 허용 대상

국내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유학생은, 신청일 기준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인 C학점(2.0) 이상이어야 한다(법제처, 2021a). 한국어 능력의 경우, 학사는 2급 그리고 석/박사 과정 학생은 4급이 요구된다(법제처, 2021a). 다만, 석·박사 과정생은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을 준비 중일 때 경제활동이 허용될 수도 있지만, 학점 미달,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 지연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된다(법제처, 2021a).

허가 기준에서 제한 대상도 있다(법무부, 2020). 1) 최근 이수학기 기준 출석률이 70% 이하이거나, 평균학점(이수학점 기준) C학점 이하인 자로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불성실 신고자에 해당하는 예로,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 위반자, 신청 사항(장소, 근무시간 등) 부실 입력자에 대해서는 허가가 제한된다(법제처, 2021a). 이는 일부 유학생들이 학업보다 취업 활동에 집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풀이된다.

만약 허용 대상이 아닌 자가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거나 자진 출국을 통보받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법제처, 2021a).

나. 신청 과정

경제활동을 신청하는 과정은 아래 <그림 3-15>와 같다. 우선, 인터넷에서 시간제취업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유학생이 대상자란을 직접 작성하고, 취업예정 근무처는 고용주가 작성한다. 이후, 학교 국제지원센터 혹은 국제교류처 등 유학생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실을 방문하여, 유학생 담당자 직원의 서명을 받는다. 다음으로, 외국인 유학생은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하이코리아(HiKorea)에 접속하여 취업 예정 근무처 정보(예정근무처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포함)를 조회하고, 시간제취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를 업로드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 신분증 사본, 성적증명서 그리고 토픽(TOPIK) 성적증명서를 업로드한다. 신청 후, 허가가 통보되기까지 약 1주일에서 최장 2주일이 소요된다. 만약 아르바이트 장소 등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이코리아를 방문하여 취업 장소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2021b).

[그림 3-15] 외국인 유학생 취업 허가 절차

고용계약서 작성	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	신청	허가 / 불허
고용 당사자 간 고용계약	별지서식 작성 (대학 유학생 담당자)	첨부서류 신청 (온라인 또는 방문)	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0). 26.

다. 허용 및 제한 분야

유학생이 국내에서 시간제 취업이 가능한 분야는 아래 <표 3-12>와 같다. 즉, ㄱ) 일반 통역·번역, 음식점 보조, 일반 사무보조, ㄴ) 영어마을이

92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 점원, 행사 보조 요원, 다) 관광 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라) 그리고 통상적인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이다(법제처, 2021a).

그러나 <표 3-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개인과외 교습 행위, 산업 기밀 보호 등의 필요가 있는 과학기술 첨단산업체와 연구소에 취업하는 행위, 사행행위 영업장소에 취업하는 행위, 단란주점·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는 행위, 기타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등의 취업은 엄격히 제한된다(서강대학교 국제팀, 2021).

한편, 유학생의 제조업 근무 역시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한국어 능력 시험인 토픽(TOPIK) 4급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¹⁹⁾ 4단계 이상을 이수하면, 제조업 근무가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한다(법제처, 2021a).

<표 3-12> 외국인 유학생 취업 허용 및 제한 분야

허용 분야
1.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하여 허용하며 전문분야는 제외
2.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3.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등 활동
4.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5.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비전문취업(E-9)' 자격의 허용범위 내의 제조업에 대해서는 시간제 취업 제한(모든 제조업, 건설업 제한)
※ 다만 토픽 4급(KIIP 4단계 이수) 이상인 경우 제조업 예외적으로 허용

19)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이주민의 한국어 습득과 한국 문화, 경제, 사회, 법률 등 기본적인 소양을 쌓아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하고 적응할 수 있게 돕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2021).

제한 분야
1. 개인과의 교습 행위 2. 산업기밀보호 차원에서 취업제한이 필요한 첨단산업체와 연구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3. 사행행위 영업장소에 취업하는 행위 4.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는 행위 5. 기타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자료: 법제처, (2021b).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f?popMenu=ov&csmSeq=508&ccfNo=3&cciNo=7&cnpClsNo=1> 21.04.08. 인출

라. 허용시간 및 범위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은 한국어 능력과 학위 과정에 따라 허용범위가 조정된다(〈표 3-13〉 참고). 일단, 학부과정의 유학생은 주당 허용시간이 20시간 이내이다(법제처, 2021a). 만약 교육부가 시행하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역량 인증제(IEQAS) 인증을 받은 대학에 재학 중이면서, 동시에 한국어 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주당 25시간까지 시간제 취업이 허용된다(서강대학교 국제팀, 2021). 그렇지만 학기 중에 주말과 방학 기간은 시간제한이 없다. 그리고 유학생은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 그리고 장소는 2곳으로 한정하여 시간제 취업을 할 수 있다(서강대학교 국제팀, 2021).

〈표 3-13〉 한국어 능력별, 학위 과정별 허용시간

대학유형	학년	한국어 능력 수준(TOPIK, KIIP)		시작시기	허용시간		주중 인증대학 혜택
					주중	주말, 방학기간	
어학 연수 과정	무관	'18.10.1. 이전		6개월 후	20시간		25시간
		2급	X	상동	10시간		10시간
			O	상동	20시간		25시간
전문 학사 과정	무관	'18.10.1. 이전		제한없음	20시간		25시간
		2급	X	상동	10시간		10시간
			O	상동	20시간		25시간

94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대학유형	학년	한국어 능력 수준(TOPIK, KIIP)		시작시기	허용시간		주중 인증대학 혜택
					주중	주말, 방학기간	
학사과정	1~2학년	'18.10.1. 이전		제한없음	20시간	무제한	25시간
		2급	X	상동	10 시간		10시간
			O	상동	20시간	무제한	25시간
	3~4학년	'18.10.1. 이전		제한없음	20시간	무제한	25시간
		2급	X	상동	10시간		10시간
			O	상동	20시간	무제한	25시간
석/박사 과정	무관	'18.10.1. 이전		제한없음	30시간	무제한	35시간
		4급	X	상동	15시간		15시간
			O	상동	30시간	무제한	35시간

자료: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2020). 외국인 유학생 취업관련 정보 https://www.studyinkorea.go.kr/popup/employment_regulations_part_ko.jsp에서 2021.08.17 인출

한편, 영어트랙 과정에 등록한 학생들은 학년에 상관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0점 이상 자격증 소지자이면, 한국어 능력을 갖춘 유학생의 허가 시간에 준용하여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법제처, 2021a; 한국유학종합시스템, 2021). 반면, 영어권 출신의 유학생은 영어성적 자격증 제출이 면제된다(한국유학종합시스템, 2021).

4. 국민건강보험²⁰⁾

가. 자격

국내에서 6개월 이상 머무르는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을 해야 한다(국

20) 주로 유학생 D-2 기준으로 작성했다.

민건강보험, 2021). 여기서 유학생은 2019년 당시 대학교 및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다가, 2021년 3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근거하여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국민건강보험,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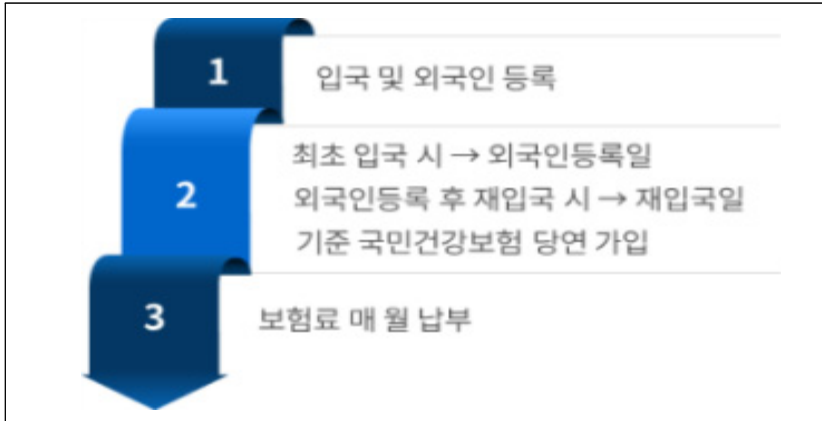
그러나 유학생 중 가입 예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경우는, 외국 법령으로 가입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 국민은 정부 간 협정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 2021, p.7~8). 일본은 본국에서 자국민의 국외 발생 의료비를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유학생은 미리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 2021, p.7~8). 두 번째 경우는, 본국에서 민간의료보험을 이용하다가 국내 입국 후에도 해당 보험으로부터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가입 제외 신청이 가능하다(국민건강보험, 2021, p.7). 그러나 유학생이 국내에서 출시된 민간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이 불가하다(국민건강보험, 2021, p.7).

나. 가입 절차

건강보험 가입 절차는 아래 [그림 3-16]과 같다. 유학생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에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체류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사에 제출한다. 만약, 유학생 가족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가족관계나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²¹⁾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가입되면, 매월 보험료를 납부한다.

21)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국적국 외교부 혹은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하며, 한글 번역본 공증 받은 것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외국 서류 유효기간은 발급일(확인일)로부터 9개월 이내여야 인정된다(국민건강보험, 2021, p.2).

[그림 3-16] 보험가입 절차



자료: 단국대학교. (2021). 외국인 유학생 보험 <https://www.dankook.ac.kr/web/kor/-488> 에서 2021.03.30. 인출하여 필자 편집

다. 보험료 부과 납부

유학생 보험료는 2021년 기준 39,540원이다. 정부는 유학생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적용되는 보험료의 30%만을 2021년에 부과하고, 2022년에는 40% 그리고 2023년부터는 50% 할인된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법제처, 2021b). 특히, 2021년의 3월분 보험료는 10회로 분할하여 납부 가능하다(국민건강보험, 2021, p.9). 그러나 유학생의 연간 소득이 360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3,500만 원을 초과하면, 보험료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국민건강보험, 2021, p.13). 납부는 익월 보험료를 선납한다(법제처, 2021b).

〈표 3-14〉 외국인 건강보험료

외국인 월 보험료	외국인 유학생 월 보험료		
	2021년(30%)	2022년(40%)	2023년부터(50%)
131,790원	39,540원	52,720원	65,890원

자료: 법제처. (2021c). 건강보험의 가입.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08&ccfNo=3&cciNo=6&cnpClsNo=2>에서 2021.08.17. 인출하여 필자 계산.

보험료 체납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다. 첫째, 비자 연장이 제한된다(국민건강보험, 2021, p.15). 유학생이 건강보험료를 50만 원 미만 혹은 기타 징수금 10만 원 미만 체납하는 경우에는 비자 연장이 제한되지 않는다(국민건강보험, 2021, p.15). 그러나 그 이상 금액일 경우에는, 법무부에 통보가 되어,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체류자격 변경 등을 할 때 지장이 있을 수 있다(국민건강보험, 2021, p.15).

둘째, 보험급여가 제한된다(국민건강보험, 2021, p.16). 즉, 납부기한의 다음 달 1일부터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국민건강보험, 2021, p.16).

세 번째로는, 체납 처분이 진행된다(국민건강보험, 2021, p.15).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내 소득이나 재산 등에 압류 혹은 강제징수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 2021, p.15).

한편, 유학생이 출국하여 1달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 유학생은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상실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국민건강보험, 2021, p.10). 그러나 국외에 1개월 미만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여야 한다(국민건강보험, 2021, p.10). 휴학 중에도, 국내에 1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국민건강보험, 2021, p.11). 유학생이 19세 미만 자녀와 배우자가 같이 국내에서 거주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 금액은 변동 없다(국민건강보험, 2021,

p.11). 그러나 미성년 자녀가 국내에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은 인상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 2021, p.11).

라. 보험 혜택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20세 미만 자녀들도 보험의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다. 한번 가입하게 되면, 이들은 한국인과 동일한 본인 부담금으로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국민건강보험, 2021). 또 다른 혜택으로는 건강검진을 들 수 있다.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홀수년은 홀수 연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이고, 짝수년은 짝수 연도 출생자가 대상이다(국민건강보험, 2021, p.17). 만 20세 이상 여성은 2년에 1번 자궁경부암 검진이 가능하다(국민건강보험, 2021, p.17).



제4장

해외 외국인 유학생 정책

제1절 영국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

제2절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해외 외국인 유학생 정책

본 장에서는 영국(제1절)과 호주(제2절)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2019년 기준 영국과 호주는 전 세계에서 미국(98만여 명)에 이어 각각 세 번째(49만여 명)와 두 번째(51만여 명)로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국가일 뿐만 아니라(OECD, 2021, p.222), 중앙정부가 국가 경쟁력 및 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추진해왔다는 점에서 한국 사례와의 함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 2010; MAC, 2018).

구체적으로, 영국(제1절)과 호주(제2절)의 외국인 유학생 현황 및 정책 개괄을 제시한 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보건의료, 주거, 경제활동),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에 대해 차례로 검토한다. 이어 제3절에서는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한국 사례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제1절 영국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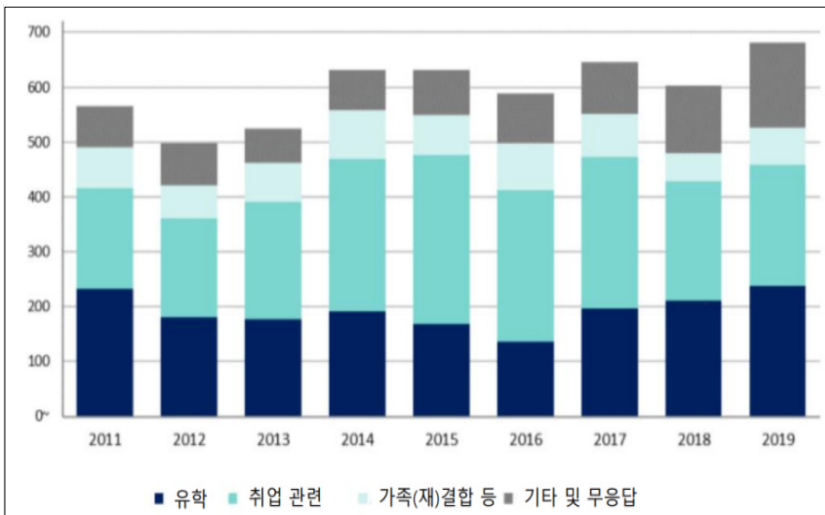
1. 배경 및 현황

이민 또는 이민자에 관한 논의는 영국 사회를 형성하는 주된 특징 중 하나였으며, 현재 영국의 주요 정책이슈로 등장하고 있다(MAC, 2020). 따라서 영국의 이민자(특히, 외국인 유학생)와 관련한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외국국적 이민자가 영국에 입국하는 주된 목적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1] 참조). 지난 10년간 이민자 유입의 77% 정도가 가족(재)결합이나 망명 등과 같은 목적보다는 취업이나 유학 등의 목적에 의한 것이었다. 특히, 1년 이상 영국에 거주하기 위한 장기비자의 발급에서 유학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이래로 59%에 이르고, 취업비자의 비중은 28%로 나타났다.²²⁾

[그림 4-1] 영국 입국목적별 이민자 수, 2011-2019

(단위: 천 명)



자료: MAC(2018) Impact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UK. Migration Advisory Committee, p.8

세계 경제에서 영어의 중요성과 고등교육의 질적 우수성을 바탕으로, 영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유학생의 순유입이 많은 국가

22) 유럽경제지역(EEA) 외부 국가 출신의 근로자들은 주로 Tier 2(취업) 비자를 통해 영국에 입국하는 반면에, EEA 소속 국가 출신의 이민자들은 별도의 비자 없이 영국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MAC, 2020).

이다. 유학생의 국적별로, 이들의 체류자격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이하 EEA) 외부 국가 출신의 외국인 유학생은 현재 영국의 비자체계에서 Tier 4(유학) 비자를 통해 영국에 입국할 수 있다. 반면에 유럽경제지역 출신 유학생은 별도의 비자 없이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었으나,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과 유럽연합(EU) 간의 이동의 자유(freedom of movement)가 2020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2021년부터 EU 출신 이민자들이 영국에 입국·거주하기 위해서는 비EU 출신의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점수 기반 이민 체계’(points-based immigration system)하의 입국·거주 허가를 받아야 한다(UKVI, 2021).

영국 고등교육의 학위 과정별 외국인 유학생은 2010/11년 이래로 유지·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표 4-1〉 참조). 예를 들어, 고등교육 과정의 입학생은 2010/11년 1,145,430명에서 2019/20년 1,139,680명으로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으며, 졸업생은 같은 기간 동안 763,155명에서 800,340명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학위 과정에 따른 입학생과 졸업생의 수를 비교했을 때, 지난 10년간 학부 과정에 입학·등록하거나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다소간 감소한 것과 달리, 대학원 과정의 경우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2016/17년부터 학부와 대학원 과정 모두 입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20년에 고등교육 과정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부분적으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의 졸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 영국 고등교육 학위 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입학 및 졸업 기준), 2010/11-2019/20
(단위: 명)

학년도	입학생			졸업생		
	대학원	학부	전체	대학원	학부	전체
2010/11	335,345	810,085	1,145,430	252,255	510,900	763,155
2011/12	317,200	800,130	1,117,330	264,090	523,025	787,115
2012/13	306,045	666,205	972,250	262,205	526,150	788,355
2013/14	318,145	677,705	995,850	257,940	519,685	777,625
2014/15	317,770	692,665	1,010,435	261,630	493,865	755,495
2015/16	318,035	700,915	1,018,950	262,170	494,795	756,965
2016/17	349,265	695,095	1,044,360	268,710	506,825	775,535
2017/18	368,310	695,945	1,064,255	291,490	508,425	799,915
2018/19	384,850	701,815	1,086,665	314,680	513,670	828,350
2019/20	417,940	721,740	1,139,680	307,980	492,360	800,340

자료: HESA. (2021.01.27.). Higher Education Student Statistics: UK, 2019/20. <https://www.hesa.ac.uk/news/27-01-2021/sb258-higher-education-student-statistics> 에서 2021.08.22. 인출

그렇다면 출신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어떻게 변했을까? 아래의 〈표 4-2〉에서 볼 수 있듯이, 영국 고등교육에서 중국, 인도, 기타 아시아, 유럽 국가 출신 유학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중국은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더 많은 수의 유학생을 보냈음을 알 수 있다. 2006/07년 당시 EU 출신 유학생 수(55,410명,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31.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중국 출신 외국인 유학생 수(25,135명,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14.2%)는 2019/20년 현재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32.6%(104,240명)를 차지한다. 특히, 지난 5년간(2015/16년부터 2019/20년까지) 중국 유학생 수의 증가율은 56%(51,140명)에 이른다. 인도 출신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그 수가 2015/16년까지 지속해서 줄어들었으나(2015/16년 기준 9,165명,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3.9%),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2019/20년 기준 41,815명,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13.1%).

〈표 4-2〉 영국 고등교육 외국인 유학생 출신 국가별 현황, 2006/07-2019/20

(단위: 명)

학년도	중국	인도	기타 아시아	EU 전체	북미	기타 ¹⁾	전체
2006/07	25,135	14,095	34,400	55,410	13,990	33,885	176,915
2007/08	24,670	16,190	34,265	57,690	13,260	35,290	181,365
2008/09	28,905	23,040	36,915	60,160	14,065	40,605	203,690
2009/10	36,950	23,125	41,095	64,390	14,435	45,780	225,775
2010/11	44,805	23,970	43,525	65,470	15,000	46,490	239,260
2011/12	53,525	16,335	43,275	64,765	15,500	44,395	237,795
2012/13	56,535	12,280	43,125	56,195	15,310	44,400	227,845
2013/14	58,810	11,270	45,605	57,200	15,635	47,930	236,450
2014/15	58,975	10,160	42,490	58,905	15,980	47,990	234,500
2015/16	62,290	9,165	40,790	60,220	16,610	44,955	234,030
2016/17	66,705	9,945	39,605	64,485	17,165	41,665	239,570
2017/18	76,825	12,820	39,045	64,120	18,480	42,220	253,510
2018/19	86,895	18,305	39,820	65,245	18,760	44,105	273,130
2019/20	104,240	41,815	44,495	64,115	18,115	47,045	319,825

주: 1) '기타'에는 아프리카, 남미, 중동, 호주 등이 포함됨.

자료: HESA. (2021.01.27.). Higher Education Student Statistics: UK, 2019/20. <https://www.hesa.ac.uk/news/27-01-2021/sb258-higher-education-student-statistics> 에서 2021.06.30. 인출

2. 외국인 유학생 정책 개괄

1979년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 정부 당시 외국인 유학생에게 고등교육의 비용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이후, 영국의 고등교육 또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들은 지속해서 시장화(marketisation)의 맥락에서 시행되었다. 이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많은 정부 보고서나 연구들이 영국 사회에 미친 외국인 유학생의 경제적 편익을 강조하고 있다(APPG, 2018; LE, 2018). 예를 들어, 유럽의 정책자문기업인 런던이코노믹스(London Economics)의 보고서(LE, 2018)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출신 외국인 유학생 1명당 68,000

파운드(약 1억 원), 그리고 비EU 출신 외국인 유학생 1명당 95,000파운드(약 1억 5천만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수입과 이들의 고용, 재화 및 서비스 관련 지출, 외국인 유학생의 비등록금 지출(숙박비, 생활비, 가족 관련 경비 등), 그리고 친구나 가족의 방문에 의한 지출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1999년이 되어서야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일관성 있는 정책이 도입·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후 관련 정책 변화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Lomer, 2018). 첫 번째 시기(1999년부터 2005년까지)는 1999년 당시 토니 블레어(Tony Blair) 총리가 발표한 ‘총리의 국제교육 이니셔티브’(Prime Minister’s Initiativ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이하 국제교육 이니셔티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시행된 국제교육 이니셔티브는 영국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일관성 있는 정책이었으며, 이의 목표는 6년이라는 기간 이내에 5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함으로써 영국 사회에 재정적, 정치적, 문화적 혜택을 제공·활용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Blair, 1999). 이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마케팅을 강조하였고, 외국인 유학생의 장학금 수혜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이들의 비자 변경에 관한 제도적 변화를 추진하였다(Lomer, 2018). 특히, 2004년 ‘졸업 후 취업’(Post-Study Work, PSW) 비자를 신설하였는데, 이를 통해 고등교육 과정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은 졸업 후 12개월에서 24개월의 기간 동안 영국에서 취업을 하거나 취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MAC, 2018).

외국인 유학생 정책 변화의 두 번째 시기(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2006년 기존의 국제교육 이니셔티브가 두 번째 국제교육 이니셔티브(PMI2)로 개편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Lomer, 2018). 두 번째

이니셔티브 역시 외국인 유학생이 모국의 영국 대사로서 정치적 영향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수업 내 문화 간 학습(intercultural learning)을 촉진하는 문화적·인종적 다양성의 가치를 강조하였다(Blair, 2006). 그러나 첫 번째 이니셔티브와 비교하여, 이의 정책적 초점이 고등교육 과정의 질적 향상을 통한 외국인 유학생의 경험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적 교육 파트너십 및 초국가 교육과정(Transnational Education, TNE)을 구축·확대하는 것으로 옮겨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보수당의 집권 이후 영국의 이민정책 기조가 과거 개방적인 입장에서 폐쇄적·통제적인 입장으로 바뀐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정책에 대한 통제·제한이 강화되었다(Lomer, 2018; MAC, 2018). 예를 들어, 2010년 고등교육기관이 발급하는 일종의 유학생 보증서인 입학허가확인서(Confirmation of Acceptance for Studies, CAS)가 Tier 4 (유학)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의무사항이 되었다. 2011년에 모든 외국인 유학생으로 하여금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도록 하였으며, 학부 과정 유학생의 가족 동행에 관한 권리가 제한되었다. 2012년에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졸업 후 취업(PSW) 제도가 폐지되었다. 또한, 학위 과정에 따라 2년에서 8년까지 전체 유학 기간에 대한 제한이 설정되었을 뿐 아니라 유학기간 동안 충분한 경제적·재정적 능력이 있음을 의무적으로 증명하도록 하였다(Sa & Sabzalieva, 2018).

세 번째 시기(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2013년 ‘국제교육전략’(International Education Strategy, IES)의 출범과 함께 시작되었다. 국제교육 분야의 산업적 전략으로서 국제교육전략은 과거와 달리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초국가 교육과정의 개발과 확대를 중시하면서, 외국인 유학생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외국인 유학생(특히, Tier 4 비자)에

대한 제한조치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예를 들어, 2017년 학위 과정을 종료한 이후 3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기도 하였다(MAC, 2018).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국제교육전략이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와 관련한 실질적인 활동에 대한 투자로 거의 이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적 국제문화교류기관인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에 많은 관련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Lomer, 2018).

3.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가. 보건의료

영국에서 모든 외국인 유학생과 이들의 가족은 영국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인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이하 NHS)에 접근이 가능하다(MAC, 2018).

우선, 건강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유학생의 국적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출신 외국인 유학생은 자국에서 발급받은 유럽건강보험카드(European Health Insurance Card, EHIC)를 제시하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추가 비용의 부담 없이 NHS 이용이 가능하다. 반면, 비유럽연합 출신 외국인 유학생이 NHS의 접근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Tier 4 비자의 신청 단계에서 이민보건부담금(Immigration Health Surcharge, 이하 IHS)을 지불해야 한다.²³⁾ 여기서 6개월 기간 미만의

23) 2015년 4월 처음 도입된 이민보건부담금(IHS) 제도는 영국에의 입국·거주를 위한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1년당 200파운드(단, 외국인 유학생은 150파운드(약 23만 원))의 NHS 부담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2019년 1월에 해당 부담금은 1년당 400파운드(단, 외국인 유학생은 300파운드(약 47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020년 10월에 624파운드(단, 외국인 유학생은 470 파운드(약 73만 원))로 또 한 차례 인상되었다(Gower, 2020).

방문 비자(visitor visa)를 통해 입국한 비유럽연합권 외국인 유학생은 NHS의 무상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응급 상황에서 NHS 소속 병원의 응급의료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 일반의원(General Practitioner, GP)에 등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영국 대학들은 소속 학생들(외국인 유학생 포함)에게 캠퍼스 근처의 일반의원(GP)에 등록하도록 권장한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일반의원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보건의료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외부 일반의원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한편, 카디프 대학(Cardiff University) 등과 같이 일반의원을 직접 소유·운영하는 경우도 일부 존재한다(MAC, 2018).

졸업한 유학생을 대상으로 영국 통계청에서 2016/17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ONS, 2018), 응답자 중 약 11%만이 지난 12개월 동안 NHS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3〉 참조). 또한, 〈표 4-3〉에서는 보듯이 의료 서비스의 유형과 지역에 따라 이용 경험의 편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타 보건의료서비스와 비교하여, 일반의원(GP) 이용 경험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4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단, 웨일스의 경우, 39.3%). 지역별로 봤을 때, 런던에 거주하는 유학생의 NHS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이용 경험은 33.6%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반면에, 사우스웨스트잉글랜드와 웨스트미들랜즈 지역의 외국인 유학생은 NHS 이용 경험이 3.8%에 불과하였다.

110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표 4-3〉 외국인 유학생의 NHS 이용 경험에 관한 지역별 현황(2017년)

(단위: %)

지역 구분	일반의원 (GP)	응급의료 서비스 (A&E)	시간외 진료	치과 관련	안과 관련	전체
이스트 잉글랜드	49.6	13.5	5.3	6.0	15.0	6.0
이스트 미들랜즈	43.9	6.1	3.1	8.2	7.1	8.7
런던	48.8	11.2	2.0	4.4	6.6	33.6
노스이스트 잉글랜드	43.9	7.0	1.3	7.8	5.2	9.2
노스웨스트 잉글랜드	43.6	10.9	2.5	4.5	5.4	8.7
북아일랜드	53.3	10.0	3.3	6.7	0.0	1.3
스코틀랜드	57.0	9.6	1.0	18.5	16.1	19.4
사우스이스트 잉글랜드	45.6	6.4	1.2	10.8	7.9	14.5
사우스웨스트 잉글랜드	41.3	6.5	3.3	4.3	7.6	3.8
웨일스	39.3	6.6	2.9	5.5	7.0	11.4
웨스트 미들랜즈	47.8	3.3	1.1	7.6	5.4	3.8
요크셔햄버	43.3	6.5	2.3	5.5	8.1	13.1
전체	46.5	8.1	2.4	7.5	7.6	11.1

주: 1) 2017년 3월과 4월에 실시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총 3,560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설문
에 참여하였음.

2) 해당 수치는 “지난 12개월 동안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아래의 NHS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에 관한 설문결과를 지역별로 정리한 것임.

자료: ONS (2018) Survey of Graduating International Students, UK. London: Office for Na-
tional Statistics.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populationandmigration/internationalmigration/datasets/surveyofgraduatinginternationalstudentsuk> 에서 2021.06.30.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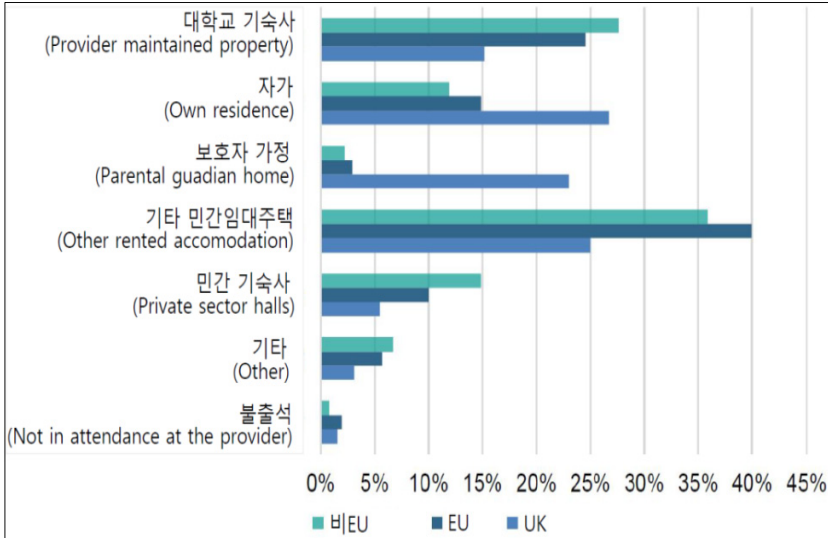
한편, 외국인 유학생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 관한 우려
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Forbes-Mewett, 2019). 이들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보건요로서비스(검진, 치료, 상담 등)는 주로 국가보건서비스의

일반의원(GP) 또는 각 대학교의 상담센터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Universities UK, 2015). 2018년에 실시된 외국인 유학생의 정신건강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6%가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이들 중 55%는 그러한 상태가 지난 2년간 지속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Atack, 2018).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의 이러한 수치가 영국 학생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정신건강 상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응답자의 64%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Atack, 2018). 이러한 맥락에서 Forbes-Mewett(2019)은 미국이나 호주와 비교하여 영국은 외국인 유학생에게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긍정적인 함의가 있다고 보았다.

나. 주거

원칙적으로 영국의 외국인 유학생은 공공지원주택(social housing)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다(MAC, 2018). 외국인 유학생에게 가장 일반적인 주거 형태는 대학교 및 민간 기숙사(40%)와 민간임대주택(37%)이며, 극히 소수의 외국인 유학생이 주택을 매입하거나 자신의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4-2] 참조). 유학생의 국적별 주거 형태를 보면, 유럽연합 출신 유학생의 주요 주거 형태 역시 민간임대주택(40%)과 대학교 및 민간 기숙사(3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국 국적 학생의 경우 자가(27%), 민간임대주택(25%), 보호자 가정(23%) 등이 주된 주거 형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2] 고등교육과정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 형태, 201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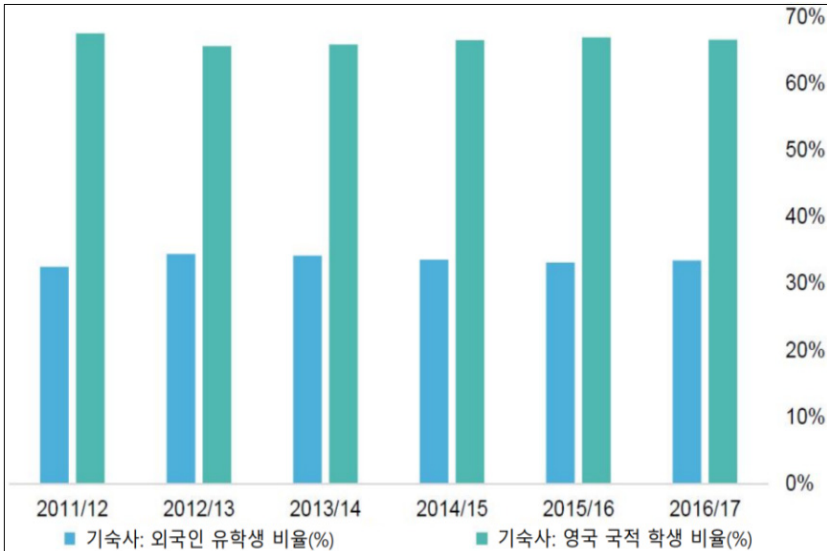


주: 1) '보호자 가정'은 학생의 학기 중 주거지(term-time address)가 해당 학생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가족 포함) 등의 주거지와 동일한 경우를 의미함.
 2) '기타'는 앞에서 제시된 주거 형태들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포함함.
 자료: MAC (2018) Impact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UK. Migration Advisory Committee, p.71

[그림 4-3]에서 볼 수 있듯이, 2011/12년에서 2016/17년까지 고등 교육 분야에서 영국 국적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교 및 민간 기숙사를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일정하다. 그러나 고등교육 분야 전체 학생 중 유학생의 비율이 약 19%(2016/17년 기준)를, 전체 기숙사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HESA, 2021). 이는 두 가지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원인은 외국인 유학생은 영국 국적 학생에 비해 거주형태를 결정하는 데 선택지의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국 국적 학생의 경우 자가 거주(27%)와 보호자 가정(23%) 등의 거주형태 역시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3] 참조). 두 번째 원인으로 최근 대규모 민간 기숙사(pur-

pose-built student accommodation)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생활의 편의성이나 안전성 등을 기준으로 이러한 대규모 민간 기숙사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림 4-3] 대학교 및 민간 기숙사: 영국 국적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 2011/12-2016/17



자료: MAC (2018) Impact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UK. Migration Advisory Committee, p.73.

그렇다면 외국인 유학생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 주거시설을 찾을까? Forbes-Mewett(2018)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대부분의 외국인 유학생은 인터넷을 통해 주거시설을 검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 입국하기 전부터 입학할 대학교의 기숙사 또는 근처의 민간 주거시설(민간 기숙사 포함) 등을 검색하고, 거주를 예약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 주거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실제 신청 및 계약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는 지적도 일부 존재하였다.

한편, 외국인 유학생이 주거시설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은 대학교 캠퍼스에서의 거리와 비용 등이었다. 많은 외국인 유학생은 가능하면 캠퍼스에 가까운 주거시설에 거주하기를 희망하였다. 하지만 캠퍼스에 가까운 주거시설일수록 더 비싼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안정 수준은 결국 주거비용과 개인의 재정 상황에 좌우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그들의 문화적·인종적 집단에 속하는 이들 근처에 주거시설을 선택함으로써 주거안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선택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의 인터뷰를 참고할 수 있다(Forbes-Mewett, 2018: 144-146).

“1학기 동안 저는 교내 기숙사에 머물렀는데, 모든 학부생들과 동일한 숙소에 배정되었습니다. (...) 저는 (그곳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머물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2학기가 되어서 영국에서 함께 공부하던 친구와 함께 아파트를 임대하였습니다. (...)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지역에서 (주거시설을) 임대하였는데, (그 지역의) 제 이웃 사람들은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과 마약상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출신 대학원생, 여성, 34세)

다. 경제활동

영국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또는 자격은 이들의 체류자격 유형, 교육과정 유형(고등교육 또는 중등교육 등) 등에 따라 다르다(Howe, 2019).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는 크게 두 가지, ‘학업 중’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와 ‘졸업 후’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학업 중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고등교육기관에서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을 수학하는 경우(Tier 4 비자),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 그리고 방학 중에는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다. 유학생은 대부분의 분야

에서 일을 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다. 예를 들어, 자영업이나 비즈니스 활동의 종사는 제한되고, 공인된 재단 프로그램이나 학생회 임원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는 것 외에 학기 중에 정규직 직업을 가질 수 없다. 또한, 프로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 그리고 의사나 치과의사로서의 직업 역시 제한된다(MAC, 2018).

한편, 주당 허용된 근로시간 제한(학기 중)이라는 비자 조건의 위반이 외국인 유학생의 강제출국(deportation)으로 직결된다는 점은 언급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6년 이민법(제19조)의 개정을 통해 “선추방 후항소(deport first, appeal later)” 조항이 도입됨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 제한의 위반으로 강제출국 조치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은 본국에서 항소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Howe, 2019). 주당 근로시간 제한의 위반과 관련하여, 외국인 유학생이 고용주에 의한 착취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는 외국인 유학생이 적절한 법적 구제책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졸업 후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영국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노동시장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특히, 노동당 정부 당시 시행되었던 국제교육 이니셔티브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은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음으로써 영국의 핵심 기술 부족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예비 전문기술 인력 풀로 여겨지기 시작하였다(Levatino et al., 2018). 이러한 맥락에서 2004년에 졸업 후 취업(PSW) 비자가 신설되면서, 외국인 유학생이 학위 과정을 이수·졸업한 후 2년 동안 근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2년에 보수당 정부는 반대로 졸업 후 취업 제도를 폐지하였다. 이는 수만 명에 이르는 이민자의 유입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졸업 후 취업 비자 소지자들이 저숙련 근로를 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에

서 결정되었다(APPG, 2018). 졸업 후 취업 비자의 폐지 이후, 외국인 유학생은 일반적인 취업(Tier 2) 비자를 통해 영국에서 졸업 이후의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에 한해 거주자 노동시장 시험(Resident Labour Market Test)을 면제해주거나 비자발급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Tier 2 비자의 보증을 맡아야 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은 매우 좁은 범위에서 기설정된 전문근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최소한의 보수 기준(2012년 기준 20,800 파운드(약 3,200만 원))을 충족해야 했다.²⁴⁾ 이 때문에, 2012년 이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비자 발급 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²⁵⁾

2016년 내무부(Home Office)는 영국에서 13개월 이하의 석사과정을 수학하고자 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Tier 4 시험계획'(Tier 4 pilot scheme)을 제시하였다(MAC, 2018). 옥스퍼드 대학교, 케임브리지 대학교, 바스 대학교,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4개 학교가 참여한 시험계획은 석사과정을 마친 외국인 유학생에게 기존의 2개월에서 4개월이 아닌 6개월 동안 영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자격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는 이듬해 23개 대학교로 확대 시행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Tier 2 비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 경로가 이들의 영국에서의 취업 전망과 이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24) '부족 직업목록'(Shortage Occupation List)에서 기설정된 전문근로 분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이공계 계열 전문직, 보건의료 서비스직 등이 포함된다. 2012년 기준 부족 직업목록은 Home Office(2012: 8-10) 참조.

25) 외국인 유학생이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를 선택하는 데 졸업 후 취업 가능성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Fakunle & Pirrie, 2020), 졸업 후 취업 비자의 폐지는 영국으로의 유학생 유입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2010/11년부터 2016/17년까지 인도 출신의 외국인 유학생 수가 급감한 주요 원인으로, 해당 제도의 폐지가 지적된 바 있다(APPG, 2018).

(APPG, 2018). 또한, 유학시장에서 국제적 경쟁의 심화와 브렉시트(Brexit)가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에 끼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영국의 고등교육기관들 역시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 가능성(post-study employability)을 높이도록 정부에 정책 방안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0년 영국 정부는 취업 후 졸업(PSW) 제도를 재도입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Fakunle & Pirrie, 2020).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외국인 유학생의 경제활동 관련 권리에 관한 정책변화는 이들의 유입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의도와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Levatino et al., 2018). 예를 들어, 노동당 정부는 대학원 과정의 유학생과 정부 지원을 받는 유학생 등에 관심을 두고, 1999년 외국인 유학생은 파트타임으로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유학생 스스로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영국을 유학을 위한 보다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도록 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보수당 정부는 오히려 외국인 유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 대학원생과 정부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부양가족을 데려올 수 있는 권리와 이들 부양가족의 권리를 축소하고자 하였다.

4. 코로나19 팬데믹과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

가. 이민법상의 지원(정책)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지원(정책)에 관한 정보는 영국의 국제학생지원협회(UK Council for International Student Affairs, UKCISA)의 홈페이지와 내부부의 지침을 통해 확인 가

능하다.²⁶⁾ 이민법상의 지원(정책)은 영국에 입국 및 거주,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의 학습권 등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영국으로 (재)입국하는 것과 관련하여, 영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입국·거주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기존의 입국·거주 허가가 만료된 경우 일종의 면제제도인 코로나 비자면제 제도(COVID Visa Concession Scheme)를 도입·시행하였다. 특히, 2020년 3월 17일 이전에 영국에서 출국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한 여행 제한으로 인해 체류허가의 연장이나 변경을 신청할 수 없었던 이민자들(외국인 유학생 포함)에 한해, 2021년 3월 31일까지 온라인 신청경로를 마련해두었다. 한편, 2020년 1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 내에 영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입국·거주 허가가 만료된 경우, 이민법상의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다만, 향후 체류허가의 연장이나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기간에 만료된 체류허가를 합법화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점 또한 분명히 하였다.

또한, 고등교육기관의 학습권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원격학습(distance learning)을 통한 학위 과정의 이수 불가능하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원격학습은 고등교육기관의 유학생 보증이나 유학생의 학습의무에 대한 이민법상의 위반이 아님을 명시하였다(Home Office, 2021). 이미 Tier 4(유학) 비자가 있는 경우, 기존의 학위 과정을 계속하거나 새로운 학위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예외는 2020/21학년도 전체에 적용되었다. 아직 Tier 4 비자를 신청하지 못했지만 원격학습을 통해 학위 과정을 시작하고자 하는

26) UKCISA 홈페이지 참조 <https://www.ukcisa.org.uk/Information--Advice/Studyin-g--living-in-the-UK/Coronavirus-Covid-19-info-for-international-students#:~:text=Covid%2D19%3A%20Guidance%20for%20Student,you%20have%20Student%20immigration%20permission>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영국으로의 입국이나 고등교육기관으로부터의 유학생 보증을 요구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나. 사회보장제도상의 지원(정책)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영국에 거주하면서 일반 의료원에 등록된 외국인 유학생(6개월 이상 체류)은 NHS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관련한 검사와 치료, 그리고 백신 등에 대한 접근성 역시 추가 비용의 부담 없이 보장된다. 따라서 영국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고령의 유학생이나 심각한 질병을 가진 유학생의 경우 코로나19 백신의 우선접종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와 관련한 지침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이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우선 대학교 기숙사의 경우 고등교육기관이 이를 폐쇄하거나 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강제로 퇴거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민간 주거시설과 관련하여서는, 2020년 8월부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을 비우도록 요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의 통보기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경제활동에 대한 제한(즉, 학기 중 주당 20시간의 근로 제한)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수업(일정)이 유예·연기된 경우 방학 기간으로 간주하여, 해당 기간에 제한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교육기관이 원격학습으로 수업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학기 중인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Tier 4 비자에 명시된 주당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된다(Home Office,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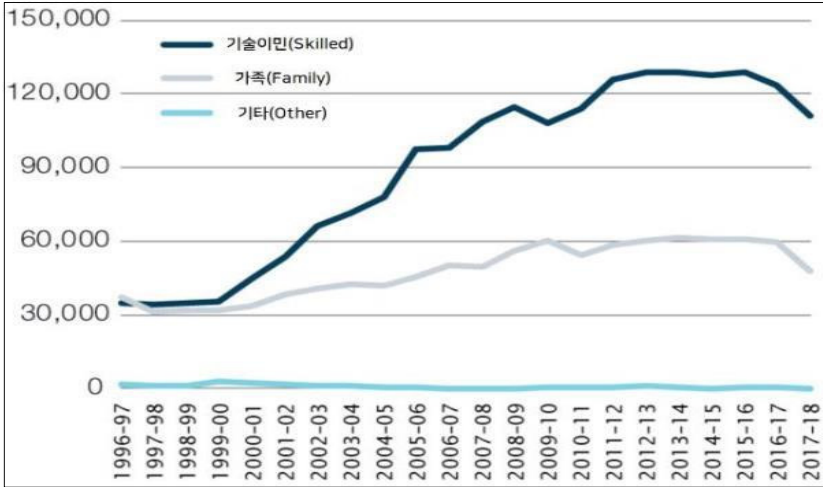
제2절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

1. 배경 및 현황

호주의 이민정책은 지난 30여 년 동안 점차 임시비자(temporary visa)의 발급을 중심으로, 영주비자의 제한적 부여가 뒷받침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호주는 이민 프로그램(Migration Program)을 통해 매년 외국국적 이민자에게 발급하는 영주비자의 숫자를 제한하고 있다. [그림 4-4]에서 볼 수 있듯이, 1996년에 취임한 존 하워드(John W. Howard) 총리 시기부터 기술이민과 가족 목적의 영주비자 발급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케빈 러드(Kevin M. Rudd)와 줄리아 길라드(Julia E. Gillard)의 노동당 정부 시기에는 19만 건 규모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2017년 말콤 턴불(Malcolm B. Turnbull) 정부 시기부터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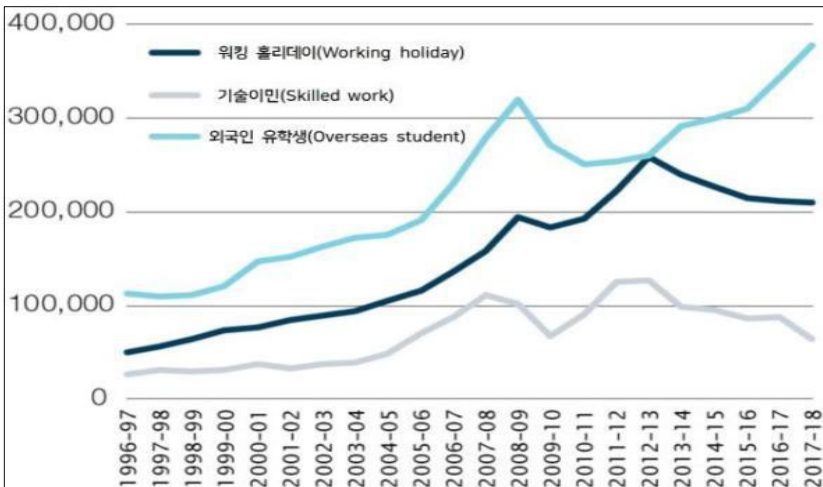
한편, [그림 4-5]에서 볼 수 있듯이, 2012/13년까지 임시비자의 발급 건수는 워킹 홀리데이, 기술이민, 외국인 유학생 등 입국목적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2/13년 이후 워킹 홀리데이와 기술이민 목적의 임시비자 발급은 줄어드는 반면에, 외국인 유학생 비자의 발급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 4-4] 호주 영주비자(permanent visa) 발급 건수, 1996/97-2017/18



자료: Sherrell, H. (2019) Migration-permanent and temporary visa trends. Parliament of Australia. https://www.apf.gov.au/About_Parliament/Parliamentary_Departments/Parliamentary_Library/pubs/BriefingBook46p/Migration 에서 2021.06.30. 인출

[그림 4-5] 호주 임시비자(temporary visa) 발급 건수, 1996/97-2017/18



자료: Sherrell, H. (2019) Migration-permanent and temporary visa trends. Parliament of Australia. https://www.apf.gov.au/About_Parliament/Parliamentary_Departments/Parliamentary_Library/pubs/BriefingBook46p/Migration 에서 2021.06.30. 인출

2. 외국인 유학생 현황

호주 고등교육의 외국인 유학생은 2010년 이래로 유지·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표 4-4〉 참조). 특히, 2010년부터 2015년까지 20만 명대를 유지하다가(2010년 245,737명), 2016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9년에는 4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2019년 436,305명). 같은 기간 동안 고등교육 과정에 입학한 호주 국적 입학생 역시 지속해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세가 상당히 두드러짐에 따라 고등교육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 역시 2010년 20.6%에서 2019년 27.1%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표 4-4〉 호주 고등교육 외국인 유학생 현황, 2010-2019

(단위: 명, %)

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임시비자)	전체 등록학생	외국인 유학생의 고등교육 등록 비율
2010	245,737	1,192,657	20.6
2011	242,903	1,221,008	19.9
2012	232,867	1,257,722	18.5
2013	236,332	1,313,776	18.0
2014	254,383	1,373,230	18.5
2015	273,817	1,410,133	19.4
2016	304,957	1,457,209	20.9
2017	345,686	1,513,383	22.8
2018	395,442	1,562,520	25.3
2019	436,305	1,609,798	27.1

자료: Ferguson, H., & Spinks, H. (2021.04.22.). Overseas students in Australian higher education: a quick guide. Parliament of Australia. https://www.aph.gov.au/About_Parliament/Parliamentary_Departments/Parliamentary_Library/pubs/rp/rp2021/Quick_Guides/OverseasStudents 에서 2021.06.30. 인출

한편, 2019년과 2020년 기준 출신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의 수를 살펴 보면(〈표 4-5〉 참조), 대부분의 외국인 유학생이 아시아 국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인도, 네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출신의 외국인 유학생이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3분의 1 이상(각각 37.3%와 38.4%)을 차지하고 있다.

〈표 4-5〉 호주 고등교육 외국인 유학생 출신 국가별 현황, 2019-2020

(단위: 명, %)

국적	2019		2020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중국	164,306	37.3	160,430	38.4
인도	90,240	20.5	79,410	19.0
네팔	34,372	7.8	34,149	8.2
베트남	16,299	3.7	15,632	3.7
말레이시아	13,074	3.0	11,212	2.7
파키스탄	11,678	2.7	10,524	2.5
인도네시아	10,608	2.4	10,331	2.5
스리랑카	11,045	2.5	10,127	2.4
홍콩	8,878	2.0	9,027	2.2
싱가포르	7,120	1.6	6,552	1.6
기타	73,047	16.6	70,774	16.9
전체	440,667	100.0	418,168	100.0

자료: Ferguson, H., & Spinks, H. (2021.04.22.). Overseas students in Australian higher education: a quick guide. Parliament of Australia. https://www.aph.gov.au/About_Parliament/Parliamentary_Departments/Parliamentary_Library/pubs/rp/rp2021/Quick_Guides/OverseasStudents 에서 2021.06.30. 인출

3. 외국인 유학생 정책 개괄

1970년 이전,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1951년 수립된 콜롬보 계획(Colombo Plan)에 기초하였다(Hong, 2020). 이의 목적은 주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의 일부 유학생에게 교육 서비스를 국제 원조의 형식으로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호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당시 호주 사회에서 (고등)교육은 사회복지의 핵심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무상교육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한다. 그러다가 1972년과 1973년 호주 정부가 백호주의(White Australia Policy) 원칙과 유색인종에 대한 이민차별 정책을 차례로 폐지하면서, 외국인 유학생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이용균, 2012; 이태주, 권숙인, Martinex and Kaori, 2007). 당시 노동당 정부는 이전까지 주정부와 자치구에서 부담하던 고등교육의 재정을 연방정부가 전담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외국인 유학생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1979년을 기점으로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더 이상 국제원조 중심이 아니라 자유시장주의 원리에 기초한 변화가 도입·시행되기 시작하였다(이용균, 2012). 이후의 관련 정책 변화는 크게 세 가지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1979년부터 1996년까지)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에 시장주의 원칙이 본격적으로 도입·이식된 시기로 볼 수 있다. 우선, 1979년 당시 급증하던 외국인 유학생의 영주권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2년간의 국내 체류기간을 신청 요건으로 설정한 이민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1980년부터 시행된 ‘해외학생 예치금’(overseas student charge) 제도는 고등교육 비용(등록금)의 일부(약 25%)를 외국인 유학생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무상교육의 혜택을 사실상 제한하는 정책이었다. 1985년 당시 노동당 정부에서 추진된 ‘신유학생 정책’(new overseas student policy)은 1986년부터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정부의 학자금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본인이 등록금 전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듬해에는 전문학교(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TAFE)의 유학생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중단되었다. 이에 따

라,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기존의 (고등)교육정책과의 연계성보다는 국제교육시장에서 상품으로서의 시장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Kumar, 2005).

외국인 유학생 정책 변화의 두 번째 시기는 하워드 총리의 재임기간(1997년부터 2007년까지) 동안 외국인 유학생을 통한 기술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시기로 이해할 수 있다(Spinks, 2016; 이용균, 2012). 1998년, 하워드 총리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4년간 약 2,100만 호주달러(약 179억 원)를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캠페인 대상 국가의 범위를 과거 전통적인 아시아 시장만이 아니라 인도와 중국, 그리고 서구 국가들(유럽 및 북아메리카 등)까지 확장하고자 하였다. 1999년 3월, 호주사회에서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는 직업군 목록, 즉 ‘이민필요직업목록’(Migration Occupations in Demand List, MODL)의 발표와 함께 이에 해당하는 ‘기술이민’(General Skilled Migration, GSM) 지원자에게 이민심사상의 가산점이 부여되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호주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이들에게도 기술이민 가산점(5점)이 부여되었다.²⁷⁾ 또한, 기술이민(GSM)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2001년 7월부터 호주에서 교육(학위)을 받은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졸업 후 6개월 이내에 근로 경험 없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과거 국외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던 것과 달리, 본국으로의 귀환 없이 호주 국내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더 많은 수의 외국인 유학생과 기술 이민자를 유치하기 위한 호주의 국제교육 경쟁력 향상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해되었다.

27) 이민필요직업목록(MODL)에 포함되는 직업군에는 이공계 계열(IT, 컴퓨터공학, 전기공학 등) 전문가, 보건의료 서비스 종사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회계사 등이 포함되었다. 2000년 기준 이민필요직업목록은 Ruddock(2000) 참조.

하워드 연합정권 시기의 핵심 정책변화 중 하나로, 2000년에 제정된 ‘외국인 유학생 교육서비스법’(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ESOS) Act)을 들 수 있다(Ramia, 2017). 외국인 유학생 교육 서비스법의 목적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등교육 서비스 제공자(고등교육기관)의 등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이 지불한 수업료에 합당한 수준의 고등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2001년 제정된(2007년 개정) 외국인 유학생 교육서비스법의 세부 규정인 ‘외국인 유학생 교육 및 등록기관을 위한 국가 시행령’(National Code of Practice for Registration Authorities and Training to Overseas Students, 이하 국가시행령)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교육서비스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고자 하였다.²⁸⁾ 첫째, 호주의 고등교육서비스 질(quality)을 담보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의 등록에 관한 세부 전제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였으며, 둘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복지 및 지원 서비스의 제공을 명시하였다. 특히, 후자의 경우 국가시행령의 ‘기준 6’(외국인 유학생 지원 서비스, Standard 6)에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세 번째 시기(2008년부터 현재까지)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호주 사회로의 기술이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Spinks, 2016; 이용균, 2012). 2010년에 이르러, 러드와 길라드의 노동당 정부는 기존의 기술이민(GSM) 프로그램과 외국인 유학생

28) 2018년 개정된 국가시행령(National Code)은 총 11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마케팅 정보와 실천’(marketing information and practices), ‘외국인 유학생의 모집’(recruitment of an overseas student), ‘외국인 유학생 지원 서비스’(overseas student support services), ‘외국인 유학생 비자 요건’(overseas student visa requirements) 등이 포함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호주 교육기술 고용부(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홈페이지 참조: <https://internationaleducation.gov.au/regulatory-information/Pages/National-Code-2018-Factsheets-.aspx>

교육서비스법 등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검토에 기초하여, 2010년 ‘호주 외국인 유학생 전략’(International Students Strategy for Australia)을 발표한 바 있다(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 2010).²⁹⁾ 또한, 당시 400개의 이민필요직업 목록(MODL)을 181개의 새로운 ‘기술직업목록’(Skilled Occupations List, SOL)으로 축소 발표·적용하였으며,³⁰⁾ 2011년 유학생 비자 프로그램에 관한 전략적 검토(Strategic Review of the Student Visa Program 2011, 이하 나이트 리뷰(Knight Review))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비자에 관한 전반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2011년 나이트 리뷰(Knight Review)에서 제시된 졸업 후 취업 권리(post-study work rights)는 2013년 임시 졸업생 비자(Temporary Graduate visa (subclass 485))의 도입을 통해 정책화되었다(Knight, 2011). 마지막으로, 2011년 국제교육자문위원회(International Education Advisory Council, IEAC)가 호주의 국제교육 분야에 관한 장기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2016년에 10년 장기계획인 국제교육 국가전략 2025(National Strategy for International Education 2025)를 발표하여 현재로 이어지고 있다(Sa & Sabzalieva, 2018).³¹⁾

29) ‘호주 외국인 유학생 전략’은 호주의 질 높은 국제교육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에게 수준 높은 (교육)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해당 목표의 달성을 위한 유학생 웰빙(student wellbeing), 교육의 질(quality of education), 소비자 보호(consumer protection), 보다 나은 정보(better information)라는 네 가지 실천영역을 설정하였다(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 2010).

30) 그러나 2021년 기준 기술직업목록(SOL)에 포함된 직업 유형은 674개로 확대되었다. 구체적인 직업목록은 호주 내무부 홈페이지(Department of Home Affairs) 참조: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working-in-australia/skill-occupation-list>

31) ‘국제교육 국가전략 2025’은 호주의 국제교육이 외국인 유학생, 관련 커뮤니티 및 산업에 도움을 주고,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기초 강화(Strengthening the fundamentals), 혁신적 파트너십 구축(Making transformative partnerships), 글로벌 경쟁(Competing globally)라는 세 가지 전략을 설정하였다(Australian Government, 2016).

4.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가. 보건의료

외국인 유학생과 이들의 가족을 위한 호주의 사회보장은 외국인 유학생 교육서비스법에 의해 규정된다(Nyland & Tran, 2020; Ramia, 2017). 다시 말해, 외국인 유학생 교육서비스법은 “호주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재정적 보호조치와 법률을 비롯하여 근로에 관한 권리, 학생 복지 및 불만사항까지 포함”함을 명확히 한다(Nyland & Tran, 2020: 72).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에게 어떤 구체적인 권리가 부여되는지에 관해서는 국가시행령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8년 개정된 국가시행령의 ‘기준 6’(외국인 유학생 지원 서비스)에 따르면, 고등교육 서비스 제공자들은 외국인 유학생의 복지와 관련한 교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합리적인 가격의 교외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영어 및 학술 지원과 학습 기술 지원, 상담 및 정신건강 지원, 경력개발 지원, 주거(임대) 지원, 재정적 지원, 그리고 보건 및 장애 관련 지원 등이 포함된다(DESE, 2019).

호주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해당 서비스의 품질이나 외국인 유학생의 이용(경험)을 규제·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의 개별 보험약정을 통한 재정적 접근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Marginson et al., 2010). 다시 말해, 외국인 유학생은 호주의 공공 보건의료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대신에 정부가 지정한 5개의 건강보험 제공업체들에게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overseas student health cover, OSHC)을 직접 구매함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요구받는다.

한편,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와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OSHC) 제공업체 간의 합의문(Deed of Agreement)은 다음의 7가지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DH, 2017: 3): (a) 건강보험 비용은 외국인 유학생이 호주로 유학을 오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b) 외국인 유학생과 동반 가족들이 호주에서 공부하는 동안 합리적인 가격에 의료 및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c)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개인적 재정위기 위험을 최소화한다, (d) 병원, 의사 및 기타 보건 의료 전문가에 대한 부실 부채의 위험을 최소화한다, (e) 국비 유학생에게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이 분명히 귀속됨을 보장한다, (f) 외국인 유학생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호주 납세자의 비용 부담이 전혀 없도록 또는 최소가 되도록 보장한다, (g) 외국인 유학생에게 접근성과 혜택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이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보상·지원해주지 않는다는 점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Marginson et al., 2010). 대부분의 의약품 비용과 치과 진료는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의 기본 약정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입국 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의학적 상태(임신 제외)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도 첫 12개월 동안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한 추가 보험이 존재하지만, 표준 보험에 더해 상당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고등교육기관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지만, 질적인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24시간 이용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복잡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결국 외부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의 보건의료 서비스 관련 경험에 관한 많은 선행 연구들은 호주 보건의료 서비스의 보장범위(coverage), 가격적정성

(afford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등의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Martin, 2020; Poljski, Quiazon, & Tran, 2014).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인터뷰들을 참고할 수 있다(Poljski, Quiazon, & Tran, 2014: 154-55).

“저는 한 학기에 13,000호주달러(약 1,100만 원)를 내고 있고, 3학기 동안 공부합니다. 제가 받는 건강보험(보장)은 700호주달러(약 60만 원)이고, 건강보험은 일부 질병이나 건강 진단에만 국한됩니다. 너무 안 좋아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결코 부자가 아닙니다.” (외국인 유학생, 여성)

“제가 학업에 등록했을 때, 12개월 동안의 건강보험증을 위해 650호주달러(약 56만 원)를 지불했고, 지금은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사용해야 한다면, 우선(건강보험 회사)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그 회사와 연결된 의사들을 찾고, 그 의사들에게 연락하면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고 나면, 그들이 준 진단서와 영수증을 가지고,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그 의사의 이름을 찾고, 모든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그러고 나면, 아마(의료비를) 변제받을 수 있을 겁니다.” (외국인 유학생, 여성)

한편, 외국인 유학생의 정신건강(mental health)과 관련하여, 호주 연방정부 차원에서 고등교육기관을 지원하거나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적 접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Forbes-Mewett, 2019). 주로, 개별 주 정부나 고등교육기관 차원에서 상담이나 보건의로 전문가에게 근접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의 정신건강 이슈가 최근 호주 정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빅토리아주 검시관인 오드리 제이미슨(Audrey Jamieson)은 자살한 외국인 유학생의 정신질환 진단 비율(diagnosed mental illness, 14.8%)과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에 참여한 경험(22.2%)이 호주 국적 학생(각각 66.7%와 57.1%)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Martin, 2020).

나. 주거

외국인 유학생은 공공지원주택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지만, 관련 복지에 관한 국가시행령(기준 2)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 이슈는 2번 언급된다(DESE, 2019). 첫째, ‘기준 2’(외국인 유학생 유치, Standard 2)에서 고등교육 서비스 제공기관은 입학 예정(등록 전 단계의) 유학생에게 “호주에서의 생활에 관한 정보 전반”(relevant information on living in Australia), 즉 “거주 선택지와 직접적인 생활비용”(accommodation options and indicative costs of living in Australia)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둘째, ‘기준 6’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 및 임대”(housing and tenancy)와 관련한 교내외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인 비용의 부과 없이(no additional cost) 제공해야 함을 규정한다. 그러나 국가시행령상에 주거 형태 및 비용의 적정한 또는 합리적 수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고등교육기관이 외국인 유학생에게 캠퍼스 내 주거시설을 충분히, 그리고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제공할 책임이 없다.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 현황과 관련하여,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민간임대(단독 또는 공유)의 주거 형태를 가지는 반면에, 대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비율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2013년 호주의 국제교육 담당 정부기구인 호주교육 인터내셔널(Australian Education International, AEI)은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 만족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AEI, 2013). 이에 따르면(〈표 4-6〉 참조), 기타 교외시설(민간임대)의 비중(65.0%)과 교내 기숙사의 비중(11.0%) 간의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국적별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 형태(2012)

(단위: %)

국적	기타 교외시설	친구/가족	교내 기숙사	홈스테이
중국	64.0	23.4	7.8	4.9
말레이시아	64.9	21.2	12.4	1.5
인도	57.9	32.1	6.3	3.6
싱가포르	65.6	12.6	20.0	1.8
인도네시아	69.0	19.1	6.4	5.5
베트남	56.2	33.3	4.4	6.1
홍콩	52.5	28.5	11.1	7.8
미국	57.2	4.8	37.2	0.8
한국	57.2	24.2	13.3	5.3
캐나다	71.3	7.9	20.1	0.7
기타	69.1	17.0	10.8	3.2
전체	65.0	20.3	11.0	3.7

주: 전체 응답자 수는 35,710명임.

자료: AEI (2013)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student satisfaction with accommodation in Australia. Australian Government. Australian Education International, p.5

아래의 〈표 4-7〉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인 유학생이 주거시설을 찾는 주요 방법은 주거 검색 웹사이트(34%), 친구(26%), 부동산 중개업체(15%) 순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대학교의 주거 서비스(accommodation service)를 이용하여 주거시설을 구한 경우는 7%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ISSU, 2010; Obeng-Odoom, 2012에서 재인용). 그렇지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대학교의 주거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이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Yinghui, 2009; Obeng-Odoom, 2012에서 재인용).

〈표 4-7〉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 검색방법

(단위: %)

구분	전체 외국인 유학생 (ISSU, 2010)	외국인 신입생 (Yinghui, 2009)
주거 검색 웹사이트	34	37
친구	26	28
부동산 중개업체	15	11
신문	7	-
주거 서비스	7	40
게시물	3	-
기타	8	-
전체	100	중복 답변

주: Yinghui(2009)의 설문은 중복 답변으로 인해 답변 비율이 100%로 계산되지 않았음.
 자료: Obeng-Odoom, F. (2012) Far away from home: the housing question and international students in Australia. *Journal of Higher Education Policy and Management*, 34(2): 206. 참조

주거의 질에 관한 외국인 유학생의 답변을 살펴보면(〈표 4-8〉 참조), 주거 행태에 따라 기타 교외시설(민간임대)과 교내 기숙사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외국인 유학생(전체 응답자 중 84.4%)은 호주에서의 주거의 질에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주거비용과 관련해서, 불만족의 응답 비율(48.9%)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곧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이 경험하는 주거의 가격적정성(affordability)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많은 선행연구들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Obeng-Odoom, 2012; Ruming & Dowling, 2017).

〈표 4-8〉 주거 형태별 외국인 유학생의 만족도: 주거의 질 및 비용(2012)

(단위: %)

주거 형태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주거의 질				
기타 교외시설	17.1	66.0	14.3	2.7
친구/가족	22.0	66.9	9.3	1.8
교내 기숙사	22.8	60.7	13.1	3.4
홈스테이	27.4	62.4	7.7	2.5
전체	19.0	65.4	13.0	2.6
주거비용				
기타 교외시설	7.3	40.8	36.7	15.2
친구/가족	13.4	49.5	27.8	9.3
교내 기숙사	7.2	37.9	38.6	16.3
홈스테이	14.5	49.6	27.2	8.7
전체	8.7	42.4	34.9	14.0

주: 1) '주거의 질'의 전체 응답자 수는 30,436명임.

2) '주거 비용'의 전체 응답자 수는 30,413명임.

자료: AEI (2013)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student satisfaction with accommodation in Australia. Australian Government. Australian Education International, p.8, 13.

다. 경제활동

외국인 유학생의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는 '학업 중' 경제활동과 '졸업 후' 경제활동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학업 중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2008년까지 호주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유학생 비자를 발급받은 후 별도의 근로허가를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2008년 4월 러드 노동당 정부는 유학생 비자의 발급과 동시에 외국인 유학생에게 근로권이 부여되도록 하였다(Spinks, 2016). 2021년 기준 외국인 유학생은 관련 비자조건(visa condition 8105)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전에는 일을 할 수 없으며,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 그리고 방학 중에는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가 교육과정의

일부이거나 석사 또는 박사 학위 과정에 등록한 경우에 한해, 학기 중에도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³²⁾ 근로 관련 비자조건을 위반할 때는 비자 취소(이민법(Migration Act) 116조 의거) 또는 형사상의 처벌(동일법 235조 의거)이 이루어질 수 있다(Howe, 2019).

외국인 유학생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한 가지 문제점은 많은 유학생이 자신의 경제적 권리에 대한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Howe, 2019; Paltridge, Mayson, & Schapper, 2013). 이는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고용주에 의한 착취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실제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외국인 유학생이 경제적 필요로 인해 학기 중에 주당 20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관련 비자조건을 위반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일부 존재한다. 고용주들이 비자조건을 위반을 이민당국에 알리겠다는 위협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을 착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편,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이 가지는 졸업 후 취업에 관한 권리는 2007년 ‘숙련졸업생 임시비자’(skilled graduate temporary visa)의 도입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Tran et al., 2020). 해당 비자의 목적은 외국국적 졸업생이 호주의 노동시장에서 전문적인 근로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졸업 후 18개월 동안의 체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에 맞춰, 숙련졸업생 임시비자의 발급은 점수 기반의 시험이 아니라 비자 신청자들의 언어적(영어) 능력과 업무 경험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이민정책 및 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해당 비자 소비자가 기술이민 관련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영주권 심사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32) 호주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 홈페이지 참조: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already-have-a-visa/check-visa-details-and-conditions/conditions-list>

2013년, 기존의 숙련졸업생 임시비자가 임시 졸업생 비자(Temporary Graduate visa)로 신설·변경되면서, 졸업한 교육과정에 따라 최대 2년에서 4년까지 졸업 후 취업에 관한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1년 나이트 리뷰에 따르면, 해당 정책의 목적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Knight, 2011). 첫째는 국제교육시장에서 호주의 명성과 매력을 높이기 위함이고, 둘째는 유학과(장기)이민 간의 직접적인 연결성을 끊기 위함이다.

임시 졸업생 비자는 고등교육과정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졸업 후 취업(post-study work) 경로와 전문학사과정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졸업생 취업(graduate work) 경로 두 가지로 구성된다(Chew, 2019). 특히, 박사 학위 과정 졸업생의 경우 졸업 후 취업 경로를 통해 최대 4년의 체류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 권리는 일견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시 졸업생 비자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취업가능성(employability)을 높이고, 학위 과정 관련 대출금을 상환하고, 경력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언어적 능력을 향상하고, 사회적 자원을 향상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Tran et al., 2020).

그러나 2013년 임시 졸업생 비자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첫째, 임시 졸업생 비자의 도입이 오히려 외국인 유학생 정책과 노동시장정책, 그리고 이민정책 간의 연계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2011년 나이트 리뷰에서는 호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졸업 후 취업 권리자격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Knight, 2011, p. 41), “유학생 비자정책의 주춧돌”은, 유학생은 “호주 사회의 임시 거주자”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Knight, 2011, p. 40). 또한, 유학생 비자는 “진짜 임시 입국자”(genuine temporary entrant)이자 “진짜 학생”(genuine student)에게 주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Knight, 2011, p. 25). 이러한 전제에 맞춰, 임시 졸업생 비자는 호주에

서 학위 과정을 졸업한 모든 외국인 유학생에게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직업목록(SOL)에 해당하는 전공을 가진 이들에게 제한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Knight, 2011, p. 39).

또 다른 문제로 제기되는 바는 2013년 정책변화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의 장기이민 또는 영주권 취득 가능성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학과 장기이민 혹은 정착 간의 고리가 끊어진 듯이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의 외국인 유학생이 임시 졸업생 비자를 영주권 비자로의 통로로 인식하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Tran et al., 2020). 외국인 유학생의 관점에서 임시 유학생 비자가 호주에서의 취업을 직접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으로 이해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구직기간의 확보, 언어적 능력의 향상, 전공 관련 업무능력 및 경력의 축적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취업 가능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5. 코로나19 팬데믹과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

가. 이민법상의 지원(정책)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에 관한 정보는 호주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³³⁾

이민법상의 지원(정책)은 호주에 입국하고 거주하기, 그리고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학습권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호주로의 (재)입국과 관련하여, 2020년 2월 1일 기준 유학생 비자를 소지했던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재입국을 위한 비자 신청비용을 면제하였다. 여기에는 코로나19 관련

33) 호주 내무부 홈페이지 참조: <https://covid19.homeaffairs.gov.au/student-visa>

제한조치로 인해 호주에 입국하지 못했거나 학위 과정을 완료하지 못한 유학생이 포함된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체류 비자가 만료된 경우에 새로운 비자의 신청(만료 28일 이내) 또는 브릿징 비자 E(bridging visa e)의 신청(만료 28일 초과) 등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학습권과 관련하여, 호주 국외에서의 온라인 학습(online study)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임시 졸업생 비자의 신청 조건 중 하나는 호주에서의 유학 조건을 고려하는데, 온라인 학습의 기간도 포함하는 것으로 조치하였다.

나. 사회보장제도상의 지원(정책)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호주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보건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은 OSHC의 구매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코로나19의 검사와 치료(일반의원(GP) 상담, 처방 의약품, 구급차, 병원 입원 및 병원 내 서비스(응급실 포함)) 역시 OSHC를 통해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호주 정부가 호주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제도인 Medicare에 대한 접근성이 없는 외국인 유학생도 접종 가능하다.³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 안전과 관련하여, 호주 정부는 호주 시민들과 동일한 기준에서 임대 중인 주거시설로부터 퇴거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다양한 보호조치를 시행·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주정부 차원에서 발견할 수 있다.³⁵⁾ 예를 들어, 빅토리아(Victoria)

34) 호주 정부 Study Australia 홈페이지 참조: <https://www.studyinaustralia.gov.au/english/study-in-australia-student-support/faqs>

35) 호주 정부 Study Australia 홈페이지 참조: <https://www.studyinaustralia.gov.au/english/study-in-australia-student-support/accommodation>

주정부는 4,500만 호주달러(약 383억 원) 규모의 외국인 유학생 긴급구호기금(International Student Emergency Relief Fund)과 5억 호주달러(약 4,250억 원) 규모의 주거임대 구호기금을 편성하여, 유학생이 각각 1,100 호주달러(약 95만 원)와 2,000호주달러(약 170만 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³⁶⁾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경제적 필요와 핵심 서비스의 공급 상황을 고려하여, 호주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와 호주국경수비대(Australian Border Force)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제활동에 대한 제한을 특정 산업영역에 한해 완화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시 말해,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자나 국가 장애보험 관련 서비스 제공자, 코로나19 관련 보건활동, 그리고 농업, 관광, 서비스 업종에 고용된 경우에 한해, 주당 20시간 근로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³⁷⁾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영국과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검토하였다. 영국과 호주 사례는 국가 경쟁력 및 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추진해왔음이 주목할 만하다. 특히, 앞의 서론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한국 대학의 경쟁력과 산업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에만 치중할 뿐 이들의 사회권 또는 사회통합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36)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 홈페이지 참조: <https://www.consumer.vic.gov.au/>

37) 호주 내무부 홈페이지 참조: <https://covid19.homeaffairs.gov.au/student-visa>

영국과 호주 사례가 한국 사회에 줄 수 있는 함의가 클 것으로 판단한다. 앞선 정책분석에 대한 요약과 함께, 한국 사회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다음의 세 가지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영국과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이 보건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이 유학생(Tier 4) 비자의 신청 단계에서 이민보건부담금(IHS)을 지불해야 하지만, 영국에 입국한 이후에는 영국 국적 시민과 마찬가지로 NHS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에,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은 호주의 공공보건의료제도(메디케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며,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OSHC)을 통해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영국과 호주 모두 외국인 유학생의 공공지원주택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대학교 기숙사 또는 민간임대주택의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 중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역시 학기 중 주당 20시간의 제한이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졸업 후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역시 보장하고 있다. 다만, 영국의 경우 졸업 후 취업(PSW) 비자가 2012년에 폐지되었다가 2020년에 재도입되었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영국과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이 주는 시사점으로, 첫째,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일관성 있는 장기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영국과 호주 모두 각 사회에서의 외국인 유학생 또는 국제교육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관련 정책계획을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발표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1999년 ‘국제교육 이니셔티브’(PMI)를 시작으로, 2006년 ‘두 번째 국제교육 이니셔티브’(PMI2), 그리고 2013년 ‘국제교육 전략’(IES)을 차례로 발표하면서,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포괄하는 국제교육정책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호주의 경우 2011년 국제교육자문위

원회(IEAC)의 설립을 통해 국제교육 분야 장기전략 수립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2016년 ‘국제교육 국가전략 2025’라는 10년 장기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유학생 또는 국제(고등)교육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면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성과 및 취업 가능성 등을 향상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고등교육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인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앞의 시사점과 관련하여,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성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호주는 2011년 나이트 리뷰를 통해 유학생 정책에 관한 전면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교육정책에 국한되는 것으로 규정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이전까지 전제하였던 노동시장정책과 이민(또는 인구)정책 등과의 연계성을 내려놓고, 호주 고등교육기관의 질적 개선과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성장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영국 역시 2012년 ‘졸업 후 취업’ 비자의 폐지를 통해 비슷한 정책변화를 보여준 바 있다. 그러나 이상의 영국과 호주 사례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의 (장기)이민 가능성을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외국인 유학생 또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외국인 유학생의 성격이 한국에서 교육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하는 대상인지 혹은 한국 사회의 잠재적 정주자(이민자)인지,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성격이 고등교육정책인지 혹은 이민(또는 인구)정책인지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다차원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주된 성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한 이후에야 비로소 일관성 있는 장기 정책계획의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의 사회복지에 관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최근 영국과 호주 사례 모두에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제한조치가 점차 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2000년에 제정된 외국인 유학생 교육서비스법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이 복지 및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right)를 명시하였다는 점이다. 여전히 권리의 보장이 추상적이고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의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그리고 정당한 비용을 지불한 외국인 유학생이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합당한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사회보장에 관한 효과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해당 사회보장의 법·제도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의 불충분한 이해는 외국인 유학생의 실제 접근·이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기 중 근로시간 제한 조건의 위반과 관련하여, 외국인 유학생이 종종 고용주들에게 착취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이 어떤 보건의료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지, 어떤 주거 서비스를 이용 가능한지, 그리고 경제활동에 관한 어떤 권리가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외국인 유학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그리고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5장

양적 분석

: 아시아 유학생의 실태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분석 결과

제3절 소결 및 정책제언

제 5 장 양적 분석: 아시아 유학생의 실태

제1절 조사 개요

이번 조사는 조사업체에 의뢰하여 2021년 7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8주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번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업체가 연락한 대학교의 적극적인 협조와 유학생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총 752명이 참가하여 조사 완료되었다. 최종적으로는 700명만의 유효 응답을 수집하였다.

1. 조사 대상 선정

이번 조사 대상은 한국에 거주하며 대학교 이상의 정규과정에서 수학하고 있는 아시아 출신 유학생이다.³⁸⁾ 유학생 중, 한국에 단기간 머무는 어학연수생과 교환학생, 그리고 한국 정부로부터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전액 지원받는 정부장학생(GKS)은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이들이 한국에 머무는 기간이 정규과정에 등록된 학생보다 짧거나, 한국 정부로부터 전액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자비 학생들에 비해 한국에서 겪은 경험치가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유학생 정책의 대상자로 보통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38) 조사 개요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응답자를 '아시아 유학생'이라고 반복하여 지칭하지 않은 것은 보고서의 가독성을 위함이다. 이 장에서 설명하는 유학생은 모두 '아시아 유학생'을 지칭함을 미리 밝힌다.

2020년 기준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고등교육 통계편’을 참고하여, 표집틀을 구성하여 표본추출을 진행하였다. 국적은 유학생들의 출신 지역 중 다수를 차지하는 아시아 출신으로 한정하고, 아시아 지역 중에서 상위 2개국인 중국, 베트남과 더불어 기타 아시아권³⁹⁾ 출신으로 한정하였다. 모집단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역은 서울, 광역시도(경기, 부산, 대전), 그리고 시군지역(충남, 전북)을 5:3:2로 맞추었다. 성비는 약 5:5로 조정하여 진행하였다. 학위 과정은 학부생 그리고 대학원생(석사와 박사 포함)을 7:3 비율로 나누었다. 종합해 보면, 이번 조사는 총 500명을 대상으로 하여, 표본은 국적, 지역, 성별 그리고 학위 과정을 분리해서 비례 할당했다.

2. 조사표 개발

조사표 개발 과정은 총 3단계를 거쳐 진행하였다([그림 5-1] 참조). 첫 단계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설문조사 문항을 수집 및 선별하였다. 참고한 조사는 아래 <표 5-1>과 같다. 유학생 관련 설문조사 문항과 더불어 이주민 연구에서 활용된 설문조사 문항을 찾아보았다. 기존 조사에서 공통으로 활용된 문항은 응답자의 일반사항, 유학 동기, 일상(학교)생활, 경제활동상태, 취업 준비, 진로, 직장 생활, 노동시장 인식, 주거, 건강, 한국인 교류 등이다. 그렇지만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유학생의 주거와 건강에 대해 물어보는 문항은 찾을 수 없었다. 반면, 저숙련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주거와 건강 관련 문항은 필수적으로 다뤄졌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에 대한

39) 이번 연구에서 기타 아시아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인도, 싱가포르, 미얀마, 몽골,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일본,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이란, 이라크, 투르크메니스탄, 중국(대만, 홍콩, 마카오), 터키 등을 포함한다.

공백을 메우기 위해, 유학생이 청년 집단에 속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작년에 수행된 정세정 외(2020) ‘청년층 일과 생활실태조사’ 연구에서 활용된 주거 및 건강 문항을 참고하였다. 그 결과, 유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조사문항 개발을 1차적으로 완료하였다.

〈표 5-1〉 유학생 및 이주민 대상 실태조사 참고문헌

구분	저자 및 연도	제목
유학생	민숙원 외 (2020)	대학원 학위 과정 외국인 유학생의 진로선호 탐색과 인적자원 활용 방안 연구
	오정은 외 (2013)	우수 유학생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장단기 전략 연구
	임태경 외 (2019)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방안 연구
이주민	통계청 (2017)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中 유학생 부가조사
	최혜지 외 (2012)	국내 체류 이주민의 사회복지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김기태 외 (2020)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정기선 외 (2013)	2013년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외국인의 취업 및 사회생활 中 방문취업제 외국인적응도 생활실태조사
	김승권 외 (2009)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 필자 작성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개발된 조사 문항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수정 보완 사항을 논의하였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당사자와 졸업생을 직접 만나 전체적인 설문지 응답 소요시간, 이해하기 어렵거나 수정이 필요한 문항, 삭제가 필요한 문항, 아니면 유학생의 실정에 맞지 않는 문항 등 포괄적으로 이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차례 연구진 회의를 거쳐 설문조사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수정 보완된 설문지를 번역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하였다. 또한, 중국어 및 영어가 모국어인 원어민이

면서 한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는 자에게 역번역(back translation), 즉 번역문을 원래의 한국어 텍스트로 다시 번역해주도록 부탁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어에서 중국어 그리고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된 텍스트의 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잘못 번역되었거나 곡해할 수 있는 내용들은 원래의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율하였다. 이후, 영어 및 중국어로 번역된 조사지를 유학생에게 보여주고 의견을 구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연구진 회의를 통해, 조사표를 최종 확정하였다.

[그림 5-1]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조사표 개발 과정



자료: 필자 작성

조사 내용은 아래 <표 5-2>와 같다. 이번 연구는 경제활동 상태(소득·생활비), 주거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문항과 더불어, 그 외 대상자 선정질문,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 유학생화에 대한 영역을 선정하여 조사표를 구성하였다.

〈표 5-2〉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조사 내용

조사 영역	조사 항목
대상자 선정 질문	국적, 지역, 입학 연도
응답자 특성	성별, 연령, 최초 입국 연도, 한국 거주기간, 학교 소재지, 학위 과정, 전공계열
유학생할	유학 목적, 유학생할 중 어려운 점, 필요한 지원, 유학생할에 대한 만족도, 졸업 후 계획
경제활동상태	한국에서의 경제활동 경험 유무, 직장 및 아르바이트 경력, 불이익 경험 여부,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유학생이 구직 활동 시 겪는 어려움, 일자리 관련한 문제점, 취업 관련 절차에 대한 인지 여부
소득·생활비	6개월 간 지출 비용, 학비와 생활비 조달 방식, 생활비 부족 경험 여부 및 조달 방법
주거	주거 형태, 소개받은 경로, 어려운 점, 주거비용, 경제적 부담 정도, 거주하는 집에 대한 만족도
건강	현 건강상태, 아플 때 대처방법, 병원 미이용 이유, 한국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의료기관 이용 시 어려운 점, 건강보험 가입 여부 및 미가입 이유, 건강보험 필요 정도,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 정도, 우울감 관련 체감 정도, 심리적 어려움 관련 전문가 상담 경험 여부, 어려움 경험 시 상담 대상, 친밀 정도별 해당 인원수

자료: 필자 작성

3. 한계점

이번 연구는 모집단과 표본의 분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표본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로는 조사 시작 전 할당 과정에서 무작위 확률 표집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이주민 통계가 항시 가지고 있는 대표성과 표본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일부 표본 비율을 조정하였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연구에서는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분석자료집-고등교육통계편’을 참고하였다. 이 외에도 국내에는 유학생을 포함한 여러 통계자료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통계청과 법무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서도 유학생을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3년마다 부가조사의 형태로 유학생을 심도 있게 다루기도 한다. 또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내 석

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와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조사'도 유학생을 포함하여 조사하지만, 현재 해당 조사는 비공개 자료이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조사하는 '서울서베이'도 유학생을 포함하여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 조사별 외국인 혹은 유학생을 정의하는 기준이 다르고, 사용하는 정의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이나 그에 따른 조사 설계 및 조사 방식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장주영, 허정원, 2020, p.34). 그러다 보니 조사 이용자인 연구자 입장에서는 연구 목적에 맞지 않는 통계를 사용하거나,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류 등을 범하는 우를 초래할 수 있다(장주영, 허정원, 2020, p.34). 따라서 이번 조사는 대표성에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4. 응답자 특성

응답자의 주요 특성은 아래 <표 5-3>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44.3%, 여성이 55.7%로 여성이 더 많다. 연령대는 19-24세가 59.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25-29세는 29.4%, 그리고 30세 이상은 10.7% 순이었다. 국적의 경우, 중국이 49.7%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였고, 기타 아시아 국가들이 26.6% 그리고 베트남이 23.7%였다. 한국 거주기간은 2년 미만이 29.7%, 2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이 21.9%, 3년 이상에서 4년 미만이 19%, 4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이 17.1% 그리고 5년 이상이 12.3%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거주 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응답이 62.7%, 비수도권 지역은 37.3%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거주 지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이 44.1%로 가장 많았고, 경기, 부산, 대전은 34.4%, 그리고 충남 및 전북이 21.4% 순이었다. 수도권에 위치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64.9%로 가장 많았고, 비수도권은 35.1%였다. 학위 과정

은 (전문) 학사가 62.9%로 많았고, 대학원은 37.1%였다. 전공계열의 경우, 인문·사회과학이 절반을 넘는 51.7%였고, 자연과학, 공학 등 이공계열이 42.3%, 그리고 예체능은 6%였다.

〈표 5-3〉 조사 응답자의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전체		700	100
성별	남성	310	44.3
	여성	390	55.7
연령대	19~24	419	59.9
	25~29	206	29.4
	30세 이상	75	10.7
국적	중국	348	49.7
	베트남	166	23.7
	기타 아시아	186	26.6
한국 거주기간	2년 미만	208	29.7
	2년 이상~3년 미만	153	21.9
	3년 이상~4년 미만	133	19.0
	4년 이상~5년 미만	120	17.1
	5년 이상	86	12.3
거주 지역	수도권	439	62.7
	비수도권	261	37.3
	서울	309	44.1
	경기, 부산, 대전	241	34.4
	충남, 전북	150	21.4
학교 지역	수도권	454	64.9
	비수도권	246	35.1
학위 과정	(전문) 학사	440	62.9
	대학원	260	37.1
전공계열	인문, 사회과학	362	51.7
	자연과학, 공학 등 ⁴⁰⁾	296	42.3
	예체능	42	6.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제2절 분석 결과

1. 유학생할 및 주거실태

가. 유학생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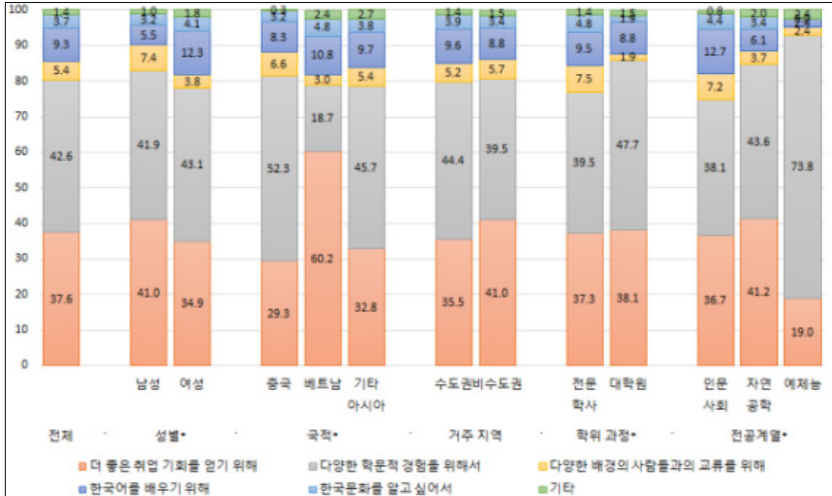
유학생의 실태를 조사함에 있어 가장 먼저 파악한 정보는 유학의 목적과 만족도 등 전반적인 유학생할에 대한 내용이다. 먼저 한국으로 유학을 온 목적(1순위)을 조사한 결과 ‘다양한 학문적 경험을 위해서’ 유학왔다는 응답이 42.6%로 가장 많았고, ‘더 좋은 취업 기회를 얻기 위해’서가 37.6%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에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9.3%),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의 교류를 위해’(5.4%) 등의 목적이 있었으나,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목적은 학업과 취업이라는 목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취업 기회를 얻기 위함이라는 응답을 더 많이 했고, 반대로 학문적 경험을 얻기 위함이라고 응답한 유학생은 여성이 좀 더 많았다. 국적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였는데, 중국과 기타 아시아 국가의 유학생은 학문적 경험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취업 경험은 30% 수준을 보였으나, 베트남 유학생은 60.2%가 취업 기회를 얻기 위해서라고 응답하고 18.7%가 학문적 경험이라고 응답하였다. 아시아 국가의 유학생 중 베트남에서 유학을 온 학생들은 취업 기회를 얻기 위한 목적이 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위 과정에 따른 비교를 해보면 대학원의 경우 학사 과정보다 학문적 경험을 위한 목적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위 과정의 성격상 자연스러운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전공 분야별로 보면 예체능 계열이 인문사회·자연공학 등에 비해 학문적 관심이 더 특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40) 자연과학, 의학, 약학 그리고 공학 등 이공계열을 포함함.

[그림 5-2] 한국으로 유학을 온 목적(1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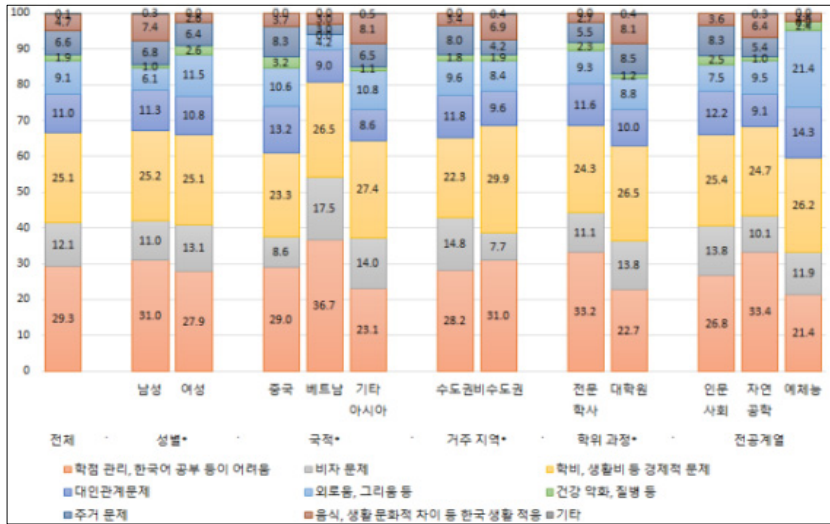
주: *표시된 변수는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한국에서 유학생생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학점 관리 및 한국어 공부의 어려움(29.3%), 학비·생활비 등 경제적 문제(25.1%), 비자 문제(12.1%), 대인관계 문제(11.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남성은 여성에 비해 학업 문제를 좀 더 많이 고민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외로움, 그리움 등의 문제를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으로 비교해보면 베트남 학생들이 다른 아시아 국가 유학생에 비해 학업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있었고, 중국 유학생에 비해 베트남 및 기타 아시아 유학생이 비자 문제로 인한 고충도 눈에 띄게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경제적 문제는 국가별 차이가 있기는 했으나 두드러지지 않았고, 유학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 학생들이 대인관계 문제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비수도권 유학생이 수도권에 비해 학업 문

제와 경제적 문제를 더욱 집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 문제는 대학원에 비해 학사과정의 유학생이 훨씬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전공계열별로 비교해보면 자연공학 계열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절감하고 있었고, 예체능 계열 학생들은 외로움, 그리움 등의 문제를 타 전공계열에 비해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그림 5-3] 유학(일상)생활 중 어려운 점(1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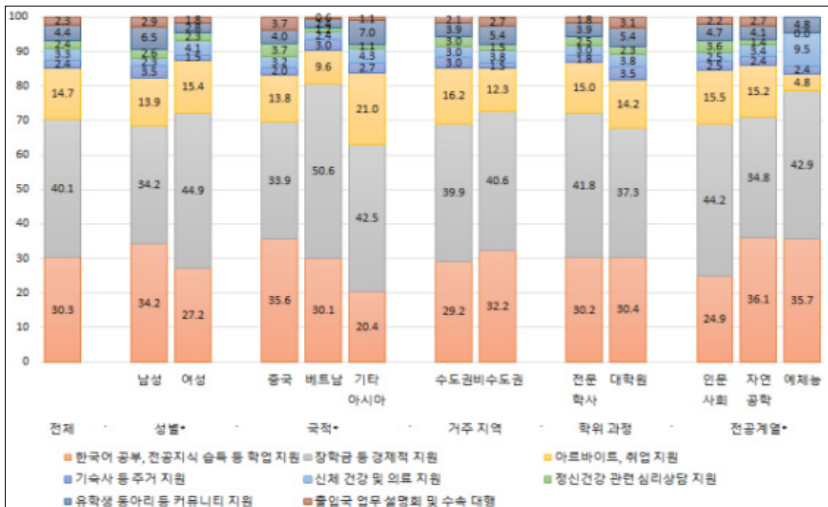
주: *표시된 변수는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유학생의 어려움을 파악한 뒤에는 현재 가장 받고 싶은 지원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장학금 등 경제적 지원(40.1%), 두 번째는 학업 지원(30.3%), 세 번째는 아르바이트 및 취업 지원(14.7%)으로 나타나 학업 관리와 경제적 문제에 따른 욕구가 그대로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 구분하면 학업 지원은 여성보다 남성이, 경제적 지원은 남성보다 여성이 좀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으며, 국적별로는 베트남 학생들이 경제적 지원을 원하는 비율이 50.6%로 눈에 띄게 높았다. 베트남 유학생은 60% 이상이 유학 목적을 취업 기회라고 응답한 만큼,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 또한 그만큼 높다고 볼 수 있다. 받고 싶은 지원에 있어서는 거주 지역이나 학위 과정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전공계열로 구분해 보면 인문사회 계열의 유학생이 상대적으로 학업 지원에 대한 욕구는 낮고, 경제적 지원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림 5-4] 현재 가장 받고 싶은 지원(1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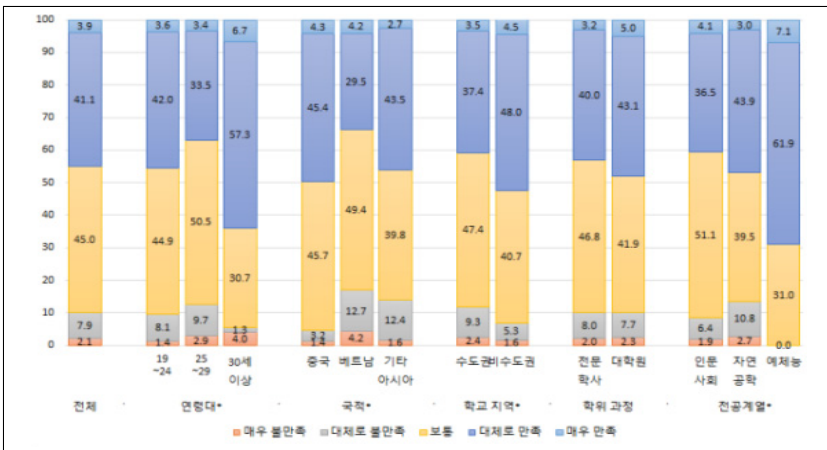
주: *표시된 변수는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한국 유학생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불만족(매우 불만족+대체로 불만족) 10.0%, 보통 45.0%, 만족(대체로 만족+매우 만족) 45.0%로 대부분의 유학생은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생활 만족도에 있어서는 연령대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30세 이상은 64.0%가 유학생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반면 25~29세는 36.9%, 19~24세는 45.0%가 유학생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30세 이상은 대부분이 박사과정이어서 학업과 생활이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적에 따라서는 중국과 기타 아시아 국가에서 만족한다는 비율이 50%로 조사되었으나 베트남은 33.7%가 만족으로 응답하여, 베트남 유학생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으로 구분하면 수도권(40.9%)에 비해 비수도권(52.5%)의 유학생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전공 계열로 구분해보면 예체능(69.0%), 자연공학(46.9%), 인문사회(40.6%)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그림 5-5] 한국 유학생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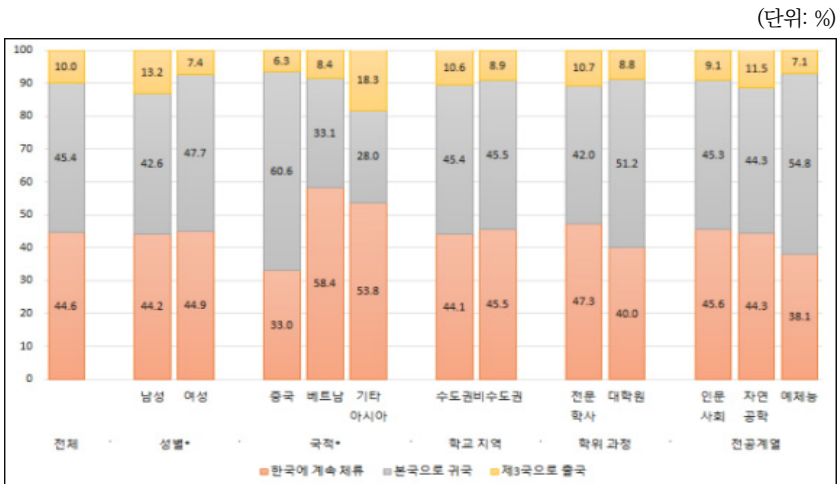


주: *표시된 변수는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학교를 졸업한 후 유학생의 44.6%는 한국에 계속 체류, 45.5%는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그 비율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졸업

후 계획은 국적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중국 유학생의 경우 60.6%가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응답한 반면, 베트남 유학생은 33.1%, 기타 아시아 국가는 28.0% 순으로 나타나 국적별로 유학 목적과 그 이후의 계획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학위 과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학부생보다 대학원생이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그림 5-6] 학교 졸업 후 계획



주: *표시된 변수는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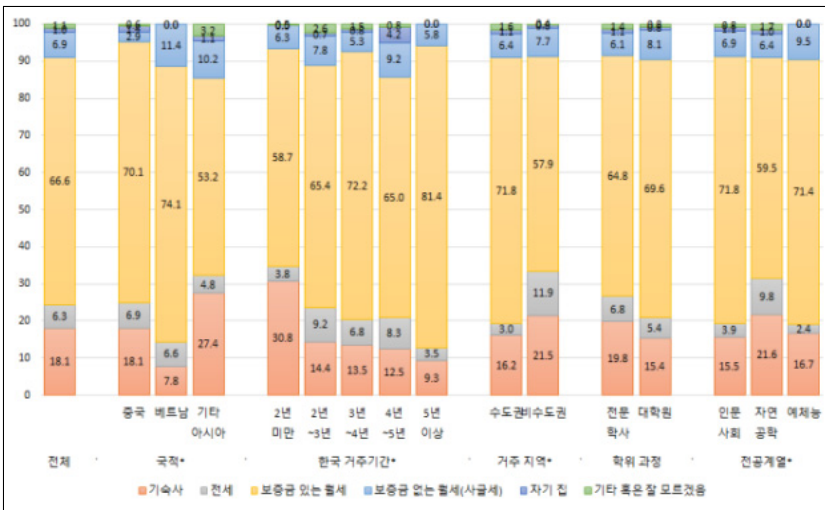
나. 주거

다음으로는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실태와 주거만족도 등을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에 응답한 외국인 유학생 중 66.6%는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은 18.1%에 불과하였다. 국적별로 구분해보면 중국과 베트남 유학생은 70% 이상이 보증금 있

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반면, 기타 아시아는 보증금 있는 월세가 53.2%, 기숙사가 27.4%로 기숙사 이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거주기간으로 비교해보면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오래될수록 보증금 있는 월세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는 유학생이 유학생생활 초기에는 기숙사를 이용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보증금 있는 월세를 더 선호하게 됨을 의미한다. 거주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는데 수도권은 75% 이상이 월세에 거주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월세 이용률이 낮고 기숙사를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그 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보이고 있으나 유학생은 전반적으로 월세를 부담하는 주거 형태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림 5-7]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주거 형태

(단위: %)



주: *표시된 변수는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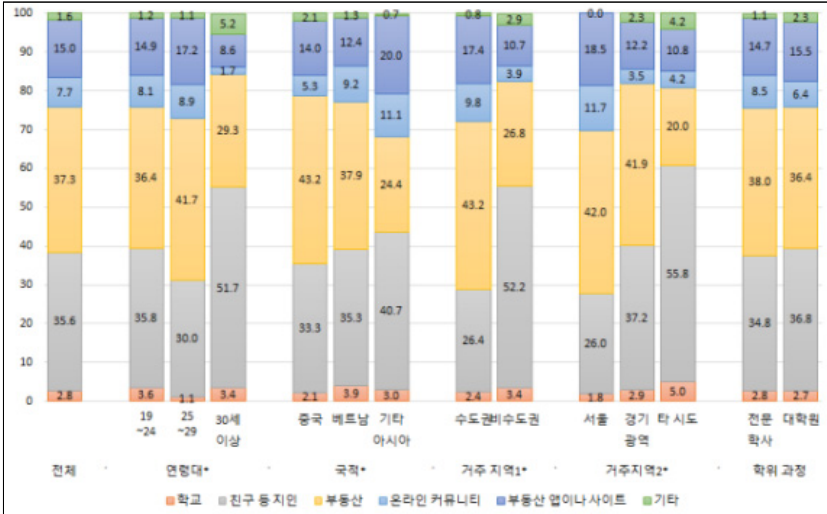
그렇다면 외국인 유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주거 형태를 갖추기 위하여 어떤 경로를 이용할까?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한다는 응답(37.3%)과 친구 등 지인을 통한다는 응답(35.6%)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이 두 가지 경로가 유학생이 집을 구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부동산 중개 앱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거나(15.0%),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다는 경우(7.7%)도 조사되었다.

집을 구하는 경로는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30세 이전까지는 부동산중개업소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그다음이 친구 등 지인을 통했으며, 부동산 중개 앱이나 사이트를 활용하는 경우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30세 이상의 유학생은 절반 이상이 친구 등 지인을 통해 집을 구하고 있었고,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거나 온라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그 이전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 유학생은 부동산중개업소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반면, 베트남 유학생은 부동산중개업소와 친구 등 지인을 비슷하게 활용하고 있었고, 기타 아시아 국가의 유학생은 친구 등 지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주거와 관련된 응답은 지역별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먼저 수도권 여부로 구분해보면,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고, 특히 경기 및 광역시를 벗어난 타 시도에서는 유학생의 절반 이상이 친구 등 지인을 통해서 집을 구하고 있었다. 서울은 타 지역에 비해 부동산 중개 앱이나 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비율 또한 높았는데, 지방 도시에 비해 서울에서는 집을 구할 수 있는 경로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5-8]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소개 경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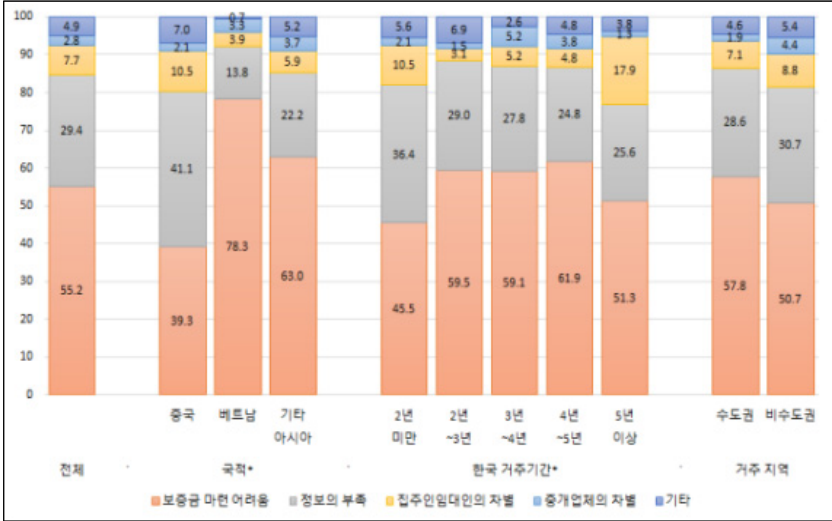
주: *표시된 변수는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집을 구할 때 경험한 어려움으로는 보증금 마련이 5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정보의 부족이 29.4%로 그 뒤를 이었다. 국적별로 구분해보면 베트남 유학생은 매우 높은 비율(78.3%)로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중국 유학생은 정보의 부족(41.1%)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했다. 한국 거주기간으로 구분해보면 보증금 마련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은 공통적이나, 5년 이상 거주한 유학생이 집주인·임대인의 차별을 어려움으로 꼽은 비율이 높은 것(17.9%)이 주목할 만하다.⁴¹⁾ 지역에 따라서는 집을 구하는 데 느끼는 어려움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1)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국내 외국인 유학생 5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담회(2021. 9. 30.)에서는 모든 참여자가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으로서의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주거계약 당시에는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으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외국인을 차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설명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림 5-9] 집을 찾을 때 가장 큰 어려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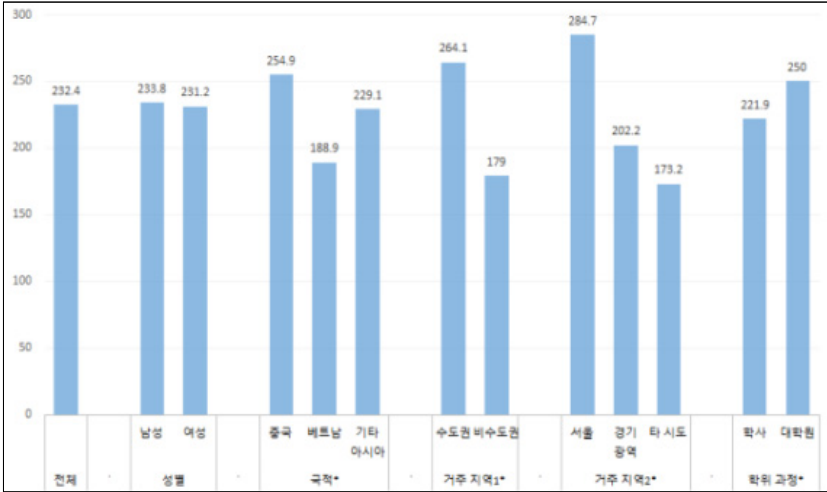


주: *표시된 변수는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유학생의 주거비 지출 수준을 조사한 결과 한 학기 기준(6개월)으로는 평균 약 232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38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국적별로 구분하면 중국 유학생이 약 254만 원, 기타 아시아 약 229만 원, 베트남 188만 원으로 베트남 유학생의 주거 실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아무래도 주거비에서는 지역별 격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수도권은 평균 약 264만 원인 반면 비수도권은 179만 원으로 응답하였으며, 서울-경기/광역시-타 시도로 구분하면 그 격차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학위 과정으로 구분해보아도 대학원생이 학부생보다 더 많은 주거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0] 한 학기(6개월) 기준 주거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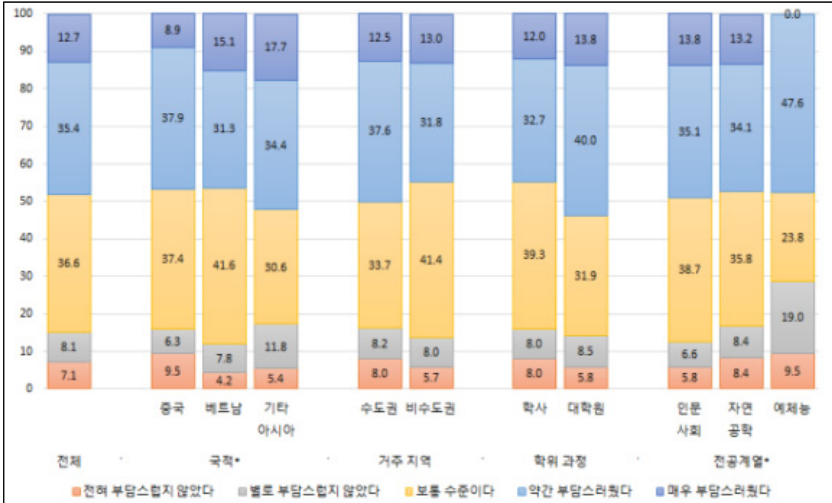


주: *표시된 변수는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이러한 주거비 지출 수준을 유학생이 어느 정도로 부담스러워 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부담스럽지 않다(매우 부담스럽지 않다+별로 부담스럽지 않다), 보통 수준이다, 부담스럽다(약간 부담스럽다+매우 부담스럽다)로 척도를 구분해보면 각각 15.2%, 36.6%, 48.2%로, 유학생의 절반 가까이가 주거비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 정도는 국적별, 전공계열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났다. 먼저 국적별로는 중국·베트남보다 기타 아시아 국가의 유학생이, 지역별로는 비수도권보다 수도권 유학생이 주거비를 더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었다. 전공계열별로는 인문사회, 자연공학 학생들은 주거비 부담을 비슷하게 느끼고 있었으나, 예체능 계열의 학생들은 주거비가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아 예체능 전공 유학생의 경제적 수준이 타 전공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림 5-11] 최근 1년간 주거비 지출의 경제적인 부담스러움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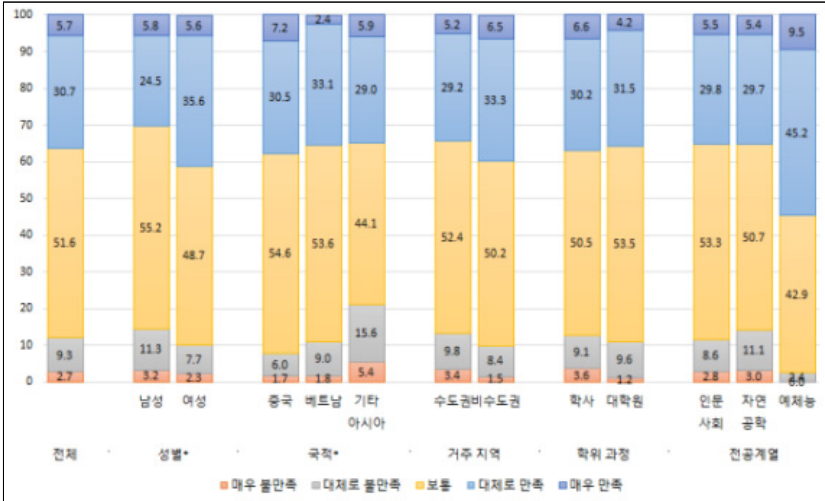


주: *표시된 변수는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마지막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2.0%가 불만족(매우 불만족+대체로 불만족), 51.6%가 보통, 36.4%가 만족(대체로 만족+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하여 전반적인 만족도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국적별로는 만족하는 수준이 비슷했으나 기타 아시아 국가의 유학생이 주거 상태에 대해 불만족하는 비율이 다른 국적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그 외에 주거 만족도에 있어서 지역별, 학위 과정별, 전공계열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림 5-12]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단위: %)



주: *표시된 변수는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2. 경제 상황 및 활동

가. 노동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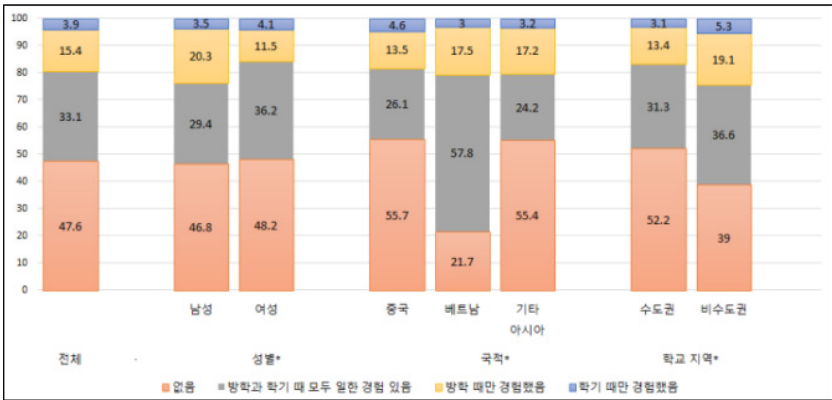
유학생에게 한국생활에서 겪는 애로 사항을 물었을 때, 학비 및 생활비 등 경제적 문제가 한국어 공부 어려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학점 관리 및 한국어 공부였다. 유학생 애로사항의 1, 2순위를 합하면, 학비, 생활비 등의 문제는 4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참고로 학점관리 및 한국어 공부 등의 어려움은 2순위까지 합했을 때는 42.7%로 높게 나왔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한국과 본국이 경제적인 수준이 크게 다른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유학생이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학비나 생활비가 부족한 유학생들은 한국의 노동시장의 주변부에 진출한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들에게 한국의 노동시장은 진입장벽이 낮지 않다. 최근 1년 동안 한국에서 직장생활이나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을 물었을 때, 방학과 학기 모두 일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33.1%였다. 반면, 방학 혹은 학기 중에 일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52.4%로 절반을 넘었다. 반면 전혀 없다는 비율도 절반에 가까운 47.6%였다.

국가별 차이가 컸다. 중국 학생이 일한 경험 비율이 44.3%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베트남 학생의 경우 78.3%가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림 5-13] 유학생 유형별 취업 경험 유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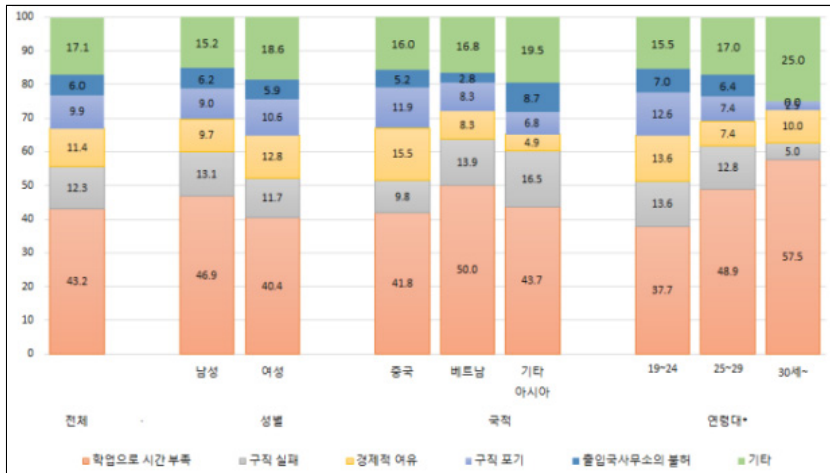
주: *표시된 변수는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경제력 격차가 더 큰 점을 고려하면, 예상 가능한 결과였다. 다만, 중국, 베트남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국가 출신 유학생도 일한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55.4%로 중국과 유사했다. 다른 국적에 비해서도 베트남 학생들의 취업 경험의 비율이 높은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유학의 동기와의 관련성으로 보인다. 한국으로 유학을 온 이유를

물었을 때, 중국(52.3%)과 다른 아시아 국적(45.7%)에서 다수가 '다양한 학문적 경험을 위해서'라고 답한 반면, 베트남계 학생들은 '더 좋은 취업 기회를 얻기 위해'라고 답한 비율이 60.2%였다. 일 경험의 측면에서는 남/여, 수도권/비수도권 주재, 한국 거주기간이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났고, 다른 범주에서는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물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있다. 유학생 가운데 상당수는 복잡한 취업 신고 절차 등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수가 미등록 노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손일연, 전환욱, 조아라, 최지현, 2020.01.26.).

[그림 5-14] 취업 경험이 없는 이유

(단위: %)



주: *표시된 변수는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이들은 설문과정에서 취업 경험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혹은 거짓으로 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른바 '불법'의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연구 수행과정에서 연구진과의 공개 인터뷰에 참

가한 5명의 외국인 유학생 및 질적 연구를 수행한 국내 연구자는 이번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자료 가운데 나타난 취업 경험 비율이 예상보다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설문 과정은 유학생들의 미등록노동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이번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동시에, 이 같은 적지 않은 수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노동관계 규율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했다.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유학생들에 한정해서, 일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경제적으로 필요성이 있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은 11.4%에 불과했고, 학업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43.2%)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구직활동을 했으나 일자리를 얻지 못했거나(12.3%), 구직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시도하지 않았거나(9.9%), 출입국 사무소의 허가를 받지 못해서(6.0%) 등으로 답이 나왔다. 다수의 유학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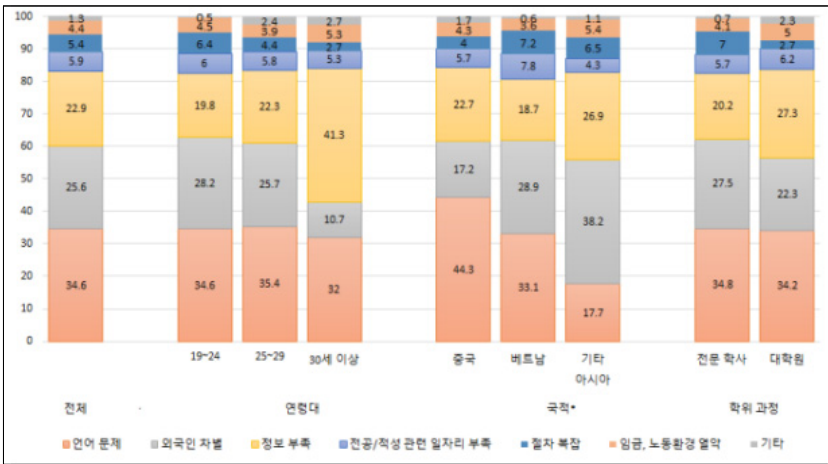
취업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유일하게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 유형은 연령 집단이었다. 10대 및 20대 초반(37.7%)보다 30세 이상 집단(57.5%)에서 ‘학업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라는 답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30세 이상 75명 가운데 박사학위 과정이 51명으로 70%에 육박하는 점을 고려하면, 학업의 부담이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낮선 땅에서 구직은 쉽지 않다. 특히 언어 문제가 컸다. 구직 과정에서 어려움을 물었을 때, ‘한국어 문제로 일자리 잡기가 어려웠다’는 응답 비율이 34.6%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거나 차별해서(25.6%), 일자리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22.9%)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공/적성에 맞는 일자리가 적어서(5.9%), 준비 서류, 절차 등이 어

렵고 복잡해서(5.4%), 임금 수준이 낮아서(3.4%), 노동환경이 열악해서(1.0%) 등과 같은 답변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 5-15] 유학생이 구직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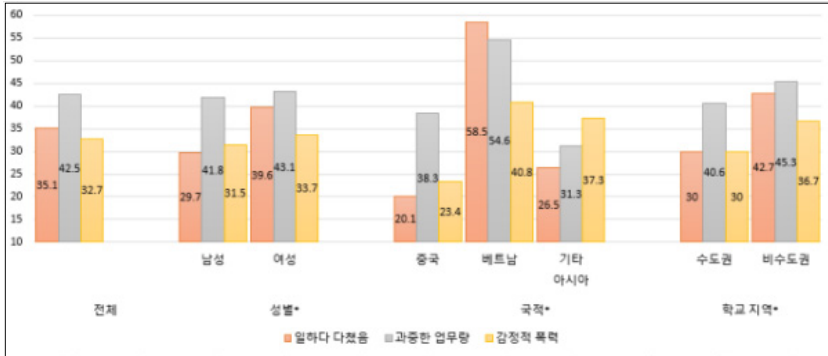
주: *표시된 변수는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즉, 외국인 유학생은 일자리를 굳이 가리지는 않았지만, 언어나 접근성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일자리 접근이 쉽지는 않았다. 주목할 만한 내용은 ‘준비 서류, 절차 등이 복잡해서’라고 답한 비율이 5.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이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의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다소 복잡한 행정 처리에 대해서는 불만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유학생과의 인터뷰 과정에서도 학생들은 출입국 관리 사무소의 허가 과정 자체가 다소 복잡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은 과정이 외국인 유학생의 노동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이 같은 부분, 즉 유학생의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와 이들의 노동권 보호의 문제도 함께 고려할 대목으로 보인다.

[그림 5-16] 일하다가 생기는 고충 유형별 경험률 I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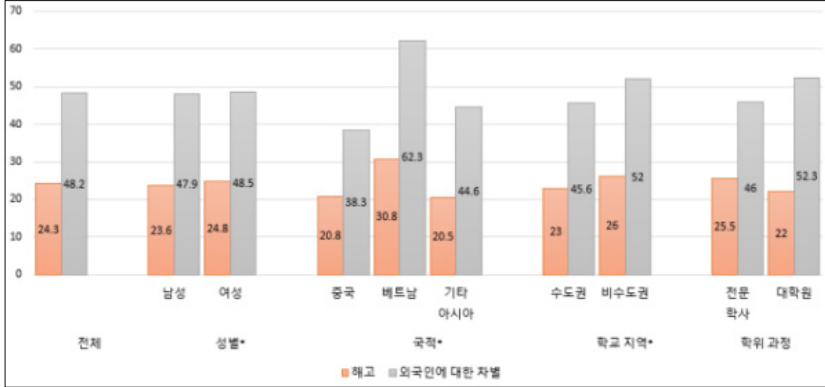
주: *표시된 변수는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지난 1년 동안 일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한 기간을 물었다. 지난 12개월 내내 일했다는 비율이 18.0%였고, 1개월 이하도 24.0%였다. 평균 5.2개월로 1년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기간에 일을 했다. 국가별 차이도 커서 중국(4.3개월), 베트남(6.6개월) 간에 차이가 났고, 학부(4.9개월), 대학원(5.8개월)에서도 차이가 났다.

유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현장은 대부분 단순노무를 하는 사업장이다. 법무부의 규정 때문이다. 유학생들이 주로 일하는 단순노무 현장의 고충이 무엇인지 물었다. 3분의 1이 넘는(35.1%) 유학생들이 일하다 다쳤다고 답했다. 베트남 (58.5%) 학생들이 다른 국적보다 일하다 다친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 앞으로 살펴보는 설문 문항에서 보겠지만, 베트남 학생들의 생활 여건이 대체로 열악했다. 일하다가 다친 경험 비율의 차이는 학교가 지역에 있는 학생들(42.7%)이 수도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30.0%)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다른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5-17] 일하다가 생기는 고충 유형별 경험률 II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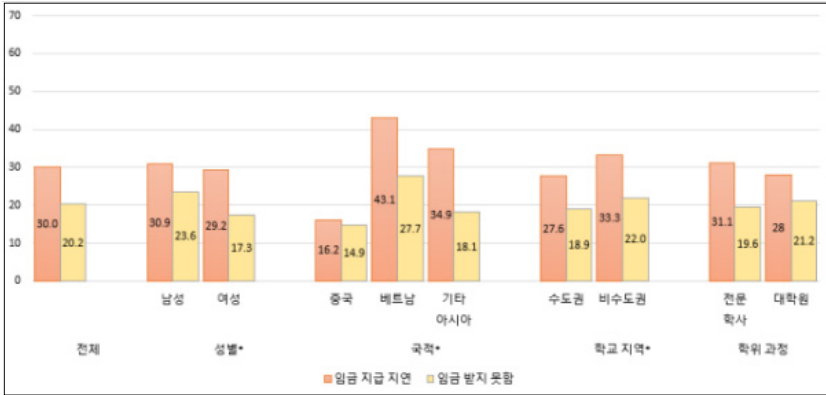
주: *표시된 변수는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유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의 업무가 주관적으로 과중했는지를 물었다. 열 명 중 네 명(42.5%)꼴로 업무가 과중하다고 답했는데, 베트남 학생(54.6%)의 비율이 높았다. 감정적인 폭력을 경험한 비율도 베트남 학생들(40.8%)에게서 높았다. 베트남 유학생이 상대적으로 궁박한 경제적인 위치에 처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업장에서 일했거나, 외견상 한국인과 차이가 많이 나는 점이 이 같은 작업환경의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차이점은 해고나 외국인에 대한 차별에서도 드러났다. 해고를 경험한 비율이 유학생 전체 집단에서는 24.3%였는데, 베트남 학생들(30.8%)의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해고 경험 비율에서 국적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다만, 외국인에 대한 차별 경험에서는 베트남 학생의 경험 비율이 62.3%로 중국인 학생(38.3%)과 다른 국적 유학생(44.6%)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림 5-18] 일하다가 생기는 고충 유형별 경험률 III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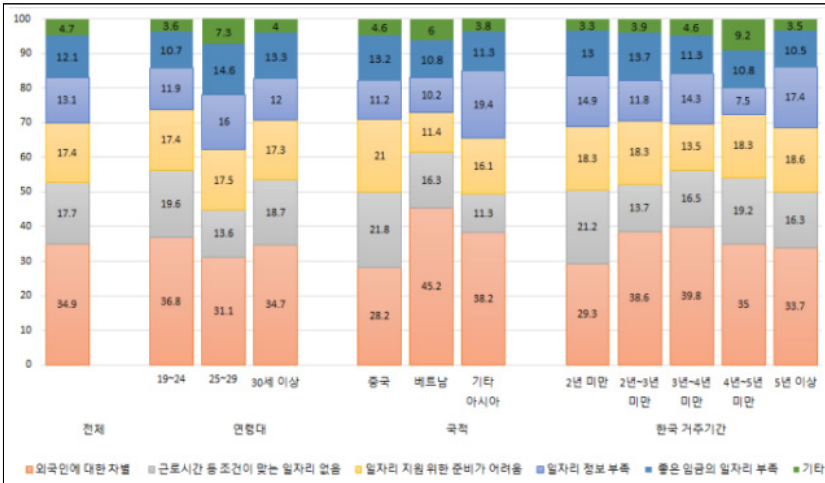
주: *표시된 변수는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사례도 보인다. 약속된 임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아예 받지 못했다는 비율이 20.2%였고, 임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뒤늦게 받았다는 비율도 30.0%에 이르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별 차이는 국적에 따라 나타났다. 베트남 학생들이 임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43.1%) 임금을 받지 못한(27.7%)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중국 학생들이 그런 경험을 한 비율은 16.2%, 14.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 같은 고충들을 물은 뒤에 한국의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5점 척도(① 매우 불만족~⑤ 매우 만족)로 물었다. 평균적으로 만족에 가까운 보통(3.15점) 수준이었다. ‘대체로 불만족’(12.0%)과 ‘매우 불만족’(4.6%)을 합한 비율은 20% 이하였다. 임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받지 못했다는 비율이 20.0%인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의외의 결과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의 최저임금제 및 본국과의 원화 가치 차이 등으로 비롯되는 한국의 높은 임금 수준이 만족도를 높이는 원인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5-19] 일자리와 관련한 문제점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집단별 만족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연령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30세 이상 집단에서 만족도가 3.49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25~29세 집단에서 만족도는 3.04였다. 19~24세에서는 3.16이었다. 한편, 한국 거주기간에 따른 일자리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거주기간별로 만족도 평균을 보면, 한국에 온 지 2년이 안 된 집단의 일자리 만족도가 3.32로 다른 집단 평균보다 높았다.

외국인 유학생이 일자리와 관련해서 가지는 불편을 물었다. 가장 크게 드는 문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34.9%)이었다. 그다음으로 ‘근로시간, 통근시간 등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음’(17.7%), ‘원하는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어렵다’(17.4%)는 비율도 높았다. 지속해서 제기되는 차별의 문제 외에 외국인 유학생이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부각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외국인 유학생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소 복잡한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법무부, 2020). 이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물었다. 다수인 80.6%의 유학생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예상 가능하게도, 한국 거주기간이 길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이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91.9%가 이를 인지했고, 2년 미만인 학생들은 75.0%만이 이를 인지했다.

나. 경제 여건

한국의 물가는 비싸다.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특히 그러하다. 지난 학기, 즉 6개월 기준으로 학비가 얼마나 들었는지를 물었다. 장학금으로 받은 액수를 포함해서 학비를 물었을 때, 평균 비용은 395.1만 원이었다. 300만 원 이하라는 비율이 23.9%였고, 600만 원 이상이라는 비율은 7.7%였다.

학비 차이는 대부분의 범주에서 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연령별로는 25~29세(419.4만 원), 체류 기간 2년 미만(418.5만 원) 집단에서 학비 부담 수준이 높았다. 전공계열 기준으로는 예체능(461.5만 원)이 자연계(400.6만 원), 인문사회계(382.9만 원)보다 현격하게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학교의 지역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의 학비 부담액(437.6만 원)이 비수도권 대학의 유학생 부담액(316.6만 원)보다 1학기당 100만 원 넘게 차이가 났다. 중국 유학생이 가장 높은 수준의 학비인 415.5만 원을 부담했고, 그다음으로 기타 아시아(390.7만 원), 베트남(357.3만 원) 순서로 높았다.

174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표 5-4〉 지난 한 학기 기준 학비 (장학금 포함)

(단위: 만 원)

구분		평균	중위값	표준오차	F
전체		395.1	389	5.2	-
연령대 만 나이	19~24	381.1	380	6.2	5.708**
	25~29	419.4	400	10.2	
	30세 이상	406.5	385	18.8	
국적	중국	415.5	400	7.8	10.434***
	베트남	357.3	360	9.7	
	기타 아시아	390.7	395	9.3	
한국 거주기간	2년 미만	418.5	407	10.5	3.555**
	2년~3년 미만	392.0	380	10.8	
	3년~4년 미만	378.5	377	11.0	
	4년~5년 미만	366.7	370	10.7	
	5년 이상	409.3	400	15.4	
거주 지역	수도권	436.9	420	6.0	128.249***
	비수도권	324.8	300	8.0	
	서울	430.6	400	6.6	23.441***
	경기/광역시	382.1	360	9.7	
	타 시도	343.0	330	11.4	
학교 지역	수도권	437.6	420	6.1	149.305***
	비수도권	316.6	300	7.4	
학위 과정	전문 학사	369.7	380	5.6	42.778***
	대학원	438.1	450	9.8	
전공계열	인문, 사회과학	382.9	380	6.5	6.640**
	자연과학, 공학 등	400.6	389	8.6	
	예체능	461.5	483	24.0	

주: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생활비는 필요 생활비와 지출 생활비를 나누어서 물었다. 한 학기(6개월)의 필요 생활비는 평균 535.4만 원이었고, 지출 생활비는 510.4만 원으로 차이가 25만 원 정도였다. 한 달에 4만 원 수준으로 연구진의 예상보다

크지는 않았다. 물론, 필요 생활비라는 개념이 다소 주관적이라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

〈표 5-5〉 지난 한 학기 생활비 (장학금 포함)

(단위: 만 원)

구분		평균	중위값	표준오차	F
전체		510.4	460	8.7	-
성별	남성	494.2	460	12.4	2.721
	여성	523.2	475	12.1	
연령대 만 나이	19~24	489.3	420	10.7	5.988**
	25~29	527.1	500	14.8	
	30세 이상	582.3	500	36.2	
국적	중국	543.3	500	12.7	9.487***
	베트남	450.2	415	15.7	
	기타 아시아	502.6	460	17.3	
거주 지역	수도권	564.4	500	11.2	70.592***
	비수도권	419.6	370	12.1	
	서울	601.6	550	13.7	49.024***
	경기/광역시	440.6	410	12.3	
	타 시도	434.7	390	16.7	
학교 지역	수도권	554.6	500	10.8	50.620***
	비수도권	428.8	380	13.5	
학위 과정	전문 학사	481.4	420	10.3	19.182***
	대학원	559.5	520	15.3	

주: *p<0.05, **p<0.01,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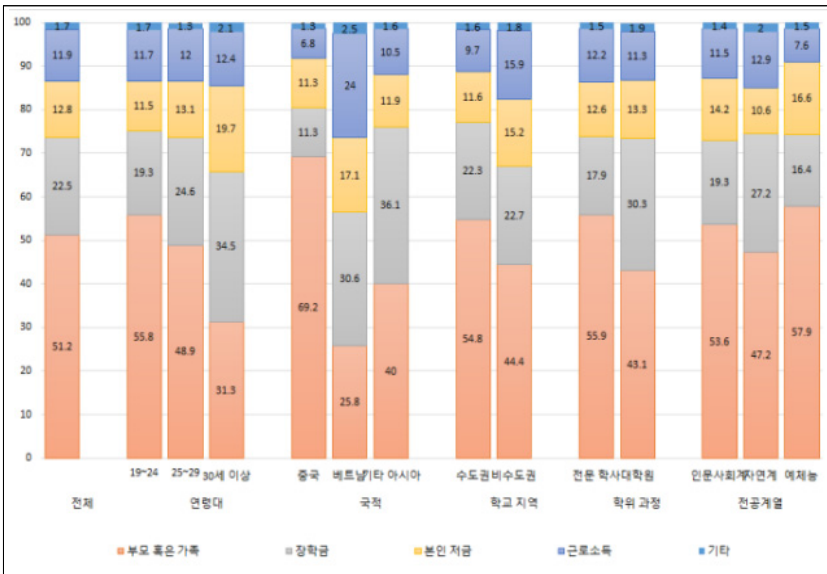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실제 지출 생활비를 보면, 성별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주에서 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거주 지역이 서울에서 가까울수록, 대학원생이 학부생보다, 생활비 지출액이 더 많았다. 중국 학생의 생활비는 6개월에 543.3만 원으로, 베트남 학생들(450.2만 원)보다 100만 원 가깝게 높았다.

또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생활비가 600만 원을 넘어선 반면, 다른 지역 유학생의 생활비는 400만 원대였다. 학생들에게 부과되는 학비 및 생활비의 부담은 적지 않다.

[그림 5-20] 생활비 및 학비 조달 방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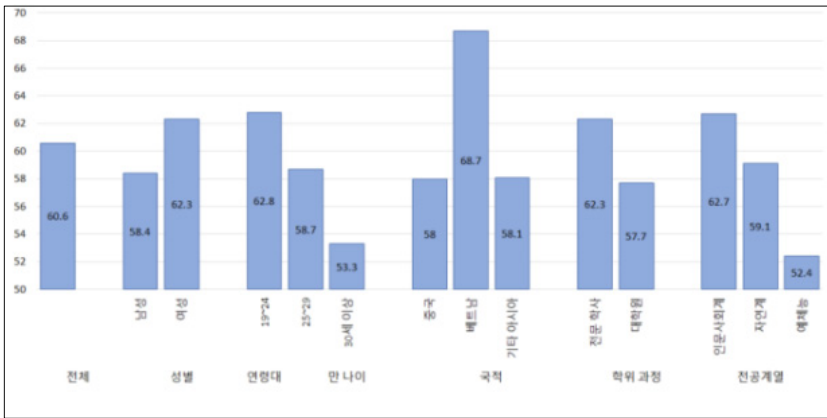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상당수는 생활비 및 학비를 장학금으로 충당한다.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6개월 동안 장학금을 소액이라도 받았다는 비율은 65.6%였다. 적지 않는 유학생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교육부(2020)의 자료에서 자비 유학생의 비율이 92.0%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들 가운데 다수의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일부라도 여타 장학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장학금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유학생의 대부분은 본국의 가족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 6개월 동안 사용한 학비 및 생활비 조달 비중을 물었다.

[그림 5-21] 생활비 모자란 경험 비율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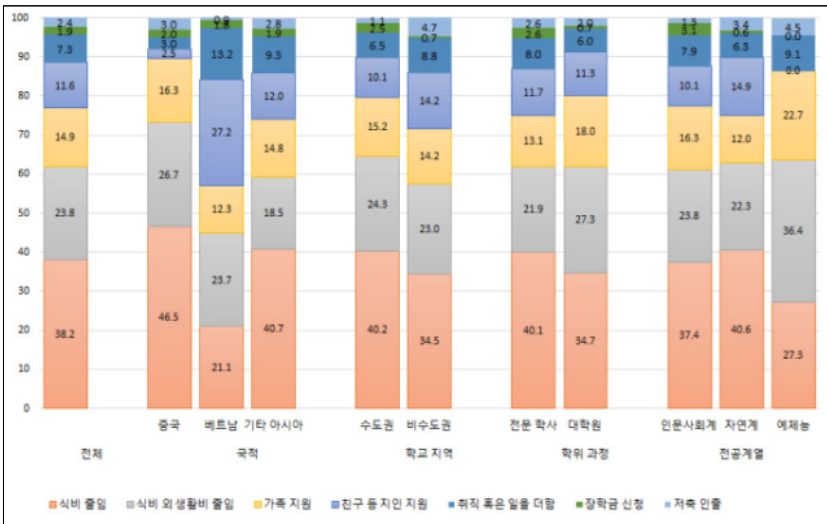
전체 학비 및 생활비 가운데 51.2%는 부모 혹은 가족(51.2%)으로부터 조달됐다. 그 밖에 장학금(22.5%), 본인의 저금(12.8%), 한국에서의 근로소득(11.9%) 등이었다. 장학금을 받는 비율이 낮지는 않았지만, 장학금이 생활비와 학비를 충당하는 데는 부족했다. 물론, 이는 내국인 대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문제라는 점도 확인해두고자 한다.

한국의 높은 생활비 및 학비 수준을 고려하면, 외국인 유학생의 상당수가 가족의 지원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는 점을 확인했다. 국적별 비율 차이는 컸다. 중국 학생들의 경우 가족이 지원하는 액수의 비율이 전체 학비 및 생활비의 69.2%인 반면, 베트남 학생들은 25.8%로 낮았다. 베트남 및 다른 국가의 학생들은 장학금의 비율이 각각 30.6%와 36.1%

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중국 및 다른 아시아 국가 학생들은 주된 경제적인 지원이 가족으로부터 비롯되는 반면, 베트남 학생들은 주된 소득원이 장학금 및 근로소득이었다.

[그림 5-22] 생활비 모자랄 때 대처 방식

(단위: %)



주: *표시된 변수는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학부생과 대학원생 사이에서도 생활비 조달 내용이 달랐다. 대학원생은 장학금으로 생활비의 30.3%를 조달한 반면, 학부생은 그 비율이 17.9%로 낮았다. 전공별 차이도 컸는데, 자연계는 장학금이 주된 학비 및 생활비 조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7.2%인 반면, 인문사회계(19.3%) 및 예체능(16.4%)에서는 비율이 낮았다.

지난 1년 동안 생활비가 모자란 경험이 있었는지를 물었다. 700명 유학생 가운데 424명(60.6%)이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 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범주는 없었다. 국적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는데, 참고삼아 언급하자면, 중국 학생(58.0%)이나 기타 국가 출신 학생(58.1%)보다 베트남(68.7%) 학생들이 생활비가 어렵다고 답변 비율이 높았다. 또, 학부생이 어려움을 겪은 비율이 62.3%로 대학원생(57.7%)보다 높았다. 전공별로는 인문사회계(62.7%), 자연계(59.1%), 예체능(52.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비 및 생활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에게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물었다. 식비를 줄였다(38.2%)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식비 외에 다른 생활비를 줄였다거나(23.8%), 가족에게 돈을 받거나(14.9%), 친구 등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11.6%), 일자리를 구하거나 하던 일의 양을 늘렸다(7.3%)는 비율 순이었다. 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는 국적이 유일했다. 중국 학생들은 주로 식비를 줄이거나(46.5%), 생활비를 줄이거나(26.7%), 가족에게 돈을 받은(16.3%) 반면, 베트남 학생들은 친구 등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27.2%), 식비 외 다른 생활비를 줄이거나(23.7%), 식비를 줄이는(21.1%) 선택을 했다. 다른 아시아 국가 학생들은 중국 학생들과 다소 유사한 방식을 택했다.

3.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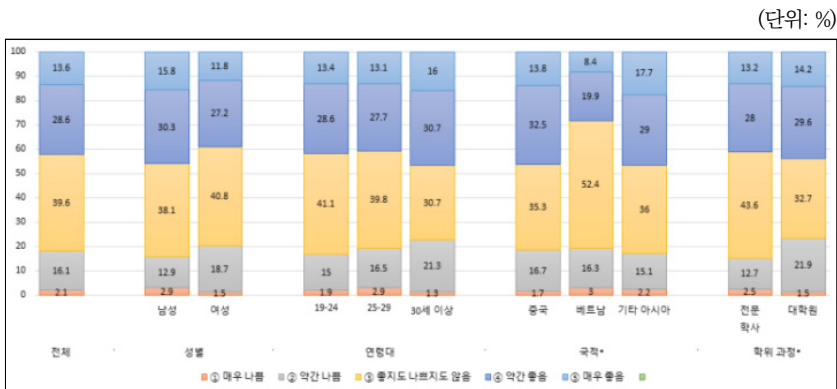
가. 신체건강

본국을 떠나 타국에서의 생활은 여러 건강 문제를 동반한다. 아무리 건강한 시기인 청년들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다. 유학생에게 전반적인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해 물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응답이 39.6%로 가장 많았고, 약간 좋음이 28.6%, 약간 나쁨이 16.1%, 매우 좋음이

13.6% 등의 순이었다. 즉, 유학생 다수가 대체로 보통 이상의 건강 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다. 유학생의 이러한 건강상태는 이들의 연령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대체로 20, 30대의 건장한 청년기에 이민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긴급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건강 관련 주의가 필요한 집단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국적과 학위 과정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모든 지역 출신이 대체로 건강하나, 기타 아시아 국가 출신(46.7%)과 중국(46.3%) 출신 유학생이 ‘좋다’고 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베트남 출신 유학생은 ‘보통’(52.4%)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절반 정도로 나타났다. 학위 과정의 경우, (전문) 학사 과정에 있는 학생이 보통 이상으로 건강한 편이었고, 반면 대학원 출신도 건강한 편이었으나 (전문) 학사 과정에 비해서는 건강이 나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그림 5-23] 전반적인 건강상태



주: *표시된 변수는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나. 병원 이용 및 접근성

다음으로, 지난 1년간 참지 못할 만큼 아프거나 다쳤을 때 주된 대처방안에 대해 물어보았다. 본 설문에 응한 유학생 가운데 병원에 갔다는 응답이 30.7%로 나타났고, 아픈 적이 없었다가 24.9%, 본국에서 가져온 약을 먹고 참았다가 22.1%, 병/의원 처방전 없이 약국에 갔다는 응답이 10.9%, 그냥 참았다가 10.7%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대, 국적, 학위 과정 그리고 한국 거주기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났다. 연령의 경우, 30세 이상 학생은 ‘병원에 갔다’라는 응답이 37.3%인 반면, 25-29세는 34.5% 그리고 19-24세는 27.7%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아픈 적이 없었다’는 응답은 19-24세가 27.4%, 25-29세가 21.8%, 그리고 30세 이상이 18.7%로 나타났다. 유학생의 연령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 빈도가 달랐다. 즉, 유학생이 나이가 들수록 병원 이용이 잦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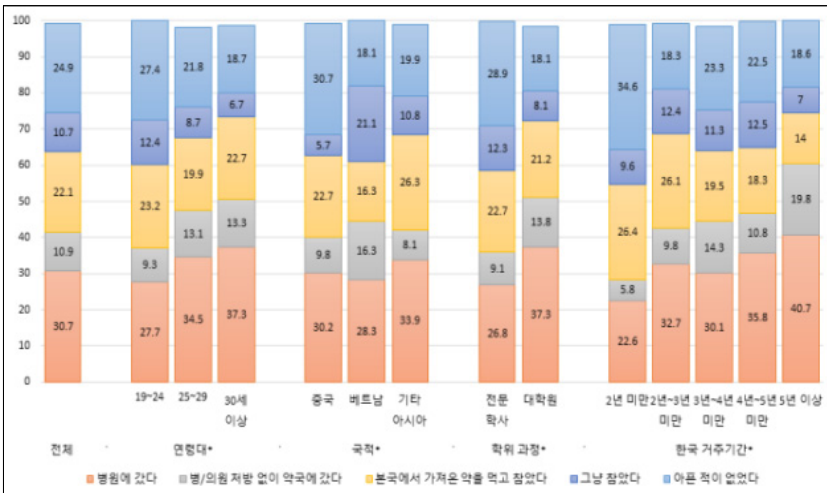
국적별로는, 베트남 유학생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주로 참았고(21.1%), 기타 아시아 출신은 본국에서 가져온 약을 먹고 참은 경우가 26.3%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중국 유학생은 아픈 적이 없었다는 응답이 30.7%였고, 병원에 갔다는 응답이 30.2%로 비등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국적 역시 의료기관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학위 과정별로 격차가 크게 났는데, 학부생의 28.9%는 아픈 적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대학원생의 37.3%는 병원에 갔다고 답하였다. 이는 학부생과 대학원생 두 그룹의 연령 차이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거주기간에 따라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 2년 미만 거주한 유학생에게 아픈 적이 없었다는 응답이 34.6%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유학생들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갔다

는 응답이 40.7%로 높았다. 유학생의 한국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외래 이용이 증가하였으며, 이들이 지출하는 의료비가 거주기간에 따라 증가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이동규·김강희·권순만, 2021). 이러한 요인으로는 유학생의 학업 스트레스가 점차 증가하고, 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유학생의 한국어가 능숙해지고, 이에 따라 관련 정보를 습득하여 의료기관 이용 빈도가 점차 증가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림 5-24] 지난 1년간 참지 못할 만큼 아프거나 다쳤을 때 주된 대처방안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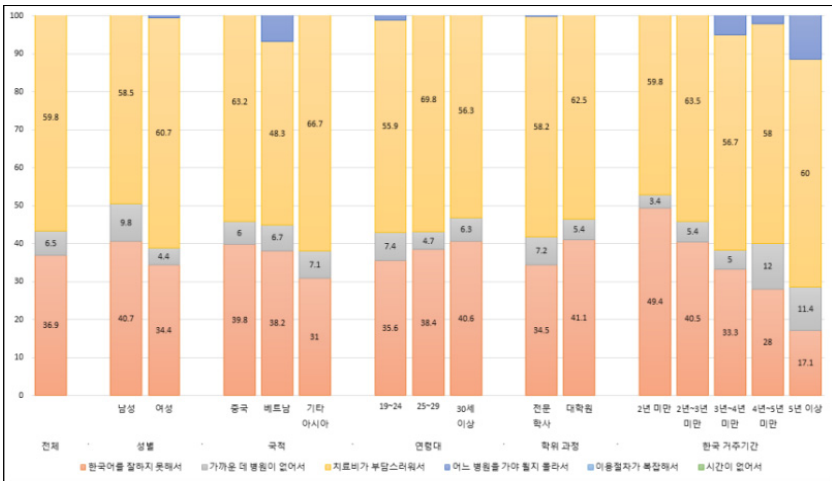


주: *표시된 변수는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유학생에게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를 물어본 결과, 치료비가 부담스러워서(59.8%),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36.9%), 어느 병원을 가야 할지 몰라서(35.9%), 이용절차가 복잡해서(24.5%), 시간이 없어서(10.8%), 가까운 데 병원이 없어서(6.5%) 그리고 보험료 체납으로 자격이 정지되어서(2.6%) 순이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면, 남성은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경우가 여성에 비해 높았고, 여성은 어느 병원을 가야 할지 몰라서라는 응답이 많은 점에 주목할 만하다. 또한 연령대가 높을수록 한국어 소통 문제로 인해 병원에 가지 못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한국 거주기간의 경우, 2년 미만은 한국어 문제와 치료비 문제가 모두 의료기관 접근의 장애 요인으로 언급되었다. 전자는 한국 거주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점차 해소되었는데, 이는 한국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어가 숙달되어 이에 대한 부담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치료비 문제는 유학생의 거주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그 비중이 점차 커졌다. 이는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의료기관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치료비 부담이 점차 커지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림 5-25]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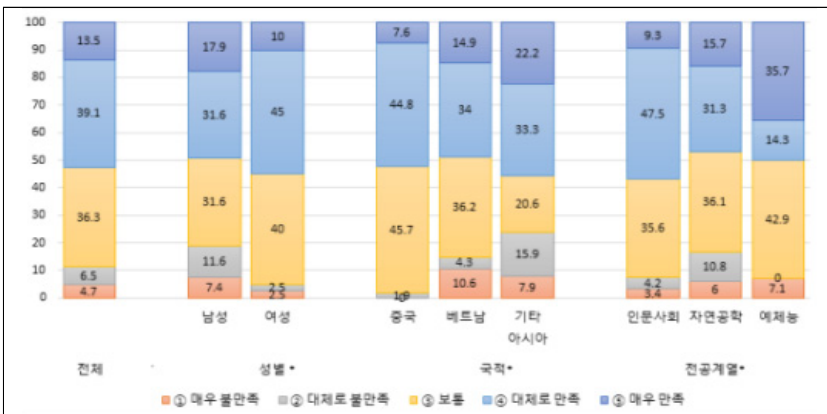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한편, 한국 의료기관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한국 의료서비스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국적, 그리고 전공계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높았다. 국적의 경우, 기타 아시아 출신 유학생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중국 그리고 베트남 출신 순이었다. 한국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유학생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즉,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의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지어 살펴본다면,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능숙한 한국어와 풍부한 의료기관 이용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점차 빈번해지고, 이로 인해 이들의 서비스 만족도도 덩달아 상승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전공계열의 경우, 인문계열 유학생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예체능 그리고 자연과학, 공학 등 이공계 계열 순이었다.

[그림 5-26] 한국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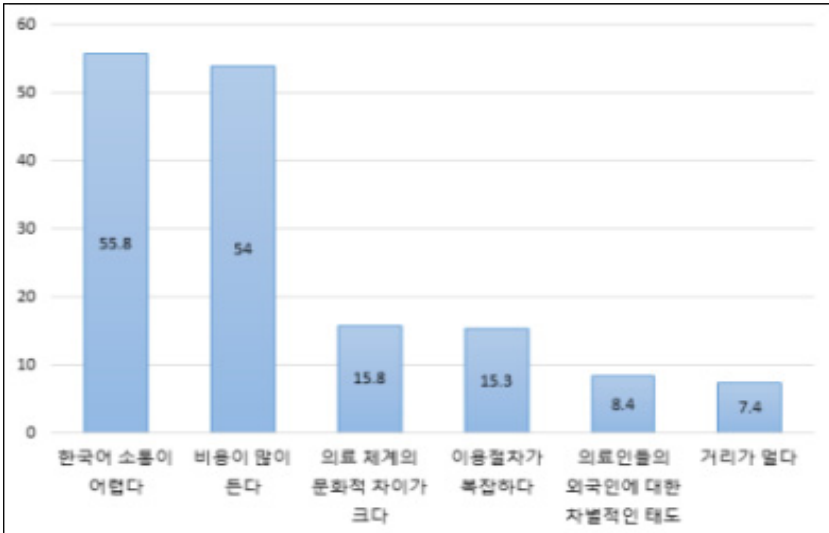


주: *표시된 변수는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한국의 의료서비스를 경험한 유학생에게, 한국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데 힘든 점은 무엇이었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한국어 소통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나타났고, 비용 문제가 다음이었다. 그 외, 의료 체계의 문화적 차이, 복잡한 이용절차, 의료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 그리고 거리가 멀다는 점 순이었다.

[그림 5-27] 한국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데 힘든 점(복수응답)

(단위: 명)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한국에서 2년 미만 거주한 유학생은 한국어 소통이 가장 힘들고 불편한 데 반해, 5년 이상 거주한 유학생은 치료비용 문제를 꼽았다. 이를 통해, 한국 거주기간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느끼는 힘든 점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한국에 온 지 2년 미만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어 소통 문제는 의료기관 접근 및 의료기관 서비스를 받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에 온 지 5

년 이상 되는 유학생은 능숙한 한국어와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빈번해지고, 또한 학업 등의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상태가 이전보다 악화되어, 치료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6〉 한국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데 힘든 점(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한국어 소통이 어렵다	거리가 멀다	비용이 많이 든다	이용 절차가 복잡하다	의료 체계의 문화적 차이가 크다	의료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
전체		120 (55.8)	16 (7.4)	116 (54.0)	33 (15.3)	34 (15.8)	18 (8.4)
성별	남성	58 (61.1)	4 (4.2)	60 (63.2)	15 (15.8)	13 (13.7)	11 (11.6)
	여성	62 (51.7)	12 (10.0)	56 (46.7)	18 (15.0)	21 (17.5)	7 (5.8)
연령대 (만 나이)	19~24	59 (50.9)	11 (9.5)	59 (50.9)	21 (18.1)	20 (17.2)	5 (4.3)
	25~29	40 (56.3)	4 (5.6)	40 (56.3)	10 (14.1)	11 (15.5)	9 (12.7)
	30세 이상	21 (75.0)	1 (3.6)	17 (60.7)	2 (7.1)	3 (10.7)	4 (14.3)
국적	중국	52 (49.5)	10 (9.5)	61 (58.1)	20 (19.0)	25 (23.8)	8 (7.6)
	베트남	32 (68.1)	4 (8.5)	15 (31.9)	3 (6.4)	4 (8.5)	5 (10.6)
	기타 아시아	36 (57.1)	2 (3.2)	40 (63.5)	10 (15.9)	5 (7.9)	5 (7.9)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29 (61.7)	4 (8.5)	24 (51.1)	11 (23.4)	5 (10.6)	4 (8.5)
	2년~3년 미만	29 (58.0)	2 (4.0)	29 (58.0)	4 (8.0)	10 (20.0)	3 (6.0)
	3년~4년 미만	26 (65.0)	4 (10.0)	25 (62.5)	7 (17.5)	7 (17.5)	4 (10.0)

구분		한국어 소통이 어렵다	거리가 멀다	비용이 많이 든다	이용 절차가 복잡하다	의료 체계의 문화적 차이가 크다	의료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
	4년~5년 미만	21 (48.8)	2 (4.7)	21 (48.8)	4 (9.3)	8 (18.6)	5 (11.6)
	5년 이상	15 (42.9)	4 (11.4)	17 (48.6)	7 (20.0)	4 (11.4)	2 (5.7)
학교 지역	수도권	75 (54.7)	8 (5.8)	79 (57.7)	23 (16.8)	21 (15.3)	13 (9.5)
	비수도권	45 (57.7)	8 (10.3)	37 (47.4)	10 (12.8)	13 (16.7)	5 (6.4)
학위 과정	(전문) 학사	63 (53.4)	9 (7.6)	62 (52.5)	20 (16.9)	20 (16.9)	7 (5.9)
	대학원	57 (58.8)	7 (7.2)	54 (55.7)	13 (13.4)	14 (14.4)	11 (11.3)
전공 계열	인문, 사회과학	61 (51.7)	9 (7.6)	65 (55.1)	20 (16.9)	21 (17.8)	10 (8.5)
	자연과학, 공학 등	53 (63.9)	5 (6.0)	45 (54.2)	9 (10.8)	9 (10.8)	7 (8.4)
	예체능	6 (42.9)	2 (14.3)	6 (42.9)	4 (28.6)	4 (28.6)	1 (7.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다. 정신건강

코로나19는 유학생의 학업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상태에도 영향을 미쳤다. 유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특히 우울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널리 통용되는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of Depression Scales)⁴²⁾ 척도를 활용하였다(전진아·이난희, 2015). 11개 문항 중, 2개

42) 한국복지패널에서 사용하는 척도로, 조사표 문항에는 1~4점 척도, 1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1~4점에 걸친 변수값을 0~3점으로 처리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측정하는 2문항(비교적 잘 지냈다고와 불만 없이 생활했다)은 역으로 점수화한다(신재동, 여유진, 2009).

문항을 역코딩하여 총합을 계산하였다(전진아, 이난희, 2015, p.77). 아래 [그림 5-28]은 전체 그리고 국적별 유학생의 우울 수준이다. 전체 유학생의 우울 수준은 9.94로 나타났고,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가장 높았고, 중국 그리고 기타 아시아 출신 순이었다. 본 우울 수준 신뢰도 값은 0.851로 나타났다.

[그림 5-28] CES-D 척도로 측정된 유학생의 우울 수준



주: 이번 조사에서는 복지패널조사표에는 1~4점 척도, 11문항으로 구성된 것을 활용했다. 따라서 1~4점에 걸친 변수 값을 0~3점으로 처리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측정하는 2문항(비교적 잘 지냈다는 불안 없이 생활했다)은 역으로 점수화했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총점에 20/11을 곱하여, 11문항의 총점을 20문항일 때의 총점으로 환산하였다. 그 결과, 아래 [그림 5-29]와 같이, 유학생의 전체 점수는 16.76으로 나왔다. 해당 척도에서는 점수가 16점보다 높으면 우

다음으로, 총점에 20/11을 곱하여, 11문항의 총점(33점)을 20문항일 때의 총점(60점)으로 환산한다(신재동, 여유진, 2009, p.23).

울한 상태이고, 16점 미만이면 우울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았을 때(전진아, 이난희, 2015, p.78), 이번 조사에 참여한 유학생은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경미한 우울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학생이 20.15로 우울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고, 중국 출신이 17.78, 그리고 기타 아시아 출신이 16.76으로 나타났다.

[그림 5-29] CES-D 척도로 측정된 유학생의 우울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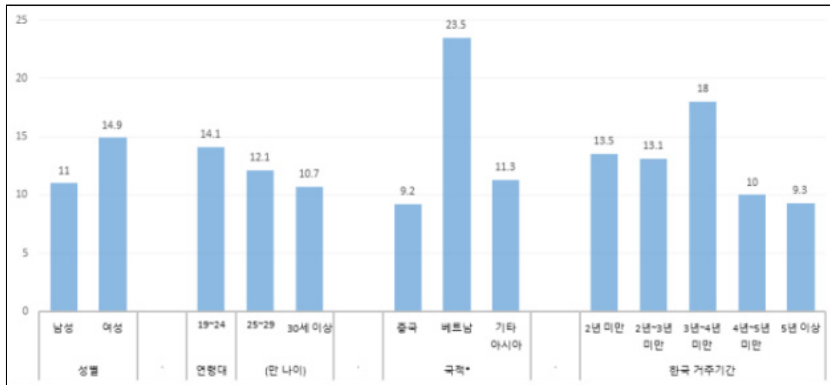
각주: 총점에 20/11을 곱하여, 11문항의 총점(33점)을 20문항일 때의 총점(60점)으로 환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한편, 유학생에게 지난 1년간 심리적 혹은 정신적 어려움으로 관련 전문가를 찾아갔는지를 물어보았다. 응답자의 86.9%는 찾아간 적이 없다고 답한 반면, 13.1%만이 전문가를 찾아갔다고 답하였다. 즉, 적지 않은 유학생이 전문가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그림 5-30]은 지난 1년간 심리적 혹은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전문가를 찾아간 적이 있는 유학생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성이 남

정보다 전문가를 찾아간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연령대는 19-24세가 가장 많고, 25-29세 그리고 30세 이상 순이었다. 한국 거주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학생이 전문가를 찾아간 경우가 많았다. 이는 대학생의 경우에는 졸업 및 상위학교 진학을 앞두고 많은 고민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국적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베트남 유학생이 전문가를 찾아간 경우가 23.5%로 가장 많았고, 기타 아시아 출신 유학생은 11.3% 그리고 중국 유학생은 9.2%로 나타났다. 베트남 학생이 왜 다른 아시아 국가 출신 학생보다 전문가를 찾은 경험이 많은지는 이번 조사에서 명확히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앞의 경제활동 상태 조사 시에 베트남 학생이 경제활동 참여가 가장 높았고, 그로 인해, 과중한 업무나 일하다가 다치는 등의 일을 하며 많은 고충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왜 전문가로부터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림 5-30] 최근 1년간 심리적/정신적 어려움으로 관련 전문가를 찾아간 유학생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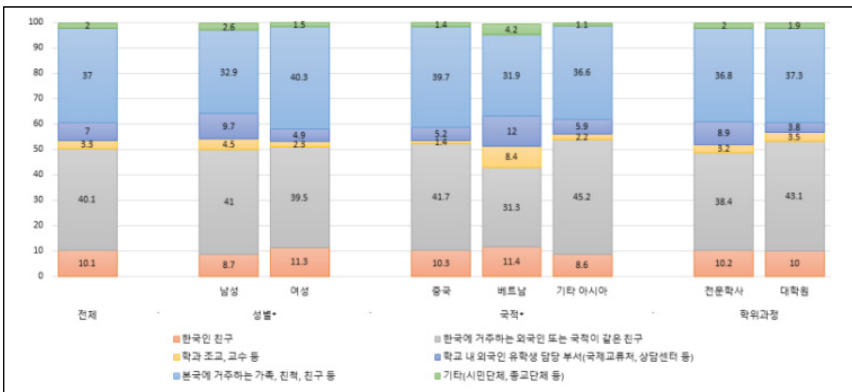


주: *표시된 변수는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한국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구와 상담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 결과, 유학생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국적이 같은 친구와 상담하는 경우(40.1%)가 가장 많았고, 본국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친구 등(37%)의 순이었다. 한국인 친구나, 학과 조교 및 교수 아니면 학교 내 유학생 전담 부서와 상담한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성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국적이 같은 친구와 주로 상담(41%)하였고, 여성은 주로 본국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친구 등과 상담(40.3%)하였다. 국적별로 구분해 보면, 기타 아시아 출신과 중국 출신 유학생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국적이 같은 친구와 상담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베트남 유학생에게서 눈에 띄는 점은 유독 학교 내 거주하는 유학생 담당 부서(국제교류처, 상담센터 등)와 상담한다는 비율이 12%로 높게 나타났고, 학과 조교 및 교수에게 상담한다는 응답도 8.4%로 다른 국적 유학생보다 높았다. 아쉽게도 이 조사에서 이에 대한 후속 질문을 하지 않아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그림 5-31] 한국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 주된 상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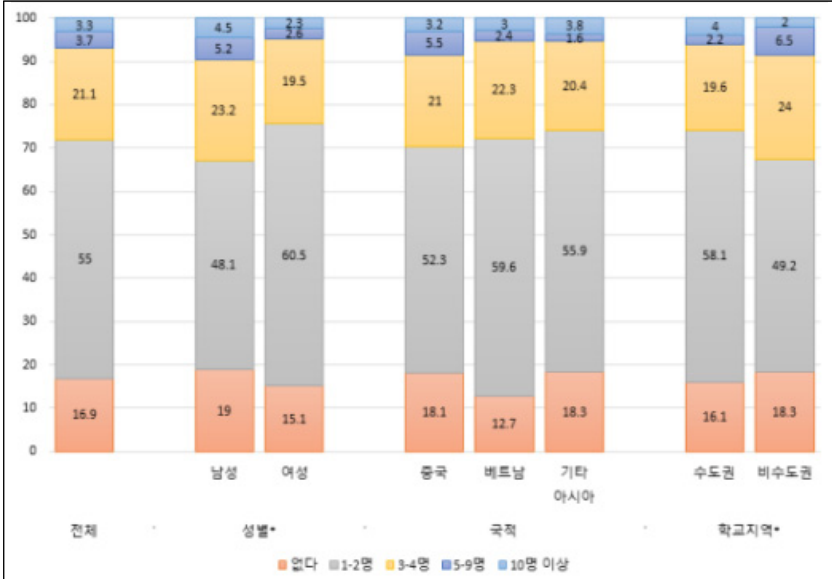
주: *표시된 변수는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마지막으로, 유학생의 사회적 지지망에 대해 물어보았다. 해당 문항은 ㄱ)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ㄴ)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ㄷ)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1-2명 있다는 응답이 55%로 가장 높았고, 3-4명이라는 응답이 21.1%, 5-9명이 3.7% 그리고 10명 이상 있다가 3.3%로 나타났다. 반면,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다는 응답이 16.9%로 나타나, 적지 않은 수를 보여주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이 1-2명에게 그리고 남성은 3-4명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은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학교 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한 학교에 다니는 유학생이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1-2명이라는 응답이 많은 반면, 3-4명에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응답은 비수도권 학생이 24%로 많았다. 돈을 빌릴 수 없다는 응답은 비수도권 학생(18.3%)이 수도권 학생(16.1%)보다 많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비수도권 지역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돈을 빌릴 주변 지인은 많은 듯 보이나, 돈을 빌릴 수 없다는 응답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점을 비춰 볼 때,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유학생이 돈과 관련된 사회적 지지망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유학생의 사회적 지지망보다 넓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림 5-32] 해당되는 사람 수-1)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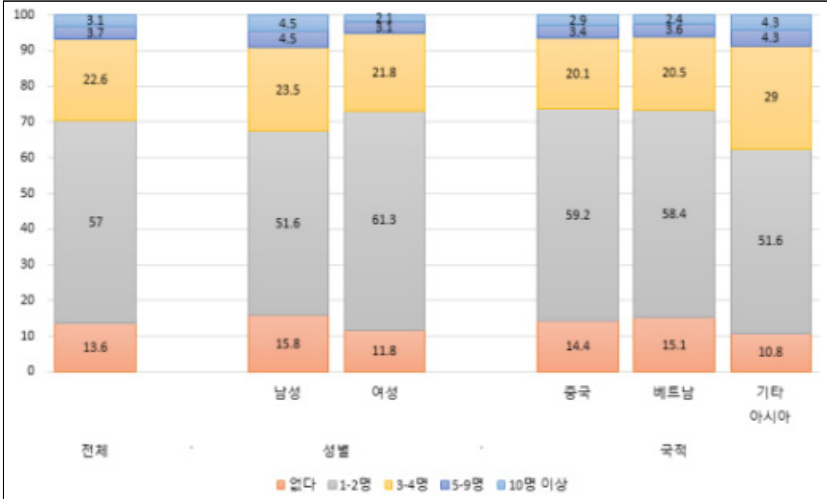


주: *표시된 변수는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해 물었다. 위의 목돈이 필요할 때 빌릴 수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1-2명이라는 응답이 57%로 가장 많았다. 반면 아무도 없다는 응답은 13.6%로 나타나,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주변 지인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은 수로 나타났다.

1-2명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응답은 여성(61.3%)이 남성(51.6%)보다 많았다.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은 남성(15.8%)이 여성(11.8%)보다 높았다. 이를 통해, 여성이 남성보다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청할 주변 지인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국적별로는, 1-2명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유학생 중 중국 학생(59.2%)이 가장 많았고, 베트남 학생(58.4%), 기타 아시아 출신 학생(51.6%) 순이었다.

[그림 5-33] 해당되는 사람 수-2)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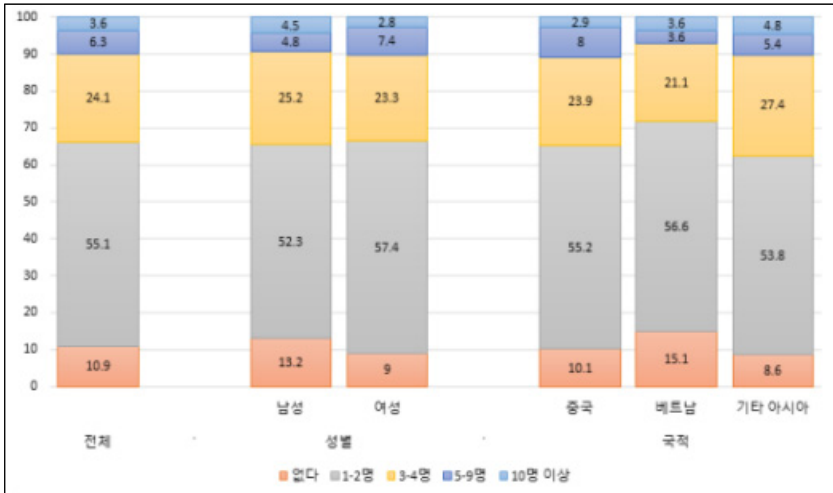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마지막으로,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 물어보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1-2명(55.1%), 3-4명(24.1%), 5-9명(6.3%), 그리고 10명 이상(3.6%) 순이었다. 아예 없다는 응답도 10.9%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남성(13.2%)이 여성(9%)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국적의 경우, 베트남 학생도 대화할 수 있다는 사람이 1-2명이라는 응답이 56.6%로 가장 많았으나, 동시에 대화상대가 없다는 응답이 15.1%로 다른 국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특히, 후자의 결과는 앞에서 베트남 학생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 학과 조교 및 교수와 학교 내 외국인 유학생 담당 부서와 상담하는 비율이 왜 다른 아시아 국가 출신 학생보다 높은지를 말해준다고도 볼 수 있다. 즉, 베트남 학생들은 주변에 이야기할 사람이

마땅치 않아 학교 교직원이나 관련 부처에 고민이나 어려운 점을 상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온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림 5-34] 해당되는 사람 수-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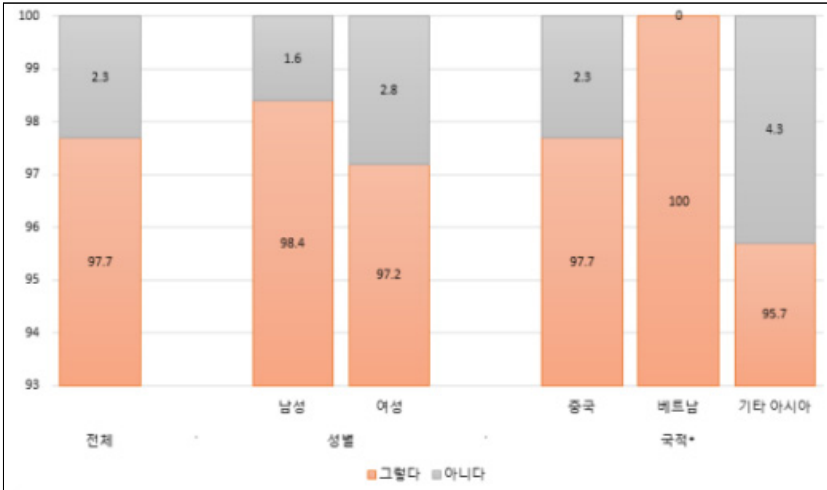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라. 건강보험

2021년 3월부터 유학생은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다. 이번 조사 결과, 응답자의 97.7%만이 조사 당시 건강보험에 가입하였고, 2.3%는 미가입인 상태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 유학생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한 반면, 중국 학생은 97.7% 그리고 기타 아시아 출신 학생은 95.7%로 나타났다.

[그림 5-35] 한국에서 건강보험 가입 여부



주: *표시된 변수는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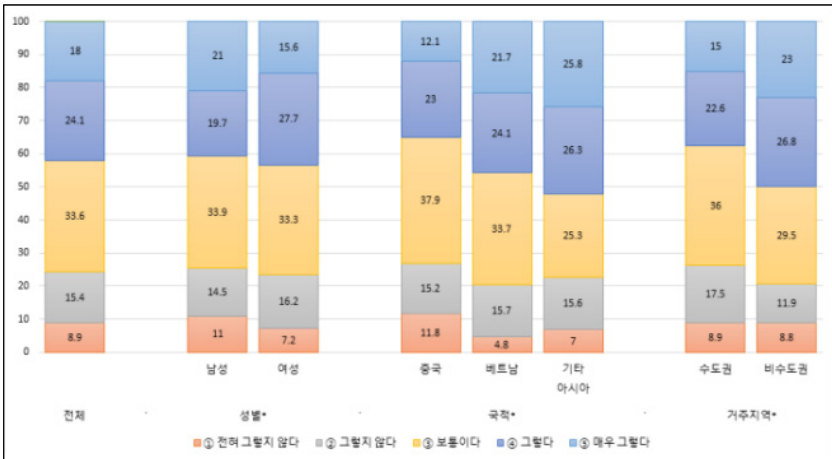
2020년에 건강보험 의무가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 결과, 보험료 부담(37.5%)이라는 응답이 1위를 차지하였고, 국민건강보험이 있는지 몰라서라는 응답과 본국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각각 18.8%로 2위를 차지하였다. 곧 유학생활이 종료되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2.5%를 차지하였다.

국민건강보험이 본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은 42.1%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였고, 보통(33.6%) 그리고 필요하지 않다(24.3%)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국적, 그리고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건강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국적의 경우, 기타 아시아 출신 유학생은 52.1%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베트남 유학생은 45.8% 그리고 중국 학생은 35.1%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경우,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유학생(49.8%)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유학생(37.6%)보다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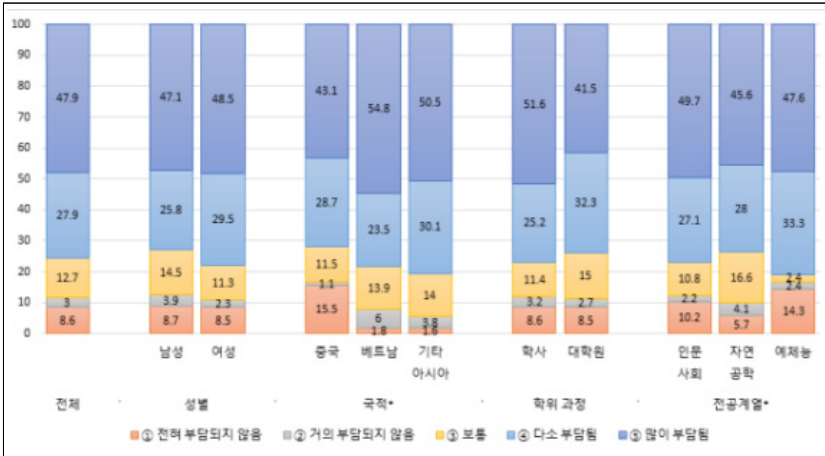
[그림 5-36] 국민건강보험이 본인에게 필요한 정도



주: *표시된 변수는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마지막으로, 유학생에게 현재 그리고 향후 지불하는 건강보험료가 적당한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 결과, 대체로 부담된다(75.8%)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국적별로는 중국 유학생(16.6%)이 베트남(7.8%) 및 기타 아시아 국가 출신 유학생(5.4%)보다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다고 답하였다. 그 이유는 앞선 분석 결과를 통해, 일부 유추할 수 있다. 중국 학생들은 한국에서 일한 경험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음과 동시에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점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즉, 중국 학생들은 타 국가 학생보다 경제적인 여력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5-37] 현재 및 향후 지불하는 건강보험료의 부담스러움 정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제3절 소결 및 정책제언

1. 유학생할 및 주거실태

지금까지 국내 아시아 유학생의 전반적인 유학생할과 주거실태에 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유학을 오는 목적은 ‘학문적 경험을 쌓기 위함’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유학생할 중 가장 어려운 점은 학점 관리 및 한국어 공부로 조사되었다. 유학생은 경제적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크고, 유학생할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주거실태에 대해 분석한 결과, 유학생 중 절반 이상은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부동산중개업소 또는 친구 등 지인을 통해 집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집을 구할 때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높았고, 유학생 중 절반은 주거비 지출 자체에 대해

서도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주거비 지출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응답자의 12%를 제외하면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여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전반적인 유학생생활을 요약하면 ‘학업성취라는 목적으로 한국 유학을 선택했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유학생생활을 지탱해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유학생생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졸업 후에는 국내에 계속 체류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매우 비슷하다.

외국인 유학생에게 주거 상태는 유학생생활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선행연구에서도 밝혔듯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공론화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방안’이 마련된 시기였으며, 이때 가장 핵심적 사안은 주요 거점별로 유학생 기숙사 건립을 장려한 것이었다. 당시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던 유학생의 기숙사 수용률은 약 50%를 조금 밑도는 수준이었는데(안선민, 장상옥, 신경주, 2006, 9), 2021년 유학생 실태조사에서는 기숙사에 거주 중인 비율이 20%가 되지 않았고, 약 70%에 가까운 유학생이 월세방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것은 유학생의 주거 여건을 마련하는 일은 뒤로한 채 유학생 유치 자체에만 몰두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보증금 마련과 정보 습득의 어려움, 높은 주거비 부담이라는 문제 또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실상을 반영할 때 첫째, 외국인 유학생의 기숙사 거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로 볼 수 있다. 기숙사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기숙사에 살고 있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였을 때 ‘기숙사에 배정받지 못해서(11.5%)’

라는 응답보다 ‘기숙사 시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28.6%)’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그 뒤로 ‘기숙사보다 지금 집의 비용 부담이 적어서(27.6%)’라는 응답도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기숙사의 수용률이 낮은 것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지만, 기숙사의 시설이 낙후되면서 비용 면에서도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향후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로 볼 수 있다.⁴³⁾

두 번째로는 유학생이 주거 문제를 해결할 때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이 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이 ‘보증금 마련’인 것은 월세 거주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지만, 정보의 부족 문제도 약 30% 가까이 차지한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구하게 됐는지를 조사한 문항에 대해서도 ‘친구 등 지인(35.6%)’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았던 것은 국내 유학생들이 집을 구할 때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나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정보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유학생이 집을 구할 때 지인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면, 더 많은 유학생이 그러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집을 구하는 방법, 정보 검색 및 활용 방법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유네스코는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역할 중, 학교 및 주변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명시하고 있으며, 유학생이 거주할 적정 수준의 주거 시설 또한 확보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43) 유학생 기숙사의 경우 취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대전 글로벌교류센터의 실패 이유 중 하나로 취사 여부가 언급될 만큼 취사 가능 여부는 유학생의 삶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일반 대학 기숙사 역시 취사시설이 불가하여, 유학생은 기숙사를 벗어나 새로운 숙소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3장 참조). 대학 관계자들과의 자문회의 결과, 대학은 이러한 유학생의 요구를 잘 인지하고 있었으며 몇몇 대학은 취사시설이 가능한 유학생 전용 기숙사를 지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렇지만 대학 캠퍼스 인근에 주거 임대를 제공하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거나 무기한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서영인 외, 2012, 19-20). 단기적으로는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같은 사업의 대상으로 유학생을 포함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번역 기능을 추가하는 것, 국적별 선호하는 주거유형 등의 정보를 축적하여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에게도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제안해볼 수 있다.

2. 경제 상황 및 활동

지금까지 아시아 유학생들의 노동 실태와 경제 상황에 대한 조사한 결과를 담았다. 분석의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외국인 유학생들 절반(52.4%)은 지난 1년 사이에 일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 따르면, 이 같은 비율은 실제 취업 경험률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는데, 많은 미등록 노동의 사례들이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 때문이다.

다수의 학생은 학업으로 인한 시간 부족(45.2%) 등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했다. 11.4%의 유학생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굳이 취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구직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언어문제(34.6%), 외국인에 대한 차별(25.6%) 등이 지적됐다. 일을 하다가 겪는 고충에 대해서는, 일하다가 다친 경험을 한 비율이 35.1%였고, 해고를 당한 비율도 24.3%였다. 그 밖에 과중한 업무량(42.5%), 감정적 폭력(32.7%), 차별(48.2%), 임금 지급 지연(30.0%), 임금 받지 못함(20.2%) 등을 경험했다.

유학생의 경제적인 여건을 보면, 한 학기 평균 학비로는 395.1만 원을 지출하고, 생활비로는 510.4만 원을 지출했다. 물론, 여기에는 장학금이 포함된 액수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유학생이 생활비와 학비를 조

달하는 내용을 보면, 전체 지출을 위한 비용의 51.2%를 부모 및 가족으로부터 받았다. 나머지는 장학금(22.5%), 본인 저금(12.8%), 한국에서의 근로소득(11.9%) 등으로 충당했다. 유학생 가운데 지난 1년 사이에 생활비가 모자란 경험을 한 비율은 60.6%였고, 생활비가 모자랐을 때의 대처 방식으로는 식비 줄임(38.2%), 식비 외 생활비 줄임(23.8%), 가족에게 지원 요청(14.9%) 등이 있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학생들이 다른 국적의 학생들에 견줘, 노동 현장에서 차별이나 부당한 처우를 당한 경험이 많았다. 이는 이들이 처한 경제적인 여건과도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의 경제적인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탓에 한국에서 근로를 해야 할 동기가 강했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업장에서 일할 확률도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분석에 근거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유학생이 노동현장에서 노동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고, 보호받기 위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유학생의 20.0%가 임금 체불을 경험하고, 30% 이상이 임금 지연을 경험하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⁴⁴⁾ 다수의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의 노동권 보장의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설혹 안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에는 한국어에 서투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지 않는 외국인 유학생이 미등록 취

44) 이를 외국인 유학생에 한정된 차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내국인 노동자들 가운데도 다수가 임금 지급 지연과 체납에 시달리고 있다. 내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체납에 관한 신뢰할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온라인 아르바이트 업체인 알바몬이 실시한 설문 내용을 보면(김종민, 2021.03.06.), 한국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가운데서도 임금이 지연된 경험을 한 비율이 절반을 넘고(50.5%), 임금이 체불된 경험 비율도 28.3%였다. 이 설문은 알바몬에서 해당 사이트를 방문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온전히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본 연구의 설문에서는 유학생의 경험을 지난 1년으로 한정해서 물어본 반면, 알바몬의 설문에서는 기간을 한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알바몬의 설문에서 임금 체불을 경험한 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업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일부 한국인 사용자들도 있다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악질적인 노동 관행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고려돼야 할 사항들도 있다.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부정적인 노동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규제의 집행을 강화할 경우, 현재 유학생의 미등록 노동이 더욱 음성화하면서 일부 유학생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집행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유학생의 미등록 고용을 한국의 사용자들이 기피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⁴⁵⁾ 그 경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유학생의 노동권 보호 및 한국 영세 사업장에서의 산업적인 요구 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접근이, 적어도 단기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단기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유학생의 노동권 보호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유학생의 노동권 강화를 위한 접근은, 한국의 저임노동자를 위한 노동권 강화 정책과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

한가지 더 덧붙이자면, 유학생의 노동권 강화는 학습권 강화와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이다. 즉, 한국에서 유학생의 주된 활동은 학습과 교육이지, 노동은 아니어야 한다는 원칙도 함께 강조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유학생의 노동권 보장이 유학생의 노동시장 진출이 촉진되는 결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 이와 관련한 정책 대응을 위해서, 외국인 유학생의 미등록 노동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교의 식당 혹은 내·외국인 대학생의 식사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에 확인된 바는 외

45) 물론 단기적으로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보기는 어렵다.

국민 유학생 가운데 60.6%는 생활비가 모자란 경험을 했고, 그 경우에 대처 방식 가운데 첫 번째가 '식비를 줄인다(38.2%)'는 점이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핵심 생계비인 식비를 줄인다는 상황은 사회정책의 입장에서 다소 엄중하게 바라봐야 할 것이다.

한국의 초·중·고에서 무상급식이 교육 분야의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제도인 점을 고려하면, 내·외국인 대학생들의 끼니를 위한 정부의 지원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지원 대상을 외국인 유학생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내국인 대학생까지 포괄하는 접근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대학 식당에 대한 재정 지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지원 등의 방법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유학생이 일하는 과정에서 겪는 산업재해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이번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 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의 절반 이상은 지난 1년 사이 아르바이트 등의 노동경험이 있으며, 이들 가운데 35.1%는 크고 작은 부상을 경험했다. 이번 조사에서 산업재해에 따른 상병의 위중함 정도까지 설문하지는 않았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산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에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상당수는 본인들의 노동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6조)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상병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다. 물론, 한국의 많은 불안정 노동 종사자들 역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는 점도 사실이다. 국내에 종사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의 포괄성 확대의 방향 속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산업재해도 함께 보호돼야 할 것이다.

3. 건강

지금까지 아시아 유학생의 신체건강 상태, 병원 이용 및 접근성, 정신 건강, 그리고 건강보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유학생은 다수가 20, 30대이므로 신체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의 3명 중 한 명은 병원에 방문한 적이 있었고, 아픈 적이 없거나(24.9%), 본국에서 가져온 약을 먹고 참는 경우(22.1%)도 있었다. 한국 의료기관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유학생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았다. 한국에 거주한 지 3년을 기점으로 하여, 외래 이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로는 치료비 부담(59.8%), 한국어 소통(36.9%), 병원 선택의 문제(35.9%) 등이 꼽혔다. 다만, 한국에서 의료서비스 및 치료를 받는 데 있어 어려운 점에 대해 물어본 결과, 한국어 소통과 비용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에 2년 미만 거주한 학생은 한국어 소통을, 5년 이상 거주한 학생은 비용 문제가 큰 어려움이라고 언급한 특징이 있었다.

정신건강의 경우, 유학생은 경미한 우울 수준으로 전문가적 개입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인지 지난 1년간 심리적 혹은 정신적 어려움으로 전문가를 찾아가간 비율이 13.1%로 적지 않은 수로 나타났다. 전문가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 친구나(40.1%) 본국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친구 등(37%)과 주로 상담하였다. 유학생의 사회적 지지망, 즉 돈이 필요하거나, 몸이 아플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주로 1-2명 정도였다.

건강보험의 경우, 응답자의 대다수인 97.7%가 가입을 하였고, 건강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42.1%)가 가장 많았고, 보통(33.6%)

그리고 필요하지 않다(24.3)라는 응답 순이었다. 그리고 응답자의 약 3분의 2 이상은 현재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럽다고 답하였다.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건강보험료 책정에 대한 정교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유학생은 한국의 건강보험에 대체로 만족하나,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응답이 많았다. 비록 일부 유학생이 시간제 취업 등을 하지만, 대부분 정규직이나 풀타임이 아니다 보니 소득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이들이 벌어들인 소득은 생활비 혹은 학비 등으로 대부분 지출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한국 거주기간도 의료서비스 이용 빈도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한국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유학생의 병원 이용 빈도는 높았다. 이는 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유학생은 한국어 소통이 편해지고, 한국 문화에 적응하면서 의료서비스 이용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유학생 모두에게 천편일률적으로 일정 금액을 책정하는 것보다는 유학 연수, 연령, 가족 동반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보험료 차등지급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의료 통역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 결과, 유학생은 병원 내 한국어 소통 문제를 빈번히 제기하였다.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033-811-2000)에서는 외국어 상담을 제공한다(신승현, 2020.05.12). 여기서 제공하는 언어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 우즈베크어로,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이다(국민건강보험, 2021). 또한, 병의원 진료시 외국인의 수급권 보장을 위하여 여성가족부 산하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운영하고 있다(다누리, 2021). 여기서도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우즈베크

어, 크메르어, 네팔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러시아어, 몽골어, 라오스어, 일본어 등 13개 국어를 제공한다(다누리, 2021). 앞의 센터와 이 센터가 다른 점은, 1년 내내 24시간 운영되고, 의료 및 건강 서비스 외의 종합생활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이점이 있다(다누리, 2021). 이처럼 기존의 이용 가능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인지하거나 활용한 학생은 이번 연구의 참여자 중 없었다. 따라서 언어 능력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접근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존재하는 의료 통역 관련 콜센터 정보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AI 통번역기 등 첨단 기술의 발달 및 상용화로, 이러한 언어 장벽은 크게 허물어질 것으로 보인다.

셋째, 유학생은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경미한 우울 수준을 보인 만큼, 교내 상담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유학생은 언어 장벽, 학업 스트레스, 문화적 적응, 의료기관 접근의 어려움, 재정적 상황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건강이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다(Haber and Griffiths, 2017.02.22.).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같은 공공 방역수칙으로 인해 유학생은 사회적 고립감이 커지게 되고, 이는 이미 적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유학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했다(ACHA, 2020). 실제로 미국 텍사스의 한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유학생의 무려 71%가 스트레스와 불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Son, Hedge, Smith, Wang, and Sasangohar, 2020). 호주의 호주유학생협의회(Council of International Students Australia)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무려 93%의 유학생이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원격수업이 시행되고 혹은 호주로의 입국이 어려워짐에 따라 정신건강의 피해 혹은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alim and Wibawa, 2021.05.30.). 따라서 교내 학생상담센터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상담의 효과성 및 성공적인 체험

답 등을 지속해서 홍보함으로써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상담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한국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등,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국을 고려하여 특정 언어로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를 신설하는 것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제6장

아시아 유학생 심층 면접 분석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문제 제기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소결 및 정책 제언

제 6 장 아시아 유학생 심층 면접 분석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문제 제기

우리 사회는 지난 20년간 유학생의 급증을 경험해왔다. 1999년 1,623명에 불과했던 국내 유학생은 2020년 182,487명이 되어 100배가 넘게 증가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의 타격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152,281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교육부, 2021). 이 같은 유학생 급증의 배경에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강창희, 고영우, 박윤수, 2021)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정부의 인재 유치 경쟁이 있다(이창원, 김도혜, 최서리, 신소희, 2020).

국내 유학생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의 수준과 이들을 미래 우리 사회의 일원이자 주요한 노동력으로 받아들일 준비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보장은 제한된 사회 및 경제적 자원을 배분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에 이에 대한 배분에서 외국인, 특히 '학업을 마치고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유학생에 대한 사회보장은 최근까지도 충분한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유학생은 국내 거주 기간에 지식을 배우고 생산하는 '학생'이자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품을 소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는 '로컬 주민'이며, 때에 따라서 학업 외의 노동 활동을 하는 '노동자'이다. 또한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글로벌 인재'이며 출신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형성되는 '초국가적 가족의 구성원'으로, 양 국가의 교류와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킨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들이 습득한 지식과 한국 문화의 체득은 이주의 경험과 더불어 본국이나 우리나라가 아닌

제3의 국가로 재이주를 기획하는 원동력이자 능력이 된다. 즉, 유학생은 다양한 위치성을 가진 존재이며(Raghuram, 2013), 이들의 위치성을 반영한 다양한 삶의 궤적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Chacko, 2020).

이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는 국내 거주 유학생의 다양한 경험, 특히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층적인 문제를 파악함으로써 관련된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1) 국내 거주 유학생들이 학업과 일상생활의 경험이 어떠한지, 그리고 2) 이들이 안정적인 체류와 사회보장을 위해 대학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⁴⁶⁾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개요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거주 유학생의 학업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이 국내에서 경험하는 다양하고 다층적인 문제를 파악함으로써, 관련된 정책적 함의와 과제들을 도출하는 것이다. ‘학생’이자 ‘외국인’으로서 유학생들이 받게 되는 사회권과 사회보장제도가 존재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회보장제도가 이들의 삶에 적용되는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한계점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살펴보고자 한다.

46) 이번 심층 면접 분석의 대상은 제5장 양적 분석과 마찬가지로 모두 아시아 유학생이다. 제6장에서 제시한 분석 결과는 아시아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정책 제언은 경우에 따라 모든 유학생에게도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내 거주 유학생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경험과 어려움을 다음의 일곱 가지 분야-유학의 동기와 배경, 유학생생활, 경제활동 경험, 주거 경험, 건강보험 가입과 의료기관 경험, 사회적 관계 및 미래에 대한 계획-에 걸쳐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면접조사를 주요 연구 방법으로 활용하여 유학생들의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현재 국내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는 유학생 14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 대상자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 출신 학생들로 제한하였고, 그중 일시적인 체류로 간주될 수 있는 어학연수생과 교환학생은 제외하였다. 또한 입국 당시부터 비교적 국내에서 큰 경제적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는 정부초청장학생(Global Korea Scholarship: GKS)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 또한 제외하였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의 서로 다른 특성에서 파생될 수 있는 유학생의 생활경험의 차이를 고려하여 수도권과 지방을 나누어 면접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짧은 연구 기간의 한계로 모든 지역의 유학생을 조사하지 못하고, 연구자의 인맥과 근무지를 활용하여 서울과 대구로 한정하여 유학생을 모집하였다. 최종적으로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하는 5명, 대구 소재 대학에 재학하는 9명의 면접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모든 지역의 유학생들을 조사하지 못한 점은 이 연구의 한계일 것이다. 선정된 면접대상자에는 학부재학생과 석사 및 박사과정 재학생 모두가 포함되었다. 이는 이들 각각의 유학 동기와 과정, 유학생생활과 그 어려움 및 졸업 이후의 계획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선택한 결과였다.

면접은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대면을 우선으로 진행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이어서 화상면접 또한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면접대상자의 섭외는 대학 내 유학생 담당자의 소개로 5명을 처음에 선정했다. 그리고 이들의 도움으로 출신국 유학생들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연구 소개글을 올리고 면접 희망자를 모집하였다. 모집 당시 50건 이상의 면접 참여 신청을 받았지만, 구사하는 언어의 종류와 수준, 가능한 다양한 학력과 전공 및 출신국가를 포함할 수 있는 유학생 14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면접 시간은 보통 1-2시간 내외였으며, 분석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 당시 사용한 언어는 주로 한국어였으나 면접대상자가 한국어를 불편해하거나 상황에 따라 의사소통이 힘들 때는 영어를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이 조사에 참여한 면접대상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표 6-1>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 6명, 남성 8명이었으며, 출신국은 중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이었다. 학력에 따라서는 학부 재학생 6명, 석사과정 재학생 3명, 박사과정 재학생 5명이었다.

<표 6-1> 면접대상자의 기본 인적사항

식별번호	성별	연령대	출신국	최초입국시기	학력	학교소재지
1	여성	20대	베트남	2014. 2	박사과정 재학	서울
2	남성	30대	중국	2016.2	박사과정 재학	서울
3	여성	30대	중국	2014.3	박사과정 재학	서울
4	남성	20대	중국	2018.3	학부 재학	서울
5	남성	20대	중국	2021.3	학부 재학	서울
6	여성	30대	중국	2006.9	박사과정 재학	대구
7	여성	20대	몽골	2018.12	석사과정 재학	대구
8	남성	30대	우즈베키스탄	2005.3	학부 재학	대구

식별 번호	성별	연령대	출신국	최초 입국시기	학력	학교 소재지
9	여성	20대	베트남	2018.12	석사과정 재학	대구
10	남성	30대	파키스탄	2016.6	박사과정 재학	대구
11	남성	20대	중국	2020.2	학부 재학	대구
12	남성	20대	베트남	2019.12	학부 재학	대구
13	여성	20대	중국	2016.12	학부 재학	대구
14	남성	20대	베트남	2018.12	석사과정 재학	대구

제3절 분석 결과

이 절에서는 유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과 어려움을 일곱 가지 주제-유학의 동기와 지역 선택, 유학생들의 어려움, 경제활동 경험, 주거 경험, 건강보험 가입과 의료기관 경험, 사회적 관계 및 미래에 대한 계획-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일곱 가지 주제 중 유학생의 학력 수준에 따른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는 주제(유학의 동기와 지역 선택, 유학생들의 어려움, 경제활동 및 미래에 대한 계획)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나누어 분석 결과를 서술했으며, 학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주제(주거 경험, 건강보험 가입과 의료기관 경험 및 사회적 관계)는 이들을 나누지 않은 채 분석 결과를 통합적으로 서술했다.

1. 유학의 동기와 지역 선택 이유

유학의 동기와 지역 선택은 유학생의 학력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학부생들의 경우, 특히 중국 출신 학부생은 주로 대입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이후 부모나 친인척이 한국 유학을 권유한 것이 유학을 선택하게 된 동기였다. 대학원생들은 부모 혹은 친인척의 추천보다 지도

교수, 먼저 유학을 경험했던 친구나 선배의 권유, 풍부한 장학금의 기회 및 보다 좋은 학업 환경에서 공부해 보고 싶은 개인의 의지와 선택이 강하게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 학부 유학생

1) 대입시험의 실패

중국인 학부 유학생 4명(#4,5,11,13)은 모두 대입시험(일반대학입학 전국통일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고, 그 결과 부모나 친인척이 한국 유학을 강력하게 권했다고 했다. 한국어를 전혀 몰랐지만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비행기로 1-2시간 소요), 다른 나라(미국, 캐나다 혹은 유럽)에 비해 비교적 학비와 생활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한국 유학을 추천했다고 한다. 한국어를 몰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학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한국의 대학 어학당에서 어학연수를 6개월-1년 정도 하거나 중국에서 한국어 학원을 다니면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준비하고 입시에 지원하게 되었다.

2)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한류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 출신의 학부 유학생은 한국 유학의 계기를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한류의 인기를 꼽았다. 근래 지속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 덕분에 한국 문화에 관해 관심이 커졌고, 한국의 수입품이나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가 만연해 있다고 했다. 이에 한국의 선진 교육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고

한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유학생 #8은 2005년에 한국에 최초 입국하여 대학교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잠시 일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갔고, 이후 다시 유학 준비를 하여 2017년에 한국에 학부생으로 유학을 온 사례였다. 베트남 출신 유학생 #12는 K-pop과 한류 드라마를 좋아하여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상세히 배우고 싶어서 유학을 선택했다. 두 유학생은 공통으로 졸업 이후 보다 좋은 취직의 기회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유학의 동기로 꼽았다.

3) 서울과 대구의 선택: 대학의 인지도, 경제적 고려 및 초국가적 가족 네트워크의 작동

유학생들이 대학이 소재하는 지역을 선택 것은 대학의 명성과 인지도 및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서울을 선택한 유학생들은 모두 학업 수준이 높고 국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학교를 선택하고자 했다. 이들은 “생활비는 많이 들어도 서울의 학교가 좋기 때문에” 서울의 학교로 유학을 결정했다고 공통으로 언급했다. 이들에게는 경제적 여건보다 더 나은 대학의 인지도와 학업의 수준이 유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동한 것이다.

대구를 선택한 유학생들은 서울에 비해 대구나 지방의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학비와 생활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대구로 유학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서울과 비교하여 지방의 대학을 다니는 것이 학비와 생활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대학 결정 사항은 그리 어렵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한다.⁴⁷⁾ 또한 서울에 비해 장학금 기회가

47) 각 대학에 대한 입학전형과 학비와 생활비 등에 대한 정보는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유학 정보 포털(<https://www.studyinkorea.go.kr>)에서 얻거나 유학을 도와준 전문 브로커로부터 듣는다.

많으며, 학업에 대한 경쟁이 비교적 치열하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어서 일부러 비수도권인 대구를 선택한 유학생들도 있었다.

한편 가족이나 친척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체류한 경험이 있거나 대구에 친인척이 현재도 체류하고 있어 대구로 유학을 선택한 유학생들도 있었다. 한국에 체류해 본 경험이 있는 가족 구성원은 서울에서 생활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방을 권유했다고 한다. 따라서 자신이 가진 한정된 경제 상황 속에서 최적의 유학 장소로 대구를 선택한 것이다. 또한 유학생생활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인척이 이미 체류하고 있는 대구를 일부러 선택한 유학생들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학교 입학의 최종 결정은 대학의 인지도, 경제적 고려 및 초국가적 가족 네트워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택임을 알 수 있다.

나. 대학원 유학생

1) 장학금

연구에 참여한 8명의 대학원생 중 5명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 한국 유학을 선택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박사과정 유학생들은 석사과정 때 정부초청장학생(Global Korea Scholarship: GKS) 장학금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이후 박사과정에 진학해서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서 유학생생활을 지속한 학생들이 있었다. 북미나 유럽 혹은 호주 등의 다른 국가로 가는 것을 더 선호하였지만 한국에서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서구의 국가들보다는 생활비가 비교적 적게 들기 때문에 한국 유학을 선택했다고 응답했다. 동시에 이들은 졸업 이후에 다른 국가로 진학이나 취직하기를

선호하고 있었다. 이는 장학금과 경제적 상황이 유학 선택과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이고, 이들에게 한국 유학은 최종 목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한편 응답자 중 4명은 본국의 학부 출신 대학이 한국의 특정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서 방학이나 한두 학기 정도를 한국에서 먼저 생활해 본 경험이 있었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많다는 것을 알고 유학을 준비했다. 이들은 연구실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혹은 지역이나 교내 장학금을 받아서 학비를 충당했고, 더 나아가 생활비 보조까지 받기도 했다. 이들의 경우, 장학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학교로 결정했다.

2) 전공 심화와 미래에 대한 투자

연구에 참여한 8명의 대학원생 중 3명의 유학생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높이 발전된 한국의 대학에서 심화과정을 공부해 보고 싶어 유학을 선택했다고 응답했다. 이들에 의하면, 출신국에서도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었으나 졸업 이후 취직이나 상급 기관으로 진학하기에 한국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교육학, 경제학, 국제무역학) 혹은 자신의 전공은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비교문학) 한국이 더 높은 수준으로 발달하였기 때문에(전자공학, 신소재공학) 한국 유학을 선택하였다고 한다.

3) 서울과 대구의 선택: 장학금과 최소 생활비 마련

대부분의 대학원생에게 유학 지역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 역시 장학금이었다. 이는 특히 대구에서 체류하는 유학생들에게서 많이 나타

났는데, 이들은 장학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최우선으로 선택하였고, 비슷한 장학금을 받게 되는 경우 생활비가 적게 드는 대구를 선택하였다. 또한 단신 유학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하는 유학일 경우, 대구를 선택한 경우도 있었다. 파키스탄 출신 응답자 #10은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유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서울보다 지방대학을 선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학금을 받고 생활비가 충당된다고 해도 학교생활에 모두 만족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석사과정 유학생들은 박사과정에 진학하게 된다면 “더 좋은 학교가 있는” 혹은 “서울이라는 대도시를 경험해보고 싶어서” 서울로 진학하기를 희망했다. 반대로 서울 유학에 대해 후회하는 유학생들도 나타났는데, 경쟁이 치열하고 학업 수준이 높아서 공부 외에 다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2. 유학생활의 어려움

유학생활의 어려움 역시 학부와 대학원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유학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학부생일수록 한국어로 공부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강조했고 영어 수업이 많이 개설되지 않은 점을 불편한 점으로 꼽기도 했다. 대학원생의 경우, 수업을 듣거나 일상생활에서 한국어 구사는 어렵지 않았지만, 과제나 시험을 한국어로 제출하는 경우, 혹은 졸업업을 위한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 한국어나 영어로 글쓰기를 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또한 졸업을 앞둔 유학생들의 경우, 졸업 이후 자신의 진로에 대한 막막함을 공통적인 어려움으로 응답했다. 이공계 유학생의 경우 낮은 랩실 문화 또한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었다.

가. 학부 유학생

1) 한국어 수업의 어려움

학부 유학생들은 모두 유학생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한국어’라고 응답했다. 이들은 공통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것 자체의 어려움보다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대학의 현실을 문제로 지적했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영어나 중국어 수업이 부족하므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한국어로 개설되는 전공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고, 이는 유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유학 전에는 학교에서 영어 강의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⁴⁸⁾ 대학의 입학 조건인 한국어능력시험 3급만 받으면 학업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⁴⁹⁾ 현실은 한국어로 많은 수업을 들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한국어능력시험 3급은 유학생들이 비교적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언어능력이라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은 어렵지 않았지만, 막상 한국에 들어와서 경험하는 유학생할 자체는 언어 때문에 어려운 것이었다. 수도권 일부 대학은 영어, 나아가 중국어로도 전공 수업을 개설하는 곳들이 있는데, 본인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국어로 된 강의를 따라가기도 어렵지만, 과제 제출이나 시험을 한국어로 치르는 경우는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수업을 따라가기 힘든 경우는 연습이나 복습으로 보완을 하려 하지만, 한국어 글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48) 면접대상자들에 의하면 대학마다 영어로 개설되는 강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긴 하지만, 학교나 학과 사정으로 유동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강신청을 할 때 선택의 폭이 매우 좁아서 결국 한국어 강의를 주로 들을 수밖에 없다.

49) 국내 대학의 기본 입학 요건은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다.

자신들의 학점이 높을 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국어 수업의 또 다른 어려움은 조별 과제의 수행이다. 교수가 조를 직접 지정해주지 않는 이상 조를 구성하기도 쉽지 않다. 아무래도 조별 과제를 수행할 때 의사소통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꺼리기 때문이다. 어렵게 한 조가 되어도 역할 분담을 하기도 어렵다. 유학생들은 자료조사나 발표 자료(ppt)를 만드는 것을 선호하는데, 자신들이 선호하는 일은 누구나 선호하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 어렵다. 유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역할은 발표였으며, 부족한 한국어 실력을 남들에게 알리게 되어 부끄럽고 최대한 피하고 싶은 일이라고 했다.

한편 대부분의 학부 유학생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한국어 능력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대면 수업일 때는 수업의 내용이 어렵거나 교수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우면,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물어보거나 교수를 찾아가서 질문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비대면 수업이 지속되다 보니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또한 영어 강의가 있더라도 교수들의 수업 수준이나 내용이 한국어 수업보다 떨어짐을 지적한 유학생들도 있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수업의 문제는 각 학교에서 제공하는 유학 입학자료나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유학 포털사이트에서도 제공되지 않는 정보였다. 유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학생들과 비교하면 자신들의 학점이 낮고 경쟁력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더 나아가 졸업 이후 취직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는 유학생들이 느끼는 자신들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이자 한국 유학에 있어 가장 큰 불만족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경제적 어려움

학부 유학생들이 두 번째로 어려움을 토로한 점은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대학원생들과 비교하면 대다수의 학부 유학생들은 장학금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단발성의 소규모 금액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⁵⁰⁾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 양호한 유학생들은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 문제에서 자유로운 편이었지만 본 조사에 응답한 6명의 학부 유학생 중 5명이 모두 학비와 생활비 조달의 어려움을 언급했으며, 자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유학생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본국과 대비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의 생활비에 대한 부담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 전부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실제 생활을 해 보니 더 큰 돈을 지출하는 것이 문제였다. 등록금 외에 매달 고정으로 지출하는 주거비와 통신비가 가장 큰 지출금이었는데 보통 30~50만 원 이상을 지출했다. 그 외에도 유학생들은 식비와 의복비 및 기타 잡비(의료비, 보험비, 사회활동비, 서적 및 문구비) 등의 용도로 지출을 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모두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식비를 줄이거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수입을 늘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뒤에서 언급할 유학생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끌어내는 요건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3) 한국 친구 사귀기의 어려움

학부 유학생들은 모두 한국 학생을 사귀기가 어렵다는 점을 유학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유학 전에는 한국 학생들과 친해지면서 한국

50) 예를 들어 대구의 한 대학은 재학기간 동안 한국어능력시험에서 4급 이상 성적 취득 시 1회에 한해 50만 원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신입생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급수에 따라 입학 첫 학기의 학비를 차등적으로 면제한다.

문화를 많이 경험해보고, 공부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유학생생활을 시작해보니 한국 학생들과 대화 자체를 하기가 힘들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이 많아지면서 한국 학생들과 대화해 본 적이 거의 없는 유학생들도 있었다.

국내 유학생의 규모가 큰 중국이나 베트남 출신 유학생들은 본국 출신 학생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점에 대한 외로움이나 어려움을 덜 겪고 있었지만, 몽골이나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유학생은 외로움을 더 많이 토로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 베트남 출신 유학생들 역시 한국인 학생을 사귀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언급하고 있었다. 이들은 공통으로 학과의 시험이나 취업 정보를 한국인에 비해 잘 받지 못함을 불편함으로 지적했고, 또한 한국인 학생들이 영어권 유학생들에 비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배타적이고 차별적이라고 느끼는 때도 많다고 언급하였다. 베트남 출신의 #12는 영어권 유학생들과 비영어권 유학생들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특히 강조했다.

저랑 같이 입학한 미국 학생은 인기가 좋아요. 한국 학생들과 잘 어울려 다니고 옆에서 보니까 도서관도 같이 가고 밥도 같이 먹더라구요. 제가 말을 걸면 꺼려하는 눈치가 보이는데 미국 학생에게는 안 그래서 속상해요. (면접응답자 #12)

중국이나 베트남 출신의 유학생들은 결국 이러한 어려움으로 한국인보다 본국 출신 학생들과의 교류만을 지속하게 된다고 했다.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더라도 지역이나 교내 카카오톡 단체방 혹은 페이스북이 있기에 질문을 올리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응답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인과 친하게 지내지 않아도 생활의 불편함은 없다고 했다.

나. 대학원 유학생

1) 글쓰기의 어려움

대학원 유학생들이 꼽은 유학생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글쓰기였다. 전공에 따라 다르지만, 대학원생들은 한국어나 영어로 과제와 졸업논문 및 학술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이공계 유학생인 #9와 #10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원생들은 한국어능력시험 5급이나 6급을 받았고, 실제로 능숙하게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교내 학생지원센터에서 글쓰기 첨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경우 재학 중 1회에 불과하여 쉽게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아예 첨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학교도 있었다.

한국인 친구나 랩실 동료에게 글을 좀 봐달라고 부탁해 본 적이 있지만, 그것도 짧은 글일 때 가능하고 긴 학위논문은 글을 봐주는 한국 학생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쉽게 부탁하기 어렵다. 또한 글쓰기의 어려움은 지도교수와 의 불화로도 연결되었는데 지도교수가 자신의 글을 보면 “한숨을 쉬고”, “한국어 공부 좀 더 하고 와라”는 말을 자주 한다는 것이었다. #3은 지도교수와의 관계에 대해 특히 큰 불만을 갖고 있던 유학생이었다.

다른 한국 학생들 글 보면 주술 호응이나 어색한 문장 많이 써요. 근데 지도교수는 저한테만 뭐라고 해요. 제 글 내용은 보지 않고 빨간 펜으로 어색한 표현만 잡아내요. 글 내용을 봐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없고 한국어 실력 늘리라고만 해요. (면접응답자 #3)

영어 글쓰기도 마찬가지로 큰 어려움이었다. 졸업이나 취직 혹은 진학을 위해서 졸업 전까지 SCI 논문을 출간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역시 본인이 영어로 논문을 쓰는 것도 부담이지만 글을 봐주는 동료나 친

구들도 흔치 않다. 전문 교정 서비스를 받고 싶지만 그러한 서비스는 비싸므로 유학생들이 이용하기에 쉽지 않다고 밝혔다. #1은 글로벌 대학이라고 하지만 정작 학교에서 영어 글쓰기나 발표에 대해 지원해주는 것이 너무 없어서 불편하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영어는 한국 학생들에게도 도움을 받기 어려우므로 지도교수에게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대학원생들은 학교나 국가가 유학생들에게 글쓰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센터를 마련해주거나 한국 학생과의 멘토-멘티 관계를 통해 이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해줄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공통으로 언급하였다.

2) 진로에 대한 고민과 걱정

대학원 유학생들의 두 번째 어려움은 진로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었다. 대학원생들은 한국 내 취직, 한국 내 진학, 본국 내 취직 및 제3국의 취직이나 진학을 고려하고 있었다. 전공이나 국내의 생활 경험 등에 따라서 진로에 대한 계획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공통으로 유학생들은 “기회가 생긴다면 한국에” 머물고 싶어 했지만 “그 기회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점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막연하게 삼성이나 LG 같은 국내 글로벌 대기업이나 유명한 대학으로 가고 싶지만 어떻게 가는지를 잘 모르겠고, 또한 외국인 유학생이라는 자신의 조건이 과연 회사나 대학에 매력적인지, 즉 내가 뽑힐 만한 사람인지 확신이 없다는 것이었다.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처음 왔을 때는 대학원만 졸업하면 다 잘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막상 졸업이 다가오니 자신의 처지가 답답하고 어디에도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특

히 대학원생은 한국어를 하지 못하더라도 영어만 잘해도 입학이 가능했는데, 막상 취직하려고 하면 한국어 구사능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은 국내 취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유학생들이 많았다.

더 나아가 대학원생이라는 자신의 “전문적인” 위치가 더 취업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유학생들도 있었다. 면접대상자 #1, #2, #3은 모두 박사과정 졸업 이후에 대학에서 교수가 되어 교육과 연구활동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희망사항이었다.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도 교수가 되고 싶는데, “한국 학생들끼리도 경쟁이 치열한데 외국인인 자신들에게 과연 가능한 자리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전문직을 위한 채용 정보 플랫폼인 ‘하이브레인넷’ 같은 사이트를 자주 드나들지만, 자신들을 위한 자리는 있어도 극소수거나 아니면 아예 없기 때문에 진로에 대해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었다.

3) 랩실 문화

대학원생들, 특히 전공인 이공계 유학생들은 랩실 문화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계 유학생인 #9와 #10은 처음 랩실에 “출근”하면서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거의 매일 출근하며,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연구실에만 매여 있어야 했다. 특히 #10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데 연구실에 너무 많은 시간 동안 머물다 보니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더 힘들었다고 언급했다.

랩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한국인 동료나 선후배와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은 좋은 점이었다. 특히 한국 생활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고 여겨져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언어적 한계와

한국의 문화를 잘 몰라서 혹은 한국 학생들이 유학생의 문화를 잘 몰라서 생겨나는 불편한 점들이 생기기도 했다. #9은 유학 초반에 랩실에 오래 있어서 한국 학생들과 같이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실력이 금방 증가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정작 랩실에서 사용하는 언어나 대화는 항상 비슷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한국어 실력이 오히려 퇴화했다고도 했다. 파키스탄 출신의 #10은 이슬람교를 믿는데 랩실 동료들이 이슬람교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불쾌한 상황이 많이 생겼다고 한다.

같이 냉면을 먹으러 갔는데 저는 할랄푸드만 먹잖아요. 냉면 고기를 빼고 주문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걸 (주문하는 동료가) 까먹었어요. 냉면 위에 소고기가 올려져 나온 걸 보고는 젓가락으로 그걸 빼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화가 났고, 무시당한 느낌이었어요. (면접응답자 #10)

랩실에서 생겨나는 경쟁적인 문화도 유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었다. 랩실 동료나 선후배들은 서로 더 좋은 혹은 더 많은 학회지에 논문을 출판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대들이었다. 교육학 전공자인 #3은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배우는 게 아니라 논문을 출판하기 위해서”인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책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토론하기보다 서로 먼저 혹은 더 많이 논문을 내기 위한 싸움의 과정이 곧 대학원 과정처럼 느껴져서 회의감이 든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학회지에 논문을 출판할 경우, 비싼 논문 게재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논문 출판에 대한 부담금도 토로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논문을 써야하는데, 정작 논문을 쓰고 나면 “돈이 없어서” 논문 출판이 어렵다는 것이다.

3. 경제활동 경험

본 연구에 참여한 면접대상자 모두는 유학생할 도중에 경제활동을 경험해보았고, 상당수가 현재에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부생들은 1명을 제외한 5명 모두가 현재 아르바이트 활동을 하고 있었다. 대학원생의 경우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 아르바이트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학업과 랩실의 일 때문에 바빠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방학 때 시간 여유가 있으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학부 유학생

조사 시점에서 면접대상자 5명은 아르바이트 활동을 통해 학비와 생활비 전부 혹은 일부(나머지는 부모님의 지원)를 조달했다. 그리고 학부 면접대상자 6명 모두가 국내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의하면 유학 비자(D-2)를 소지한 유학생이 아르바이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제취업확인서에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를 통해 주당 20시간 이내의 시간제 아르바이트 활동만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또한 아르바이트 활동이 허가되는 분야와 허가되지 않는 분야가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다. 즉 유학생들의 아르바이트는 규제하에서 할 수 있는 제한적인 경제활동이다.

유학생들은 모두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 대부분 인지하고 있었다. 입학할 때부터 대학 내 유학생 담당자로부터 관련된 내용을 여러

번 전달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알면서도 사전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허가되지 않는 분야-예: 개인 과외 교습이나 건당 돈을 받는 배달업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 분야에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어기면 벌금이나 체류에 대한 불이익, 심하게는 출국 조치를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학생들은 편의상, 혹은 고용주와의 관계⁵¹⁾에 의해 불법 활동을 하고 있었다. 유학생들은 이러한 고용 관계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정당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도 또한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아르바이트를 가장 쉽게 구할 수 있고,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더라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업종이 많기 때문에, 이를 참고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밝혔다.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는 본국 출신 유학생들의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페이스북을 통한 광고 이용, 둘째, 직접적으로 아는 본국 사람 혹은 한국 사람을 통한 연결, 세 번째는 에브리타임을 비롯한 대학교 커뮤니티 앱이나 알바몬 같은 아르바이트 광고 앱을 활용하는 것이다. 중국이나 베트남 출신 유학생들은 첫 번째 방식을 가장 많이 활용하였고, 우즈베키스탄과 몽골 유학생은 직접적인 사회 네트워크를 주로 활용한다고 했다. 소셜 네트워크 앱을 활용하는 유학생들은 한국어에 능숙하거나 한국 문화를 잘 알고 있을 때 주로 이용하는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의 경험은 식당(설거지, 서빙), 배달기사, 편의점, 면세점, 슈퍼, 모텔 청소, 휴대폰 대리점, 한국어 과외(본국 출신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과외), 화장품 대리점, 택배, 건설업 등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졌다. 보통 시간제로 일을 하지만 배달기사는 건당 돈을 받기 때문에

51) 유학생들은 사전 신고 시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주가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최저 시급을 비롯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유학생이 시간제취업을 신고하거나 허가받을 수 없다.

단기적으로 일을 하기에 좋아서 선호한다. 이 외에도 면접대상자들은 근로의 농장에서 일을 하는 유학생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학부 유학생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주로 표준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임금체불 및 외국인 차별이었다. #13은 2018년에 입국한 이후로 한 번도 쉬지 않고 경제활동을 지속해서 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근로계약서를 써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싶었지만 고용주가 원하지 않았고, 이를 요구하는 경우 고용이 취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했다.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일을 하는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고용주들은 이를 무시한다. 2021년 현재 최저임금은 8,720원이지만 유학생들은 5~6천원의 시급을 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을 시작한 처음 며칠간은 인턴 혹은 테스트 기간이라고 하면서 수당을 전혀 주지 않는 고용주들도 있었다.

#12는 내용을 알지 못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경험이 있다. 한국어를 잘하지 못했던 유학 초기에 고용주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상태로 무조건 서명만 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계약 내용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처음 한 달을 일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는데, 근로계약서에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명시되어 있어서 그만둘 수가 없었다고 했다.

#4는 고용주의 가혹한 대우를 참지 못해 체납된 임금을 포기하고 일을 그만두었다. 식당에서 서빙 일을 했는데 본인이 서투르고 한국인보다 느려서 고용주에게 욕설을 듣고 손찌검을 당했다. 고용주는 며칠 후 서빙 일을 그만두게 하고 설거지를 시켰는데, 그릇을 떨어뜨리고 깨니 고용주에게 맞고 욕을 많이 들었다. 처음에는 버티면, 그리고 능숙해지면 나아지리라 생각했지만, 고용주의 태도는 점점 더 심해져서 결국 임금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유학생의 커뮤니티가 이미 큰 규모로 형성되어 있는 중국인이나 베트남 유학생의 경우, 강압적이고 가혹한 고용주에 대한 소위 블랙리스트가 이미 마련되어 있어, 유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전에 이 정보를 찾아보고 피한다고 귀띔했다.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이러한 리스트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한다.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학생의 경우, 이러한 리스트는 없지만 직접적으로 네트워킹을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피해야 하는 가게는 익히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학부 유학생들은 대부분 장학금을 받기보다 자신들이 직접 돈을 벌거나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 경제활동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법무부와 교육부에 의해 경제활동은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수행할 수 있지만, 이는 많은 절차를 필요로 하기에 불법으로 내몰기 좋은, 달리 표현하면 유학생들을 불안정한 지위로 이끄는 것이기도 했다. 또한 유학생들은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한적이고, 학교 수업시간을 피해서 주 20시간만 일을 할 수 있어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고 공통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일을 구하더라도 수업시간을 피해야 하므로 밤이나 새벽에 일하는 경우도 많아서 오히려 학업에 집중할 수 없다는 의견도 공통으로 제시되었다. 더 나아가 이들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노동자라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혜택-예: 야간수당이나 주휴수당 등-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잘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나. 대학원생

대학원생들 역시 학부생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다. 이들은 현재 대부분 장학금을 받고 있었지만 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 아르바이트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업과 랩실의

일이 바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하며, 방학 때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여윌돈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대학원생들이 주로 하는 아르바이트는 통역과 번역, 한국어능력시험 과외(본국 유학생 대상), 모국어 과외나 학원강사(한국인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생보다 한국어 구사능력이 좋은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들은 자신의 모국어 자산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지도교수나 대학원 동료, 혹은 한국 생활에서 알게 된 지인 등을 통해 통역이나 번역일의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또한 빨리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좋은 급수를 받아야 하는 본국 출신⁵²⁾ 유학생들에게 한국어 과외를 해 주는 경우도 있었다. 중국어와 베트남어의 경우 국내의 수요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학원 강사나 과외 자리가 자주 나오는 편이라고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줄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줄었다고 공통으로 언급했다.

이러한 아르바이트 활동 역시 대부분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혹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은 채로 이루어지는 활동이었다. 대학원생들도 이러한 아르바이트 활동의 위험성과 불법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털어놓았다.

4. 주거 경험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이나 경험에 대한 의견은 학부생이나 대학원생 구분 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유학생은 현재 학교 주변 원룸에

52) 대학 입학의 조건인 한국어능력시험 3급을 받아야 하는 유학생이나, 한국어능력시험 등급을 높여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유학생들이 주요 수요층이라고 한다.

서 자취를 하고 있었으나, 과거에 기숙사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었다. 기숙사는 한국 실정을 잘 모를 때, 입학과 동시에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줄 알고 들어간 유학생들이 많았다. 그러나 기숙사 생활이 초래하는 여러 불편함으로 인해 유학생들은 가격이 비싸도 원룸 자취를 선택하였다. 하지만 유학생들은 원룸 생활에서도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고,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환경으로 옮기고 싶어 했다. 그러나 비용의 문제로 이를 쉽게 실천하기는 힘들다.

가. 원룸 자취 혹은 기숙사 거주 선택

본 연구에 참여한 면접대상자 14명 중 12명이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고 있었고, 2명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리고 13명이 기숙사에서 거주해 본 경험이 있었다. 즉,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지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현재 자취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숙사가 주는 여러 불편함 때문이라고 했다. 유학생들이 꼽은 공통적인 불편함은 출입시간이나 외박에 대한 규정 그리고 기숙사의 제한적인 시설이었다.

기숙사는 낡고 노후된 곳이 많다. 또한 취사가 금지되어 있어 유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식, 특히 본국의 음식을 섭취하는 데 제한적이었다.⁵³⁾ 그뿐만 아니라 기숙사 입주와 동시에 기숙사의 식당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한국 음식을 선호하지 않는 유학생 혹은 문화적으로 금기가 있는 유학생들에게는 기숙사 거주가 매우 불편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53) 취사가 가능한 기숙사도 있었다. 그러나 작은 하이라이트 전기레인지 한 개 정도가 구비되어 있고 주방이 작아서 취사에 많은 불편이 있다고 한다.

이에 유학생들은 짧게는 1~2달에서 한 학기, 길게는 1년 정도를 기숙사에서 거주했다가 점차 학교 근처의 자취방으로 나가서 거주했다. 자취방은 입주 초기에 보증금을 내고 매달 월세를 내는 방식으로 금액을 지불하고 있었다. 보증금은 서울의 경우 200~1000만 원, 대구의 경우 50~300만 원 정도였으며, 월세는 25~50만 원(관리비 포함) 정도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취방을 구하는 방법 역시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본국 출신 유학생들의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라오는 정보를 활용하는 것, 둘째, 직접적으로 아는 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을 통한 연결, 세 번째는 학교 주변의 부동산중개업소를 활용하는 것이다. 중국 유학생들은 대부분 카카오톡 단체방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단체방에 올라오는 정보는 주로 자신이 현재 사는 방을 나가게 되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 혹은 건물주로부터 부탁을 받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자신이 광고글을 올려서 새로운 세입자와 건물주와의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 건물주로부터 월세를 할인받을 수 있으므로 유학생들이 정보를 잘 올린다고도 했다.

상당수의 유학생들은 처음 구했던 월세방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다. 이들은 공통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집을 구했는데, 한국어가 서툴러서 집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계약 사항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계약한 경우였다. 1년 계약인 줄 알았는데 2년 계약이라서 자신의 계획보다 더 오래 첫 번째 집에서 거주한 유학생들도 있었고, 집에서 발생하는 소음(2분 간격으로 발생하는 지하철 소리)을 모르고 계약했다가 입주 후에 불편함을 겪은 유학생도 있었다. 무사히 계약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집주인이 본인은 몰랐던 계약서의 내용을 언급하거나 자신이 하지 않은 기물의 파손을 언급하면서 보증금을 깎아서 내보낸 경험은 대다수의 유학생이 겪은 것이었다. 또한 비슷한 가격이라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외국인에게는 더 좋지 않은 방을 보여준다고 불평을 토로한 유학생들도 있었다. #14는 이에 대한 강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저는 보증금 100에 (월세) 30만 원을 내고 있어요. 근데 전에 랩실 다른 한국인 동료 방을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같은 가격이었는데 제 방보다 훨씬 더 크고 창문도 있더라구요. 화도 나고 부럽고 그랬어요. (면접응답자 #14)

이렇게 겪은 불편한 경험은 유학생들이 부동산중개업소보다 본국 출신 커뮤니티(카카오톡 단체방) 혹은 직접적으로 아는 인맥을 활용해서 집을 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주거지를 구하게 되면 부동산 중개비를 내지 않아도 되고, 자취방에 대해 더 확실한 정보를 알 수 있어 선호하는 방법이었다.

#8은 부동산중개업소로부터 직접적인 불편함을 겪은 경험은 없지만, 자신이 원하는 매물이 부동산중개업소에 없어서, 아는 인맥을 통해 자취방을 구했다. 작년부터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비대면 수업이 많아지면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동안 지내던 원룸 자취방은 수면과 학습 기능이 혼재되어 있어서 공부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고 한다. 적어도 투룸 이상으로 이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을 찾아보았으나, 크고 비싼 빌라를 주로 보여주어서 가격이 너무 비싸서 집을 구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는 아르바이트 활동을 하는 슈퍼의 사장님에게 사정을 얘기했는데 사장님이 주변의 2층짜리 주택에서 2층 전체를 세놓고 있는 노부부의 집을 소개시켜 주었다. 이에 현재 보증금 300에 30만 원을 내고 쓰리 룸에 거주 중이다.

한편 거주지로 기숙사를 선택한 유학생의 결정 요인은 비용이었다. #6은 학부에서부터 석사 및 박사과정을 모두 대구에서 했는데, 기숙사뿐 아니라 원룸 자취, 가족과 투룸 생활, 친구들과 투룸 공유 등 여러 방법의 거주지를 선택해 온 경험이 있었다. 자취를 가장 선호하지만, 현재 배우

자와 자녀가 중국에 있고, 자신은 생활비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다. 박사 마지막 연차였던 이 유학생은 기숙사를 “잠만 자고 씻고 나오는 곳”으로 표현하며 그러한 기숙사에 돈을 많이 쓰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극한 상황”이 아니라면 원룸에서 자취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3 역시 기숙사 거주 의 주요 이유를 저렴한 비용이라고 응답했다. 불편한 점이 많지만, 기숙사의 비용이 다른 주거 형태에 비해 가장 적게 들어가기 때문이다. 특히 각종 유틸리티 비용이나 무선 인터넷 비용이 공짜인 점은 기숙사 생활의 장점이었다. 기숙사의 또 다른 장점으로 학업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도 덧붙였다. 자취를 하면 아무래도 귀가 시간도 자유로워지고 친구들을 불러서 놀기 쉬운데 기숙사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기숙사의 가격이 저렴해도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유학생들에게 기숙사는 여러모로 열악한 환경이기도 했다.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거주했던 #10은 석사과정 초기에 기숙사에서 지냈다. 그러나 어린 자녀와 아내가 생활하기에 기숙사의 시설은 좋지 않았고 주변으로부터 많은 민원이 들어와 기숙사를 포기했다고 한다.

와이프가 음식 만들면 향신료 냄새 많이 난다고 향의 많이 들어왔어요. 애기 밤에 울거나 걸으면 시끄럽다고도 뭐라고 하고... 와이프 우울증 걸리고 주변에 사람은 없고 많이 힘들어해서 돈 더 들어도 나가서 살았어요. (면접응답자 #10)

#10은 현재 석사과정 때와는 다른 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다니고 있지만, 기숙사에서의 거주는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고 학교 주변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

나. 주거 환경의 불편한 점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현재 주거 환경에서 가장 불편한 사항을 “주거의 질”로 꼽았다. 이들은 주로 보통 6~10평 남짓한 방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원룸에는 침대,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에어컨, 전자레인지 및 책상이 갖추어져 있다고 한다. 방의 크기에 따라서 월세 가격이 올라가기에 조금 넓은 원룸에서 두 명 이상이 방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학생들이 언급하는 좋지 않은 주거의 질이란 좁은 방, 창문이 작거나 없어서 채광과 환기가 좋지 않은 방, 지하에 있어서 습기가 많이 차는 방, 오래되고 낙후된 환경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벌레 등을 의미했다. 중국에서 온 면접응답자 #5는 자신의 주거 환경에 대해 많은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저렴한 가격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아르바이트로 돈을 많이 벌어서 빨리 이사하고 싶다고 했다.

여름에 곰팡이 냄새 많이 나서 싫어요. 좁아서 다른 활동을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잠만 자고 비대면 강의 듣기도 힘들고... 집에 들어오면 누워있다가 핸드폰 하고 자요. (중략) 그래도 기숙사보다는 좋아요(웃음). 돈 빨리 많이 벌어서 더 좋은 집 가고 싶어요. (면접응답자 #5)

열악한 주거 환경의 질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 심각하게 다가온 문제였다. 코로나 이전에는 집 밖에서 하는 활동들이 많았지만, 대부분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따라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좁고 열악한 집에 대한 불만이 커지기 시작한 것이다. #5와 마찬가지로 유학생 대부분은 최소한의 바깥 활동 외에 집에서는 주로 누워 있게 된다고 언급했다. #2는 그렇게 집에만 있다 보니 무기력해져서 작년에 논문 진도를 많이 내지 못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

고자 올해는 일부러 매일매일 도서관에 갔다고도 덧붙였다.

#1은 유일하게 주거 환경에 대해 만족을 표현했으나,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 원으로 주거비가 비쌌다. “너무 비싸서 다른 집도 생각하긴 하지만 지금 집의 만족도가 너무 커서 이사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1 역시 코로나를 겪으면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 과정에서 현재 집에 대한 만족감이 커진 것이다. 또한 유학생들은 집의 소중함과 의미에 대해서 강조했다. 유학생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해서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을 하는 곳”이라는 것이다. #11은 집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처음에는 잠만 잘 잘 수 있고, 따뜻한 물만 잘 나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집에서 하는 활동이 많아지니까 집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중략) 저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기숙사가 정말 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말도, 문화도 못 배우고 혼자 혹은 비슷한 학생들끼리 고립되는 곳일 뿐이에요. (면접응답자 #11)

이 외에도 일부 유학생들은 집주인 혹은 건물주의 차별적 태도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안 되어 있으면 무조건 유학생인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욕을 했고, 자신의 쓰레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치우라고 시키는 집주인이 많다고 했다. 또한 화장실의 변기를 비롯해서 시설이 고장 나더라도 고쳐주지 않고 스스로 고쳐 쓰게 하는 집주인이 많다고도 했다.

5. 건강보험 가입과 의료기관 경험

2021년 3월부터 유학생 건강보험 의무가입이 시행되었다. 이에 면접 대상자들은 조사 시점에서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만족도는 학부생/대학원생의 구분보다 체류 기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국내 체류 기간이 긴 유학생들일수록 만족감을 표시하였는데,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커지고, 의료기관 내에서도 받을 수 있는 진료나 치료의 폭이 커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체류 기간이 짧고 어린 유학생들일수록 보험 가격이 비싸서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2021년에 입국한 유학생은 건강보험을 한국 유학에 당연히 소요되는 하나의 비용으로 인식하여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

가. 국내 체류 기간이 긴 유학생: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만족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 체류 기간이 5년 이상, 즉 장기 체류 유학생들-면접대상자 #1, #2, #3, #6, #8, #10-은 건강보험 가입에 만족감을 표현했다. 건강보험 의무가입이 시행되기 전, 유학생들은 학교에서 단독으로 추천한 사설 의료보험(월 2만 원 남짓)에 가입했었다. 사설 의료보험은 병원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본인이 먼저 지불하고 이후에 산정하여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유학생들은 의료보험에 가입했어도 충분한 치료비가 없다면 병원에 갈 수 없었다. 이는 특히 치료비가 비싼 치과 진료가 필요한 유학생들이 주로 겪는 경험이었다. 중국에서 온 #3은 어금니 충치가 매우 심했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치과를 가지 못했다가 결국 치료를 하지 못하고 발치를 했다.

이 너무 아픈데 병원에 가지 못했어요. 치료비가 없어서요. 약국에서 진통제만 계속 사 먹었어요. 나중에 너무 아파서 울고 다녔어요. 친구가 병원 데려갔는데 신경치료 너무 늦었다고 해서 그냥 발치하고 끝났어요.

비록 월 4만 원 정도의 비싼 금액이긴 하지만 건강보험은 사실 의료보험과는 달리 진료를 받는 즉시 공단 부담금의 보조를 받는다. 따라서 유학생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국내에 장기간 체류한 유학생들은 사설보험과 건강보험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어 이에 대해 크게 만족했다. 건강보험 가입 전의 병원은 “진짜 아파야 가는 곳”이었지만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한 이후로는 가벼운 몸살 기운이 있거나 근육통이 있어도 쉽게 갈 수 있는 곳으로 바뀌었다. #1은 건강보험 가입 이후 한의원을 자주 가게 되었다고 했다.

전에는 병원 못 갔어요. 치료비를 먼저 지불해야 하니깐요. 지금은 너무 좋아요. 저침 맞고 추나 받는 것 좋아하는데 이제 이것도 다 보험되니까요. 잠 좀 잘못 자서 몸이 찌뿌둥하거나 소화 잘 안 되면 한의원부터 가요. (면접응답자 #1)

#8은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유학 초기에 학교에서 추천한 사설 의료보험도 지속해서 가입하고 있었다. 그는 건강보험이 병원을 다니기에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아직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예: MRI-이 제법 많다고 했다. 반대로 사설 보험은 상해를 입었을 때, 혹은 건강보험으로 되지 않지만 나중에 보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꽤 크기 때문에 좋은 제도이므로, 둘 다 가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강보험 가입에 만족한 유학생들도 금액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 2021년까지는 월 4만 원이라 큰 부담이 아니지만, 점차 그 금액이 늘어나서 2023년에는 6만 6천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유학생들은 모두 좋은 제도인 것은 알지만 유학생의

처지를 고려하여 금액을 낮추어주면 좋겠다고 공통으로 의견을 피력했다.

장기 체류 유학생들은 비교적 많은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지만, 이는 주로 내과, 외과, 치과, 피부과 및 한의원에 국한되었다. 정신과나 심리 상담은 거의 받아보지 않았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우울할 때, 병원을 가보라는 조언을 종종 받아본 적은 있었지만, 정신과나 정신건강의학과를 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는 정신과 가면 기록이 남아 입시나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들어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현재 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크긴 하지만 병원을 갈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장기 체류 유학생들은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언어 문제를 많이 언급하기도 했다. 유학 초기에는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데다가, 특히 병원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잘 몰라서 병원에 가는 것도 두렵고, 병원에서 불편한 경험도 많이 겪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어가 능숙한 편이고, 휴대폰 번역 앱이 발달해 있어 병원 용어를 잘 몰라도 병원에 다니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줄었다고도 덧붙였다.

나. 국내 체류 기간이 짧은 유학생: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불만

국내 체류 기간이 짧은 유학생들은 건강보험 가입에 대해 강한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면접대상자 #4, #7, #9, #11, #12, #14는 건강보험 가입료가 너무 비싸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주로 20대인 이들은 병원에 갈 일이 많이 없고, 크게 아파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프면 병원에서 약을 구매하여 먹거나, 부모님으로부터 본국의 약을 조달받아서 복용했을 뿐이었다.

또한 본국에서는 한국의 건강보험 같은 제도가 제대로 발달해 있지 않

기 때문에 아직 낯설고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제도라고도 했다. 당연하게도 이들은 내년부터 오르는 건강보험 가격에도 큰 불만을 표시했다. 가능하다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싶지 않다고도 언급했다.

한편 면접대상자 #5는 단기 체류자 중 유일하게 건강보험 가입에 대해 불만이 없었다. 그는 입학 전부터 한국 유학에 필요한 사항에 건강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이 없다고 했다. 즉, 그에게는 건강보험 의무가입은 한국 유학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하나의 필수 “비용”이었던 것이다.

선배들이 (건강보험) 다 안 좋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내라고 하니까 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내 주셨고, 이제는 제가 보험비까지 포함해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건강보험을) 유학비용이라고 생각해요. (면접응답자 #5)

6. 사회적 관계

본 조사에 응답한 면접대상자들의 대부분은 유학생생활에서 좁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있었다. 대학 내에서는 학과 조교, 교수, 유학생지원센터의 담당자와 주요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대학 밖에서는 주로 아르바이트 관련자(고용주나 동료), 게임 길드원, 종교 기관의 사람들 정도였다. 한국 학생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두터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유학생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형성한 사회적 관계는 많아지고 두터워지기도 하지만, 이 역시도 피상적인 단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1은 국내 체류기간이 길고 한국어 실력도 거의 완벽하게 구사한다. 학과의 한국인 동료나 지도교수와도 사이가 매우 좋고,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알고 지내는 한국인들도 매우 많다. 그러나 어려운 일

을 겪으면 한국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오히려 숨기게 되고, 본국 출신의 친구들에게 먼저 얘기를 하게 된다고 했다. 친구들이 무언가를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감해주고 진심으로 걱정해주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 자체로도 훨씬 부담감이나 걱정이 줄어들었다고 했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1과 마찬가지로 유학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담하는 사람은 한국인이기보다 본국 출신의 친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유학생 담당자나 학과의 조교, 교수 등은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줄 때도 있지만, 행정적인 도움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어려운 일이 있거나 질문이 있을 때, 중국 유학생들과 베트남 유학생들은 카카오톡 단체방과 페이스북을 주로 이용한다고 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집을 구하거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때도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수단이었던 소셜네트워크는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했다. 어떤 과목이 학점 따기에 유리한지, 학교 주변의 어떤 식당 음식이 맛있는지, 졸업 요건이 무엇인지 등등에 대한 정보를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을 통해서 얻는다는 것이다.

소셜네트워크는 또한 중고장터로도 사용되고 있었다. 노트북, 아이폰, 휴대폰, 옷, 가구 등 유학생들의 생활에서 필요한 물건을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사고팔고 있었으며 이러한 네트워킹의 발달로 인해 특히 중국 유학생들은 한국 학생들이나 한국인들의 도움의 필요를 크게 느껴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소셜네트워크에서 맺는 관계가 갖는 피상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일상의, 사소한 얘기들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지만, 취직이나 좋은 아르바이트 정보는 소셜네트워크에서 확인할 수 없다. 중국 출신의 #2와 #3의 경우, 이러한 이유로 점차 중국

인들의 소셜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커뮤니티 발달이 약한 몽골과 파키스탄 유학생들은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나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도 유학 과정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본국 출신의 친구들이었다. 신뢰관계에 기반한 한국인과의 교류를 원하지만 쉽지 않고, 이러한 점이 유학생활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다고도 언급했다.

한편 #8은 예외적으로 한국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한국에 오래 거주한 경험이 있기도 했지만, 축구를 비롯한 많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서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 학생들과 가까이 지내지 못하는 점에 대해 “자신이 먼저 다가서기보다 한국 학생들이 먼저 말을 걸어주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 학생들도 유학생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아서 결국 유학생과 한국 학생의 사이는 가까워지지 않고 유학생들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고도 했다.

#8과는 반대로 #10, #12와 #13은 한국인들의 인종차별 혹은 본국에 대한 차별적 태도로 한국인들과 가까이 지내지 못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10은 대중교통 이용을 최대한 지양하려고 한다. 특히 가족과 함께 이동할 때는 택시를 탄다.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사람들이 보내는 시선이 무섭고, 자신들에게 욕을 하면서 내리라고 한 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나 집 근처 슈퍼 정도의 한국인들과 최소한으로 알고 지내고 새로운 사람을 별로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다. #12는 한국인들에게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 해주지 않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아르바이트도 못 구한 경험이 많다. 유학 도중에 겪은 여러 차별과 배제로 한국인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다고도 했다.

7. 미래에 대한 계획

면접대상자들의 미래 계획은 학력에 따라 사뭇 다르게 나타났다. 학부생들은 주로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한국 취직 사정이 좋지 않다고 익히 들었고, 어떻게 취직을 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고려 중이다.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는 유학생들도 있었는데 현재 다니는 대학 말고 국내의 더 좋은 학교로 가고 싶다고 했다. 대학원생들은 학부생들에 비해 국내 취업에 대해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역시 구체적으로 취업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막막해하고 있었다. 대학원생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영미권이나 유럽으로 박사과정이나 박사 후 과정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본인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기보다 취직이나 진학이 되는 대로 하겠다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유학생들도 있었다.

가. 학부생: 한국 혹은 본국 사이

학부생들은 졸업 이후 우선적으로 한국에 남고 싶다는 의견을 공통으로 냈다. 학부생 면접대상자들은 현재 1-4학년 사이에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었는데, 저학년일수록 졸업 이후에 대한 계획이 불분명했고, 고학년 유학생들은 취직을 하고 싶지만 그 방법을 잘 몰라서 힘들어했다. 특히 고학년 유학생들은 유학을 오기 전에는 한국 생활에 대해 학위를 따고 선진 기술이나 학문을 배우는 과정으로 생각했었지만, 유학생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크기 때문에 졸업 후에도 한국에 계속 머무르고 싶어 했다.

그러나 “어떻게”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 문제였다. 저학년 유학생들은 막연하게 삼성이나 LG 같은 국내 대기업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다고 했지만, 취직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계획을 해보지 않았으며, 4학년 때 대기업에 지원해 보겠지만, 안 되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본국에 돌아가서도 어떤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국 대학의 학위가 있으니 취직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고학년 유학생들은 취직 준비와 미래 계획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었다. 그러나 한국 학생들이 인턴이나 공모전 등을 준비하고 토익 시험에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외국인인 내가 여기서 취직을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고 한다. 취직을 하려면 한국어 구사 능력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한국어도 부족하고, 한국 학생들에 비해서도 여러모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학에서 마련해 주는 취업박람회에도 가보았지만, 좋은 회사들은 자신들을 선호하지 않고, 채용 담당자의 태도 역시 유학생에 배타적으로 느껴져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4와 #13은 취업박람회에 큰 실망을 했다.

저는 정말 정보를 얻고 싶어서 갔어요. 어떻게 하면 취직할 수 있는지 알려주길 기대했어요. 인턴 기회도 있다 그래서 더 기대했구요. 근데 채용 담당자는 보니까 나한테 관심이 있기보다 한 번 보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채용하겠다는 거더라구요. (취업박람회 끝나고) 연락 준다고 해놓구서 연락도 없었어요. (면접응답자 #13)

취업박람회 가 보니까 전부 모르는 회사들만 있었어요. (웃음) 저는 삼성이나 LG, SK 같은 대기업 가고 싶은데 그런 회사들은 없어서 실망했어요... (중략) 한국에서 학위는 딸 수 있지만 취직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이런 거 상담해 주는 데 있으면 좋겠어요. (면접응답자 #4)

고학년 유학생들 역시 국내에서 취직이 실패한다면 본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저학년 유학생들과 달리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냥 졸업만 하고 돌아가면 “쪽 팔린다”는 것이며, 비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국에 남기 위해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는 유학생들도 있었다.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는 유학생들은 현재 다니는 학교보다 더 좋은 대학으로 가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왕 다니는 대학원이라면 나중을 위해 “더 좋은 곳”에서 학위를 따는 것이 자신의 미래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한편 학부생들에게 한국에 더 머무른다는 것은 영주자격 취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3-5년 정도 한국에서 일을 경험해 보고 본국 혹은 다른 국가에서 또 다른 경험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즉, 국내 취직을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영주를 시도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영주자격 부여가 국내 취직이나 체류를 높이는 방법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나. 대학원생: 한국과 제3국 사이 혹은 졸업 우선

대학원생들 역시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장기간 머무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학부생들에 비해 국내 취업에 대해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본국으로 돌아가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거나, 좋은 일자리가 있어도 본국이나 영미권에서 학위를 한 학생들에 비해 자신의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되도록 한국에 있고 싶다고 했다. 또한 이들은 오랜 한국 생활을 하면서 한국 문화와 생활 방식에 익숙해져 한국을 선호했다. 한국이 살기 편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가족을 만나러 갔다 오기에도 편리하다”는 것이다. 이들이 꿈은 한국 문화와 생활 방식의 장점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빠른 음식 배달, 늦은 시간에도 안전한 치안 등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 역시 국내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고, 취업의 가능성을 희박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취직을 할 수 있다면 한국에 정착할 생각이 있지만,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외국인을 위한 채용 자리는 극히 적고, 가끔 나와도 좋은 자리가 없으며, 한국인들과 한국에서 교수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과정이기 때문이다. #1, #2, #3은 한국 유학이 좋은 선택이었지만, 분명한 한계도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박사 하면서 많이 배우고, 한국에서 편하게 살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근데 애매해요. 이제 베트남 돌아가면 한국에서만 편하게 못 살고, 한국처럼 좋은 일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고 싶은데 외국인인 제가 취직이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면접응답자 #1)

중국에도 교수 자리 경쟁 엄청 치열해요. 중국에서 학위 한 사람도 많고 미국에서 한 사람도 많아요. 저는 가면 경쟁력 없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오래 살아서 이제 중국이 더 불편한 것도 있고... (중략) (면접응답자 #3)

한국에 남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은 차선책으로 영미권이나 유럽으로 박사 후 과정을 계획한다. 박사 후 과정을 더 선진 사회인 영미권이나 유럽에서 하면, 자신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이나 본국에서 취직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커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영국 가서 포닥하고 싶어요. 포닥 거기서 하고 논문 많이 써서 한국이나 중국 가고 싶어요. (중략) 사실 한국에 더 남고 싶은데 지금은 제가 너무 약하고, 학위 하나만 갖고 있으니까... (중략) 포닥 하면 아무래도 취직이 잘 되지 않을까요? (면접응답자 #2)

한편 #6과 #10은 미래에 대해 구체적인 준비나 계획을 하는 것에 대해 꺼렸다. #6은 중국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본국에 빨리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다. 취직보다는 졸업을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졸업 이후 중국에서 차차 취직에 대해 생각할 예정이다. 이번에 졸업을 못 하면 자비로 학교에 다녀야 하는데, 그러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가장 큰 목적은 오직 졸업뿐이라는 것이다.

#10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기 때문에 미래 계획을 상세히 세우기 어렵다고 했다. 단신 유학이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었겠지만, 가족의 삶도 있고, 가족이 원하는 바도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무리하게 혹은 고정적인 계획을 세우기보다 유연한 자세로 있다가 졸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한국에 남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이 또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결정할 때가 되면 “되는 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학부생들과 달리 대학원생들은 영주자격 취득과 영주 체류에도 많은 관심이 있었다. 영주자격을 취득한다면, 당연히 한국에 계속 영주할 의사가 있다. 취업이 전제되어서 영주를 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영주자격만 주어지더라도 한국에서 취직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영주자격의 부여 혹은 조건 완화는 전문직 고학력 유학생들의 정착을 유도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제4절 소결 및 정책 제언

본 연구는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석박사 과정생 14명과 심층 면접을 통해 이들이 유학생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과 어려움을 살펴

보았다. 유학생들의 일상생활은 학력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도 있었지만, 공통으로 경험하는 어려움들도 있었다. 유학생들이 공통으로 겪는 생활과 어려움을 토대로 사회 포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유학생들의 국내 대학 선택은 장학금의 기회가 많고 생활비가 적게 들어가는 곳에 집중된다. ‘한국’을 선택한 배경은 지리상 가까운 거리, 친인척이 있거나, 먼저 유학을 경험했던 친구나 선배의 권유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의 경우, 주로 장학금이나 생활비가 지원되는 곳 혹은 생활비가 적게 드는 곳을 우선으로 선택했다.

둘째, 유학생들은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을 한국생활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유학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학부생일수록 한국어로 공부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강조했고, 대학원생의 경우 일상생활의 한국어 구사는 큰 문제가 없으나 과제나 시험 및 논문 작성, 즉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당수의 유학생은 경제활동을 경험했다. 유학생들은 경제활동과 관련된 법무부와 교육부의 규정을 잘 알고 있지만 여러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규정을 지키지 않는 불법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넷째, 유학생들은 기숙사에서 모두 살아보았지만, 기숙사 생활이 주는 여러 불편함으로 인해 학교 주변에서 자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원룸 생활에서도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고, 더 좋은 환경으로 옮기고 싶지만, 비용 문제로 이사를 계획하긴 어렵다.

다섯째, 유학생들은 건강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건강보험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국내 생활을 오래 할수록 크게 나타났으며, 아직 보험을 이용하지 않은 유학생들은 보험 가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여섯째, 유학생들은 좁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여 유지하고 있었다. 대학 내에서는 학과 조교, 교수, 유학생지원센터들과, 대학 밖에서는 아르바이트 관련자, 게임 길드원, 종교기관의 사람들 정도와 주요 네트워크를 형성했으며, 한국 학생들과 두터운 사회적 관계는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일곱째, 유학생들은 졸업 이후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막막해하고 있고, 취직이 안 되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막연한 계획을 세운다. 대학원생들은 학부생보다 국내 취업에 대한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이들 역시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 이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영미권이나 유럽으로 진학하기를 희망했다.

요약하면, 유학생들은 학업에서부터 생활 각 영역까지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함은 자명하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와 유학생들이 면접을 통해 국가나 학교의 정책이 개선되었으면 하고 제시했던 내용을 토대로 정책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는 장학금 지원과 생활비용 마련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 이들의 국내 대학 선택에는 장학금과 생활비가 주요한 요건이었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곳, 생활비나 학비가 적게 드는 곳일수록 유학생들이 우선 선택했다는 점은 이를 시사한다. 서구 국가들에 비해 학비와 생활비가 저렴한 점은 한국 유학의 큰 장점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장학금의 기회가 줄어들면, 그리고 생활비 마련이 어려워진다면(혹은 생활비가 지금보다 더 많이 소요된다면) 국내로의 유학 선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유학생들은 국내 대학의 높은 교육 수준과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했지만, 향후 진학은 서구권 국가를 더 선호했다. 이는 유학생이 유학 갈 나라를 선택할 때 국내 대학의 장점이 높은 교육 수준이 아니

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학비용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장점을 부각하고 유학생들을 유치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유학생들이 학업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부족한 한국어 실력으로, 읽고 듣고 쓰기 전반에 걸쳐 한국어로 공부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학부생은 한국어로 공부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강조했고, 영어 수업이 많이 개설되지 않거나 개설되더라도 수업의 질이 높지 않음을 불만으로 제시했다. 대학원생은 과제 제출이나 논문 작성에 있어 한국어로 글을 쓰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을 받아도, 매일매일 수업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벅차다는 것이 특히 학부생들을 중심으로 공통으로 나온 의견이었다.

이에 대해 유학생들은 같은 국적 학생들끼리의 멘토링을 모두 제시했다. 한국어나 수업 내용에 익숙한 대학원생이나 3, 4학년 학생을 1, 2학년 학생들과 함께 멘토링을 구성하여 학업을 도와주게 하면, 당장에 한국어로만 진행되어 어려운 수업을 따라가기 용이해지고,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한국어능력시험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같은 국적 학생들끼리 한국어 과외도 할 만큼 학생들은 서로를 활용하는 데 익숙하다. 그러나 멘토링이 지나쳐서 같은 국적 학생들끼리만 뭉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고 학업에만 국한될 수 있게 하는 제한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유학생의 경제활동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유학생들의 상당수가 학업과 경제활동을 병행했고, 이는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유학생들은 현재 법무부와 교육부에 의해 제한적으로 허가된 경제활동을 잘 알고 있지만, 경제활동의 현실은 이와 사뭇 다르므로 알면서도 불법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었다. 유학생들이 제시한 희망하는 경제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활동 가능 시간의 증가였다.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 시간을 늘리는 수밖에 없으므로⁵⁴⁾, 현재의 규정인 주당 20시간에서 늘렸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취업 허가를 받기 위한 복잡한 서류 절차가 완화되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으며, 시간제로만 허용되는 경제활동의 제한이 풀려서 배달처럼 건당 돈을 받는 업종에서 일하는 것이 합법화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중에 발생한 어려움-고용주로부터 받는 폭언이나 폭력, 정당하지 못한 임금 지불 등-을 해결해주는 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통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학교의 유학생지원센터의 도움에도 한계가 있고,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부에 항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넷째,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의 개선과 자취방 구하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노하우를 학생들에게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유학생들은 대부분 기숙사에서 처음 유학생생활을 시작했지만, 기숙사의 여러 불편함으로 인해 학교 주변에서 주로 자취를 하고 있었다. 기숙사가 불편하지만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기숙사가 자취에 비해 저렴하여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곧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 시설의 개선-예: 취사가 가능한 시설의 신설-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유학생들은 자취방을 구할 때, 부동산중개업소 이용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은 결국 부동산

54) 유학생들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게 바뀌어야 한다고는 언급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의 여부 혹은 더 많은 돈을 받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중개업소가 아닌 같은 국적 사람들의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집을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됨을 의미한다. 대학 입학에서부터 주거 시설 선택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부동산중개업소 이용에 있어 유의점 등을 고지받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유학생들은 공통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다섯째, 유학생들의 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비용 절감과 보장 내용 축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유학생들은 보험가입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인지하고 있었고, 보험을 이용해 본 유학생들은 이 제도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점차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는 유학생들의 경제적 수준에서 매우 큰 부담이며, 비교적 어린 유학생들에게는 필요가 없는 보장 내용도 있다. 또한 의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도 적용이 안 되는 진료나 검사의 경우도 많아서, 이에 대해 유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몇 가지의 옵션을 제시하거나, 보험 비용과 보장을 유학생에게만 제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보험의 적용이 되어 병원 이용이 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의 경우, 병원이나 상담센터를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학생들은 대부분 상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상담(상담을 제공하지 않는 학교도 많다)은 형식적이고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정신과에 방문하는 것은 향후 취직이나 진학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학생들이 겪는 정신건강의 문제는 공식적인 기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하거나 대학원생의 경우 지도교수나 동료를 통해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상황이었다. 교내 학생 상담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유학생들에게 상담의 효과와 성공적인 사례에 대해 홍보하여 이들의 참여를 끌어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유학생들이 국내 생활에서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는 매우 좁고, 특히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는 극히 제한적이므로, 이를 넓힐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유학생들은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많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지속적이지 않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상담을 하거나 심리적으로 의지를 할 수 있는 한국인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결국 도움을 요청하거나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같은 국적 출신의 선후배 혹은 친구라는 점은 유학생이 우리 사회에 충분히 포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의 사회적 관계, 특히 한국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두텁고 폭넓게 만들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학생들은 졸업 이후 국내에서 취업하고 싶어 하지만 그 방법을 모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취직을 유도할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학부생에서부터 박사과정 유학생에 이르기까지 국내 취업을 모두 고려해보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거나 졸업이 가까워지면 자기 경쟁력이 뒤처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학생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다. 대부분 입국 초기 혹은 2-3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취직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이후에 졸업과 취직이 코앞에 다가오면 준비된 것이 없어 불안해하고 있었다. 입학 이후부터 졸업과 취직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 유학생들의 미래 계획에 대해 준비를 시키고, 이를 통해 우수 인재의 확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적 제언

제 7 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이 연구에서는 아시아 출신으로서 한국 고등교육기관의 정규과정에 수학하고 있는 유학생을 중심으로, 이들의 경제활동, 소득, 주거, 건강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권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유학생 관련 선행연구 및 정책을 검토한 뒤, 영국과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에 관해 살펴보았다. 또한, 아시아 유학생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주거, 소득, 건강 영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로 포착되지 않거나 심층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포착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사회권의 개념을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로서 넓게 정의하고, 이러한 사회권을 인정하고 실현하기 위한 근거로 국제법적 토대(인권 및 사회보장 관련 국제 협약 및 권고 등)와 국내법적 토대(헌법 및 사회보장법)를 검토하였다.

한국 복지국가 발전과정에서 국민의 사회권은 빠르게 확장되어왔으며, 증가하는 이민자들의 관리와 정착지원을 위한 제도들도 빠르게 성립되어왔다. 이러한 가운데 유학생의 사회권에 대한 논의는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최근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정책적 측면에서 이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민자로서의 유학생의 권리(사회권

포함)에 관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해지고 있다.

유학생은 현재 및 잠재적 ‘노동력’일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주민’임을 고려할 때 사회권 부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사회권 부여의 정당화 논리, 방식, 내용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들의 사회권을 기여에 대한 보상이나 시혜적 차원에 국한하지 말고, 보편적 인권에 근거한 시민권의 재해석과 확장 그리고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으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국내외 학생 이민 현황과 국내 유학생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2020년 기준 유학생은 153,695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의 160,165명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20a). 이들 다수는 자비 유학생으로 대다수가 서울과 경기, 즉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유학생 출신국은, 아시아 국가 내에서는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은 인문사회계가 모든 학위 과정을 통틀어서 가장 많았다. 공학 및 자연과학계 학생은 대학원 과정이(전문)학사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한국의 유학생 정책은 주로 교육부와 법무부에서 담당하는데, 이들의 정책은 양적 확대 시기(2001-2007), 질적 관리 시기(2008-2013), 그리고 통합관리 시기(2014-2020)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각 시기별로 각 부처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여 국내 대학교의 국제 경쟁력 향상과 유학생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수 유학생에게는 국내에서 창업, 취업 및 장기적으로는 영주권을 취득할 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가 개선되기도 하였다.

또한, 유학생의 경제활동, 주거 그리고 건강에 관련한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간제 취업은 법무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허용되는 분야에서, 허용되는 시간 안에 근무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유학생은 국

민건강보험에 2021년 3월부터 의무가입 대상자이고, 보험료는 향후 3년간 계속 인상될 예정이다.

제4장에서는 영국과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검토하였다. 영국과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이 유학생(Tier 4) 비자의 신청 단계에서 이민보건부담금(IHS)을 지불해야 하지만, 영국에 입국한 이후에는 영국 국적 시민과 마찬가지로 NHS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에,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은 호주의 공공보건의료제도(메디케어)에 대한 접근은 제한되며,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OSHC)을 통해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하다.

한편, 영국과 호주 모두 외국인 유학생의 공공지원주택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교 기숙사 또는 민간임대주택의 형태로 거주하고 있었다. 또한, 학업 중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역시 학기 중 주당 20시간의 제한이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졸업 후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는 보장하고 있다. 다만, 영국은 졸업 후 취업(PSW) 비자가 2012년 폐지되었다가 2020년에 재도입되었다.

제5장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담았다. 먼저, 아시아 유학생은 다양한 학문적 경험을 위해 한국 유학을 선택했으며, 유학생들의 어려움으로는 학점 관리 및 한국어 공부의 어려움과 학비 및 생활비 등 경제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학생은 경제적 지원과 학업 지원을 가장 받고 싶어 했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아시아 유학생은 한국의 유학 생활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였으며, 졸업 후 한국에 체류하거나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들의 주거 특성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 유학생이 머무르는 주거 형태는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기숙사에 거주하

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집을 구하는 경로는 주로 부동산중개업소 혹은 친구 등 지인을 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높은 보증금과 관련 정보의 부족은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아시아 유학생의 한 학기 기준, 주거비 지출은 평균 약 232만 원이었다.

다음으로 아시아 유학생의 노동 실태와 경제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물어본 결과, 한국어 소통,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거나 차별, 관련 정보의 부족 등을 지적하였다. 아시아 유학생 중 약 절반이 지난 1년 동안 일을 한 경험이 있었다. 일한 경험이 있는 아시아 유학생의 경우, 평균 5.2개월 일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3명 중 1명은 일하다 다친 경험이 있었으며, 해고를 당한 비율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밖에 과중한 업무량, 감정적 폭력, 차별, 임금 지급 지연, 임금 받지 못함 등을 경험했다.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없는 학생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학업으로 인한 시간 부족이 주요한 이유였다.

이들은 한 학기 평균 학비로 6개월 기준 395.1만 원을, 생활비로 510.4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장학금이 포함된 액수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학비 및 생활비는 주로 부모 및 가족을 통해 조달하고, 그 외 장학금, 본인 저금, 한국에서 근로소득 등으로 조달하였다. 아시아 유학생의 약 3분의 2는 지난 1년 사이에 생활비가 모자란 경험이 있었다. 생활비가 모자랐을 때는 주로 식비를 줄였고, 기타 방법으로는 식비 외 생활비를 줄이거나 가족에게 지원을 요청하였다.

건강의 경우, 아시아 유학생 3명 중 1명은 병원에 방문하였다. 그렇지만 유학생들 중 아픈 적이 없거나 본국에서 가져온 약을 먹고 참는 이들도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의료기관에 방문한 이들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나, 한국어 소통과 치료비용 문제를 어려운 점으로 지적

하였다. 유학생의 우울 수준을 확인한 결과, 경미한 우울 수준으로 나타났다으며, 즉시 전문가 개입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인지 지난 1년간 심리적 혹은 정신적 어려움으로 전문가를 찾아가는 비율이 13.1%로, 적지 않은 수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 친구나 본국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친구 등과 주로 상담하였다. 건강보험의 경우, 응답자의 대다수가 가입하였다고 응답하였지만, 응답자의 절반 정도만이 건강보험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응답자의 약 3분의 2 이상은 현재 건강보험료를 부담스러워하였다.

제6장은 유학의 동기와 배경, 유학생생활, 경제활동, 주거 경험, 건강보험 가입과 의료기관 경험, 사회적 관계와 미래에 대한 계획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아시아 유학생 14명과 심층 면접을 통해 이들이 유학생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과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들의 국내 대학 선택은 장학금의 기회가 많고 생활비가 적게 들어가는 곳에 집중되었다. 즉, 이들의 국내 대학 선택에는 경제적 요인이 작동하였다. 아시아 유학생들은 학업에 있어 부족한 한국어 능력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학부생들은 주로 수업을 따라가는 것 자체를 힘들어했고, 대학원생은 과제나 논문 작성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대다수 아시아 유학생들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자신의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한 것이다. 경제활동과 관련된 법무부와 교육부의 규정을 잘 알고 있지만, 여러 현실적인 문제로 규정을 지키지 않는 불법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또한 아시아 유학생들은 모두 기숙사에서 처음 유학생생활을 시작하지만, 기숙사의 불편함으로 인해 학교 주변에서 자취를 하였다. 원룸 자취 또한 주거의 질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학생들은 모두 기숙사보다 자취를 더 만족해하고 있었다. 한편 아시아 유학생들은

건강보험 의무가입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가격이 비싸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강보험에 대한 만족도는 국내 생활을 오래 할수록 크게 나타났고, 아직 보험을 이용하지 않은 아시아 유학생들은 보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아시아 유학생들은 유학생 생활에서 매우 좁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었고, 특히 정기적으로 혹은 지속해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인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 어려움이 생기거나 고민이 있으면 본국 출신의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이들은 졸업 이후 국내 취업을 고려하지만, 그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 취직이 안 될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국내에서 더 좋은 학교 혹은 서구권 국가로 진학 등을 고려하고 있었다.

2. 연구의 한계점

이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의 대표성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아시아 출신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 연구 결과가 아시아 출신 학생에 대해 설명해 줄 뿐, 전체 유학생을 설명하고 대표한다고는 할 수 없다. 둘째, 이번 실태조사에서 미등록 노동에 대해 정확히 집계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학생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자문회의에서 응답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실제보다 적게 응답되었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지적되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미등록 노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2절 정책적 제언

앞의 장에서 살펴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절에서는 아시아 유학생의 삶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혹은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경제활동 상태, 주거 그리고 건강 중심으로 정책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종합 제언

여기서는 종합적인 정책 제언을 정리하였다.

첫째,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번 연구를 통해 만나본 많은 유학생은 학업 중에, 캠퍼스 안과 밖에서 발생한 차별에 대해 종종 언급하곤 하였다. 예를 들어, 시간제 취업 공고문에는 버젓이 ‘외국인 배제’라는 말이 언급되거나, 유학생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도 어디에 하소연할 곳이 없는 등 차별적 대우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또한, 피부색으로 인해 구직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주택을 임차하는 과정에도, 외국인이라는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역시 이전에는 없던 차별 경험을 촉발하는 듯 보였다. 이러한 복합적이고 다양한 차별 문제는 기존의 법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그렇기에 국내에서는 2007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아직도 법안은 계류 상태이다(곽윤경·주유선·우선희, 2019).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차별금지법을 논의할 단계라고 언급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신은별, 2021.10.28.). 이처럼 진전된 기회를 활용하여 유학생을 비롯한 이주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 맞춤형 유학생 정책(locally-tailored international students' policy)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대학 - 지역기업 - 지자체 세 주체 간의 긴밀한 협력과 조정 및 연계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위의 세 주체는 유학생 선발 과정부터 지역 정착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협력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내 산업별 노동력 수요 및 변화 등을 예측하여, 지역대학의 특정학과 입학 정원을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 내 기업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발된 우수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제공한다. 즉, 유학생들은 학기 중에는 학문을 통해 전문 이론 및 지식을 학습하고, 방학 중에는 지역산업체에서 직무 간/직업 훈련(job/vocational training) 혹은 인턴십 프로그램 등의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유학생은 현재 장학생이자 미래의 지역 근로자로, 대학교에서는 특정 지역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전문적 지식을 익히고, 지역 산업체에서는 현장실무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드는 유학생의 생활비, 학비 등은 기업에서 장학금 형식으로 일부 부담하되, 유학생이 대학 내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부족분을 메울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후, 유학생은 졸업 후 해당 지역 내 기업에 취직하고 지역에 정착함으로써, 지역 내 인구문제 완화와 더불어 지역 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달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체계가 자칫 지역 사업장에서 유학생을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경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유학생 노동시간이나 급여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 적용 및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둘째, 사업장의 업무 내용과 유학생 전공 내용의 연관성 조건을 부여한다. 셋째, 졸업 이후 지역 정착 과정에서 비자 절차 관련한 적정한 규제를 마련한다. 넷째, 관련 제도 마련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하다.

2. 경제활동 상태와 소득·생활비

가. 시간제 취업

첫째, 유학생에게 허용되는 업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유학생에게 허용되는 업종 다수는 단순 노무로 한정되어 있어, 유학생이 본인의 전공을 살리기 어렵고 개인의 경력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우수 인재를 육성하려는 정부의 기조와도 배치된다. 이번 연구 결과, 상당수의 유학생은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인의 모국어 자산을 살려 통역과 번역, 모국어 과외 혹은 모국 학생에게 한국어 과외 등 주로 언어 자본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과외 활동은 허가업종이 아니어서, 이들은 시간제 취업 신고절차를 따로 밟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학생이 선호하는 그리고 이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과외를 허가업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취업시간에 차등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현재 유학생은 학기 혹은 방학 등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는 앞에서 소개한 호주와 영국의 사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즉, 이러한 제한은 유학생이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업 외 활동을 일정 정도 제한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렇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주당 20시간 규정이 한 달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천편일률적인 기준보다는, 지역별로 한국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먼저 산출하고,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선에서 현실적인 시간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번 연구 결과, 유학생은 사업장의 갑작스런 인력 확보 및 기타 여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허용시간을 넘겨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혹은, 근로계약서 혹은 구두 약속과 달리, 사용자가 저임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이럴 경우, 학생들은 부족한 학비 혹은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허용시간을 초과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특수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유연성을 제한적으로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이러한 방안이 악용되지 않도록 대응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에서 유학생의 주된 활동은 학습과 교육이지, 노동은 아니어야 한다는 원칙도 함께 강조될 필요가 있다.

셋째, 시간제 취업을 허용하는 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유학생의 입장에서, 시간제 취업 신청의 복잡한 절차가 유학생의 불법 경제활동을 야기하는 요소 중 하나로 보았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세금 문제 혹은 최저임금 지급 등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허가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그렇기에 시간제 취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유학생은 어쩔 수 없이 불법을 감수하면서도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비자를 연장하게 되면, 다시 시간제취업 허가를 위한 신고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하였다. 따라서 유학생의 불법 경제활동을 줄이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시간제 취업 허가 절차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거나 단계를 축소하는 등의 접근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모든 유학생이 현재의 절차에 대해 부정적이지만은 않았다. 일부 유학생은 오히려 현재의 절차가 유학생에게 보호망으로 작용한다고 답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유학생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계약서는 유학생으로 하여금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유휴수당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

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표준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국적에 상관없이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⁵⁵⁾의 보호를 받는다. 그렇지만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1주에 15시간 단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유학생이 이러한 사업장에서 일할 확률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은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다. 물론, 단시간 국내 노동자들에게도 이러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의 절차가 유학생에게 주는 긍정적인 면모를 잘 되새길 필요가 있음과 동시에, 단시간노동자 모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을 폭넓게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유학생에게 노동시장에서 보장 혹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안내할 필요가 있다. 유학생들은 시간제 취업을 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사용자로부터 임금지연, 임금체불, 저임금, 갑작스러운 해고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혹은 근무 중 사고를 당하거나 다칠 경우,⁵⁶⁾ 치료비용이나 보상비용을 사용자의 선의에 기대야 할 처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학생은 본인의 노동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이 되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여성은 성희롱, 성폭력 같은 피해를 당하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일련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학생은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취업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어디에

55) 근로기준법에서는 4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18조에 따르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5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외국인, 일용직 그리고 임시직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 2020.09.09.). 고용주는 산업재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고용노동부, 2020.09.09.). 우리가 만난 유학생은 이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등의 내용이 담긴 책자나 동영상 링크 등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나. 취업 지원

학업 중, 학교에서는 유학생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업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유학생을 면담해 본 결과, 관련 정보를 어떻게, 어디에 접근해야 하는지 충분한 정보를 알고 있는 이들이 많지 않았다. 한국 내 취업할 의지가 있는 유학생은 개별적으로 친한 교수, 친구 및 한국 지인 등을 통해, 한국 취업 과정 및 준비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스스로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유학생들이 한국어로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보는 법 등 취업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이창원 외, 2020, p.162). 따라서 한국의 노동시장, 비즈니스 문화에 익숙지 않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력서 작성법’, ‘면접법’, ‘의사소통법’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필요시, 유학생의 자기소개서 혹은 이력서 등을 첨삭해주는 1:1 교정도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졸업 후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취업 지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들은 졸업 후 비자 변경을 통해, 국내에 머물며 취업 기회를 모색하거나, 본국에 돌아가더라도 본국에 있는 혹은 한국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려는 기회를 모색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유학생들이 국내 기업, 그리고 한국 관련 기업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한국 기업문화의 특징 등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김경남, 2021, p.75). 그렇지만 대학의 유학생 관련 부서 및 관련 교직원과 자문회의를 진행한 결과, 유학생 졸업자 명단이 체계적으로 관

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인력 및 기타 상황으로는 유학생 동문 관리에는 힘을 쏟을 만한 여력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학생의 취업난이 심각하여, 유학생의 취업이나 진로 지원 등에 대한 관리를 하기에는 버거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창원 외, 2020, p.163). 물론, 소수의 학교 사례를 모든 학교의 상황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국내 대학에서 육성된 유학생의 지식과 역량을 한국 혹은 본국 내 한국 관련 기업 등지에서 적극적으로 발휘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대학들은 이들에 대한 취업 지원 관련 정보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

다. 경제적 지원

첫째, 유학생 본국에서 긴급 사태 발생 시, 긴급 학비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 결과, 미얀마 국내 정세 악화로 인해, 미얀마 내부에서 국외 송금이 어려워짐에 따라 학비 및 생활비 조달이 어려운 학생들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국내 몇몇 대학에서는 미얀마 유학생에게 전액 혹은 일부 장학금을 지원해 주었다(박종민, 2021.09.24.). 이는 유학생이 학업을 지속하도록 돕는 등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매우 실질적이고 필요한 조치이다. 따라서 불확실한 외부 상황에서도 유학생이 학업에 매진하고 안정적인 대학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긴급학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 출신의 학생에게 지원해 줄 수도 있다.

둘째, 한국의 초·중·고에서 무상급식이 교육 분야의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제도인 점을 고려하면, 내·외국인 대학생들의 끼니를 위한 정부의 지원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 유학생은 생활비 및 학비가 부족할 때, 식비를 줄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조사 결

과는 내국인 청년이 생활비가 부족할 때, 취하는 방식과 유사하였다(주애신·남건우·구특교, 2021.04.19.). 즉, 국적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청년 집단에서는 정기적이고도 안정적인 수입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생활비가 충분치 않을 때 식비 및 생활비를 줄이는 방식을 손쉽게 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핵심 생계비인 식비를 줄인다는 상황은 사회정책의 입장에서 다소 엄중하게 바라봐야 할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도 청년의 식사 문제가 코로나19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Corbet, 2021.02.16.), 2021년 1월부터 내국인 학생 그리고 유학생 모두에게 점심과 저녁을 1유로에 제공하고 있다(OECD, 2021). 이런 방식을 시행한다면 한국은 지원 대상을 외국인 유학생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내국인 대학생까지 포괄하는 접근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대학 식당에 대한 재정 지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 등과 같은 현금수당에서 지적되는 제한적 접근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외국인 중 건강보험료(세금)를 납부하는 경우에만 지급함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한 이주민이나 결혼이민자 등이 포함되어 왔다(김지혜, 2021, p. 195). 이에 반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재난지원금 기준은 중앙정부보다 지급 범위가 넓고 조례가 조금 유연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영월군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재난 지원 조례’를 살펴보면, 주민등록 거주자뿐만 아니라 영월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즉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도 포함한다(정병진, 2021.09.17.). 또한, 국가인권위원회(2020.06.11.)에서는 지자체의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은 해당 지역에 주소를 신고하여 거주하는 주민이자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며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및 위기상황에서 지역사회 내 주민 간의 생활안정을 위해 연대 범위의 확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김지혜, 2021, p.195).

3. 주거

첫째, 학교는 기숙사 거주 여건 개선과 공급 확장을 추진해야 한다. 이번 연구 결과, 유학생의 기숙사 이용률이 예상만큼 높지 않았다. 주요한 이유로는, 기숙사 시설의 노후화와 더불어 1인실이 부족하거나 전무하여, 학교 밖 숙소를 찾았다. 특히, 기숙사 내 취사가 어렵다는 점은 기숙사를 떠나게 만드는 큰 요인으로 제기되었다. 실제로 앞에서 살펴본 대전 글로벌교류센터의 실패 이유 중 하나로 취사 여부가 언급될 만큼 취사 가능 여부는 유학생의 삶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기숙사 내 식당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조건인 곳도 있는데, 이때 한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거나, 종교적으로 금기해야 하는 재료가 들어간 음식을 제공받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유학생의 어려움도 지적되었다. 대학 관계자들과의 자문회의에서, 대학은 이러한 유학생의 요구를 잘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몇몇 대학은 취사시설이 가능한 유학생 전용 기숙사를 지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렇지만 대학 캠퍼스 인근에 주거 임대를 제공하는 주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거나 무기한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현 기숙사 거주여건을 개선하거나 유학생의 니즈를 반영한 기숙사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집을 구하는 과정에 대한 일련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 부동산 관련 정보의 부족 문제를 경험한 유학생은 약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구하게 됐는지를 조사한 문항에 대해서도 ‘친구 등 지인(35.6%)’을 통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는 유학생들이 집을 구할 때 부동산중개업소나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정보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유학생들이 집을 구할 때 지인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면, 더 많은 유학생들이 그러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집을 구하는 방법, 정보 검색 및 활용 방법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유네스코(UNESCO)는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역할 중, 학교 및 주변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명시하고 있으며, 유학생이 거주할 적정 수준의 주거 시설 또한 확보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서영인 외, 2012, 19-20). 단기적으로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같은 사업의 대상에 유학생을 포함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번역 기능을 추가하는 것, 국적별로 선호하는 주거유형 등의 정보를 축적하여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에게도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제안해볼 수 있다.

4. 건강

가. 건강보험

우선, 건강보험 적용 시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건강보험은 외국인등록을 한 이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 적용에 있어 일정 기

간 공백이 발생한다. 앞에서 언급한 영국의 사례를 보면(제4장), 비유럽권 출신 유학생은 영국에 입국 직후부터 건강보험 접근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학생 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입국 전 국가보건서비스(NHS)에 가입하고 이민보건부담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유학생이 영국에 체류하는 동안의 이민보건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은 큰 부담이라는 비판도 존재하고 있어, 영국의 예를 무조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이다. 그렇지만, 유학생이 입국 전에 보험료를 선납하여 입국한 시점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은 보장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둘째, 건강보험료 책정에 대한 정교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유학생은 한국의 건강보험에 대체로 만족하나,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응답이 많았다. 한 연구에서 유학생의 국민건강보험 월 지불 의사액은 18,708원으로 나타난 점에 비취볼 때(김강희, 권순만, 이동규, 2021, p.21), 유학생이 현재 내는 금액인 39,540원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이주민 집단 중, 유학생은 다른 이주민 집단과 달리 학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비록 일부는 시간제 취업 등을 하지만, 대부분 정규직이나 풀타임이 아니다 보니 소득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이들이 벌어들인 소득은 생활비 혹은 학비 등으로 대부분 지출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앞에서 소개한 연구 결과와 같이, 유학생의 연령, 한국 거주기간, 한국어 능력 등이 병원의 외래 이용 빈도 및 의료비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학생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고정하여 매기는 것보다 유학 연수, 나이, 가족 동반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보험료 차등 지급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의 의료 통역 서비스를 적극 홍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 결과, 유학생은 병원 내 한국어 소통 문제를 빈번히 제기하였다.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033-811-2000)에서는 외국어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신승헌, 2020.05.12.). 여기서 제공하는 언어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 우즈베크어로,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이다(국민건강보험, 2021). 또한, 병의원 진료 시 외국인의 수급권 보장을 위하여 여성가족부 산하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운영하고 있다(다누리, 2021). 여기서서는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우즈베크어, 크메르어, 네팔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러시아어, 몽골어, 라오스어, 일본어의 13개 국어를 제공한다(다누리, 2021). 앞의 센터와 다른 점은, 1년 내내 24시간 운영하고, 의료 및 건강 서비스 외의 종합생활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다(다누리, 2021). 이처럼 기존의 이용 가능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인지하거나 활용한 학생은 이번 연구의 참여자 중 없었다. 따라서 언어 능력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접근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존재하는 의료 통역 관련 콜센터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AI 통번역기 등 첨단 기술의 발달 및 상용화로, 이러한 언어 장벽은 크게 허물어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유학생에게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인식 및 이해도를 높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출신 유학생과의 면담을 통해 알게 된 점은, 많은 수의 학생은 본국에서 공적 건강보험제도 경험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한국 생활 초기에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가 낮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경우도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설문조사 그리고 인터뷰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한국의 거주기간이 점차 길어질수록, 한국어 사용이 편해질수록, 의료기관 접근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학생 스스로 혹은 주변 사람이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거나 이를 목격함에 따라, 건강보험에 대한 태도가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유학생에게 건강보험제도의 설립배경, 원리 그리고 효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작업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나. 정신건강

연구 결과, 유학생은 전문가 개입이 필요한 경미한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학교 내에서 사전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우선, 유학생에게 교내 상담센터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상담의 효과성 및 성공적인 체험담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 사실 그동안 유학생의 정서적 문제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였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유학생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관련 시설 확대 및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김경남, 2021, p.15). 그렇지만 일부 국가 출신 유학생은 아직도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상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거나 거부감을 갖는 경우도 있었다. 이로 인해, 유학생은 교내 상담센터를 사전에 방문하기보다는 상태가 매우 악화되었을 때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정신건강 악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내 상담센터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상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언어적 장벽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영어 원어민과 영어를 제2외국어로 구사하는 사람들 간에 존재하는 언어 장벽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Akinsulure & O'Hara, 2012; Burnham, Hooper, & Mantero, 2009). 실제로 영어가 제2외국어인 유학생은 자

신의 생각과 감정을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상담사가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one and Malott, 2008; Willis-O'Connor, Landine & Domene, 2016). 따라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등,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국을 고려하여 특정 언어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 대상을 유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직하다. 현재,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사전·사후 검사를 포함해 3개월간 주 1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게 된다(보건복지부, 2021.04.06.). 올해부터 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의 무가입자이면서 동시에 대다수가 법정 청년 기준에 속하는 집단으로, 해당 대상을 유학생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자가격리를 경험하는 유학생의 정신건강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학생들은 한국에 입국하여 자가격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오롯이 혼자 그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 기간에 유학생은 심리적·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 온라인 상담 혹은 카카오톡 상담톡을 통해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만약 기존 학교의 인적 및 물적 자원 등의 한계로 인해 어렵다면, 지역 내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학생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혹은 지자체 내에서 이미 존재하는 이주민 서비스 전달 통로인 외국인주민센터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상황에 따라, 일부는 실비를 부담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수도 있다.

5. 학업 지원 및 학습 능력 강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학습 지원 혹은 학습 능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우선, 학위 과정별로 차별화된 학업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학부생의 경우, 진로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학부과정은 학과 당 유학생 수가 적고, 학위 과정 특성상 대학원과 달리 지도교수의 밀착 지도가 어려워, 졸업 후 진로 설계에 많은 도움을 받기란 쉽지 않다(김지하 외, 2020, p.205; 김지혜, 2017). 이에 따라, 생애진로 관점에서 유학생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김경남, 2021, p.76). 대학원생의 경우, 장문의 글을 쓰는 과제가 많고 대다수는 논문을 작성해야 졸업할 수 있으므로, 한국어 첨삭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수요를 인지하고 몇몇 대학에서는 유학생을 위한 첨삭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일부 학위 과정에게만 제공하거나 페이지 수 제한, 이용할 수 있는 횟수 제한 등 여러 제약 조건이 있다. 따라서 장학금 형식의 일환으로 유학생에게 첨삭 비용을 지원하거나, 교내 일자리 확충의 일환으로 재학 중인 한국 학생에게 첨삭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직하다.

다음으로, 한국어 관련해서는, 현재 수학하고 있는 아시아 유학생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한국어로 나타난 만큼, 읽기, 듣기, 쓰기 전반에 걸쳐 한국어로 공부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학부생은 한국어로 공부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강조했고, 영어 수업이 많이 개설되지 않거나 개설되더라도 수업의 질이 높지 않음을 불만으로 제시했다. 대학원생은 과제 제출이나 논문 작성에 있어 한국어로 글을 쓰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비록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을 받아도, 매일매일 수업을 듣고

따라가는 일이 벅차다는 것이 특히 학부생들을 중심으로 공통으로 나온 의견이었다. 따라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 개발을 위한 강의 개설,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교육부(2019.04.30., p.6)의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에서 적시한 만큼, 이에 대한 각 대학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고등교육 입학 조건 중 하나인 한국어 능력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언어의 어려움은 유학생이 아닌 모든 이민자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이다. 그렇지만, 잠재적인 우수 인재이자 고급인력인 유학생의 한국어 실력은 학업생활 전반에서뿐만 아니라 졸업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당장 한국어 요건을 강화하여 선발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지만(이창원 외, 2020),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재고해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입학 요건에서 한국어능력시험 급수를 일부 상향 조정하여, 이에 준하는 학생들을 선별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학업이 취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한층 더 키우고, 우수 인재 육성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에 참여한 아시아 유학생들은 같은 국적 학생들끼리의 멘토링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한국어나 수업 내용에 대해 익숙한 대학원생이나 3, 4학년 학생을 1, 2학년 학생들과 함께 멘토링을 구성하여 학업을 도와주게 하면, 당장에 한국어로만 진행되어 어려운 수업을 따라가기 용이해지고,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한국어능력시험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같은 국적 학생들끼리의 한국어 과외도 할 만큼 학생들은 같은 국적 학생들을 서로 활용하는 데 익숙하다. 멘토링이 지나쳐서 같은 국적 학생들끼리만 뭉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학업에만 국한될 수 있게 제한적인 정책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국내 문헌

- 강영주, 이승훈. (2015) 우수 외국인력 및 유학생을 위한 창업지원 방안. 정책과제 2015-21, 대전: 대전발전연구원.
- 곽윤경·주유선·우선희. (2019). 이민자의 사회적 포용 실태 및 대응방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창희·고영우·박윤수. (2021). 대학의 재정건전성과 외국인 유학생, 노동경제 논집, 44(1), 103-133.
- 권오영, 김아름. (2019). 강원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방안, 춘천시: 강원연구원
- 김강희, 권순만, 이동규. (2021).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민건강보험 지불의 사액 측정 - 이중양분선택형 조건부 가치 측정법 적용을 중심으로,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7(3): 21-60.
- 김경남. (2021). 국내 대학 졸업 후 국내 취업에 성공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동기와 취업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58088>에서 인출.
- 김경환. (2021). '한국의 이민자 권리 변화에 관한 연구: 이민자 권리의 조건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8(2), 155-188.
- 김규찬. (2020). '한국복지국가와 이민자의 권리'. 다문화사회연구, 13(2), 27-63
- 김도혜. (2019). 교육 수혜자에서 초국적 청년 이주자로. 다문화콘텐츠연구. 31: 39-68.
- 김도혜·최희정. (2019) "한국 유학 선택과정과 초국적 연결망: 한국 지방 대학으로의 유학생 이동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52 (3): 127-164.
- 김원중, 이상영, (2019). KAIST 재학 외국인 유학생들의 주거 특성 분석. 부동산·도시연구 11(2): 123-145.

- 김정선. (2011). '시민권 없는 복지정책으로서 '한국식'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제와 사회*, 92, 205-246
- 김지하, 조옥경, 서영인, 문보은, 송효준, 김지은, 채재은. (2020).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실태 분석 연구. 진천군: 한국교육개발원.
- 김지혜. (2017). 외국인 유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방안 연구. *교양교육 연구* 11(2): 537-562.
- 김지혜. (2021). '모든 국민'이라는 허구적 보편성: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서 외국인 배제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비판. *법과정책연구*, 21(1), 177-200.
- 김철효. (2021). 이주민 문화예술인 체류자격 제도와 개선방안. 2021 ARKO 온라인 공청회 - 예술인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
- 김한나, 우한솔, 이승호. (2016). "한·중·일 3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비교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7(4), pp.311-337.
- 김혜진. (2009). 외국인 유학생 공동기숙사 건립 타당성 연구. 대구경북연구원.
- 국가인권위원회. (2017.10.06.).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1723>에서 2021.11.13. 인출
- 남찬섭. (2012).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의 의미와 개념적 긴장'. *한국사회복지학*, 64(3), 79-100
- 노호창. (2016). '외국인의 사회보장'. in 이철우 외(편), 이민법 (pp. 453-488). 서울: 박영사.
- 류유선. (2019). 대전지역 외국인 유학생 실태 및 지원방안. 대전: 대전세종연구원.
- 민숙원, 송창용, 윤혜준, 김혜정. (2020). 「대학원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의 진로선호 탐색과 인적자원 활용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법무부. (2008).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

- 법무부. (2013).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 법무부 외국인정책
본부.
- 법무부. (2018).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 법무부 외국인정책
본부.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20). 외국인 체류 안내 매뉴얼. 세종: 법
무부.
- 대한민국정부. (2005).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06-2010. 대한민국
정부.
- 박정수, 천세영, 류지성, 김진영, 양정호, 한유경, 김승보. (2009).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의 질 제고.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서영인, 김미란, 김은영, 채재은, 윤나경. (2012).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체제 강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설동훈. (2016). '이민자의 시민권'. in 이혜경 외(편), 이민정책론 (pp. 151-19
2). 서울: 박영사.
- 신인철, 한지은, 박효민. (2018).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중단 실태와 요인." 다문
화사회연구 11 (2): 105-133.
- 안병영, 정무권, 신동면, 양재진. (2018).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 서울: 다산
출판사.
- 안선민, 장상옥, 신경주. (2006).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계획을 위한 연구." 한국
생활환경학회지 13 (1): 31-44.
- 여성가족부. (2018).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부.
- 윤찬영. (2004). 사회복지법제론 (3판). 서울: 나남.
- 이규용, 김현미, 김철효, 주수인. (2019). 외국인 비합법 노동시장 연구. 세종: 한
국노동연구원.
- 이동규, 김강희, 권순만. (2021). 외국인 유학생의 의료이용 결정요인. 보건경제
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7(2), 121-148.
- 이미영. (2017). '한국사회 내에서의 사회적 발전에 있어서의 다문화주의'. 지방
자치법연구, 17, 398-425

- 이용균. (2012)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에서 자유시장 원리와 조절 메커니즘의 접합.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5(1): 33-45.
- 이창원, 김도혜, 최서리, 신소희. (2020). 국내 유학생의 학업실태 및 취업이행 연구: 이공계 유학생을 중심으로, 이민정책연구원.
- 이태식, 전영준, Zia Ud Din, 구자경. (2009). 대학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외국인 유학실태 분석 및 지원방향 도출: 공과대학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한국공학교육학회, 12(1): 42-56.
- 이태주, 권숙인, Martinez, J., Kaori, Y. (2007). 다민족·다문화사회 진전에 있어서의 사회 갈등 양상과 극복과정: 호주와 일본의 사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현주, 이미정. (2019).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국내 지원 정책 연구”, 인문사회 21, 10(4), pp.235-250.
- 이화숙, 김정숙, 이용승. (2021). COVID-19 팬데믹이 유학생의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 현대사회와 다문화, 11(2): 1-34.
- 임태경, 김상민. (2019).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장이츠, 김민아. (20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인한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심리사회적 어려움과 서비스 욕구. 사회복지연구 52(2). 65-93.
- 장주영, 허정원. (2020). 국내 이주민 대상 통계 검토 . 이민정책연구원 통계브리프 시리즈. No. 2020-01. 이민정책연구원. 대한민국. 서울
- 정기선, 전광희, 은기수, 김석호, 강동관, 이정우, 최서리. (2011).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비한 이민 및 사회통합 정책방향 연구. 경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 조흥식, 김상균, 최일섭, 최성재, 김혜란, 이봉주, 구인회, 홍백의, 강상경, 안상훈. (2016). 사회복지개론 (4판). 서울: 나남.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20). 2019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황정미. (2011). ‘초국적 이주와 여성의 시민권에 관한 새로운 쟁점들’. 한국여성학, 27(4), 111-143

국외 문헌

- ACHA. (2020). Supporting Vulnerable Campus Populations
- AEI. (2013).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student satisfaction with a accommodation in Australia. Australian Government. Australian Education International.
- Akinsulure-Smith, A., & O'Hara, M. (2012). Working with forced migrants: Therapeutic issues and considerations for mental health counselors.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34(1), 38-55. doi: 10.17744/mehc.34.1.62rv11064465j55p
- Andrade, M. S., N. W. Evans, and K. J. Hartshorn. (2014). Linguistic support for nonnative English speakers: Higher education practic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Student Affairs Research and Practice* 51 (2): 207-221
- APPG. (2018). A Sustainable Future for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UK. All-Party Parliamentary Group for International Students Inquiry Report.
- Ashwill, M.A. (2020). Vietnamese student enrolment in the US holds steady, *University World News*, 08 February 2020, <https://www.universityworldnews.com/post.php?story=20200205124654543> (2021.03.11.)
-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2014). Labor migration, skills & student mobility in Asia. <http://hdl.handle.net/11540/174> 에서 2021.08.17. 인출
- Aspalter, Christian. (2006). 'The East Asian welfare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15(4), 290-301

- Atack, P. (2018). Mental health concerns for 35% int'l students. THE PIE News. <https://thepienews.com/news/36-of-international-students-report-mental-health-issues/#:~:text=The%20research%20took%20the%20form,their%20experiences%20with%20mental%20health.&text=Of%20the%20respondents%2C%2036%25%20of,for%20more%20than%20two%20years>에서 2018.01.23. 인출.
- Australian Government. (2016). National Strategy for International Education 2025. Canberra: Australian Government.
- Baldock, John, Manning, Nick, and Vickerstaff, Sarah (eds.). (1999). Social Poli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anting, Keith, Johnston, Richard, Kymlicka, Will, and Soroka, Stuart. (2006). 'Do multiculturalism policies erode the welfare state? An empirical analysis'. in Banting, K. and Kymlicka, W. (eds.), Multiculturalism and the Welfare State: Recognition and Redistribution in Contemporary Democracies (pp. 49-9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enzie, H. (2010). Graduating as a 'native speaker': International students and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in higher education. Higher Education Research & Development. 29 (4): 447-459.
- Bista, K., and C. Foster, eds. (2016). Campus support services, programs, and polici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Hershey, PA: IGI Global.
- Blair, T. (2006). Why We Must Attract More Students from Overseas. The Guardian. April 18.
- Blair, T. (1999). Attracting More International Students [Speech to London School of Economics launching Prime Minister's Initiative], June 18. London.

- Burnham, J. J., Mantero, M., & Hooper, L. M. (2009). Experiential training: Connecting school counselors-in-train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teachers, and ESL students.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37(1), 2-14. doi: 10.1002/j.2161-1912.2009.tb00087.x
- Castles, Stephen and Schierup, Carl-Ulrik. (2010). 'Migration and Ethnic Minorities'. in Castles, F.G., Leibfried, S., Lewis, J., Obinger, H. & Pierson, C. (eds.), *The Oxford Handbook of the Welfare Sta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astles, Stephen, De Haas, Hein, and Miller, Mark J. (2020).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6th ed.). London: Red Globe Press.
- Chacko, E. (2020). Emerging precarity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in Singapore: experiences, understandings and response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https://doi.org/10.1080/1369183X.2020.1732618>.
- Chew, J. (2019). Economic opportunities and outcomes of post-study work rights in Australia. *Inter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of Australia (IEAA)*.
- Choudaha, R. (2017). Three waves of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1999-2020), *Studies in Higher Education*, 42:5, pp.825-832.
- Choudaha, R. and Chang, L. (2012). *Trends in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New York: World Education Service.
- Choudaha, R. and D. Hu. (2016). With poor job prospects for Chinese students, is it still worth investing in a US education? *South China Morning Post*. February 5.

- Corbet. (2021.02.16.). As the virus crisis drags on, hard-hit French youth struggle. <https://apnews.com/article/paris-france-coronavirus-pandemic-restaurants-59cb0184f0673310e5707f25620d86d4> (2021.10.25. 인출)
-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 (2010). International Students Strategy for Australia. Canberra: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
- DESE. (2019). National Code of Practice for Providers of Education and Training to Overseas Students 2018. Canberra: 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Australian Government.
- DH. (2017). Deed for the Provision of Overseas Student Health Cover. Canberra: Department of Health, Australian Governmen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https://www.acha.org/documents/resources/guidelines/ACHA_Supporting_Vulnerable_Populations_During_the_COVID-19_Pandemic_August2020.pdf에서 2021.10.24. 인출.
- Eggins, H., West, P. (2010). The Global Impact of the Financial Crisis: Main Trends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Higher Education Management and Policy*, 22(3), 1-16.
- Esping-Andersen, Gøsta.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London: Polity Press.
- EUA. (2021). Bologna Process, <https://eua.eu/issues/10:bologna-process.html#sec-towards-2024-and-2030> 에서 2021.08.17. 인출
- European Commission. (2021). EU 기본권 헌장. https://ec.europa.eu/info/aid-development-cooperation-fundamental-rights/your-rights-eu/eu-charter-fundamental-rights_en에서 2021.7.2. 인출.

- European Commission. (2016).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the conditions of entry and residence of third-country nationals for the purposes of highly skilled employment. June 7.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16SC0194> 에서 2021.08.17. 인출
- Fakunle, O. and Pirrie, A. (2020). International Students' Reflections on Employability Development Opportunities During a One-Year.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ents*, 10(S2): 86-100.
- Ferguson, H., & Spinks, H. (2021.04.22.). Overseas students in Australia in higher education: a quick guide. Parliament of Australia. https://www.aph.gov.au/About_Parliament/Parliamentary_Departments/Parliamentary_Library/pubs/rp/rp2021/Quick_Guides/OverseasStudents 에서 2021.6.30. 인출
- Forbes-Mewett, H. (2018). *The New Security: Individual, Community and Cultural Experiences*. London: Palgrave Macmillan.
- Forbes-Mewett, H. (2019). *Mental health and international students: Issues, challenges and effective practice*. Inter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of Australia (IEAA). Retrieved from www.ieaa.org.au.
- George, Vic and Wilding, Paul. (1985). *Ideology and Social Welfar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Gilbert, N. and Terrell, P. (2005).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6th ed.). Boston: Person, Allyn and Bacon.
- Gower, M. (2020). *The Immigration Health Surcharge*. London: House of Commons Library, Briefing Paper Number CBP 7274.
- Haber and Griffiths. (2017.02.22.). 5 unique mental health stressors faced by international students, <https://www.eaie.org/blog/5-mental-health-stressors-international-students.html>에서 2021.10.24. 인출.

- Hawthorne, L. (2010). Demography, migration and demand for international students. In *Globalization and tertiary education in the Asia-pacific - The changing nature of a dynamic market* edited by C. F. Findlay and W. Tierney, 91-120, Singapore: World Scientific Press.
- HESA. (2021.01.27.). Higher Education Student Statistics: UK, 2019/20. <https://www.hesa.ac.uk/news/27-01-2021/sb258-higher-education-student-statistics>에서 2021.8.22. 인출
- Hollifield, James F. (2004). 'The emerging migration stat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8(3), 885-912
- Home Office. (2012). Statement of Intent and 'Transitional Measures: Tier 2 of the Points-Based System. London: Home Office, UK.
- Home Office. (2021). Covid-19: Guidance for Student sponsors, migrants and Short-term students: Temporary concessions in response to Covid-19. London: Home Office, UK.
- Hong, M. (2020). A comparative study of the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policy in Australia and China (2008-2015). *Studies in Higher Education*, 45(4): 768-779,
- Howe, J. (2019). A Legally Constructed Underclass of Workers? The Deportability and Limited Work Right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Australia and the United Kingdom. *Industrial Law Journal*, 48(3): 416-446.
- IIE. (2020). 2020 Project Atlas Infographics. <https://www.iie.org/Research-and-Insights/Project-Atlas/Explore-Data/Infographics/2020-Project-Atlas-Infographics> 에서 2021.08.16. 인출
- ILO. (2021). ILO 사회보장(최소기준)협약(1952년, 제102호). https://www.ilo.org/secsoc/areas-of-work/legal-advice/WCMS_205340/lang-en/index.htm에서 2021.7.2. 인출
- Kim, Gyuchan. (2017a). 'Migration Transition in South Korea: Features and Factors'. *OMNES: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8(1), 1-32

- Kim, Gyuchan. (2017b). 'The patterns of 'care migrantisation' in South Korea'.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44(13), 2286-2302
- Kim, Gyuchan. (2018). 'The Migration Regime of South Korea: Three Axes of Civic Stratification'. *OMNES: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8(3), 68-96
- Knight, M. (2011). *Strategic Review of the Student Visa Program 2011*. Australian Government.
- Kumar, M. (2005). The historiography of the international student policy trajectory. *Journal of Australian Studies*, 84: 205-217.
- Kwon, Huck-ju. (2007a). 'The developmental welfare state in Korea: Origins, reforms and future challenges'. Paper presented at the 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Policy (7-8 February 2007), Cairo, Egypt.
- Kwon, Huck-ju. (2007b). 'Transforming the developmental welfare states in East Asia'. *Development and Change*, 36(3), 477-97
- LE. (2018). *The costs and benefits of international students by parliamentary constituency: Report for the Higher Education Policy Institute and Kaplan International Pathways*. London Economics.
- Levatino, A., Eremenko, T., Molinero Gerbeau, Y., Consterdine, E., Kabbajji, L., Gonzalez-Ferrer, A., Jolivet-Guetta, M. and Beauchemin, C. (2018). Opening or closing borders to international students? Convergent and divergent dynamics in France, Spain and the UK, *Globalisation, Societies and Education*, 16(3): 366-380.
- Lomer, S. (2018). UK policy discourses and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the deterrence and subjectific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Globalisation, Societies and Education*, 16(3): 308-324.

- MAC. (2018). Impact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UK. Migration Advisory Committee.
- MAC. (2020). Annual Report. Migration Advisory Committee.
- MacAuslan, Ian and Sabates-Wheeler, Rachel. (2011). 'Structures of access to social protection for migrant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Social Protection for Social Justice (13-15 April 2011), Sussex, UK.
- Mahon, Rianne and Robinson, Fiona. (2011). 'Introduction'. in Mahon, R. and Robinson, F. (eds.), *Feminist Ethics and Social Policy: Towards a New Global Political Economy of Care* (pp. 1-17). Vancouv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 Marginson, S., Nyland, C., Sawir, E., & Forbes-Mewett, H. (2010). *International Student Security*. Melbour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shall, T. H. (1950).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shall, T. H. (1965). 'The Right to Welfare'. *The Sociological Review*, 13(3), 261-272
- Martin, F. (2020).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Wellbeing in Australia: The Road to Recovery*. The University of Melbourne. Melbourne, Australia.
- Matthews, D. (2016). Chinese student market: Can the West weather a perfect storm? *Times Higher Education*. May 26
- Mishra, Ramesh. (1981). *Society and Social Policy: theories and practice of welfare*. London: Macmillan.
- Morris, Lydia. (2001). 'The ambiguous terrain of rights: civic stratification in Italy's emergent immigration regime'.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5(3), 497-516

- Morris, Lydia. (2003). 'Managing contradiction: civic stratification and migrants' right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7(1), 74-100
- Najar, N., and S. Saul. (2016). 'Is it safe?' foreign students consider college in Donald Trump's U.S., *The New York Times*. November 16.
- Nyland, C. & Tran, L. T. (2020). The consumer right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Australia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ector.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72(1): 71-87,
- Obeng-Odoom, F. (2012). Far away from home: the housing question and international students in Australia. *Journal of Higher Education Policy and Management*, 34(2): 201-216.
- OECD. (2005). *Education at a Glance 2005*. <https://www.oecd.org/education/skills-beyond-school/educationataglance2005-home.htm> 에서 2021.08.17. 인출
- OECD. (2020). *Education at a Glance 2020: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69096873-en> 에서 2021.08.13. 인출
- OECD. (2021). *Education at a Glance 2021: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 ONS. (2018). *Survey of Graduating International Students, UK*. London: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populationandmigration/internationalmigration/datasets/surveyofgraduatinginternationalstudentsuk> 에서 2021.6.30. 인출
- Paltridge, T., Mayson, S., & Schapper, J. (2013). Covering the gap: Social inclusion, international students 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Australian Universities' Review*, 54(2): 29-39.

- Paone, T. R. & Malott, K. M. (2008). Using interpreters in mental health counseling: A literature review and recommendations.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36, 130-142. doi: 10.1002/j.2161-1912.2008.tb00077.x
- Pinker, Robert. (1971). *Social Theory and Social Policy*. London: Heinemann Educational Books.
- Poljski, c., Quiazon, R., & Tran, C. (2014). Ensuring Rights: Improving Access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for Female International Students in Australia.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ents*, 4(2): 150-163.
- QS. (2020). How COVID-19 is Impacting Prospective International Students at Different Study Levels. <https://www.qs.com/portfolio-items/how-covid-19-impacting-prospective-international-students-different-study-levels/> 에서 2021.08.16. 인출
- Raghuram, P. (2013). Theorising the space of student migration, *Population, Space, and Place*, 19(2), 138-154.
- Ramia, G. (2017).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the administr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 rights: a law and policy analysis. *Studies in Higher Education*, 42(5): 911-924.
- Redden, E. (2013). Conditional admission and pathway programs proliferate. *Inside Higher Ed*. January 3.
- Ruddock, P. (2000). *Migration Occupations in Demand List*. Parliament of Australia.
- Ruming, K. & Dowling, R. (2017). PhD students' housing experiences in suburban Sydney, Australia. *Journal of Housing and the Built Environment*, 32(4): 805-825.

- Sa, C. M. and Sabzalieva, E. (2018). The politics of the great brain race: public policy and international student recruitment in Australia, Canada, England and the USA. *High Education*, 75: 231-253.
- Sainsbury, Diane. (2006). 'Immigrants' social rights in comparative perspective: welfare regimes, forms in immigration and immigration policy regim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6(3), 229-244.
- Sainsbury, Diane. (2012). *Welfare States and Immigrant Rights: The Politics of Inclusion and Exclus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alim, N. and Wibawa, T. (2021.05.30.). International students battle mental health issues while waiting to enter Australia, <https://www.abc.net.au/news/2021-05-30/international-student-visas-online-learning-mental-health/100167362> 에서 2021.10.31. 인출
- Schierup, Carl-Ulrik, Hansen, Peo, and Castles, Stephen. (2006). *Migration, Citizenship, and the European welfare state: a European dilemm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chulte, S. and Choudaha, R. (2014). Improving the Experiences of International Students. *Change: The Magazine of Higher Learning*, 46(6): 52-58
- Sharifian, F. (2013). "Globalisation and developing metacultural competence in learning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Multilingual Education*, Vol. 3/1, p. 7, <http://dx.doi.org/10.1186/2191-5059-3-7>.
- Sherrell, H. (2019). Migration—permanent and temporary visa trends. Parliament of Australia. https://www.aph.gov.au/About_Parliament/Parliamentary_Departments/Parliamentary_Library/pubs/BriefingBook46p/Migration에서 2021. 08.16. 인출

- Shin, Dong-Myeon. (2000). 'Financial crisis and social security: the paradox of the Republic of Korea'.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53(3), 83-107
- Son, C.W., Hedge, S., Smith, A., Wang, X.M. and Sasangohar, F. (2020). Effects of COVID-19 on College Students' Mental Health in the United States: Interview Survey Study,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22(9): e21279.
- Soysal, Yasemin Nuhoglu. (1994). *Limits of Citizenship: migrants and postnational membership in Europ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pinks, H. (2016). *Overseas students: immigration policy changes 1997-2015*. Parliamentary Library Research Paper, Parliament of Australia.
- Teichler, U. (2012).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and the Bologna Process*. *Research in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Education*. 7 (1): 34-49.
- Tran, L. T., Rahimi, M., Tan, G., Dang, X. T., & Le, N. (2020). Post-study work for international graduates in Australia: opportunity to enhance employability, get a return on investment or secure migration?. *Globalisation, Societies and Education*, 18(5): 495-510.
- UK Parliament. (1942),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https://www.parliament.uk/about/living-heritage/transformingsociety/livinglearning/coll-9-health1/coll-9-health/> 에서 2021.05.10. 인출
- UKVI. (2021). *An introduction for employers (accessible version)*. UK Visa and Immigration.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points-based-immigration-system-employer-information/the-uks-points-based-immigration-system-an-introduction-for-employers>.

- UN. (2021). 세계인권선언. <https://www.un.org/en/about-us/universal-declaration-of-human-rights>에서 2021.7.2. 인출.
- Universities UK. (2015). Student mental wellbeing in higher education: good practice guide. London: Universities UK publications.
- UN OHCHR. (2021).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escr.aspx>에서 2021.7.2. 인출.
- Van Oorschot, Wim and Uunk, Wilfred. (2007). 'Welfare spending and the public's concern for immigrants: multilevel evidence for eighteen European countries'. *Comparative Politics*, 40(1), 63-82.
- Willis-O'Connor, S., Landine, J., & Domene, J. F. (2016). International students' perspectives of helpful and hindering factors in the initial stages of a therapeutic relationship. *Canadian Journal of Counselling & Psychotherapy/Revue Canadienne de Counseling et de Psychothérapie*, 50(3), S156-S174.

웹사이트

- 고용노동부. (2020.09.09.). [노동법 Q&A]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7126> 에서 2021.10.01. 인출
- 고찬유. (2014.10.21.). 세계 유학생 450만명 시대 국내 유치는 '내리막길'.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410210436128242> 에서 2021.08.01. 인출
- 교육부. (2020a). 2020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50&boardSeq=8291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9&opType=N> 에서 2021.01.21 인출

- 교육부. (2020b). 2020년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시행 공고」(교육부 공고 제2020-327).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3&boardSeq=81844&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501&opType=N> 에서 2021.08.17. 인출,
- 교육부. (2019). 2019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50&lev=0&statusYN=W&s=moe&m=0309&opType=N&boardSeq=79011>에서 2021.8.26. 인출.
- 교육부. (2019.04.30.).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50&lev=0&statusYN=W&s=moe&m=0309&opType=N&boardSeq=77521>
- 교육부. (2010). 『국제화 거점 전문대학 육성사업』시행계획 공고.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3&boardSeq=4621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244&s=moe&m=0501&opType=N> 2021.08.01. 인출
- 교육부. (2004.12.07.). 해외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방안 (Study Korea 프로젝트) 마련 [보도자료] <http://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4/%EB%B3%B4%EB%8F%84%EC%9E%90%EB%A3%8Ch20041206023.pdf> 에서 2021.10.22. 인출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2021a). 생활정보 - 주거생활. https://www.studyinkorea.go.kr/ko/overseas_info/allnew_lifeinKorea.do 에서 2021.08.17. 인출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2021b). 출입국 관련 업무. https://www.studyinkorea.go.kr/ko/overseas_info/allnew_immigrationGuide.do 에서 2021.08.17. 인출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2020). 외국인 유학생 취업관련 정보 https://www.studyinkorea.go.kr/popup/employment_regulations_part_ko.jsp에서 2021.08.17. 인출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2018). 2018 외국인유학생 한국생활 정착지원 우수사례
집. <https://www.swww.ac.kr/download/1532933052428/index.html>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각 연도).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고등교육통계편. <https://kess.kedi.re.kr/publ/list?survSeq=2020&menuSeq=0&division=&itemCode=02> 에서 2021.08.18. 인출
-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2014.09.17.).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경북글로벌
교류센터’ 개관. [보도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m=0201&s=moe&page=69&boardID=339&boardSeq=56751&lev=0&opType=N> 에서 2021.08.17.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사회보장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기본법에서> 2021.7.2.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1988). 대한민국헌법.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에서> 2021.7.2. 인출.
- 국가인권위원회. (2020.06.11.). 지자체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
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5564> 에서 2021.11.15. 인출
- 국가인권위원회. (2009). 바이마르 헌법. <https://www.humanrights.go.kr/hrlletter/09121/pop06.htm>에서 2021.7.2. 인출.
- 국민건강보험 (2021). 유학생 건강보험 질의응답자료. https://grad.aks.ac.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16298&bbsId=BBSMSTR_000000000120&pageIndex=1&mngrMenu= 2021.03.30. 인출
- 김원중. (2019.05.16.). 외국인 전용 기숙사 ‘누리관’은 왜 실패했는가. <https://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2&nNewsNumb=002557100016>에서 2021.08.17. 인출
- 김제관. (2011.01.25.). 3년 체류한 중학생 57% “한국 싫어”.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1/01/55635/> 에서 2021.08.01. 인출

- 3김종민. (2021.3.6.). 알바생 10명 중 2명 “임금 부당대우 경험”...연장근무 수당 미지급 많아.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05_0001359834&cID=13001&pID=13000에서 2021.10.23. 인출.
- 다누리. (2021). 다누리콜센터, <https://www.liveinkorea.kr/center/page/contents.do?menuSeq=180> 에서 2021.10.01. 인출
- 단국대학교. (2021). 외국인 유학생 보험 <https://www.dankook.ac.kr/web/kor/-488> 에서 2021.03.30. 인출
- 대한민국 비자포털. (2021). 입국목적별 비자 종류. https://www.visa.go.kr/openPage.do?MENU_ID=10102에서 2021.8.22. 인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4.10.07.). 법무부, 결혼이민자·외국인유학생에 맞춤 형상담 확대 - 체류절차·생활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85393> 에서 2021.08.01. 인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09.03.26.). 우수 외국인재 이중국적 허용한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664321> 2021.08.01. 인출
- 박기원. (2020.12.21.). ‘대전 누리관, 청년 근로자 기숙사로 재탄생’ 충청헤럴드. <http://www.ccherald.kr/news/articleView.html?idxno=19663>에서 2021.04.26. 인출
- 박종민. (2021.09.24.). 전북대, 미얀마·아프간 학생에 장학금 지원, UNN,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16215> 에서 2021.11.13. 인출
- 법무부. (2018.02.21.). 법무부, 우수 외국인재 유치 늘리고 불법취업 막는다 -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활성화와 유학생 교육의 내실화 기대. 법무부 보도자료.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956>에서(2021.08.01. 인출

- 법무부. (2020). 국적(지역) 및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publicationYN=Y&statId=1975049#A32.3> 에서 2021.07.15. 인출
-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2021). 사회통합 프로그램. https://www.socinet.go.kr/soci/contents/PgmIntrPurp.jsp?q_global_menu_id=S_SIP_SUB01 에서 2021.04.08. 인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1).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30/subview.do> 에서 2021.08.01. 인출
- 법제처. (2021a). 외국인 유학생 - 사증 발급,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08&ccfNo=2&cciNo=1&cnpClsNo=1&search_put=에서 2021.8.22. 인출
- 법제처. (2021b).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08&ccfNo=3&cciNo=7&cnpClsNo=1> 2021.04.08. 인출
- 법제처. (2021c). 건강보험의 가입.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08&ccfNo=3&cciNo=6&cnpClsNo=2> 에서 2021.08.17. 인출
- 보건복지부. (2021.04.06.).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발표, 보도자료,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617686482754_20210406142123.hwp&rs=/upload/viewer/result/202112/에서 2021.08.17. 인출
- 서강대학교 국제팀. (2021). 국제학생 - 사증 및 출입국 안내 -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신고 https://scc.sogang.ac.kr/goabroad/goabroad_005_4.html 2021.04.08. 인출
- 손일연, 전환욱, 조아라, 최지현. (2020.01.26.). [한국 속 중국] ①20년째 대학의 이방인... “우리만 비싼 등록금은 억울해요”. 아주뉴스. <https://www.ajunews.com/view/20200123130733571>에서 2021.8.26. 인출.

- 송하성. (2020.03.11.). 마스크 5부제, 외국인 130만명은 공적 마스크 구매 못한다 - 건강보험 가입자만 구입 가능... 단기체류자와 유학생, 미등록 체류자는 어찌나?, ohmynews.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21115 에서 2021.09.07. 인출
- 신승헌. (2020.05.12.). 건보공단, 외국어 전화상담 서비스 확대, 의약뉴스. <http://www.newsmp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484> 에서 2021.10.01. 인출
- 신재동, 여유진. (2009). 한국복지패널로 본 건강 관련 지표. 보건복지포럼. <http://repository.kihasa.re.kr/bitstream/201002/4372/1/5098.pdf> (2021.09.20. 인출)
- 신은별. (2021.10.28.). [단독] 문 대통령 “차별금지법, 검토할 때 됐다”... 여야 “11월 이후 논의 시작”, 한국일보,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102716180005927> 에서 2021.11.13. 인출
- 양지원. (2016.05.25.).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익산글로벌교류센터’ 개관. UN N.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59611> 에서 2021.08.17. 인출
- 이효상. (2017.11.15.). 외국인 창업비자를 아시나요? 아웃소싱타임스. <https://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587> 에서 2021.08.17. 인출
- 인천대학교 국제지원센터. (2021). 유학생 아르바이트. <http://isc.inu.ac.kr/ko/visa-insurance/job> 에서 2021.08.17. 인출
- 전진아, 이난희. (2015). 한국복지패널자료로 살펴본 우울과 만성질환의 동반양상과 의료서비스 이용실태 분석. 보건복지포럼. 219호, p.75-84. http://repository.kihasa.re.kr/bitstream/201002/14348/1/%EB%B3%B4%EA%B1%B4%EB%B3%B5%EC%A7%80%ED%8F%AC%EB%9F%BC.2015.01.N219_08.PDF 에서 2021.10.27. 인출

- 정병진. (2021.09.17.).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은 그림의 떡, ohmynews,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74678 에서 2021.11.13. 인출
- 주애신, 남진우, 구특교. (2021.04.19.). 취업난 청년들 “아낄건 식비뿐”… 3000원 식당 찾고, 하루 두끼만,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419/106471386/1>
- 채인택, 윤석만, 박현영. (2021.03.23.). [view] 표현의 자유·젠더·인종…세계가 한국 인권 난타, The JoonAng,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17928#home>에서 2021.12.22. 인출
- 최중혁. (2007.10.01.). 넘치는 오일머니, 한국유입 물꼬튼다, 머니투데이, <http://m.mt.co.kr/renew/view.html?no=2007093019344605915&googleamp> 에서 2021.08.13. 인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8). 외국인 종합지원 서비스 구축 2차 사업 - 유학생 정보시스템(사용자 지침서). <https://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3&boardSeq=45240&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326&s=moe&m=0501&opType=N> 에서 2021.08.01. 인출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2021).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 https://www.studyinkorea.go.kr/popup/employment_regulations_part_ko.jsp 2021.04.08. 인출
- 홍준현. (2020). 외국인 유학생 14만 명 시대, 고등교육 국제화 방향. 행복한 교육 1월호, https://happyedu.moe.go.kr/happy/bbs/selectHappy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5103&nttId=9760 에서 2021.08.01. 인출
- 화영. (2018.03.31.). 中 아시아 최대 유학 목적국으로 부상. 동포투데이, <http://dspdaily.com/news/view.php?no=11936> 에서 2021.08.13. 인출



[부록 1]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조사표(국·영·중문)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한국 거주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제활동, 소득, 주거, 건강, 유학생할 실태 등을 파악하고자 이번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제34조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자료는 통계 산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앞으로 한국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정확하고 솔직한 응답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태수
연구책임자: 박윤경 부연구위원

※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대행 :**
▶ **담당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병재 연구원(044-287-8185), 박윤경 부연구위원(044-287-8323)

※ 본 조사에서 모든 설문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통계분석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 응답자의 경우 최신내용 확인을 위한 연락 시 필요한 사항이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응답자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면접원이름	※ 면접원ID	※ 검토자1	※ 검토자2	조사일시	

※표시 항목은 조사업체에서 기입하는 란입니다.

A. 응답자 정보

1. 응답자 ID					6. 한국 거주기간	()년 ()개월
2. 성별	① 남	② 여			7. 한국 거주지	①서울 ②경기 ③광역시 ④타 시도
3. 출생년도					8. 학교 소재지	①서울 ②경기 ③부산 ④대전 ⑤충남 ⑥전북
4. 국적	①중국 ②베트남 ③기타 아시아 국가() ④그 외 <small>☞</small> 조사중단				9. 학위 과정	①(전문)학사 ②석사 ③박사
5. 최초 입국년도					10. 전공계열	①인문 ②사회과학 ③자연과학 ④예체능 ⑤의학,약학 ⑥기타

< 유의사항 >
 ※ 2021년에 입학한 사람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광역시는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세종을 포함, 타 시도는 그 외 강원, 충북-충남, 전북-전남, 경북-경남, 제주를 포함 합니다.

306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B. 유학 생활

11. 귀하가 한국으로 유학을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___① 더 좋은 취업 기회를 얻기 위해
- ___② 다양한 학문적 경험을 위해서
- ___③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의 교류를 위해
- ___④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 ___⑤ 한국문화를 알고 싶어서
- ___⑥ 기타: _____

12. 한국에서 일상(유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운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학점 관리, 한국어 공부 등이 어려움
- ② 비자 문제(복잡한 비자 연장 서류 작성, 학교에 일괄 대행 서비스 없음 등)
- ③ 학비, 생활비 등 경제적 문제
- ④ 대인관계 문제(차별, 편견, 괴롭힘, 왕따 문제 등)
- ⑤ 의료용, 그료물 등
- ⑥ 건강 악화, 질병 등
- ⑦ 주거 문제(집 구하기 어려움, 비용 문제, 외국인에게 불리한 조건 등)
- ⑧ 음식, 생활 문화적 차이 등 한국 생활 적응
- ⑨ 기타: _____

13. 현재 가장 받고 싶은 지원은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한국어 공부, 전공지식 습득 등 학업 지원
- ② 장학금 등 경제적 지원
- ③ 아르바이트, 취업 지원
- ④ 기숙사 등 주거 지원
- ⑤ 신체 건강 및 의료 지원
- ⑥ 정신건강 관련 심리상담 지원
- ⑦ 유학생 동아리 등 커뮤니티 지원
- ⑧ 출입국 업무 설명회 및 수속 대행
- ⑨ 기타: _____

14. 현재 한국에서의 유학생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___① 매우 불만족 ___② 대체로 불만족 ___③ 보통 ___④ 대체로 만족 ___⑤ 매우 만족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15. 다니고 있는 학교를 졸업한 후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 ___① 한국에 계속 체류 ☞ 15-1 문항으로 이동
- ___② 본국으로 출국 ☞ 15-2 문항으로 이동
- ___③ 제3국으로 출국 ☞ 'C.경제활동상태'로 이동

15-1. 한국에서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 ___① 취업(구직 활동 포함)
- ___② 진학(상급 학교, 타 전공 등)
- ___③ 기타: _____

15-2.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본국에 좋은 일자리를 구할 기회가 많아서
- ② 한국에서 취업하기가 힘들어서
- ③ 한국에서 비자 전환과 체류 연장 절차가 까다로워서
- ④ 본국의 생활 여건이 더 좋아서
- ⑤ 유학 생활 중 배운 지식을 본국에서 활용하고 싶어서
- ⑥ 본국에서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 ⑦ 가족이나 친·인척, 친구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 ⑧ 한국에서의 차별이 심해서
- ⑨ 외국 생활에 실증이 나서
- ⑩ 기타: _____

308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C. 경제활동 상태

16. 최근 1년 동안 한국에서 직장생활이나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주당 1시간 이상 기준, 조교 업무 포함)

- ① 없음 16-1로 이동
- ② 방학과 학기 때 모두 일한 경험 있음 16-2번 문항으로 이동
- ③ 방학 때만 경험했음 16-2번 문항으로 이동
- ④ 학기 때만 경험했음 16-2번 문항으로 이동

16-1. 직장생활이나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경제적으로 필요성이 있지 않아서
- ② 학업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 ③ 구직 활동을 했으나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 ④ 구직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시도하지 않음
- ⑤ 부모님이 원하지 않아서
- ⑥ 출입국사무소의 허가를 받지 못해서
- ⑦ 외국인 유학생은 직장생활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서
- ⑧ 기타: _____

응답 후 19번으로 이동

16-2. 지난 1년 동안 한국에서 직장생활이나 아르바이트를 한 기간은 모두 합해 대략 몇 개월 정도 됩니까?

개월

응답 후 17번으로 이동

* 아래 17-16번 문항은 한국에서 한 번이라도 직장생활이나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합니다.
 * 직장생활이나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경우 19번으로 이동하여 응답합니다.

17. 일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 1)을 제외한 2)~7)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응답)

구분	경험한 적 있음	경험한 적 없음
1) 일하다 다쳤음	①	②
2) 과중한 업무량	①	②
3) 인격적 무시(감정적 폭력)	①	②
4) 해고	①	②
5) 외국인에 대한 차별	①	②
6) 약속된 임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뒤늦게 받음	①	②
7) 약속된 임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아예 받지 못함	①	②

18.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대체로 불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 아래 19~21번 문항은 직장생활이나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가 응답합니다.

19. 외국인 유학생이 구직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___① 일자리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 ___② 한국어 문제로 일자리 잡기가 어려워서
- ___③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거나 차별해서
- ___④ 전공/적성에 맞는 일자리가 적어서
- ___⑤ 일자리의 임금 수준이 너무 낮아서
- ___⑥ 일자리의 노동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 ___⑦ 준비 서류, 절차 등이 어렵고 복잡해서
- ___⑧ 기타: _____

20. 외국인 유학생의 일자리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외국인에 대한 차별 문제
- ② 충분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
- ③ 근로시간, 휴근시간 등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음
- ④ 원하는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시간, 자격 등)가 어려움
- ⑤ 나이, 성, 학력에 따른 차별 문제
- ⑥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
- ⑦ 기타: _____

21. 유학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은 시간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취업 당시에 이를 알고 있었습니까?

- ___① 예
- ___② 아니요

310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D. 소득, 생활비

22. 지난 한 학기(6개월)에 필요한 학비, 장학비 및 생활비, 실제 지출하는 생활비는 얼마나 됩니까?

학비 (장학금 포함)*	필요 생활비 (장학금 포함)	지출 생활비 (장학금 포함)
□□□□만원	□□□□만원	□□□□만원

* 만약 학비가 1000만원이고, 50% 등록금 감면을 받았다면 일단 학비는 1000만원으로 작성

23. 지난 학기(6개월) 동안 사용한 학비와 생활비 등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비율로 작성해주세요.

학비 및 생활비 조달 방식	비율
부모 혹은 가족	___%
본인의 저금	___%
한국에서 본인의 근로소득	___%
장학금	___%
기타	___%
계	100%

< 유의사항 >
 ※ 근로소득은 교내에서 하는 조교 활동,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합니다.
 ※ 장학금은 교내외 교외에서 받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24. 지난 1년 사이에 생활비가 모자란 경험이 있었습니까?

- ___① 없음 ☞ 'E. 주거'로 이동
 ___② 있음 ☞ 24-1번 문항으로 이동

24-1. 생활비가 모자란 때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___① 식비를 줄였음
 ___② 식비 외 다른 생활비를 줄였음
 ___③ 가족에게 돈을 받았음
 ___④ 친구 등 지인에게 돈을 빌렸음
 ___⑤ 일지리를 구하거나, 허던 일의 양을 늘렸음
 ___⑥ 장학금을 신청했음
 ___⑦ 저축한 돈을 썼음
 ___⑧ 기타: _____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E. 주거

25.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주거 형태는 무엇입니까?

- __① 기숙사 ⇒ 26번 문항으로 이동
 __② 전세
 __③ 보증금 있는 월세
 __④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__⑤ 자기 집
 __⑥ 기타 혹은 잘 모르겠음

25-1. 기숙사에 살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① 기숙사에 배정받지 못해서
 __② 기숙사보다 지금 집의 비용 부담이 적어서
 __③ 기숙사 시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__④ 기숙사 규정이 너무 엄격해서
 __⑤ 기타: _____

25-2.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어떤 경로로 소개 받았습니까?

- __① 학교
 __② 친구 등 지인
 __③ 부동산
 __④ 온라인 커뮤니티
 __⑤ 부동산 앱이나 사이트 (예: 직방, 네이버 부동산 등)
 __⑥ 기타: _____

25-3. 집을 찾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 __① 보증금 마련 어려움 __② 정보의 부족
 __③ 집주인(임대인)의 차별 __④ 중개업체의 차별
 __⑤ 기타: _____

26. 주거비(월세, 공과금, 관리비 등)로 한 학기(6개월)에 얼마나 부담하고 있습니까?

□□□□만원

〈유의사항〉

※ 장학금으로 생활비를 받아서 지출한다면, 본인 부담으로 간주합니다.
 ※ (전세, 월세)보증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는 주거비로 포함합니다.

26-1. 최근 1년간 주거비(월세, 공과금, 관리비 등) 지출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웠습니까?

- __①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다 __② 별로 부담스럽지 않았다
 __③ 보통 수준이다 __④ 약간 부담스러웠다 __⑤ 매우 부담스러웠다

27.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 정도를 말씀해주세요.

- __① 매우 불만족 __② 대체로 불만족 __③ 보통 __④ 대체로 만족 __⑤ 매우 만족

312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F. 건강

28. 전반적으로 신체적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 __① 매우 나쁨 __② 약간 나쁨 __③ 좋지도 나쁘지도 않음
__④ 약간 좋음 __⑤ 매우 좋음

29. 지난 1년간 참지 못할 정도로 아프거나(감기 포함) 다쳤을 때 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 __① 병원(의원, 보건소, 종합병원, 외국인 무료 진료소 등)에 갔다 ☞ 31번으로 이동
__② 병/의원 처방 없이 약국에 갔다 ☞ 30번으로 이동
__③ 본국에서 가져온 약을 먹고 참았다 ☞ 30번으로 이동
__④ 그냥 참았다 ☞ 30번으로 이동
__⑤ 아픈 적이 없었다 ☞ 33번으로 이동
__⑥ 기타: _____ ☞ 33번으로 이동

30.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 __①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의사소통이 안돼서) __② 가까운 데 병원이 없어서
__③ 치료비가 부담스러워서 __④ 어느 병원을 가야 될 지 몰라서
__⑤ 이용절차가 복잡해서 __⑥ 시간이 없어서
__⑦ 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되서

31. 한국의 의로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__① 매우 불만족 __② 대체로 불만족 __③ 보통 __④ 대체로 만족 __⑤ 매우 만족

32. 한국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데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 __① 한국어(언어) 소통이 어렵다 __② 거리가 멀다
__③ 비용이 많이 든다 __④ 이용절차가 복잡하다
__⑤ 의료 체계의 문화적 차이가 크다 __⑥ 의료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

33. 현재 한국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 __① 그렇다 ☞ 34번으로 이동
__② 아니다 ☞ 33-1번으로 이동

33-1. 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습니까?

- __①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서(비싸서)
__② 국민건강보험이 있는지 몰라서
__③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__④ 본국의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__⑤ 곧 유학 생활이 종료될 거라서
__⑥ 보험 가입 절차가 복잡해서
__⑦ 병원(의료기관)에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서

34. 국민건강보험이 본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① 전혀 그렇지 않다 __② 그렇지 않다 __③ 보통이다
__④ 그렇다 __⑤ 매우 그렇다

314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Survey on the Welfare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Students' Welfare in South Korea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a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conducts this survey in order to comprehend the economic activities, income, housing, health, and life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This survey targets international students currently studying in South Korea (hereafter Korea).

All the information about you will be kept confidential in accordance wit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Articles 33 and 34 of the Statistics Act. Your data will be used only for statistical purposes.

Your responses are crucial in making policies related to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future. Your honest and accurate responses will be deeply appreciated.

May 2021

Lee Tae-soo, President, KIHASA

Principal Investigator: Kwak Yoon-kyung, Associate Research Fellow

※ If you have any questions regarding this survey, please contact us at the following numbers:

▶ Research Agency:
▶ Researchers in charge: Lee Byeong-jae, Researcher, KIHASA (044-287-8185); Kwak Yoon-kyung, Associate Research Fellow, KIHASA (044-287-8323)

※ All responses and personal information will be processed anonymously and only for statistical analyses.

※ The following information about the respondent is used only for double-checking the responses if necessary.

Respondent's name	Tel
E-mail	

※ Interviewer's name	※ Interviewer's ID	※ Reviewer 1	※ Reviewer 2	Date & time of interview

※ Items marked with * will be filled in by the research agency.

A. Information about respondent

1. Respondent's ID		6. Duration of stay	() year(s) () month(s)
2. Gender	① Male ② Female	7. Place of residence	①Seoul ②Gyeonggi-do ③metropolitan cities ④Other cities/provinces
3. Date of birth		8. University location	①Seoul ②Gyeonggi-do ③Busan ④Dae-jeon ⑤Chungnam ⑥Jeonbuk
4. Nationality	①China ②Vietnam ③Other Asian countries () ④ Others * ⑤ 중단	9. Degree program	①(Associate degree)BA/BS ②MA/MS ③Ph.D.
5. Year of First Entry		10. Major	①Liberal arts ②Social sciences ③Natural sciences ④Entertainment & sports ⑤Medicine & Pharmacy ⑥Others

Survey on the Welfare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 Notes >

※ Those who entered Korean universities in 2021 are excluded.

※ Metropolitan cities consist of Busan, Daegu, Daejeon, Gwangju, Ulsan, Sejong. Other cities/provinces consist of Gangwon, Chungbuk/Chungnam, Jeonbuk/Jeonnam, Gyeongnam/Gyeongbuk, and Jeju.

B. Studying in Korea

11. Why did you come to study in Korea? Please choose two of the following in the order of importance.

First	Second

- ① To obtain better employment opportunities
- ② To gain diverse academic experiences
- ③ To be friends with people with various backgrounds
- ④ To learn Korean
- ⑤ To learn more about Korean culture (influenced by the Korean Wave (Hallyu))
- ⑥ Others: _____

12. What are the major difficulties you face in your daily (or academic) life in Korea? Please choose two of the following in the order of difficulty.

First	Second

- ① Maintaining good grades and learning Korean
- ② Visa issues (complicated paperwork for visa extension, visa service agency not available on campus)
- ③ Financial difficulties related to tuition or/and living expenses
- ④ Problem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discrimination, prejudice, being bullied.)
- ⑤ Loneliness, homesickness
- ⑥ Poor health, disease
- ⑦ Housing (difficulties in finding a place to stay, housing costs, unfavorable conditions for foreigners)
- ⑧ Adapting to the Korean way of life (communication, food, cultural differences)
- ⑨ Others: _____

13. What kind of support do you want the most? Please choose two of the following in the order of necessity.

First	Second

- ① academic support (e.g., learning Korean and gaining knowledge related to my major)
- ② Financial support (e.g., scholarships)
- ③ Employment support (e.g., part-time, work opportunities)
- ④ Housing support (e.g., dormitories)
- ⑤ Medical support for physical health
- ⑥ Counseling services for mental health
- ⑦ Community support for international student clubs
- ⑧ Agency services for immigration and relevant paperwork
- ⑨ Others: _____

14.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life in Korea?

316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Survey on the Welfare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_ ① Very dissatisfied _ ② Mostly dissatisfied _ ③ Neutral _ ④ Mostly satisfied _ ⑤ Very satisfied

15. What is your plan after graduation?

- _ ① Stay in Korea ☞ To Question 15-1
- _ ② Go back home ☞ To Question 15-2
- _ ③ Leave for a third country ☞ To 'C. Economic Activities'

15-1. What do you plan to do in Korea?

- _ ① Find a job (job-seeking activities)
- _ ② Continue studying (e.g. proceed to a higher-level academic institution, changing major, etc.)
- _ ③ Others: _____

15-2. Why do you want to go back home? Please choose two of the following in the order of importance.

First		Second	
-------	--	--------	--

- ① Better employment opportunities in my home country
- ② Difficult to find a job in Korea
- ③ Difficulties in changing and extending visas in Korea
- ④ Better living conditions in my home country
- ⑤ To use my skills and knowledge that I gained here in my home country
- ⑥ To continue to study in my home country
- ⑦ To be with my family, relatives, and friends
- ⑧ Discrimination was severe in Korea
- ⑨ I am tired of living abroad.
- ⑩ Others: _____

Survey on the Welfare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C. Economic Activities

16. Have you ever worked full-time or part-time in Korea in the past year? (an hour or longer a week including experience in working as a student assistant at a university?)

- ① No ☞ To Question 16-1
- ② During vacation and semesters ☞ To Question 16-2
- ③ Only during vacations ☞ To Question 16-2
- ④ Only during semesters ☞ To Question 16-2

16-1. What was the major reason for not having any work experience, including part-time?

- ① I was fine financially.
- ② I was busy studying
- ③ I did not succeed in finding a job.
- ④ I did not even try to find a job because it would be difficult.
- ⑤ My parents did not want me to find a job.
- ⑥ I could not obtain the permission from the immigration office.
- ⑦ I was misinformed that international students are not allowed to work.
- ⑧ Others: _____

☞ To Question 19

16-2. For how many months have you worked full-time or part-time in the most recent year?

__□□__months

☞ To Question 17

※ Questions 17 and 18 are only for those who have ever worked full-time or part-time in Korea.
 ※ Those without work experience can go to Question 19.

17. Have you ever experienced any of the following at work?

Items	Yes	No
1) Injuries	①	②
2) Heavy workload	①	②
3) Disrespect (emotional abuse)	①	②
4) Dismissal	①	②
5)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①	②
6) Late payment of (partial or full) wages	①	②
7) Non-payment of (partial or full) wages	①	②

18. How satisfied are you with the job(s) you have had?

- ① Very dissatisfied ② Mostly dissatisfied ③ Neutral ④ Mostly satisfied ⑤ Very satisfied

318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Survey on the Welfare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 Questions 19 to 21 are for all respondents regardless of their work experience.

**19. What difficulties do you think international students experience in the process of seeking a job?
Please choose two of the following in the order of importance.**

First		Second	
-------	--	--------	--

- _ ① Lack of information about employment opportunities
- _ ② Problems related to my Korean skills
- _ ③ Hesitance to employ foreigners or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 _ ④ Few employment opportunities related to my major
- _ ⑤ Low wages
- _ ⑥ Poor work environment
- _ ⑦ Complicated paperwork and procedure
- _ ⑧ Others: _____

20. What was the major problem related to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Please choose two of the following in the order of importance.

First		Second	
-------	--	--------	--

- ①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 ② Few employment opportunities with poor wages
- ③ Few employment opportunities with working conditions that fit my schedule (e.g. working hours and commuting time)
- ④ I am not ready to apply for jobs that I want (preparation time, qualifications, etc.)
- ⑤ Discrimination based on age, gender, and level of education
- ⑥ Lack of job information related to employment opportunities
- ⑦ Others: _____

21. International students with a student visa must report to the immigration office of their intent to work part-time after they are confirmed with the international student coordinator. Were you aware of this at the time of your employment?

- _ ① Yes
- _ ② No

Survey on the Welfare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D. Income and Living Expenses

22. How much money did you estimate for tuition and living, and how much did you actually spend in the last semester (6 months) ?

Tuition (including scholarships)*	Estimate living expenses (including scholarships)	Actual living expenses (including scholarships)
KRW□□□□0,000	KRW□□□□0,000	KRW□□□□0,000

* Suppose that your tuition was 10 million won and you received a scholarship of 5 million won. We still ask you to write 10 million in the blank for tuition.

23. Please indicate the source(s) of the money that you spent for tuition and living expenses in percentage. (%)

Ways to pay tuition and living expenses	Percentage
Parents or other family members	____%
Personal savings	____%
Earned income in Korea	____%
Scholarships	____%
Others	____%
Total	100%

< Notes >
 ※ Earned income includes earnings from assistantship and part-time jobs.
 ※ Scholarships include those from universities and external organizations.

24. Were there any circumstances where you did not have enough money for living expenses over the last year??

- _ ① No ☞ To 'E. Housing'
- _ ② Yes ☞ To Question 24-1

24-1. What did you do when you did not have enough money for living expenses? Please choose two of the following in the order of relevance.

First	Second
-------	--------

- _ ① reduced spending on food
- _ ② reduced living expenses except for expenses for food
- _ ③ received money from family members
- _ ④ Borrowed money from friends or acquaintances
- _ ⑤ Found a job or worked more (or longer)
- _ ⑥ Applied for scholarships
- _ ⑦ Used my own savings
- _ ⑧ Others: _____

320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Survey on the Welfare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E. Housing

25. What is your current type of housing?

- ① Dormitory ☞ To Question 26
- ② Jeonse (long-term lease with a security deposit)
- ③ Monthly lease with a security deposit
- ④ Monthly lease without a security deposit
- ⑤ My own house
- ⑥ Others or no idea

25-1. Why did you decide not to live in a dormitory?

- ① I applied but was not assigned a room
- ② My current housing is cheaper than a dormitory
- ③ I did not like the facilities
- ④ The rules of dormitories are too strict
- ⑤ Others: _____

25-2. What was the source of the information about your current housing?

- ① University
- ② Acquaintances including friends
- ③ Realtor
- ④ Online community
- ⑤ Real estate mobile apps or websites
- ⑥ Others: _____

25-3. What was the major obstacle in the process of house-hunting?

- ① Not having enough money for security deposit
- ② Lack of information
- ③ Discrimination from landlords
- ④ Discrimination from realtors
- ⑤ Others: _____

26. How much do you spend per semester (six months) for housing? (including monthly rent, utility bills, maintenance costs, etc.)

KRW □□□□0,000

< Notes >

- ※ If you use the fund from your scholarship(s) to pay for housing, it is still considered as paying out-of-pocket.
- ※ Security deposit is now included. Interest is included if you took out a (bank) loan to pay security deposit.

26-1. Was it financially hard to afford living expenses (including monthly rent, utility bills, maintenance costs, etc.) in the past year?

- ① Not hard at all
- ② Not too hard
- ③ Neutral
- ④ A little hard
- ⑤ Very hard

27.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current home?

- ① Very dissatisfied
- ② Mostly dissatisfied
- ③ Neutral
- ④ Mostly satisfied
- ⑤ Very satisfied

Survey on the Welfare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F. Health

28. How healthy do you feel physically?

- ① Very unhealthy ② Somewhat unhealthy ③ Neutral
 ④ Somewhat healthy ⑤ Very healthy

29. What did you do when you were seriously ill (including catching a cold) or injured in the past year?

- ① I went to a hospital (e.g. clinic, public health center, free clinic for foreigners, etc.) ☞ To Questions 31
 ② I went to a pharmacy without a prescription ☞ To Question 30
 ③ I took medicine brought from my home country ☞ To Question 30
 ④ I simply endured until I recovered ☞ To Question 30
 ⑤ I have never been sick ☞ To Question 33
 ⑥ Others: _____ ☞ To Question 33

30. What was the main reason for you to be hesitant to go to hospitals? Choose all that apply.

- ① Poor Korean language skills ② No hospital nearby
 ③ High medical costs ④ No idea of which hospital to visit
 ⑤ Complex procedures in hospitals ⑥ Not enough time
 ⑦ Health insurance suspended due to my delayed premium payments

31. How satisfied are you with the healthcare services in Korea ?

- ① Very dissatisfied ② Mostly dissatisfied ③ Neutral ④ Mostly satisfied ⑤ Very satisfied

32. What were the major difficulties when you visit healthcare facilities in Korea? Choose all that apply.

- ① Language problems ② healthcare facilities far from my area
 ③ High costs ④ Complex procedures
 ⑤ Cultural differences in the health care systems
 ⑥ Discriminatory attitudes from the healthcare professionals

33. Do you currently have health insurance in Korea?

- ① Yes ☞ To Question 34
 ② No ☞ To Question 33-1

33-1. Why did you not opt in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 ① Insurance premiums are too expensive
 ② I was not aware of it
 ③ I did not know how to opt in.
 ④ I have a health insurance coverage from my home country.
 ⑤ I am finishing up my studies in Korea.
 ⑥ The registration process is too complicated.
 ⑦ I do not think I will visit hospitals at all.

34. Do you think you need a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 ① Not at all ② Not really ③ Neutral
 ④ Somewhat ⑤ Absolutely

322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Survey on the Welfare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35. As of now, the monthly health insurance premium for international students is KRW 39,540 and is expected to rise up to KRW 52,720 in 2022 and KRW 65,890 in 2023. Do you think that the current and future premiums are affordable?

Monthly insurance premium for foreigners	Monthly insurance premium for international students			Other remarks
	2021 (30%)	2022 (40%)	From 2023 (50%)	
KRW 131,790	KRW 39,540	KRW 52,720	KRW 65,890	

- ① Very affordable ② Mostly affordable ③ Neutral
 ④ Somewhat expensive ⑤ Too expensive

36. How frequently have you experienced the following over the past week?

	Very rarely (less than one day per week)	Occasionally (one to two days per week)	Often (three to four days per week)	Mostly (five days or more per week)
1) I have no appetite	①	②	③	④
2) I was doing relatively well	①	②	③	④
3) I was depressed	①	②	③	④
4) everything felt harsh to me	①	②	③	④
5) I could not sleep well	①	②	③	④
6) I felt like I was left out alone in the world	①	②	③	④
7) I did not have particular troubles.	①	②	③	④
8) People were cold to me	①	②	③	④
9) I was sad	①	②	③	④
10) People seem to dislike me	①	②	③	④
11) I was so lost that I did not know what to do	①	②	③	④

37. Have you ever visited an expert (e.g. a doctor or counselor) for any psychological and mental issues?

- ① Yes ② No

38. Who do you talk to when you have consult unexpected difficulties?

- ① Korean friends
 ② Other Foreigners or friends from my country
 ③ Student assistants or professors
 ④ Departments for international student affairs (e.g., International affairs and counseling centers)
 ⑤ Family members, relatives, and friends living in my home country
 ⑥ Embassy
 ⑦ Others (e.g. civic groups and religious institutions, etc.)

39. How many people do you have who correspond to the following items?

Items	None	1-2	3-4	5-9	10 or more
1) From whom you can borrow a large sum of money in emergency	①	②	③	④	⑤
2) Who can help you when you are too sick to move.	①	②	③	④	⑤
3) Whom you can talk to when you feel depressed or stressed.	①	②	③	④	⑤

外国留学生在韩生活情况调查

外国留学生在韩生活情况调查

您好！

本调查是韩国国务总理室下设国家政策研究机构—韩国保健社会研究院针对在韩留学生（大学本科及研究生）实施的问卷调查。本调查旨在把握在韩居住的外国留学生的经济活动、收入、居住条件、健康状况及留学生生活等现状。

依据《统计法》第33条、第34条及《个人信息保护法》之规定，我院将对问卷调查内容严格保密。我院保证本次调查仅作数据统计分析之用，不会对外泄露或用于其他用途。

感谢您在百忙之中抽出时间协助调查。您的回复将作为韩国政府制定留学生相关政策的基础资料使用，请根据您的真实情况如实作答。谢谢！

2021年6月
韩国保健社会研究院院长 李允洙
研究负责人：郭侖昊副研究委员

※若您对本问卷有任何问题，请与下面的负责人联系。

▶ 调查代理：
▶ 负责人：韩国保健社会研究院 李秉载研究员(044-287-8185)，郭侖昊副研究委员(044-287-8323)

※本次问卷调查的所有内容和受访人信息均采用匿名方式填写，本调查仅作数据统计分析之用，不会用于其他用途。
※为了确认答案是否真实，受访人请务必填写联系方式，您的信息绝不会被泄露。

受访人姓名		电话号码	
邮箱			
※ 调查员姓名	※ 调查员ID	※ 检查员1	※ 检查员2
			调查日期

※星号 (*) 由问卷调查公司填写。

A. 受访人信息

1. 受访人 ID		6. 在韩居住时间	()年()个月
2. 性别	① 男 ② 女	7. 在韩居住地	①首尔 ②京畿 ③广城市 ④其它市、道
3. 出生年份		8. 学校所在地	①首尔 ②京畿 ③釜山 ④大田 ⑤忠南 ⑥全北
4. 国籍	① 中国 ② 越南 ③ 其他亚洲国家 () ④ 其他 ☞ 调查暂停	9. 学位课程	①(大专)本科 ②硕士 ③博士
5. 首次入境年份		10. 专业	①人文 ②社会科学 ③自然科学 ④文体 ⑤医学、药学 ⑥其他

<注意事项>

※ 2021年入学的学生不包括在调查范围内。

※ 广城市包括釜山、大邱、仁川、大田、光州、蔚山和世宗。其它市、道包括江原道、忠北、忠南、全北、全南、庆北、庆南和济州。

324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外国留学生在韩生活情况调查

B. 留学生活

11. 你来韩留学的目的是什么? 请根据重要程度选出两项。

第一		第二	
----	--	----	--

- ___① 寻找更多的就业机会
- ___② 获得丰富的学习经验
- ___③ 与更多拥有不同文化背景的人交流
- ___④ 学习韩语
- ___⑤ 想要深入了解韩国文化
- ___⑥ 其他: _____

12. 在韩国的日常(留学)生活中, 您认为最困难的事情有哪些? 请根据困难程度选出两项

第一		第二	
----	--	----	--

- ① 学分管理、韩语学习等
- ② 办理签证 (签证延期太复杂, 学校未提供统一代办服务等)
- ③ 经济问题 (学费、生活费等)
- ④ 人际关系问题 (歧视、偏见、欺负、排斥等)
- ⑤ 孤独感, 思乡等
- ⑥ 健康恶化, 疾病等
- ⑦ 居住问题 (找房难、房租高、居住条件对外国人不利等)
- ⑧ 生活适应问题 (饮食、生活中的文化差异等)
- ⑨ 其他: _____

13. 现在, 您最需要得到的帮助有哪些? 请根据需要程度选出两项。

第一		第二	
----	--	----	--

- ① 学习方面 (学习韩语、掌握专业知识等)
- ② 经济方面 (奖学金等)
- ③ 打工, 就业
- ④ 居住方面 (宿舍等)
- ⑤ 医疗方面 (身体健康等)
- ⑥ 心理咨询方面 (精神健康等)
- ⑦ 社交方面 (留学生社团等)
- ⑧ 出入境业务说明会, 代办相关手续
- ⑨ 其他: _____

14. 现在, 您在韩国留学生活的满意程度如何?

- ___① 非常不满意 ___② 不满意 ___③ 一般 ___④ 满意 ___⑤ 非常满意

外国留学生在韩生活情况调查

15. 您毕业以后有什么打算？

- ① 继续留居韩国 ☞ 请直接回答15-1
- ② 回国 ☞ 请直接回答15-2
- ③ 去第三国家 ☞ 请直接回答“C.经济活动情况”

15-1. 您打算在韩国做什么？

- ① 就业 (包括求职)
- ② 升学 (继续深造、就读其他专业等)
- ③ 其他: _____

15-2. 您为什么要回国？请根据重要程度选出两项。

第一		第二	
----	--	----	--

- ① 本国就业机会更多
- ② 很难在韩国找到工作
- ③ 签证改签、延期等不方便
- ④ 本国生活条件更好
- ⑤ 将在韩国学到的专业知识在本国推广
- ⑥ 在本国继续学业
- ⑦ 想和家人、亲戚、朋友在一起
- ⑧ 韩国人非常歧视外国人
- ⑨ 不喜欢在国外生活
- ⑩ 其他: _____

326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外国留学生在韩生活情况调查

C. 经济活动情况

16. 近一年内,您在韩国有过职场工作或打工等经验吗? (以每周一小时以上为准,包括助教业务)

- ① 无 请直接回答16-1
 ② 学期、假期中都有过 请直接回答16-2
 ③ 仅在假期中有过经验 请直接回答16-2
 ④ 仅在学期中有过经验 请直接回答16-2

16-1. 您未曾在韩国公司工作或打工过的最主要的原因是什么?

- ① 没有经济方面的需要
 ② 因学业繁忙没有时间
 ③ 求过职但没找到工作
 ④ 认为就业很难,根本没有求过职
 ⑤ 父母不愿意
 ⑥ 未获得出入境事务所的批准
 ⑦ 以为外国留学生不能工作或打工
 ⑧ 其他: _____

选择后请直接回答19

16-2. 近一年内,您在韩国工作或打工的时间共几个月?

 □□个月

选择后请直接回答17

※ 第17-18题仅限在韩国至少有过一次职场工作或打工经验的人回答。
 ※ 没有职场工作或打工经验的人,请直接回答19题。

17. 您在工作过程中遇到过以下情景吗? (除※ 1之外, 2)-7) 靠主观判断回答)

分类	有	没有
1) 在工作中受伤	①	②
2) 工作过于繁重	①	②
3) 人格侮辱 (情感暴力)	①	②
4) 被解雇	①	②
5) 对外国人的歧视	①	②
6) 全部或部分工资被拖欠	①	②
7) 没拿到全部或部分工资	①	②

18. 您对工作的满意程度如何?

- ① 非常不满意 ② 不满意 ③ 一般 ④ 满意 ⑤ 非常满意

外国留学生在韩生活情况调查

※ 无论是否拥有职场工作或打工的经验, 所有受访者都需回答第19-21问题。

19. 外国留学生在求职过程中遇到过哪些问题? 请根据重要程度选出两项。

第一		第二	
----	--	----	--

- ① 招聘信息不足
- ② 因为语言(韩语)问题难以找到工作
- ③ 根本不招聘外国人, 或者歧视外国人
- ④ 工作岗位与专业/职业能力倾向不符
- ⑤ 工资太低
- ⑥ 工作环境太恶劣
- ⑦ 所需的材料、流程等过于困难复杂
- ⑧ 其他: _____

20. 您认为外国留学生就业时面临的困难是什么? 请根据重要程度选出两项。

第一		第二	
----	--	----	--

- ① 对外国人的歧视
- ② 大部分工作工资较低
- ③ 没有符合条件(工作时间, 上班时间等)的工作
- ④ 很难为应聘到理想工作做好充分准备(没有充分的时间、资格等)
- ⑤ 对年龄、性别、学历等的歧视
- ⑥ 缺少招聘信息
- ⑦ 其他: _____

21. 持有留学签证的留学生打工时, 必须获得学校留学生负责人的批准并向出入境事务所申报。您在打工时对此了解吗?

- ① 是
- ② 否

328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外国留学生在韩生活情况调查

D. 收入, 生活费

22. 上个学期(6个月)所需的学费、奖学金、生活费、实际消费支出是多少?

学费(含奖学金)*	生活费(含奖学金)	消费支出(含奖学金)
□□□□万韩元	□□□□万韩元	□□□□万韩元

* 假设学费为1000万韩元且拿到了50%的奖学金, 仍需要填写1000万韩元

23. 上个学期(6个月)学费和生活费的经济来源有哪些, 请按照比例填写。

学费及生活费的经济来源	比例
父母或家人	___%
自己的储蓄	___%
在韩工作收入	___%
奖学金	___%
其他	___%
合计	100%

<注意事项>

* 工作收入包含在校内担任助教及打工等的收入。

* 奖学金指从学校及外部机构领取的各类奖学金。

24. 近一年内, 您有没有出现过生活费不够的情况?

- __① 没有 ☞ 请直接回答“E.居住”
 __② 有 ☞ 请直接回答24-1

24-1. 在生活费不够的情况下, 为维持生活您采取了哪些方式? 请根据重要程度选出两项。

第一	第二

- __① 减少饮食开销
 __② 减少了除饮食开销外的其他生活开销
 __③ 家人给予
 __④ 从朋友等熟人处借钱
 __⑤ 找工作或者增加工作量
 __⑥ 申请奖学金
 __⑦ 使用存款
 __⑧ 其他: _____

外国留学生在韩生活情况调查

E. 居住

25. 您现在居住的房屋属于下面的哪一类?

- __① 宿舍 ☞ 请直接回答26
 __② 全租
 __③ 月租, 含押金
 __④ 月租, 不含押金
 __⑤ 本人所有住宅
 __⑥ 其他或不知道

25-1. 为什么不住宿舍?

- __① 没被安排宿舍
 __② 现在居住的房屋租金低于宿舍费用
 __③ 对宿舍条件不满意
 __④ 学生宿舍守则太严格
 __⑤ 其他: _____

25-2. 您现在的住房是由何种途径获悉的?

- __① 学校
 __② 朋友等熟人
 __③ 房地产经纪入
 __④ 网络论坛
 __⑤ 房屋中介app或网站 (如: 직방, 네이버 부동산等)
 __⑥ 其他: _____

25-3. 您找房时最大的困难有哪些?

- __① 押金筹集困难
 __② 缺少信息
 __③ 房东 (出租人) 的歧视
 __④ 房地产经纪公司的歧视
 __⑤ 其他: _____

26. 一个学期 (6个月) 的居住开销 (月租、公共事业费、管理费等) 有多少?

□□□□万韩元

<注意事项>

- ※ 请填写总开销金额 (包含使用奖学金支付的部分)
 ※ 居住开销中不包含房屋押金。但若是使用贷款支付押金, 则贷款产生的利息也属于居住开销。

26-1. 近一年内, 您是否因居住开销 (月租、公共事业费、管理费等) 感受到了经济负担?

- __① 没有任何负担 __② 负担不太重
 __③ 一般 __④ 负担有点重 __⑤ 负担非常重

27. 请选择您对现在居住的房屋满意程度。

- __① 非常不满意 __② 不满意 __③ 一般 __④ 满意 __⑤ 非常满意

330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外国留学生在韩生活情况调查

F. 健康

28. 总体来看,您的身体健康状况如何?
 __① 非常不好 __② 有点不好 __③ 不好也不坏
 __④ 比较好 __⑤ 非常好
29. 近一年内,您病情比较严重(含感冒)或受伤时采取了哪些措施?
 __① 去医院(诊所、保健所、综合医院、外国人免费诊所等) ☞ 请直接回答31
 __② 未在医院、诊所开处方,直接去药房买药 ☞ 请直接回答30
 __③ 吃从本国带来的药硬撑着 ☞ 请直接回答30
 __④ 强撑着 ☞ 请直接回答30
 __⑤ 从未生病过 ☞ 请直接回答33
 __⑥ 其他: _____ ☞ 请直接回答33
30. 您为什么生病了也不去医院看病?(可多选)
 __① 韩语不流利(语言沟通不畅) __② 附近没有医院
 __③ 看病费用较高 __④ 不知道应该去哪个医院
 __⑤ 看病流程复杂 __⑥ 没有时间
 __⑦ 因拖欠保险费导致健康保险被停保
31. 您对韩国医疗服务的满意程度如何?
 __① 非常不满意 __② 不满意 __③ 一般 __④ 满意 __⑤ 非常满意
32. 在韩就医时,您遇到的最大困难是什么?(可多选)
 __① 韩语(语言)沟通有问题 __② 距离很远
 __③ 医疗费用高 __④ 医院看病程序太复杂
 __⑤ 医疗体系与本国有很大差异 __⑥ 医护人员对外国人持有歧视性态度
33. 现在您在韩国是否已参保健康保险?
 __① 是 ☞ 请直接回答34
 __② 否 ☞ 请直接回答33-1
- 33-1. 您为什么不参保健康保险?
 __① 保险费太高(太贵)
 __② 不知道什么叫国民健康保险
 __③ 不知道参保方法
 __④ 可享受本国的医疗保险
 __⑤ 留学生活接近尾声
 __⑥ 参保流程太复杂
 __⑦ 原来身体健康,不需要去医院看病
34. 您认为自己需要国民健康保险吗?
 __① 一点都不需要 __② 不需要 __③ 一般
 __④ 需要 __⑤ 非常需要

[부록 2]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기초통계

〈부표 2-1〉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명	%
전체		700	100.0
성별	남성	310	44.3
	여성	390	55.7
연령대 (만 나이)	19~24	419	59.9
	25~29	206	29.4
	30세 이상	75	10.7
국적	중국	348	49.7
	베트남	166	23.7
	기타 아시아	186	26.6
한국 거주기간	2년 미만	208	29.7
	2년~3년 미만	153	21.9
	3년~4년 미만	133	19.0
	4년~5년 미만	120	17.1
	5년 이상	86	12.3
거주 지역	수도권	439	62.7
	비수도권	261	37.3
	서울	309	44.1
	경기/광역시	241	34.4
	타 시도	150	21.4
학교 지역	수도권	454	64.9
	비수도권	246	35.1
학위 과정	(전문) 학사	440	62.9
	대학원	260	37.1
전공계열	인문, 사회과학	362	51.7
	자연과학, 공학 등	296	42.3
	예체능	42	6.0

〈부표 2-2〉 성별

(단위: 명, %)

구분		남		여		χ^2
전체		310	(44.3)	390	(55.7)	-
성별	남성	310	(100.0)	0	(0.0)	-
	여성	0	(0.0)	390	(100.0)	
연령대 (만 나이)	19~24	172	(41.1)	247	(58.9)	10.624**
	25~29	92	(44.7)	114	(55.3)	
	30세 이상	46	(61.3)	29	(38.7)	
국적	중국	161	(46.3)	187	(53.7)	4.256
	베트남	62	(37.3)	104	(62.7)	
	기타 아시아	87	(46.8)	99	(53.2)	
한국 거주기간	2년 미만	84	(40.4)	124	(59.6)	11.528*
	2년~3년 미만	58	(37.9)	95	(62.1)	
	3년~4년 미만	58	(43.6)	75	(56.4)	
	4년~5년 미만	61	(50.8)	59	(49.2)	
	5년 이상	49	(57.0)	37	(43.0)	
거주 지역	수도권	179	(40.8)	260	(59.2)	5.883*
	비수도권	131	(50.2)	130	(49.8)	
	서울	134	(43.4)	175	(56.6)	0.721
	경기/광역시	105	(43.6)	136	(56.4)	
	타 시도	71	(47.3)	79	(52.7)	
학교 지역	수도권	186	(41.0)	268	(59.0)	5.759*
	비수도권	124	(50.4)	122	(49.6)	
학위 과정	(전문) 학사	194	(44.1)	246	(55.9)	0.018
	대학원	116	(44.6)	144	(55.4)	
전공계열	인문, 사회과학	134	(37.0)	228	(63.0)	19.852***
	자연과학, 공학 등	160	(54.1)	136	(45.9)	
	예체능	16	(38.1)	26	(61.9)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334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부표 2-3〉 나이

(단위: 세)

구분		평균	중위값	표준오차	F
전체		24.6	24	0.148	-
성별	남성	25.2	24	0.237	10.745**
	여성	24.2	23	0.184	
연령대 (만 나이)	19~24	22.2	22	0.066	-
	25~29	26.4	26	0.089	
	30세 이상	33.2	32	0.400	
국적	중국	24.7	24	0.208	0.147
	베트남	24.5	24	0.254	
	기타 아시아	24.6	23	0.326	
한국 거주기간	2년 미만	24.0	23	0.264	11.338***
	2년~3년 미만	23.9	23	0.328	
	3년~4년 미만	24.5	23	0.297	
	4년~5년 미만	25.1	24	0.299	
	5년 이상	26.9	26	0.479	
거주 지역	수도권	24.4	24	0.165	4.376*
	비수도권	25.0	24	0.280	
	서울	24.4	24	0.193	4.978**
	경기/광역시	24.3	23	0.250	
	타 시도	25.5	24	0.388	
학교 지역	수도권	24.3	24	0.155	6.950**
	비수도권	25.1	23	0.305	
학위 과정	(전문) 학사	22.8	23	0.111	382.975***
	대학원	27.6	26	0.258	
전공계열	인문, 사회과학	24.5	24	0.191	1.160
	자연과학, 공학 등	24.6	23	0.245	
	예체능	25.5	25	0.589	

주: *p<0.05, **p<0.01, ***p<0.001

〈부표 2-4〉 국적

(단위: 명, %)

구분		중국		베트남		기타 아시아 국가		χ^2
전체		348	(49.7)	166	(23.7)	186	(26.6)	-
성별	남성	161	(51.9)	62	(20.0)	87	(28.1)	4.256
	여성	187	(47.9)	104	(26.7)	99	(25.4)	
연령대 (만 나이)	19~24	204	(48.7)	100	(23.9)	115	(27.4)	5.463
	25~29	106	(51.5)	54	(26.2)	46	(22.3)	
	30세 이상	38	(50.7)	12	(16.0)	25	(33.3)	
국적	중국	348	(100.0)	0	(0.0)	0	(0.0)	-
	베트남	0	(0.0)	166	(100.0)	0	(0.0)	
	기타 아시아	0	(0.0)	0	(0.0)	186	(100.0)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114	(54.8)	39	(18.8)	55	(26.4)	27.240***
	2년~3년 미만	60	(39.2)	41	(26.8)	52	(34.0)	
	3년~4년 미만	56	(42.1)	41	(30.8)	36	(27.1)	
	4년~5년 미만	60	(50.0)	33	(27.5)	27	(22.5)	
	5년 이상	58	(67.4)	12	(14.0)	16	(18.6)	
거주 지역	수도권	229	(52.2)	95	(21.6)	115	(26.2)	3.620
	비수도권	119	(45.6)	71	(27.2)	71	(27.2)	
	서울	163	(52.8)	64	(20.7)	82	(26.5)	5.403
	경기/광역시	116	(48.1)	57	(23.7)	68	(28.2)	
	타 시도	69	(46.0)	45	(30.0)	36	(24.0)	
학교 지역	수도권	236	(52.0)	105	(23.1)	113	(24.9)	2.899
	비수도권	112	(45.5)	61	(24.8)	73	(29.7)	
학위 과정	(전문) 학사	218	(49.5)	105	(23.9)	117	(26.6)	0.018
	대학원	130	(50.0)	61	(23.5)	69	(26.5)	
전공 계열	인문, 사회과학	194	(53.6)	93	(25.7)	75	(20.7)	28.948***
	자연과학, 공학 등	123	(41.6)	71	(24.0)	102	(34.5)	
	예체능	31	(73.8)	2	(4.8)	9	(21.4)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336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부표 2-5〉 최초 입국 연도

(단위: 명, %)

구분		2015년 이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χ^2
전체		61 (8.7)	95 (13.6)	125 (17.9)	148 (21.1)	172 (24.6)	99 (14.1)	-
성별	남성	35 (11.3)	44 (14.2)	60 (19.4)	66 (21.3)	68 (21.9)	37 (11.9)	8.591
	여성	26 (6.7)	51 (13.1)	65 (16.7)	82 (21.0)	104 (26.7)	62 (15.9)	
연령대 (만 나이)	19~24	17 (4.1)	50 (11.9)	84 (20.0)	96 (22.9)	110 (26.3)	62 (14.8)	38.168***
	25~29	28 (13.6)	34 (16.5)	30 (14.6)	39 (18.9)	47 (22.8)	28 (13.6)	
	30세 이상	16 (21.3)	11 (14.7)	11 (14.7)	13 (17.3)	15 (20.0)	9 (12.0)	
국적	중국	42 (12.1)	58 (16.7)	61 (17.5)	60 (17.2)	84 (24.1)	43 (12.4)	28.036**
	베트남	5 (3.0)	24 (14.5)	30 (18.1)	44 (26.5)	41 (24.7)	22 (13.3)	
	기타 아시아	14 (7.5)	13 (7.0)	34 (18.3)	44 (23.7)	47 (25.3)	34 (18.3)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3 (1.4)	4 (1.9)	4 (1.9)	13 (6.3)	85 (40.9)	99 (47.6)	1247.209***
	2년~3년 미만	2 (1.3)	4 (2.6)	3 (2.0)	57 (37.3)	87 (56.9)	0 (0.0)	
	3년~4년 미만	1 (0.8)	3 (2.3)	51 (38.3)	78 (58.6)	0 (0.0)	0 (0.0)	
	4년~5년 미만	2 (1.7)	51 (42.5)	67 (55.8)	0 (0.0)	0 (0.0)	0 (0.0)	
	5년 이상	53 (61.6)	33 (38.4)	0 (0.0)	0 (0.0)	0 (0.0)	0 (0.0)	
거주 지역	수도권	43 (9.8)	60 (13.7)	72 (16.4)	97 (22.1)	103 (23.5)	64 (14.6)	4.237
	비수도권	18 (6.9)	35 (13.4)	53 (20.3)	51 (19.5)	69 (26.4)	35 (13.4)	

구분		2015년 이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χ^2
	서울	32 (10.4)	39 (12.6)	55 (17.8)	62 (20.1)	73 (23.6)	48 (15.5)	7.230
	경기/ 광역시	17 (7.1)	34 (14.1)	38 (15.8)	59 (24.5)	63 (26.1)	30 (12.4)	
	타 시도	12 (8.0)	22 (14.7)	32 (21.3)	27 (18.0)	36 (24.0)	21 (14.0)	
학교 지역	수도권	44 (9.7)	64 (14.1)	73 (16.1)	99 (21.8)	107 (23.6)	67 (14.8)	5.109
	비수도권	17 (6.9)	31 (12.6)	52 (21.1)	49 (19.9)	65 (26.4)	32 (13.0)	
학위 과정	(전문)학사	22 (5.0)	57 (13.0)	91 (20.7)	108 (24.5)	111 (25.2)	51 (11.6)	36.528***
	대학원	39 (15.0)	38 (14.6)	34 (13.1)	40 (15.4)	61 (23.5)	48 (18.5)	
전공 계열	인문, 사회과학	40 (11.0)	55 (15.2)	60 (16.6)	69 (19.1)	86 (23.8)	52 (14.4)	12.507
	자연과학, 공학 등	18 (6.1)	37 (12.5)	56 (18.9)	72 (24.3)	75 (25.3)	38 (12.8)	
	예체능	3 (7.1)	3 (7.1)	9 (21.4)	7 (16.7)	11 (26.2)	9 (21.4)	

주: *p<0.05, **p<0.01, ***p<0.001

338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부표 2-6〉 한국 거주기간

(단위: 개월)

구분		평균	중위값	표준오차	F
전체		37.1	34	0.805	-
성별	남성	40.3	37	1.325	12.671***
	여성	34.6	31	0.972	
연령대 (만 나이)	19~24	33.9	31	0.866	13.988***
	25~29	40.3	37	1.598	
	30세 이상	46.0	41	3.435	
국적	중국	38.4	36	1.296	1.410
	베트남	36.3	37	1.216	
	기타 아시아	35.4	33	1.449	
한국 거주기간	2년 미만	15.6	16	0.336	-
	2년~3년 미만	28.9	29	0.296	
	3년~4년 미만	40.3	40	0.272	
	4년~5년 미만	52.9	53	0.339	
	5년 이상	76.5	69	2.223	
거주 지역	수도권	37.1	34	1.058	0.008
	비수도권	37.0	34	1.225	
	서울	37.9	34	1.315	0.814
	경기/광역시	35.7	34	1.261	
	타 시도	37.7	35	1.632	
학교 지역	수도권	37.0	34	1.037	0.024
	비수도권	37.3	35	1.262	
학위 과정	(전문) 학사	35.9	35	0.854	3.868*
	대학원	39.1	34	1.610	
전공계열	인문, 사회과학	38.1	35	1.194	0.861
	자연과학, 공학 등	36.0	34	1.076	
	예체능	36.0	32	4.099	

주: *p<0.05, **p<0.01, ***p<0.001

〈부표 2-7〉 한국 거주지

(단위: 명, %)

구분		서울		경기		광역시		타 시도		χ^2
전체		309	(44.1)	130	(18.6)	111	(15.9)	150	(21.4)	-
성별	남성	134	(43.2)	45	(14.5)	60	(19.4)	71	(22.9)	9.891*
	여성	175	(44.9)	85	(21.8)	51	(13.1)	79	(20.3)	
연령대 (만 나이)	19~24	186	(44.4)	74	(17.7)	73	(17.4)	86	(20.5)	21.860**
	25~29	100	(48.5)	46	(22.3)	25	(12.1)	35	(17.0)	
	30세 이상	23	(30.7)	10	(13.3)	13	(17.3)	29	(38.7)	
국적	중국	163	(46.8)	66	(19.0)	50	(14.4)	69	(19.8)	6.654
	베트남	64	(38.6)	31	(18.7)	26	(15.7)	45	(27.1)	
	기타 아시아	82	(44.1)	33	(17.7)	35	(18.8)	36	(19.4)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89	(42.8)	43	(20.7)	32	(15.4)	44	(21.2)	16.055
	2년~3년 미만	70	(45.8)	24	(15.7)	25	(16.3)	34	(22.2)	
	3년~4년 미만	63	(47.4)	29	(21.8)	25	(18.8)	16	(12.0)	
	4년~5년 미만	45	(37.5)	20	(16.7)	19	(15.8)	36	(30.0)	
	5년 이상	42	(48.8)	14	(16.3)	10	(11.6)	20	(23.3)	
거주 지역	수도권	309	(70.4)	130	(29.6)	0	(0.0)	0	(0.0)	-
	비수도권	0	(0.0)	0	(0.0)	111	(42.5)	150	(57.5)	
	서울	309	(100.0)	0	(0.0)	0	(0.0)	0	(0.0)	
	경기/광역시	0	(0.0)	130	(53.9)	111	(46.1)	0	(0.0)	
	타 시도	0	(0.0)	0	(0.0)	0	(0.0)	150	(100.0)	
학교 지역	수도권	296	(65.2)	123	(27.1)	19	(4.2)	16	(3.5)	484.504***
	비수도권	13	(5.3)	7	(2.8)	92	(37.4)	134	(54.5)	
학위 과정	(전문) 학사	200	(45.5)	77	(17.5)	76	(17.3)	87	(19.8)	4.207
	대학원	109	(41.9)	53	(20.4)	35	(13.5)	63	(24.2)	
전공 계열	인문, 사회과학	200	(55.2)	55	(15.2)	52	(14.4)	55	(15.2)	44.423***
	자연과학, 공학 등	97	(32.8)	62	(20.9)	55	(18.6)	82	(27.7)	
	예체능	12	(28.6)	13	(31.0)	4	(9.5)	13	(31.0)	

주: *p<0.05, **p<0.01, ***p<0.001

340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부표 2-8〉 학교 소재지

(단위: 명, %)

구분		서울	경기	부산	대전	충남	전북	χ^2
전체		302 (43.1)	152 (21.7)	47 (6.7)	65 (9.3)	94 (13.4)	40 (5.7)	-
성별	남성	134 (43.2)	52 (16.8)	20 (6.5)	41 (13.2)	37 (11.9)	26 (8.4)	23.494***
	여성	168 (43.1)	100 (25.6)	27 (6.9)	24 (6.2)	57 (14.6)	14 (3.6)	
연령대 (만 나이)	19~24	194 (46.3)	74 (17.7)	26 (6.2)	48 (11.5)	62 (14.8)	15 (3.6)	61.507***
	25~29	94 (45.6)	61 (29.6)	13 (6.3)	8 (3.9)	19 (9.2)	11 (5.3)	
	30세 이상	14 (18.7)	17 (22.7)	8 (10.7)	9 (12.0)	13 (17.3)	14 (18.7)	
국적	중국	172 (49.4)	64 (18.4)	13 (3.7)	37 (10.6)	29 (8.3)	33 (9.5)	71.006***
	베트남	49 (29.5)	56 (33.7)	16 (9.6)	10 (6.0)	35 (21.1)	0 (0.0)	
	기타 아시아	81 (43.5)	32 (17.2)	18 (9.7)	18 (9.7)	30 (16.1)	7 (3.8)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86 (41.3)	53 (25.5)	13 (6.3)	20 (9.6)	20 (9.6)	16 (7.7)	21.327
	2년~3년 미만	69 (45.1)	28 (18.3)	12 (7.8)	15 (9.8)	20 (13.1)	9 (5.9)	
	3년~4년 미만	63 (47.4)	29 (21.8)	9 (6.8)	10 (7.5)	21 (15.8)	1 (0.8)	
	4년~5년 미만	43 (35.8)	27 (22.5)	6 (5.0)	13 (10.8)	23 (19.2)	8 (6.7)	
	5년 이상	41 (47.7)	15 (17.4)	7 (8.1)	7 (8.1)	10 (11.6)	6 (7.0)	
거주 지역	수도권	282 (64.2)	137 (31.2)	0 (0.0)	8 (1.8)	12 (2.7)	0 (0.0)	487.548***
	비수도권	20 (7.7)	15 (5.7)	47 (18.0)	57 (21.8)	82 (31.4)	40 (15.3)	

구분		서울	경기	부산	대전	충남	전북	χ^2
	서울	269 (87.1)	27 (8.7)	0 (0.0)	8 (2.6)	5 (1.6)	0 (0.0)	789.270***
	경기/광역시	26 (10.8)	116 (48.1)	37 (15.4)	47 (19.5)	15 (6.2)	0 (0.0)	
	타 시도	7 (4.7)	9 (6.0)	10 (6.7)	10 (6.7)	74 (49.3)	40 (26.7)	
학교 지역	수도권	302 (66.5)	152 (33.5)	0 (0.0)	0 (0.0)	0 (0.0)	0 (0.0)	-
	비수도권	0 (0.0)	0 (0.0)	47 (19.1)	65 (26.4)	94 (38.2)	40 (16.3)	
학위 과정	(전문) 학사	211 (48.0)	74 (16.8)	27 (6.1)	48 (10.9)	64 (14.5)	16 (3.6)	33.438***
	대학원	91 (35.0)	78 (30.0)	20 (7.7)	17 (6.5)	30 (11.5)	24 (9.2)	
전공 계열	인문, 사회과학	191 (52.8)	74 (20.4)	26 (7.2)	21 (5.8)	36 (9.9)	14 (3.9)	50.236***
	자연과학, 공학 등	96 (32.4)	65 (22.0)	20 (6.8)	43 (14.5)	52 (17.6)	20 (6.8)	
	예체능	15 (35.7)	13 (31.0)	1 (2.4)	1 (2.4)	6 (14.3)	6 (14.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342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부표 2-9〉 학위 과정

(단위: 명, %)

구분		(전문)학사		석사		박사		χ^2
전체		440	(62.9)	166	(23.7)	94	(13.4)	-
성별	남성	194	(62.6)	58	(18.7)	58	(18.7)	17.440***
	여성	246	(63.1)	108	(27.7)	36	(9.2)	
연령대 (만 나이)	19~24	371	(88.5)	43	(10.3)	5	(1.2)	429.098***
	25~29	62	(30.1)	106	(51.5)	38	(18.4)	
	30세 이상	7	(9.3)	17	(22.7)	51	(68.0)	
국적	중국	218	(62.6)	81	(23.3)	49	(14.1)	0.449
	베트남	105	(63.3)	41	(24.7)	20	(12.0)	
	기타 아시아	117	(62.9)	44	(23.7)	25	(13.4)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119	(57.2)	62	(29.8)	27	(13.0)	34.535***
	2년~3년 미만	104	(68.0)	30	(19.6)	19	(12.4)	
	3년~4년 미만	95	(71.4)	23	(17.3)	15	(11.3)	
	4년~5년 미만	86	(71.7)	24	(20.0)	10	(8.3)	
	5년 이상	36	(41.9)	27	(31.4)	23	(26.7)	
거주 지역	수도권	277	(63.1)	111	(25.3)	51	(11.6)	4.112
	비수도권	163	(62.5)	55	(21.1)	43	(16.5)	
	서울	200	(64.7)	83	(26.9)	26	(8.4)	15.363**
	경기/광역시	153	(63.5)	51	(21.2)	37	(15.4)	
	타 시도	87	(58.0)	32	(21.3)	31	(20.7)	
학교 지역	수도권	285	(62.8)	120	(26.4)	49	(10.8)	10.707**
	비수도권	155	(63.0)	46	(18.7)	45	(18.3)	
학위 과정	(전문) 학사	440	(100.0)	0	(0.0)	0	(0.0)	-
	대학원	0	(0.0)	166	(63.8)	94	(36.2)	
전공 계열	인문, 사회과학	232	(64.1)	100	(27.6)	30	(8.3)	28.490***
	자연과학, 공학 등	190	(64.2)	55	(18.6)	51	(17.2)	
	예체능	18	(42.9)	11	(26.2)	13	(31.0)	

주: *p<0.05, **p<0.01, ***p<0.001

〈부표 2-10〉 전공계열

(단위: 명, %)

구분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체능	의학 약학	기타	χ^2
전체		231 (33.0)	131 (18.7)	52 (7.4)	42 (6.0)	7 (1.0)	237 (33.9)	-
성별	남성	87 (28.1)	47 (15.2)	30 (9.7)	16 (5.2)	3 (1.0)	127 (41.0)	20.616***
	여성	144 (36.9)	84 (21.5)	22 (5.6)	26 (6.7)	4 (1.0)	110 (28.2)	
연령대 (만 나이)	19~24	128 (30.5)	81 (19.3)	27 (6.4)	19 (4.5)	3 (0.7)	161 (38.4)	29.355**
	25~29	84 (40.8)	39 (18.9)	16 (7.8)	15 (7.3)	1 (0.5)	51 (24.8)	
	30세 이상	19 (25.3)	11 (14.7)	9 (12.0)	8 (10.7)	3 (4.0)	25 (33.3)	
국적	중국	123 (35.3)	71 (20.4)	14 (4.0)	31 (8.9)	4 (1.1)	105 (30.2)	38.088***
	베트남	58 (34.9)	35 (21.1)	19 (11.4)	2 (1.2)	0 (0.0)	52 (31.3)	
	기타 아시아	50 (26.9)	25 (13.4)	19 (10.2)	9 (4.8)	3 (1.6)	80 (43.0)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72 (34.6)	38 (18.3)	12 (5.8)	17 (8.2)	2 (1.0)	67 (32.2)	22.004
	2년~3년 미만	44 (28.8)	28 (18.3)	16 (10.5)	7 (4.6)	1 (0.7)	57 (37.3)	
	3년~4년 미만	42 (31.6)	29 (21.8)	10 (7.5)	8 (6.0)	2 (1.5)	42 (31.6)	
	4년~5년 미만	35 (29.2)	18 (15.0)	10 (8.3)	7 (5.8)	0 (0.0)	50 (41.7)	
	5년 이상	38 (44.2)	18 (20.9)	4 (4.7)	3 (3.5)	2 (2.3)	21 (24.4)	
거주 지역	수도권	164 (37.4)	91 (20.7)	30 (6.8)	25 (5.7)	3 (0.7)	126 (28.7)	20.496**
	비수도권	67 (25.7)	40 (15.3)	22 (8.4)	17 (6.5)	4 (1.5)	111 (42.5)	

344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구분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체능	의학, 약학	기타	χ^2
	서울	132 (42.7)	68 (22.0)	21 (6.8)	12 (3.9)	3 (1.0)	73 (23.6)	44.271***
	경기/광역시	62 (25.7)	45 (18.7)	19 (7.9)	17 (7.1)	2 (0.8)	96 (39.8)	
	타 시도	37 (24.7)	18 (12.0)	12 (8.0)	13 (8.7)	2 (1.3)	68 (45.3)	
학교 지역	수도권	169 (37.2)	96 (21.1)	34 (7.5)	28 (6.2)	4 (0.9)	123 (27.1)	28.777***
	비수도권	62 (25.2)	35 (14.2)	18 (7.3)	14 (5.7)	3 (1.2)	114 (46.3)	
학위 과정	(전문) 학사	145 (33.0)	87 (19.8)	28 (6.4)	18 (4.1)	2 (0.5)	160 (36.4)	15.437**
	대학원	86 (33.1)	44 (16.9)	24 (9.2)	24 (9.2)	5 (1.9)	77 (29.6)	
전공 계열	인문, 사회과학	231 (63.8)	131 (36.2)	0 (0.0)	0 (0.0)	0 (0.0)	0 (0.0)	-
	자연과학, 공학 등	0 (0.0)	0 (0.0)	52 (17.6)	0 (0.0)	7 (2.4)	237 (80.1)	
	예체능	0 (0.0)	0 (0.0)	0 (0.0)	42 (100.0)	0 (0.0)	0 (0.0)	

주: *p<0.05, **p<0.01, ***p<0.001

〈부표 2-11〉 한국으로 유학을 온 목적(1순위)

(단위: 명, %)

구분		더 좋은 취업 기회를 얻기 위해	다양한 학문적 경험을 위해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 과의 교류를 위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 문화를 알고 싶어서	기타	χ^2
전체		263 (37.6)	298 (42.6)	38 (5.4)	65 (9.3)	26 (3.7)	10 (1.4)	-
성별	남성	127 (41.0)	130 (41.9)	23 (7.4)	17 (5.5)	10 (3.2)	3 (1.0)	15.669**
	여성	136 (34.9)	168 (43.1)	15 (3.8)	48 (12.3)	16 (4.1)	7 (1.8)	
연령대 (만 나이)	19~24	154 (36.8)	177 (42.2)	31 (7.4)	35 (8.4)	16 (3.8)	6 (1.4)	11.581
	25~29	79 (38.3)	86 (41.7)	6 (2.9)	24 (11.7)	7 (3.4)	4 (1.9)	
	30세 이상	30 (40.0)	35 (46.7)	1 (1.3)	6 (8.0)	3 (4.0)	0 (0.0)	
국적	중국	102 (29.3)	182 (52.3)	23 (6.6)	29 (8.3)	11 (3.2)	1 (0.3)	71.261***
	베트남	100 (60.2)	31 (18.7)	5 (3.0)	18 (10.8)	8 (4.8)	4 (2.4)	
	기타 아시아	61 (32.8)	85 (45.7)	10 (5.4)	18 (9.7)	7 (3.8)	5 (2.7)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62 (29.8)	106 (51.0)	12 (5.8)	14 (6.7)	11 (5.3)	3 (1.4)	23.155
	2년~3년 미만	57 (37.3)	62 (40.5)	10 (6.5)	15 (9.8)	6 (3.9)	3 (2.0)	
	3년~4년 미만	58 (43.6)	54 (40.6)	4 (3.0)	13 (9.8)	2 (1.5)	2 (1.5)	
	4년~5년 미만	47 (39.2)	45 (37.5)	8 (6.7)	16 (13.3)	4 (3.3)	0 (0.0)	
	5년 이상	39 (45.3)	31 (36.0)	4 (4.7)	7 (8.1)	3 (3.5)	2 (2.3)	

346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구분		더 좋은 취업 기회를 얻기 위해	다양한 학문적 경험을 위해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교류를 위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 문화를 알고 싶어서	기타	x ²
거주 지역	수도권	156 (35.5)	195 (44.4)	23 (5.2)	42 (9.6)	17 (3.9)	6 (1.4)	2.532
	비수도권	107 (41.0)	103 (39.5)	15 (5.7)	23 (8.8)	9 (3.4)	4 (1.5)	
	서울	108 (35.0)	138 (44.7)	20 (6.5)	28 (9.1)	10 (3.2)	5 (1.6)	12.416
	경기/광역시	84 (34.9)	101 (41.9)	15 (6.2)	26 (10.8)	11 (4.6)	4 (1.7)	
	타 시도	71 (47.3)	59 (39.3)	3 (2.0)	11 (7.3)	5 (3.3)	1 (0.7)	
학교 지역	수도권	159 (35.0)	202 (44.5)	23 (5.1)	45 (9.9)	18 (4.0)	7 (1.5)	4.548
	비수도권	104 (42.3)	96 (39.0)	15 (6.1)	20 (8.1)	8 (3.3)	3 (1.2)	
학위 과정	(전문) 학사	164 (37.3)	174 (39.5)	33 (7.5)	42 (9.5)	21 (4.8)	6 (1.4)	15.633**
	대학원	99 (38.1)	124 (47.7)	5 (1.9)	23 (8.8)	5 (1.9)	4 (1.5)	
전공 계열	인문, 사회과학	133 (36.7)	138 (38.1)	26 (7.2)	46 (12.7)	16 (4.4)	3 (0.8)	34.749***
	자연과학, 공학 등	122 (41.2)	129 (43.6)	11 (3.7)	18 (6.1)	10 (3.4)	6 (2.0)	
	예체능	8 (19.0)	31 (73.8)	1 (2.4)	1 (2.4)	0 (0.0)	1 (2.4)	

주: *p<0.05, **p<0.01, ***p<0.001

〈부표 2-12〉 한국으로 유학을 온 목적(1+2순위)

(단위: 명, %)

구분		더 좋은 취업 기회를 얻기 위해	다양한 학문적 경험을 위해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 과의 교류를 위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 문화를 알고 싶어서	기타
전체		408 (58.3)	478 (68.3)	202 (28.9)	180 (25.7)	111 (15.9)	21 (3.0)
성별	남성	189 (61.0)	221 (71.3)	94 (30.3)	61 (19.7)	47 (15.2)	8 (2.6)
	여성	219 (56.2)	257 (65.9)	108 (27.7)	119 (30.5)	64 (16.4)	13 (3.3)
연령대 (만 나이)	19~24	236 (56.3)	275 (65.6)	134 (32.0)	114 (27.2)	68 (16.2)	11 (2.6)
	25~29	126 (61.2)	141 (68.4)	51 (24.8)	58 (28.2)	27 (13.1)	9 (4.4)
	30세이상	46 (61.3)	62 (82.7)	17 (22.7)	8 (10.7)	16 (21.3)	1 (1.3)
국적	중국	167 (48.0)	272 (78.2)	123 (35.3)	78 (22.4)	51 (14.7)	5 (1.4)
	베트남	132 (79.5)	75 (45.2)	37 (22.3)	55 (33.1)	27 (16.3)	6 (3.6)
	기타 아시아	109 (58.6)	131 (70.4)	42 (22.6)	47 (25.3)	33 (17.7)	10 (5.4)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112 (53.8)	159 (76.4)	56 (26.9)	54 (26.0)	32 (15.4)	3 (1.4)
	2년~3년 미만	88 (57.5)	91 (59.5)	41 (26.8)	45 (29.4)	32 (20.9)	9 (5.9)
	3년~4년 미만	83 (62.4)	90 (67.7)	39 (29.3)	34 (25.6)	15 (11.3)	5 (3.8)
	4년~5년 미만	73 (60.8)	74 (61.7)	41 (34.2)	33 (27.5)	17 (14.2)	2 (1.7)
	5년 이상	52 (60.5)	64 (74.4)	25 (29.1)	14 (16.3)	15 (17.4)	2 (2.3)

348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구분		더 좋은 취업 기회를 얻기 위해	다양한 학문적 경험을 위해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 과의 교류를 위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 문화를 알고 싶어서	기타
거주 지역	수도권	248 (56.5)	309 (70.4)	129 (29.4)	113 (25.7)	67 (15.3)	12 (2.7)
	비수도권	160 (61.3)	169 (64.8)	73 (28.0)	67 (25.7)	44 (16.9)	9 (3.4)
	서울	176 (57.0)	214 (69.3)	96 (31.1)	81 (26.2)	42 (13.6)	9 (2.9)
	경기/ 광역시	134 (55.6)	171 (71.0)	67 (27.8)	59 (24.5)	42 (17.4)	9 (3.7)
	타 시도	98 (65.3)	93 (62.0)	39 (26.0)	40 (26.7)	27 (18.0)	3 (2.0)
학교 지역	수도권	251 (55.3)	324 (71.4)	133 (29.3)	117 (25.8)	70 (15.4)	13 (2.9)
	비수도권	157 (63.8)	154 (62.6)	69 (28.0)	63 (25.6)	41 (16.7)	8 (3.3)
학위 과정	(전문) 학사	248 (56.4)	275 (62.5)	148 (33.6)	123 (28.0)	75 (17.0)	11 (2.5)
	대학원	160 (61.5)	203 (78.1)	54 (20.8)	57 (21.9)	36 (13.8)	10 (3.8)
전공 계열	인문, 사회과학	201 (55.5)	234 (64.6)	115 (31.8)	112 (30.9)	57 (15.7)	5 (1.4)
	자연과학, 공학 등	192 (64.9)	204 (68.9)	73 (24.7)	59 (19.9)	51 (17.2)	13 (4.4)
	예체능	15 (35.7)	40 (95.2)	14 (33.3)	9 (21.4)	3 (7.1)	3 (7.1)

주: *p<0.05, **p<0.01, ***p<0.001

〈부표 2-13〉 한국에서 일상(유학) 생활 시 애로사항(1순위)

(단위: 명, %)

구분		학점 관리, 한국어 공부 등이 어려움	비자 문제	학비, 생활비 등 경제적 문제	대인 관계 문제	외모음, 그리움 등	건강 악화, 질병 등	주거 문제	음식, 생활 문화적 차이 등 한국 생활 적응	기타	χ^2
전체		205 (29.3)	85 (12.1)	176 (25.1)	77 (11.0)	64 (9.1)	13 (1.9)	46 (6.6)	33 (4.7)	1 (0.1)	-
성별	남성	96 (31.0)	34 (11.0)	78 (25.2)	35 (11.3)	19 (6.1)	3 (1.0)	21 (6.8)	23 (7.4)	1 (0.3)	19.040*
	여성	109 (27.9)	51 (13.1)	98 (25.1)	42 (10.8)	45 (11.5)	10 (2.6)	25 (6.4)	10 (2.6)	0 (0.0)	
연령대 (만나이)	19~24	145 (34.6)	43 (10.3)	97 (23.2)	49 (11.7)	39 (9.3)	8 (1.9)	24 (5.7)	14 (3.3)	0 (0.0)	25.845
	25~29	44 (21.4)	31 (15.0)	54 (26.2)	23 (11.2)	19 (9.2)	3 (1.5)	17 (8.3)	14 (6.8)	1 (0.5)	
	30세이상	16 (21.3)	11 (14.7)	25 (33.3)	5 (6.7)	6 (8.0)	2 (2.7)	5 (6.7)	5 (6.7)	0 (0.0)	
국적	중국	101 (29.0)	30 (8.6)	81 (23.3)	46 (13.2)	37 (10.6)	11 (3.2)	29 (8.3)	13 (3.7)	0 (0.0)	44.055***
	베트남	61 (36.7)	29 (17.5)	44 (26.5)	15 (9.0)	7 (4.2)	0 (0.0)	5 (3.0)	5 (3.0)	0 (0.0)	
	기타 아시아	43 (23.1)	26 (14.0)	51 (27.4)	16 (8.6)	20 (10.8)	2 (1.1)	12 (6.5)	15 (8.1)	1 (0.5)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60 (28.8)	21 (10.1)	51 (24.5)	19 (9.1)	22 (10.6)	7 (3.4)	16 (7.7)	11 (5.3)	1 (0.5)	25.052
	2년~3년 미만	44 (28.8)	15 (9.8)	43 (28.1)	17 (11.1)	15 (9.8)	1 (0.7)	8 (5.2)	10 (6.5)	0 (0.0)	
	3년~4년 미만	45 (33.8)	20 (15.0)	29 (21.8)	14 (10.5)	12 (9.0)	2 (1.5)	7 (5.3)	4 (3.0)	0 (0.0)	
	4년~5년 미만	37 (30.8)	13 (10.8)	34 (28.3)	13 (10.8)	9 (7.5)	1 (0.8)	9 (7.5)	4 (3.3)	0 (0.0)	
	5년 이상	19 (22.1)	16 (18.6)	19 (22.1)	14 (16.3)	6 (7.0)	2 (2.3)	6 (7.0)	4 (4.7)	0 (0.0)	

350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구분		학점 관리, 한국어 공부 등이 어려움	비자 문제	학비, 생활비 등 경제적 문제	대인 관계 문제	외문음, 그리움 등	건강 악화, 질병 등	주거 문제	음식, 생활 문화적 차이 등 한국 생활 적응	기타	χ^2
거주 지역	수도권	124 (28.2)	65 (14.8)	98 (22.3)	52 (11.8)	42 (9.6)	8 (1.8)	35 (8.0)	15 (3.4)	0 (0.0)	21.444**
	비수도권	81 (31.0)	20 (7.7)	78 (29.9)	25 (9.6)	22 (8.4)	5 (1.9)	11 (4.2)	18 (6.9)	1 (0.4)	
	서울	86 (27.8)	48 (15.5)	77 (24.9)	34 (11.0)	29 (9.4)	5 (1.6)	19 (6.1)	11 (3.6)	0 (0.0)	23.310
	경기/ 광역시	76 (31.5)	25 (10.4)	50 (20.7)	30 (12.4)	22 (9.1)	6 (2.5)	21 (8.7)	10 (4.1)	1 (0.4)	
	타 시도	43 (28.7)	12 (8.0)	49 (32.7)	13 (8.7)	13 (8.7)	2 (1.3)	6 (4.0)	12 (8.0)	0 (0.0)	
학교 지역	수도권	126 (27.8)	64 (14.1)	104 (22.9)	56 (12.3)	41 (9.0)	9 (2.0)	35 (7.7)	19 (4.2)	0 (0.0)	15.043
	비수도권	79 (32.1)	21 (8.5)	72 (29.3)	21 (8.5)	23 (9.3)	4 (1.6)	11 (4.5)	14 (5.7)	1 (0.4)	
학위 과정	(전문) 학사	146 (33.2)	49 (11.1)	107 (24.3)	51 (11.6)	41 (9.3)	10 (2.3)	24 (5.5)	12 (2.7)	0 (0.0)	22.829**
	대학원	59 (22.7)	36 (13.8)	69 (26.5)	26 (10.0)	23 (8.8)	3 (1.2)	22 (8.5)	21 (8.1)	1 (0.4)	
전공 계열	인문, 사회과학	97 (26.8)	50 (13.8)	92 (25.4)	44 (12.2)	27 (7.5)	9 (2.5)	30 (8.3)	13 (3.6)	0 (0.0)	26.767*
	자연과학, 공학 등	99 (33.4)	30 (10.1)	73 (24.7)	27 (9.1)	28 (9.5)	3 (1.0)	16 (5.4)	19 (6.4)	1 (0.3)	
	예체능	9 (21.4)	5 (11.9)	11 (26.2)	6 (14.3)	9 (21.4)	1 (2.4)	0 (0.0)	1 (2.4)	0 (0.0)	

주: *p<0.05, **p<0.01, ***p<0.001

〈부표 2-14〉 한국에서 일상(유학) 생활 시 애로사항(1+2순위)

(단위: 명, %)

구분		학점 관리, 한국어 공부 등이 어려움	비자 문제	학비, 생활비 등 경제적 문제	대인 관계 문제	외로움, 그리움 등	건강 악화, 질병 등	주거 문제	음식, 생활 문화적 차이 등 한국 생활 적응	기타
전체		299 (42.7)	149 (21.3)	314 (44.9)	154 (22.0)	166 (23.7)	54 (7.7)	144 (20.6)	107 (15.3)	13 (1.9)
성별	남성	139 (44.8)	57 (18.4)	132 (42.6)	76 (24.5)	68 (21.9)	15 (4.8)	61 (19.7)	67 (21.6)	5 (1.6)
	여성	160 (41.0)	92 (23.6)	182 (46.7)	78 (20.0)	98 (25.1)	39 (10.0)	83 (21.3)	40 (10.3)	8 (2.1)
연령대 (만나이)	19~24	205 (48.9)	83 (19.8)	189 (45.1)	90 (21.5)	102 (24.3)	29 (6.9)	83 (19.8)	50 (11.9)	7 (1.7)
	25~29	66 (32.0)	51 (24.8)	92 (44.7)	51 (24.8)	50 (24.3)	18 (8.7)	47 (22.8)	33 (16.0)	4 (1.9)
	30세이상	28 (37.3)	15 (20.0)	33 (44.0)	13 (17.3)	14 (18.7)	7 (9.3)	14 (18.7)	24 (32.0)	2 (2.7)
국적	중국	149 (42.8)	47 (13.5)	144 (41.4)	84 (24.1)	89 (25.6)	35 (10.1)	84 (24.1)	55 (15.8)	9 (2.6)
	베트남	86 (51.8)	58 (34.9)	83 (50.0)	33 (19.9)	30 (18.1)	8 (4.8)	17 (10.2)	17 (10.2)	0 (0.0)
	기타 아시아	64 (34.4)	44 (23.7)	87 (46.8)	37 (19.9)	47 (25.3)	11 (5.9)	43 (23.1)	35 (18.8)	4 (2.2)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82 (39.4)	35 (16.8)	85 (40.9)	36 (17.3)	60 (28.8)	22 (10.6)	46 (22.1)	42 (20.2)	8 (3.8)
	2년~3년 미만	66 (43.1)	34 (22.2)	66 (43.1)	33 (21.6)	38 (24.8)	11 (7.2)	38 (24.8)	20 (13.1)	0 (0.0)
	3년~4년 미만	68 (51.1)	25 (18.8)	68 (51.1)	31 (23.3)	27 (20.3)	7 (5.3)	22 (16.5)	16 (12.0)	2 (1.5)
	4년~5년 미만	52 (43.3)	28 (23.3)	65 (54.2)	26 (21.7)	22 (18.3)	8 (6.7)	23 (19.2)	15 (12.5)	1 (0.8)
	5년 이상	31 (36.0)	27 (31.4)	30 (34.9)	28 (32.6)	19 (22.1)	6 (7.0)	15 (17.4)	14 (16.3)	2 (2.3)

352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구분		학점 관리, 한국어 공부 등이 어려움	비자 문제	학비, 생활비 등 경제적 문제	대인 관계 문제	외로움, 그리움 등	건강 악화, 질병 등	주거 문제	음식, 생활 문화적 차이 등 한국 생활 적응	기타
거주 지역	수도권	174 (39.6)	106 (24.1)	188 (42.8)	106 (24.1)	103 (23.5)	33 (7.5)	107 (24.4)	53 (12.1)	8 (1.8)
	비수도권	125 (47.9)	43 (16.5)	126 (48.3)	48 (18.4)	63 (24.1)	21 (8.0)	37 (14.2)	54 (20.7)	5 (1.9)
	서울	120 (38.8)	76 (24.6)	142 (46.0)	74 (23.9)	72 (23.3)	22 (7.1)	73 (23.6)	34 (11.0)	5 (1.6)
	경기/ 광역시	111 (46.1)	49 (20.3)	98 (40.7)	55 (22.8)	60 (24.9)	20 (8.3)	48 (19.9)	36 (14.9)	5 (2.1)
	타 시도	68 (45.3)	24 (16.0)	74 (49.3)	25 (16.7)	34 (22.7)	12 (8.0)	23 (15.3)	37 (24.7)	3 (2.0)
학교 지역	수도권	177 (39.0)	104 (22.9)	200 (44.1)	111 (24.4)	108 (23.8)	34 (7.5)	108 (23.8)	58 (12.8)	8 (1.8)
	비수도권	122 (49.6)	45 (18.3)	114 (46.3)	43 (17.5)	58 (23.6)	20 (8.1)	36 (14.6)	49 (19.9)	5 (2.0)
학위 과정	(전문) 학사	203 (46.1)	93 (21.1)	202 (45.9)	100 (22.7)	110 (25.0)	34 (7.7)	81 (18.4)	50 (11.4)	7 (1.6)
	대학원	96 (36.9)	56 (21.5)	112 (43.1)	54 (20.8)	56 (21.5)	20 (7.7)	63 (24.2)	57 (21.9)	6 (2.3)
전공 계열	인문, 사회과학	141 (39.0)	88 (24.3)	171 (47.2)	84 (23.2)	82 (22.7)	37 (10.2)	80 (22.1)	37 (10.2)	4 (1.1)
	자연과학, 공학 등	146 (49.3)	54 (18.2)	128 (43.2)	61 (20.6)	70 (23.6)	12 (4.1)	55 (18.6)	60 (20.3)	6 (2.0)
	예체능	12 (28.6)	7 (16.7)	15 (35.7)	9 (21.4)	14 (33.3)	5 (11.9)	9 (21.4)	10 (23.8)	3 (7.1)

주: *p<0.05, **p<0.01, ***p<0.001

〈부표 2-15〉 현재 가장 받고 싶은 지원(1순위)

(단위: 명, %)

구분		한국어 공부, 전공 지식 습득 등 학업 지원	장학금 등 경제적 지원	아르바 이트, 취업 지원	기숙사 등 주거 지원	신체 건강 및 의료 지원	정신 건강 관련 심리 상담 지원	유학생 동아리 등 커뮤 니티 지원	출입국 업무 설명회 및 수속 대행	χ^2
전체		212 (30.3)	281 (40.1)	103 (14.7)	17 (2.4)	23 (3.3)	17 (2.4)	31 (4.4)	16 (2.3)	-
성별	남성	106 (34.2)	106 (34.2)	43 (13.9)	11 (3.5)	7 (2.3)	8 (2.6)	20 (6.5)	9 (2.9)	18.765**
	여성	106 (27.2)	175 (44.9)	60 (15.4)	6 (1.5)	16 (4.1)	9 (2.3)	11 (2.8)	7 (1.8)	
연령대 (만 나이)	19~24	128 (30.5)	174 (41.5)	65 (15.5)	9 (2.1)	12 (2.9)	8 (1.9)	15 (3.6)	8 (1.9)	20.379
	25~29	58 (28.2)	85 (41.3)	30 (14.6)	4 (1.9)	8 (3.9)	5 (2.4)	13 (6.3)	3 (1.5)	
	30세이상	26 (34.7)	22 (29.3)	8 (10.7)	4 (5.3)	3 (4.0)	4 (5.3)	3 (4.0)	5 (6.7)	
국적	중국	124 (35.6)	118 (33.9)	48 (13.8)	7 (2.0)	11 (3.2)	13 (3.7)	14 (4.0)	13 (3.7)	42.705***
	베트남	50 (30.1)	84 (50.6)	16 (9.6)	5 (3.0)	4 (2.4)	2 (1.2)	4 (2.4)	1 (0.6)	
	기타 아시아	38 (20.4)	79 (42.5)	39 (21.0)	5 (2.7)	8 (4.3)	2 (1.1)	13 (7.0)	2 (1.1)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61 (29.3)	83 (39.9)	25 (12.0)	3 (1.4)	8 (3.8)	6 (2.9)	15 (7.2)	7 (3.4)	34.660
	2년~3년 미만	48 (31.4)	62 (40.5)	22 (14.4)	8 (5.2)	6 (3.9)	0 (0.0)	5 (3.3)	2 (1.3)	
	3년~4년 미만	47 (35.3)	55 (41.4)	19 (14.3)	2 (1.5)	3 (2.3)	3 (2.3)	4 (3.0)	0 (0.0)	
	4년~5년 미만	35 (29.2)	50 (41.7)	19 (15.8)	2 (1.7)	4 (3.3)	4 (3.3)	4 (3.3)	2 (1.7)	
	5년 이상	21 (24.4)	31 (36.0)	18 (20.9)	2 (2.3)	2 (2.3)	4 (4.7)	3 (3.5)	5 (5.8)	

354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구분		한국어 공부, 전공 지식 습득 등 학업 지원	장학금 등 경제적 지원	아르바 이트, 취업 지원	기숙사 등 주거 지원	신체 건강 및 의료 지원	정신 건강 관련 심리 상담 지원	유학생 동아리 등 커뮤 니티 지원	출입국 업무 설명회 및 수속 대행	χ^2
거주 지역	수도권	128 (29.2)	175 (39.9)	71 (16.2)	13 (3.0)	13 (3.0)	13 (3.0)	17 (3.9)	9 (2.1)	6.458
	비수도권	84 (32.2)	106 (40.6)	32 (12.3)	4 (1.5)	10 (3.8)	4 (1.5)	14 (5.4)	7 (2.7)	
	서울	79 (25.6)	129 (41.7)	54 (17.5)	11 (3.6)	8 (2.6)	10 (3.2)	10 (3.2)	8 (2.6)	18.885
	경기/ 광역시	83 (34.4)	87 (36.1)	32 (13.3)	3 (1.2)	10 (4.1)	5 (2.1)	16 (6.6)	5 (2.1)	
	타 시도	50 (33.3)	65 (43.3)	17 (11.3)	3 (2.0)	5 (3.3)	2 (1.3)	5 (3.3)	3 (2.0)	
학교 지역	수도권	139 (30.6)	177 (39.0)	74 (16.3)	10 (2.2)	13 (2.9)	14 (3.1)	19 (4.2)	8 (1.8)	7.662
	비수도권	73 (29.7)	104 (42.3)	29 (11.8)	7 (2.8)	10 (4.1)	3 (1.2)	12 (4.9)	8 (3.3)	
학위 과정	(전문) 학사	133 (30.2)	184 (41.8)	66 (15.0)	8 (1.8)	13 (3.0)	11 (2.5)	17 (3.9)	8 (1.8)	5.120
	대학원	79 (30.4)	97 (37.3)	37 (14.2)	9 (3.5)	10 (3.8)	6 (2.3)	14 (5.4)	8 (3.1)	
전공 계열	인문, 사회과학	90 (24.9)	160 (44.2)	56 (15.5)	9 (2.5)	9 (2.5)	13 (3.6)	17 (4.7)	8 (2.2)	25.470*
	자연과학, 공학 등	107 (36.1)	103 (34.8)	45 (15.2)	7 (2.4)	10 (3.4)	4 (1.4)	12 (4.1)	8 (2.7)	
	예체능	15 (35.7)	18 (42.9)	2 (4.8)	1 (2.4)	4 (9.5)	0 (0.0)	2 (4.8)	0 (0.0)	

주: *p<0.05, **p<0.01, ***p<0.001

〈부표 2-16〉 현재 가장 받고 싶은 지원(1+2순위)

(단위: 명, %)

구분		한국어 공부, 전공 지식 습득 등 학업 지원	장학금 등 경제적 지원	아르바 이트, 취업 지원	기숙사 등 주거 지원	신체 건강 및 의료 지원	정신 건강 관련 심리 상담 지원	유학생 동아리 등 커뮤 니티 지원	출입국 업무 설명회 및 수속 대행	기타
전체		318 (45.4)	427 (61.0)	266 (38.0)	55 (7.9)	76 (10.9)	43 (6.1)	145 (20.7)	67 (9.6)	3 (0.4)
성별	남성	157 (50.6)	179 (57.7)	102 (32.9)	33 (10.6)	29 (9.4)	19 (6.1)	69 (22.3)	29 (9.4)	3 (1.0)
	여성	161 (41.3)	248 (63.6)	164 (42.1)	22 (5.6)	47 (12.1)	24 (6.2)	76 (19.5)	38 (9.7)	0 (0.0)
연령대 (만 나이)	19~24	200 (47.7)	263 (62.8)	163 (38.9)	28 (6.7)	40 (9.5)	24 (5.7)	83 (19.8)	36 (8.6)	1 (0.2)
	25~29	82 (39.8)	122 (59.2)	84 (40.8)	19 (9.2)	26 (12.6)	11 (5.3)	46 (22.3)	20 (9.7)	2 (1.0)
	30세 이상	36 (48.0)	42 (56.0)	19 (25.3)	8 (10.7)	10 (13.3)	8 (10.7)	16 (21.3)	11 (14.7)	0 (0.0)
국적	중국	176 (50.6)	207 (59.5)	117 (33.6)	26 (7.5)	37 (10.6)	26 (7.5)	69 (19.8)	37 (10.6)	1 (0.3)
	베트남	75 (45.2)	114 (68.7)	64 (38.6)	14 (8.4)	16 (9.6)	10 (6.0)	29 (17.5)	10 (6.0)	0 (0.0)
	기타 아시아	67 (36.0)	106 (57.0)	85 (45.7)	15 (8.1)	23 (12.4)	7 (3.8)	47 (25.3)	20 (10.8)	2 (1.1)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95 (45.7)	123 (59.1)	63 (30.3)	17 (8.2)	23 (11.1)	11 (5.3)	62 (29.8)	20 (9.6)	2 (1.0)
	2년~3년 미만	73 (47.7)	96 (62.7)	57 (37.3)	15 (9.8)	17 (11.1)	4 (2.6)	32 (20.9)	12 (7.8)	0 (0.0)
	3년~4년 미만	68 (51.1)	89 (66.9)	53 (39.8)	7 (5.3)	7 (5.3)	9 (6.8)	25 (18.8)	7 (5.3)	1 (0.8)
	4년~5년 미만	51 (42.5)	73 (60.8)	54 (45.0)	8 (6.7)	17 (14.2)	13 (10.8)	14 (11.7)	10 (8.3)	0 (0.0)
	5년 이상	31 (36.0)	46 (53.5)	39 (45.3)	8 (9.3)	12 (14.0)	6 (7.0)	12 (14.0)	18 (20.9)	0 (0.0)

356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구분		한국어 공부, 전공 지식 습득 등 학업 지원	장학금 등 경제적 지원	아르바이트, 취업 지원	기숙사 등 주거 지원	신체 건강 및 의료 지원	정신 건강 관련 상담 지원	유학생 동아리 등 커뮤니티 지원	출입국 업무 설명회 및 수속 대행	기타
거주 지역	수도권	189 (43.1)	263 (59.9)	181 (41.2)	41 (9.3)	46 (10.5)	31 (7.1)	80 (18.2)	45 (10.3)	2 (0.5)
	비수도권	129 (49.4)	164 (62.8)	85 (32.6)	14 (5.4)	30 (11.5)	12 (4.6)	65 (24.9)	22 (8.4)	1 (0.4)
	서울	123 (39.8)	190 (61.5)	128 (41.4)	32 (10.4)	28 (9.1)	24 (7.8)	58 (18.8)	33 (10.7)	2 (0.6)
	경기/광역시	124 (51.5)	141 (58.5)	93 (38.6)	13 (5.4)	33 (13.7)	11 (4.6)	45 (18.7)	21 (8.7)	1 (0.4)
	타 시도	71 (47.3)	96 (64.0)	45 (30.0)	10 (6.7)	15 (10.0)	8 (5.3)	42 (28.0)	13 (8.7)	0 (0.0)
학교 지역	수도권	207 (45.6)	271 (59.7)	188 (41.4)	34 (7.5)	48 (10.6)	33 (7.3)	83 (18.3)	42 (9.3)	2 (0.4)
	비수도권	111 (45.1)	156 (63.4)	78 (31.7)	21 (8.5)	28 (11.4)	10 (4.1)	62 (25.2)	25 (10.2)	1 (0.4)
학위 과정	(전문) 학사	205 (46.6)	278 (63.2)	177 (40.2)	30 (6.8)	44 (10.0)	27 (6.1)	83 (18.9)	35 (8.0)	1 (0.2)
	대학원	113 (43.5)	149 (57.3)	89 (34.2)	25 (9.6)	32 (12.3)	16 (6.2)	62 (23.8)	32 (12.3)	2 (0.8)
전공 계열	인문, 사회과학	146 (40.3)	228 (63.0)	148 (40.9)	33 (9.1)	34 (9.4)	25 (6.9)	70 (19.3)	38 (10.5)	2 (0.6)
	자연과학, 공학 등	155 (52.4)	168 (56.8)	106 (35.8)	21 (7.1)	32 (10.8)	16 (5.4)	66 (22.3)	27 (9.1)	1 (0.3)
	예체능	17 (40.5)	31 (73.8)	12 (28.6)	1 (2.4)	10 (23.8)	2 (4.8)	9 (21.4)	2 (4.8)	0 (0.0)

주: *p<0.05, **p<0.01, ***p<0.001

〈부표 2-17〉 한국에서 유학생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단위: 명, %, 점)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대체로 불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평균	χ^2
전체		15 (2.1)	55 (7.9)	315 (45.0)	288 (41.1)	27 (3.9)	3.37	-
성별	남성	7 (2.3)	31 (10.0)	127 (41.0)	130 (41.9)	15 (4.8)	3.37	6.771
	여성	8 (2.1)	24 (6.2)	188 (48.2)	158 (40.5)	12 (3.1)	3.36	
연령대 (만 나이)	19~24	6 (1.4)	34 (8.1)	188 (44.9)	176 (42.0)	15 (3.6)	3.38	22.078**
	25~29	6 (2.9)	20 (9.7)	104 (50.5)	69 (33.5)	7 (3.4)	3.25	
	30세 이상	3 (4.0)	1 (1.3)	23 (30.7)	43 (57.3)	5 (6.7)	3.61	
국적	중국	5 (1.4)	11 (3.2)	159 (45.7)	158 (45.4)	15 (4.3)	3.48	33.843***
	베트남	7 (4.2)	21 (12.7)	82 (49.4)	49 (29.5)	7 (4.2)	3.17	
	기타 아시아	3 (1.6)	23 (12.4)	74 (39.8)	81 (43.5)	5 (2.7)	3.33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3 (1.4)	13 (6.3)	89 (42.8)	94 (45.2)	9 (4.3)	3.45	15.469
	2년~3년 미만	4 (2.6)	14 (9.2)	72 (47.1)	53 (34.6)	10 (6.5)	3.33	
	3년~4년 미만	5 (3.8)	11 (8.3)	60 (45.1)	56 (42.1)	1 (0.8)	3.28	
	4년~5년 미만	3 (2.5)	11 (9.2)	53 (44.2)	48 (40.0)	5 (4.2)	3.34	
	5년 이상	0 (0.0)	6 (7.0)	41 (47.7)	37 (43.0)	2 (2.3)	3.41	
거주 지역	수도권	10 (2.3)	40 (9.1)	208 (47.4)	166 (37.8)	15 (3.4)	3.31	7.705

358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대체로 불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평균	χ^2
	비수도권	5 (1.9)	15 (5.7)	107 (41.0)	122 (46.7)	12 (4.6)	3.46	10.471
	서울	6 (1.9)	25 (8.1)	150 (48.5)	117 (37.9)	11 (3.6)	3.33	
	경기/광역시	5 (2.1)	22 (9.1)	107 (44.4)	101 (41.9)	6 (2.5)	3.34	
	타 시도	4 (2.7)	8 (5.3)	58 (38.7)	70 (46.7)	10 (6.7)	3.49	
학교 지역	수도권	11 (2.4)	42 (9.3)	215 (47.4)	170 (37.4)	16 (3.5)	3.30	9.927*
	비수도권	4 (1.6)	13 (5.3)	100 (40.7)	118 (48.0)	11 (4.5)	3.48	
학위 과정	(전문) 학사	9 (2.0)	35 (8.0)	206 (46.8)	176 (40.0)	14 (3.2)	3.34	2.714
	대학원	6 (2.3)	20 (7.7)	109 (41.9)	112 (43.1)	13 (5.0)	3.41	
전공 계열	인문, 사회과학	7 (1.9)	23 (6.4)	185 (51.1)	132 (36.5)	15 (4.1)	3.35	24.491**
	자연과학, 공학 등	8 (2.7)	32 (10.8)	117 (39.5)	130 (43.9)	9 (3.0)	3.34	
	예체능	0 (0.0)	0 (0.0)	13 (31.0)	26 (61.9)	3 (7.1)	3.76	

주: *p<0.05, **p<0.01, ***p<0.001

〈부표 2-18〉 학교 졸업 후 계획

(단위: 명, %)

구분		한국에 계속 체류		본국으로 출국		제3국으로 출국		x ²
전체		312	(44.6)	318	(45.4)	70	(10.0)	-
성별	남성	137	(44.2)	132	(42.6)	41	(13.2)	6.801*
	여성	175	(44.9)	186	(47.7)	29	(7.4)	
연령대 (만 나이)	19~24	202	(48.2)	172	(41.1)	45	(10.7)	8.399
	25~29	82	(39.8)	105	(51.0)	19	(9.2)	
	30세 이상	28	(37.3)	41	(54.7)	6	(8.0)	
국적	중국	115	(33.0)	211	(60.6)	22	(6.3)	74.650***
	베트남	97	(58.4)	55	(33.1)	14	(8.4)	
	기타 아시아	100	(53.8)	52	(28.0)	34	(18.3)	
한국 거주기간	2년 미만	85	(40.9)	101	(48.6)	22	(10.6)	8.037
	2년~3년 미만	72	(47.1)	66	(43.1)	15	(9.8)	
	3년~4년 미만	53	(39.8)	67	(50.4)	13	(9.8)	
	4년~5년 미만	65	(54.2)	43	(35.8)	12	(10.0)	
	5년 이상	37	(43.0)	41	(47.7)	8	(9.3)	
거주 지역	수도권	194	(44.2)	199	(45.3)	46	(10.5)	0.310
	비수도권	118	(45.2)	119	(45.6)	24	(9.2)	
	서울	130	(42.1)	140	(45.3)	39	(12.6)	5.874
	경기/광역시	107	(44.4)	113	(46.9)	21	(8.7)	
	타 시도	75	(50.0)	65	(43.3)	10	(6.7)	
학교 지역	수도권	200	(44.1)	206	(45.4)	48	(10.6)	0.502
	비수도권	112	(45.5)	112	(45.5)	22	(8.9)	
학위 과정	(전문) 학사	208	(47.3)	185	(42.0)	47	(10.7)	5.475
	대학원	104	(40.0)	133	(51.2)	23	(8.8)	
전공계열	인문, 사회과학	165	(45.6)	164	(45.3)	33	(9.1)	2.660
	자연과학, 공학 등	131	(44.3)	131	(44.3)	34	(11.5)	
	예체능	16	(38.1)	23	(54.8)	3	(7.1)	

주: *p<0.05, **p<0.01, ***p<0.001

360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부표 2-19> 졸업 후 한국에 계속 체류 시 추후 계획

(단위: 명, %)

구분		취업 (구직 활동 포함)		진학 (상급 학교, 타 전공 등)		기타		χ^2
전체		215	(68.9)	92	(29.5)	5	(1.6)	-
성별	남성	97	(70.8)	37	(27.0)	3	(2.2)	1.162
	여성	118	(67.4)	55	(31.4)	2	(1.1)	
연령대 (만 나이)	19~24	130	(64.4)	70	(34.7)	2	(1.0)	14.049**
	25~29	62	(75.6)	19	(23.2)	1	(1.2)	
	30세 이상	23	(82.1)	3	(10.7)	2	(7.1)	
국적	중국	59	(51.3)	53	(46.1)	3	(2.6)	26.367***
	베트남	77	(79.4)	19	(19.6)	1	(1.0)	
	기타 아시아	79	(79.0)	20	(20.0)	1	(1.0)	
한국 거주기간	2년 미만	56	(65.9)	28	(32.9)	1	(1.2)	10.154
	2년~3년 미만	45	(62.5)	26	(36.1)	1	(1.4)	
	3년~4년 미만	42	(79.2)	11	(20.8)	0	(0.0)	
	4년~5년 미만	44	(67.7)	20	(30.8)	1	(1.5)	
	5년 이상	28	(75.7)	7	(18.9)	2	(5.4)	
거주 지역	수도권	132	(68.0)	59	(30.4)	3	(1.5)	0.215
	비수도권	83	(70.3)	33	(28.0)	2	(1.7)	
	서울	90	(69.2)	38	(29.2)	2	(1.5)	0.145
	경기/광역시	74	(69.2)	31	(29.0)	2	(1.9)	
	타 시도	51	(68.0)	23	(30.7)	1	(1.3)	
학교 지역	수도권	138	(69.0)	58	(29.0)	4	(2.0)	0.595
	비수도권	77	(68.8)	34	(30.4)	1	(0.9)	
학위 과정	(전문) 학사	133	(63.9)	72	(34.6)	3	(1.4)	7.900*
	대학원	82	(78.8)	20	(19.2)	2	(1.9)	
전공계열	인문, 사회과학	111	(67.3)	52	(31.5)	2	(1.2)	4.135
	자연과학, 공학 등	95	(72.5)	34	(26.0)	2	(1.5)	
	예체능	9	(56.3)	6	(37.5)	1	(6.3)	

주: *p<0.05, **p<0.01, ***p<0.001

〈부표 2-20〉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이유(1순위)

(단위: 명, %)

구분	본국에 좋은 일자리 구할 기회가 많아서	한국에서 취업하기가 힘들어서	한국에서 비자 전환과 체류 연장 절차가 까다로워서	본국의 생활 여건이 더 좋아서	유학 생활 중 배운 지식을 본국에서 활용하고 싶어서	본국에서 공부를 계속 하기 위해	가족이나 친·인척, 친구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한국에서의 차별이 심해서	외국 생활에 실증이 나서	기타	χ^2	
전체	81 (25.5)	69 (21.7)	24 (7.5)	45 (14.2)	39 (12.3)	5 (1.6)	45 (14.2)	4 (1.3)	1 (0.3)	5 (1.6)	-	
성별	남성	38 (28.8)	33 (25.0)	12 (9.1)	14 (10.6)	16 (12.1)	1 (0.8)	13 (9.8)	3 (2.3)	0 (0.0)	2 (1.5)	11.296
	여성	43 (23.1)	36 (19.4)	12 (6.5)	31 (16.7)	23 (12.4)	4 (2.2)	32 (17.2)	1 (0.5)	1 (0.5)	3 (1.6)	
연령대 (단 나이)	19~24	43 (25.0)	37 (21.5)	8 (4.7)	26 (15.1)	18 (10.5)	5 (2.9)	30 (17.4)	2 (1.2)	1 (0.6)	2 (1.2)	19.040
	25~29	27 (25.7)	23 (21.9)	13 (12.4)	16 (15.2)	13 (12.4)	0 (0.0)	9 (8.6)	2 (1.9)	0 (0.0)	2 (1.9)	
	30세이상	11 (26.8)	9 (22.0)	3 (7.3)	3 (7.3)	8 (19.5)	0 (0.0)	6 (14.6)	0 (0.0)	0 (0.0)	1 (2.4)	
국적	중국	57 (27.0)	41 (19.4)	17 (8.1)	34 (16.1)	20 (9.5)	4 (1.9)	32 (15.2)	3 (1.4)	1 (0.5)	2 (0.9)	27.517
	베트남	15 (27.3)	15 (27.3)	7 (12.7)	5 (9.1)	7 (12.7)	0 (0.0)	6 (10.9)	0 (0.0)	0 (0.0)	0 (0.0)	
	기타 아시아	9 (17.3)	13 (25.0)	0 (0.0)	6 (11.5)	12 (23.1)	1 (1.9)	7 (13.5)	1 (1.9)	0 (0.0)	3 (5.8)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17 (16.8)	19 (18.8)	7 (6.9)	16 (15.8)	17 (16.8)	4 (4.0)	17 (16.8)	0 (0.0)	1 (1.0)	3 (3.0)	30.514
	2년~3년 미만	17 (25.8)	15 (22.7)	6 (9.1)	9 (13.6)	7 (10.6)	1 (1.5)	7 (10.6)	2 (3.0)	0 (0.0)	2 (3.0)	
	3년~4년 미만	16 (23.9)	18 (26.9)	5 (7.5)	9 (13.4)	7 (10.4)	0 (0.0)	11 (16.4)	1 (1.5)	0 (0.0)	0 (0.0)	
	4년~5년 미만	16 (37.2)	9 (20.9)	3 (7.0)	6 (14.0)	4 (9.3)	0 (0.0)	4 (9.3)	1 (2.3)	0 (0.0)	0 (0.0)	

362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구분	본국에 좋은 일자리를 구할 기회가 많아서	한국에서 취업하기가 힘들어서	한국에서 비자 전환과 체류 연장 절차가 까다로워서	본국의 생활 여건이 더 좋아서	유학 생활 중 배운 지식을 본국에서 활용하고 싶어서	본국에서 공부를 계속 하기 위해	가족이나 친·인척, 친구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한국에서의 차별이 심해서	외국 생활에 실증이 나서	기타	x ²
5년 이상	15 (36.6)	8 (19.5)	3 (7.3)	5 (12.2)	4 (9.8)	0 (0.0)	6 (14.6)	0 (0.0)	0 (0.0)	0 (0.0)	
거주 지역	수도권	54 (27.1)	42 (21.1)	17 (8.5)	25 (12.6)	25 (12.6)	3 (1.5)	25 (12.6)	3 (1.5)	1 (0.5)	4 (2.0)
	비수도권	27 (22.7)	27 (22.7)	7 (5.9)	20 (16.8)	14 (11.8)	2 (1.7)	20 (16.8)	1 (0.8)	0 (0.0)	1 (0.8)
	서울	37 (26.4)	31 (22.1)	10 (7.1)	18 (12.9)	18 (12.9)	1 (0.7)	20 (14.3)	2 (1.4)	1 (0.7)	2 (1.4)
	경기/광역시	31 (27.4)	19 (16.8)	11 (9.7)	18 (15.9)	13 (11.5)	3 (2.7)	15 (13.3)	1 (0.9)	0 (0.0)	2 (1.8)
	타 시도	13 (20.0)	19 (29.2)	3 (4.6)	9 (13.8)	8 (12.3)	1 (1.5)	10 (15.4)	1 (1.5)	0 (0.0)	1 (1.5)
학교 지역	수도권	57 (27.7)	43 (20.9)	16 (7.8)	26 (12.6)	26 (12.6)	3 (1.5)	26 (12.6)	4 (1.9)	1 (0.5)	4 (1.9)
	비수도권	24 (21.4)	26 (23.2)	8 (7.1)	19 (17.0)	13 (11.6)	2 (1.8)	19 (17.0)	0 (0.0)	0 (0.0)	1 (0.9)
학위 과정	(전문) 학사	44 (23.8)	38 (20.5)	15 (8.1)	32 (17.3)	19 (10.3)	5 (2.7)	26 (14.1)	2 (1.1)	1 (0.5)	3 (1.6)
	대학원	37 (27.8)	31 (23.3)	9 (6.8)	13 (9.8)	20 (15.0)	0 (0.0)	19 (14.3)	2 (1.5)	0 (0.0)	2 (1.5)
전공 계열	인문, 사회과학	48 (29.3)	31 (18.9)	15 (9.1)	18 (11.0)	22 (13.4)	2 (1.2)	26 (15.9)	2 (1.2)	0 (0.0)	0 (0.0)
	자연과학, 공학 등	29 (22.1)	34 (26.0)	5 (3.8)	24 (18.3)	13 (9.9)	3 (2.3)	15 (11.5)	2 (1.5)	1 (0.8)	5 (3.8)
	예체능	4 (17.4)	4 (17.4)	4 (17.4)	3 (13.0)	4 (17.4)	0 (0.0)	4 (17.4)	0 (0.0)	0 (0.0)	0 (0.0)

주: *p<0.05, **p<0.01, ***p<0.001

〈부표 2-21〉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이유(1순위)

(단위: 명, %)

구분		본국에 좋은 일자리 구할 기회가 많아서	한국 에서 취업 하기가 힘들 어서	한국 에서 비자 전환과 체류 연장 절차가 까다로 워서	본국의 생활 여건이 더 좋아서	유학 생활 중 배운 지식을 본국 에서 활용 하고 싶어서	본국 에서 공부를 계속 하기 위해	가족 이나 친·인 척, 친 구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한국에 서의 차별이 심해서	외국 생활에 싫증이 나서	기타
전체		111 (34.9)	114 (35.8)	56 (17.6)	81 (25.5)	83 (26.1)	10 (3.1)	142 (44.7)	21 (6.6)	11 (3.5)	7 (2.2)
성별	남성	50 (37.9)	47 (35.6)	23 (17.4)	29 (22.0)	40 (30.3)	3 (2.3)	54 (40.9)	12 (9.1)	3 (2.3)	3 (2.3)
	여성	61 (32.8)	67 (36.0)	33 (17.7)	52 (28.0)	43 (23.1)	7 (3.8)	88 (47.3)	9 (4.8)	8 (4.3)	4 (2.2)
연령대 (만 나이)	19~24	63 (36.6)	61 (35.5)	27 (15.7)	48 (27.9)	40 (23.3)	8 (4.7)	76 (44.2)	11 (6.4)	7 (4.1)	3 (1.7)
	25~29	33 (31.4)	41 (39.0)	24 (22.9)	26 (24.8)	26 (24.8)	1 (1.0)	43 (41.0)	10 (9.5)	4 (3.8)	2 (1.9)
	30세 이상	15 (36.6)	12 (29.3)	5 (12.2)	7 (17.1)	17 (41.5)	1 (2.4)	23 (56.1)	0 (0.0)	0 (0.0)	2 (4.9)
국적	중국	74 (35.1)	71 (33.6)	35 (16.6)	60 (28.4)	44 (20.9)	9 (4.3)	103 (48.8)	16 (7.6)	7 (3.3)	3 (1.4)
	베트남	22 (40.0)	21 (38.2)	18 (32.7)	12 (21.8)	11 (20.0)	0 (0.0)	21 (38.2)	3 (5.5)	2 (3.6)	0 (0.0)
	기타 아시아	15 (28.8)	22 (42.3)	3 (5.8)	9 (17.3)	28 (53.8)	1 (1.9)	18 (34.6)	2 (3.8)	2 (3.8)	4 (7.7)
한국 거주기간	2년 미만	23 (22.8)	34 (33.7)	15 (14.9)	24 (23.8)	31 (30.7)	6 (5.9)	60 (59.4)	3 (3.0)	2 (2.0)	4 (4.0)
	2년~3년 미만	28 (42.4)	24 (36.4)	12 (18.2)	17 (25.8)	13 (19.7)	2 (3.0)	24 (36.4)	6 (9.1)	4 (6.1)	2 (3.0)
	3년~4년 미만	23 (34.3)	24 (35.8)	13 (19.4)	16 (23.9)	20 (29.9)	1 (1.5)	28 (41.8)	5 (7.5)	4 (6.0)	0 (0.0)
	4년~5년 미만	20 (46.5)	15 (34.9)	8 (18.6)	15 (34.9)	9 (20.9)	1 (2.3)	16 (37.2)	1 (2.3)	0 (0.0)	1 (2.3)

364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구분	본국에 좋은 일자리를 구할 기회가 많아서	한국에서 취업하기가 힘들어서	한국에서 비자 전환과 체류 연장 절차가 까다로워서	본국의 생활 여건이 더 좋아서	유학 생활 중 배운 지식을 본국에서 활용하고 싶어서	본국에서 공부를 계속 하기 위해	가족이나 친·인척, 친구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한국에서의 차별이 심해서	외국 생활에 싫증이 나서	기타	
5년 이상	17 (41.5)	17 (41.5)	8 (19.5)	9 (22.0)	10 (24.4)	0 (0.0)	14 (34.1)	6 (14.6)	1 (2.4)	0 (0.0)	
거주 지역	수도권	70 (35.2)	69 (34.7)	39 (19.6)	52 (26.1)	53 (26.6)	6 (3.0)	79 (39.7)	18 (9.0)	7 (3.5)	5 (2.5)
	비수도권	41 (34.5)	45 (37.8)	17 (14.3)	29 (24.4)	30 (25.2)	4 (3.4)	63 (52.9)	3 (2.5)	4 (3.4)	2 (1.7)
	서울	51 (36.4)	52 (37.1)	29 (20.7)	38 (27.1)	37 (26.4)	3 (2.1)	51 (36.4)	13 (9.3)	4 (2.9)	2 (1.4)
	경기/광역시	42 (37.2)	35 (31.0)	20 (17.7)	28 (24.8)	28 (24.8)	4 (3.5)	53 (46.9)	7 (6.2)	5 (4.4)	4 (3.5)
	타 시도	18 (27.7)	27 (41.5)	7 (10.8)	15 (23.1)	18 (27.7)	3 (4.6)	38 (58.5)	1 (1.5)	2 (3.1)	1 (1.5)
학교 지역	수도권	74 (35.9)	69 (33.5)	38 (18.4)	54 (26.2)	55 (26.7)	6 (2.9)	84 (40.8)	20 (9.7)	7 (3.4)	5 (2.4)
	비수도권	37 (33.0)	45 (40.2)	18 (16.1)	27 (24.1)	28 (25.0)	4 (3.6)	58 (51.8)	1 (0.9)	4 (3.6)	2 (1.8)
학위 과정	(전문) 학사	66 (35.7)	64 (34.6)	34 (18.4)	54 (29.2)	42 (22.7)	9 (4.9)	76 (41.1)	12 (6.5)	9 (4.9)	4 (2.2)
	대학원	45 (33.8)	50 (37.6)	22 (16.5)	27 (20.3)	41 (30.8)	1 (0.8)	66 (49.6)	9 (6.8)	2 (1.5)	3 (2.3)
전공 계열	인문, 사회과학	66 (40.2)	57 (34.8)	35 (21.3)	43 (26.2)	33 (20.1)	5 (3.0)	68 (41.5)	13 (7.9)	7 (4.3)	1 (0.6)
	자연과학, 공학 등	41 (31.3)	53 (40.5)	14 (10.7)	34 (26.0)	43 (32.8)	4 (3.1)	57 (43.5)	8 (6.1)	3 (2.3)	5 (3.8)
	예체능	4 (17.4)	4 (17.4)	7 (30.4)	4 (17.4)	7 (30.4)	1 (4.3)	17 (73.9)	0 (0.0)	1 (4.3)	1 (4.3)

주: *p<0.05, **p<0.01, ***p<0.001

〈부표 2-22〉 최근 1년간 한국에서 직장생활이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단위: 명, %)

구분		없음		방학과 학기 때 모두 일한 경험 있음		방학 때만 경험했음		학기 때만 경험했음		x ²	
		명	(%)	명	(%)	명	(%)	명	(%)		
전체		333	(47.6)	232	(33.1)	108	(15.4)	27	(3.9)	-	
성별	남성	145	(46.8)	91	(29.4)	63	(20.3)	11	(3.5)	11.259*	
	여성	188	(48.2)	141	(36.2)	45	(11.5)	16	(4.1)		
연령대 (만 나이)	19~24	199	(47.5)	134	(32.0)	69	(16.5)	17	(4.1)	8.298	
	25~29	94	(45.6)	80	(38.8)	24	(11.7)	8	(3.9)		
	30세 이상	40	(53.3)	18	(24.0)	15	(20.0)	2	(2.7)		
국적	중국	194	(55.7)	91	(26.1)	47	(13.5)	16	(4.6)	73.467****	
	베트남	36	(21.7)	96	(57.8)	29	(17.5)	5	(3.0)		
	기타 아시아	103	(55.4)	45	(24.2)	32	(17.2)	6	(3.2)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134	(64.4)	43	(20.7)	24	(11.5)	7	(3.4)	49.933****	
	2년~3년 미만	74	(48.4)	49	(32.0)	23	(15.0)	7	(4.6)		
	3년~4년 미만	46	(34.6)	56	(42.1)	24	(18.0)	7	(5.3)		
	4년~5년 미만	43	(35.8)	49	(40.8)	27	(22.5)	1	(0.8)		
	5년 이상	36	(41.9)	35	(40.7)	10	(11.6)	5	(5.8)		
거주 지역	수도권	225	(51.3)	139	(31.7)	62	(14.1)	13	(3.0)	7.883*	
	비수도권	108	(41.4)	93	(35.6)	46	(17.6)	14	(5.4)		
	서울	경기/광역시	157	(50.8)	97	(31.4)	45	(14.6)	10	(3.2)	6.591
		경기/광역시	118	(49.0)	78	(32.4)	35	(14.5)	10	(4.1)	
		타 시도	58	(38.7)	57	(38.0)	28	(18.7)	7	(4.7)	
학교 지역	수도권	237	(52.2)	142	(31.3)	61	(13.4)	14	(3.1)	12.508**	
	비수도권	96	(39.0)	90	(36.6)	47	(19.1)	13	(5.3)		
학위 과정	(전문) 학사	205	(46.6)	149	(33.9)	72	(16.4)	14	(3.2)	2.497	
	대학원	128	(49.2)	83	(31.9)	36	(13.8)	13	(5.0)		
전공 계열	인문, 사회과학	158	(43.6)	130	(35.9)	58	(16.0)	16	(4.4)	6.683	
	자연과학, 공학 등	150	(50.7)	92	(31.1)	45	(15.2)	9	(3.0)		
	예체능	25	(59.5)	10	(23.8)	5	(11.9)	2	(4.8)		

주: *p<0.05, **p<0.01, ***p<0.001

366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부표 2-23> 한국에서 직장생활이나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없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경제적으로 필요성이 있지 않아서	학업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구직 활동을 했으나 일자 리를 찾지 못해서	구직을 하기 어렵 다고 판단 해서 시도 하지 않음	부모님이 원하지 않아서	출입국 사무 소의 허가를 받지 못해서	외국인 유학 생은 직장생 활이나 아르바 이트를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서	기타	x ²
전체		38 (11.4)	144 (43.2)	41 (12.3)	33 (9.9)	10 (3.0)	20 (6.0)	20 (6.0)	27 (8.1)	-
성별	남성	14 (9.7)	68 (46.9)	19 (13.1)	13 (9.0)	3 (2.1)	9 (6.2)	8 (5.5)	11 (7.6)	2.800
	여성	24 (12.8)	76 (40.4)	22 (11.7)	20 (10.6)	7 (3.7)	11 (5.9)	12 (6.4)	16 (8.5)	
연령대 (만 나이)	19~24	27 (13.6)	75 (37.7)	27 (13.6)	25 (12.6)	8 (4.0)	14 (7.0)	12 (6.0)	11 (5.5)	26.014*
	25~29	7 (7.4)	46 (48.9)	12 (12.8)	7 (7.4)	2 (2.1)	6 (6.4)	6 (6.4)	8 (8.5)	
	30세이상	4 (10.0)	23 (57.5)	2 (5.0)	1 (2.5)	0 (0.0)	0 (0.0)	2 (5.0)	8 (20.0)	
국적	중국	30 (15.5)	81 (41.8)	19 (9.8)	23 (11.9)	7 (3.6)	10 (5.2)	10 (5.2)	14 (7.2)	18.508
	베트남	3 (8.3)	18 (50.0)	5 (13.9)	3 (8.3)	2 (5.6)	1 (2.8)	2 (5.6)	2 (5.6)	
	기타 아시아	5 (4.9)	45 (43.7)	17 (16.5)	7 (6.8)	1 (1.0)	9 (8.7)	8 (7.8)	11 (10.7)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17 (12.7)	59 (44.0)	19 (14.2)	12 (9.0)	3 (2.2)	6 (4.5)	7 (5.2)	11 (8.2)	22.558
	2년~3년 미만	5 (6.8)	35 (47.3)	10 (13.5)	9 (12.2)	2 (2.7)	1 (1.4)	6 (8.1)	6 (8.1)	
	3년~4년 미만	8 (17.4)	17 (37.0)	5 (10.9)	5 (10.9)	2 (4.3)	4 (8.7)	1 (2.2)	4 (8.7)	
	4년~5년 미만	2 (4.7)	17 (39.5)	5 (11.6)	4 (9.3)	1 (2.3)	5 (11.6)	4 (9.3)	5 (11.6)	

구분		경제적으로 필요성이 있지 않아서	학업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구직 활동을 했으나 일자 리를 찾지 못해서	구직을 하기 어렵 다고 판단 해서 시도 하지 않음	부모님이 원하지 않아서	출입국 사무 소의 허가를 받지 못해서	외국인 유학 생은 직장생 활이나 아르바 이트를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서	기타	χ^2
	5년 이상	6 (16.7)	16 (44.4)	2 (5.6)	3 (8.3)	2 (5.6)	4 (11.1)	2 (5.6)	1 (2.8)	
거주 지역	수도권	30 (13.3)	87 (38.7)	28 (12.4)	23 (10.2)	9 (4.0)	15 (6.7)	12 (5.3)	21 (9.3)	10.292
	비수도권	8 (7.4)	57 (52.8)	13 (12.0)	10 (9.3)	1 (0.9)	5 (4.6)	8 (7.4)	6 (5.6)	
	서울	20 (12.7)	63 (40.1)	23 (14.6)	15 (9.6)	7 (4.5)	9 (5.7)	4 (2.5)	16 (10.2)	25.029*
	경기/ 광역시	14 (11.9)	44 (37.3)	13 (11.0)	15 (12.7)	3 (2.5)	8 (6.8)	13 (11.0)	8 (6.8)	
	타 시도	4 (6.9)	37 (63.8)	5 (8.6)	3 (5.2)	0 (0.0)	3 (5.2)	3 (5.2)	3 (5.2)	
학교 지역	수도권	30 (12.7)	95 (40.1)	30 (12.7)	23 (9.7)	9 (3.8)	17 (7.2)	13 (5.5)	20 (8.4)	7.206
	비수도권	8 (8.3)	49 (51.0)	11 (11.5)	10 (10.4)	1 (1.0)	3 (3.1)	7 (7.3)	7 (7.3)	
학위 과정	(전문) 학사	24 (11.7)	80 (39.0)	24 (11.7)	26 (12.7)	8 (3.9)	16 (7.8)	13 (6.3)	14 (6.8)	12.019
	대학원	14 (10.9)	64 (50.0)	17 (13.3)	7 (5.5)	2 (1.6)	4 (3.1)	7 (5.5)	13 (10.2)	
전공 계열	인문, 사회과학	21 (13.3)	62 (39.2)	21 (13.3)	10 (6.3)	7 (4.4)	14 (8.9)	9 (5.7)	14 (8.9)	17.573
	자연과학, 공학 등	14 (9.3)	68 (45.3)	17 (11.3)	22 (14.7)	3 (2.0)	6 (4.0)	10 (6.7)	10 (6.7)	
	예체능	3 (12.0)	14 (56.0)	3 (12.0)	1 (4.0)	0 (0.0)	0 (0.0)	1 (4.0)	3 (12.0)	

주: *p<0.05, **p<0.01, ***p<0.001

<부표 2-24> 지난 1년간 한국에서 직장생활이나 아르바이트를 한 기간

(단위: 개월)

구분		평균	중위값	표준오차	F
전체		5.2	4	0.218	-
성별	남성	4.6	3	0.318	6.340*
	여성	5.7	5	0.296	
연령대 (만 나이)	19~24	4.9	4	0.267	1.978
	25~29	5.8	5	0.427	
	30세 이상	5.4	4	0.716	
국적	중국	4.3	3	0.329	12.859***
	베트남	6.6	6	0.368	
	기타 아시아	4.6	3	0.409	
한국 거주기간	2년 미만	4.7	4	0.472	2.019
	2년~3년 미만	4.3	3	0.427	
	3년~4년 미만	5.5	4	0.455	
	4년~5년 미만	5.9	6	0.496	
	5년 이상	5.8	4	0.617	
거주 지역	수도권	5.2	4	0.287	0.001
	비수도권	5.2	4	0.336	
	서울	5.3	4	0.341	0.051
	경기/광역시	5.1	4	0.393	
	타 시도	5.1	4	0.409	
학교 지역	수도권	5.3	4	0.286	0.373
	비수도권	5.0	3	0.338	
학위 과정	(전문) 학사	4.9	4	0.261	3.952*
	대학원	5.8	5	0.385	
전공계열	인문, 사회과학	5.4	4	0.293	0.628
	자연과학, 공학 등	4.9	3	0.343	
	예체능	5.6	4	1.077	

주: *p<0.05, **p<0.01, ***p<0.001

〈부표 2-25〉 일을 하면서 경험 유무-1) 일하다 다쳤음

(단위: 명, %)

구분		경험한 적 있음	경험한 적 없음	χ^2
전체		129 (35.1)	238 (64.9)	-
성별	남성	49 (29.7)	116 (70.3)	3.910*
	여성	80 (39.6)	122 (60.4)	
연령대 (만 나이)	19~24	81 (36.8)	139 (63.2)	1.077
	25~29	35 (31.3)	77 (68.8)	
	30세 이상	13 (37.1)	22 (62.9)	
국적	중국	31 (20.1)	123 (79.9)	48.954***
	베트남	76 (58.5)	54 (41.5)	
	기타 아시아	22 (26.5)	61 (73.5)	
한국 거주기간	2년 미만	21 (28.4)	53 (71.6)	2.575
	2년~3년 미만	30 (38.0)	49 (62.0)	
	3년~4년 미만	32 (36.8)	55 (63.2)	
	4년~5년 미만	30 (39.0)	47 (61.0)	
	5년 이상	16 (32.0)	34 (68.0)	
거주 지역	수도권	66 (30.8)	148 (69.2)	4.181*
	비수도권	63 (41.2)	90 (58.8)	
	서울	40 (26.3)	112 (73.7)	8.953*
	경기/광역시	50 (40.7)	73 (59.3)	
	타 시도	39 (42.4)	53 (57.6)	
학교 지역	수도권	65 (30.0)	152 (70.0)	6.288*
	비수도권	64 (42.7)	86 (57.3)	
학위 과정	(전문) 학사	86 (36.6)	149 (63.4)	0.599
	대학원	43 (32.6)	89 (67.4)	
전공계열	인문, 사회과학	74 (36.3)	130 (63.7)	0.275
	자연과학, 공학 등	49 (33.6)	97 (66.4)	
	예체능	6 (35.3)	11 (64.7)	

주: *p<0.05, **p<0.01, ***p<0.001

370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부표 2-26> 일을 하면서 경험 유무-2) 과중한 업무량

(단위: 명, %)

구분		경험한 적 있음		경험한 적 없음		χ^2
전체		156	(42.5)	211	(57.5)	-
성별	남성	69	(41.8)	96	(58.2)	0.058
	여성	87	(43.1)	115	(56.9)	
연령대 (만 나이)	19~24	91	(41.4)	129	(58.6)	1.235
	25~29	52	(46.4)	60	(53.6)	
	30세 이상	13	(37.1)	22	(62.9)	
국적	중국	59	(38.3)	95	(61.7)	13.155**
	베트남	71	(54.6)	59	(45.4)	
	기타 아시아	26	(31.3)	57	(68.7)	
한국 거주기간	2년 미만	25	(33.8)	49	(66.2)	4.212
	2년~3년 미만	36	(45.6)	43	(54.4)	
	3년~4년 미만	37	(42.5)	50	(57.5)	
	4년~5년 미만	38	(49.4)	39	(50.6)	
	5년 이상	20	(40.0)	30	(60.0)	
거주 지역	수도권	85	(39.7)	129	(60.3)	1.632
	비수도권	71	(46.4)	82	(53.6)	
	서울	53	(34.9)	99	(65.1)	7.485*
	경기/광역시	63	(51.2)	60	(48.8)	
	타 시도	40	(43.5)	52	(56.5)	
학교 지역	수도권	88	(40.6)	129	(59.4)	0.829
	비수도권	68	(45.3)	82	(54.7)	
학위 과정	(전문) 학사	100	(42.6)	135	(57.4)	0.001
	대학원	56	(42.4)	76	(57.6)	
전공계열	인문, 사회과학	83	(40.7)	121	(59.3)	1.140
	자연과학, 공학 등	64	(43.8)	82	(56.2)	
	예체능	9	(52.9)	8	(47.1)	

주: *p<0.05, **p<0.01, ***p<0.001

〈부표 2-27〉 일을 하면서 경험 유무-3) 인격적 무시(감정적 폭력)

(단위: 명, %)

구분		경험한 적 있음	경험한 적 없음	χ^2
전체		120 (32.7)	247 (67.3)	-
성별	남성	52 (31.5)	113 (68.5)	0.190
	여성	68 (33.7)	134 (66.3)	
연령대 (만 나이)	19~24	69 (31.4)	151 (68.6)	1.032
	25~29	37 (33.0)	75 (67.0)	
	30세 이상	14 (40.0)	21 (60.0)	
국적	중국	36 (23.4)	118 (76.6)	10.745**
	베트남	53 (40.8)	77 (59.2)	
	기타 아시아	31 (37.3)	52 (62.7)	
한국 거주기간	2년 미만	22 (29.7)	52 (70.3)	2.088
	2년~3년 미만	22 (27.8)	57 (72.2)	
	3년~4년 미만	32 (36.8)	55 (63.2)	
	4년~5년 미만	26 (33.8)	51 (66.2)	
	5년 이상	18 (36.0)	32 (64.0)	
거주 지역	수도권	64 (29.9)	150 (70.1)	1.817
	비수도권	56 (36.6)	97 (63.4)	
	서울	48 (31.6)	104 (68.4)	1.664
	경기/광역시	37 (30.1)	86 (69.9)	
	타 시도	35 (38.0)	57 (62.0)	
학교 지역	수도권	65 (30.0)	152 (70.0)	1.816
	비수도권	55 (36.7)	95 (63.3)	
학위 과정	(전문) 학사	76 (32.3)	159 (67.7)	0.038
	대학원	44 (33.3)	88 (66.7)	
전공계열	인문, 사회과학	68 (33.3)	136 (66.7)	0.138
	자연과학, 공학 등	47 (32.2)	99 (67.8)	
	예체능	5 (29.4)	12 (70.6)	

주: *p<0.05, **p<0.01, ***p<0.001

372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부표 2-28〉 일을 하면서 경험 유무-4) 해고

(단위: 명, %)

구분		경험한 적 있음	경험한 적 없음	χ^2
전체		89 (24.3)	278 (75.7)	-
성별	남성	39 (23.6)	126 (76.4)	0.062
	여성	50 (24.8)	152 (75.2)	
연령대 (만 나이)	19~24	57 (25.9)	163 (74.1)	2.223
	25~29	27 (24.1)	85 (75.9)	
	30세 이상	5 (14.3)	30 (85.7)	
국적	중국	32 (20.8)	122 (79.2)	4.659
	베트남	40 (30.8)	90 (69.2)	
	기타 아시아	17 (20.5)	66 (79.5)	
한국 거주기간	2년 미만	18 (24.3)	56 (75.7)	0.600
	2년~3년 미만	18 (22.8)	61 (77.2)	
	3년~4년 미만	23 (26.4)	64 (73.6)	
	4년~5년 미만	17 (22.1)	60 (77.9)	
	5년 이상	13 (26.0)	37 (74.0)	
거주 지역	수도권	47 (22.0)	167 (78.0)	1.463
	비수도권	42 (27.5)	111 (72.5)	
	서울	34 (22.4)	118 (77.6)	1.129
	경기/광역시	29 (23.6)	94 (76.4)	
	타 시도	26 (28.3)	66 (71.7)	
학교 지역	수도권	50 (23.0)	167 (77.0)	0.423
	비수도권	39 (26.0)	111 (74.0)	
학위 과정	(전문) 학사	60 (25.5)	175 (74.5)	0.584
	대학원	29 (22.0)	103 (78.0)	
전공계열	인문, 사회과학	54 (26.5)	150 (73.5)	2.206
	자연과학, 공학 등	33 (22.6)	113 (77.4)	
	예체능	2 (11.8)	15 (88.2)	

주: *p<0.05, **p<0.01, ***p<0.001

〈부표 2-29〉 일을 하면서 경험 유무-5) 외국인에 대한 차별

(단위: 명, %)

구분		경험한 적 있음	경험한 적 없음	χ^2
전체		177 (48.2)	190 (51.8)	-
성별	남성	79 (47.9)	86 (52.1)	0.015
	여성	98 (48.5)	104 (51.5)	
연령대 (만 나이)	19~24	98 (44.5)	122 (55.5)	3.083
	25~29	61 (54.5)	51 (45.5)	
	30세 이상	18 (51.4)	17 (48.6)	
국적	중국	59 (38.3)	95 (61.7)	16.829***
	베트남	81 (62.3)	49 (37.7)	
	기타 아시아	37 (44.6)	46 (55.4)	
한국 거주기간	2년 미만	28 (37.8)	46 (62.2)	5.061
	2년~3년 미만	40 (50.6)	39 (49.4)	
	3년~4년 미만	41 (47.1)	46 (52.9)	
	4년~5년 미만	40 (51.9)	37 (48.1)	
	5년 이상	28 (56.0)	22 (44.0)	
거주 지역	수도권	96 (44.9)	118 (55.1)	2.334
	비수도권	81 (52.9)	72 (47.1)	
	서울	73 (48.0)	79 (52.0)	0.479
	경기/광역시	57 (46.3)	66 (53.7)	
	타 시도	47 (51.1)	45 (48.9)	
학교 지역	수도권	99 (45.6)	118 (54.4)	1.445
	비수도권	78 (52.0)	72 (48.0)	
학위 과정	(전문) 학사	108 (46.0)	127 (54.0)	1.350
	대학원	69 (52.3)	63 (47.7)	
전공계열	인문, 사회과학	106 (52.0)	98 (48.0)	2.655
	자연과학, 공학 등	63 (43.2)	83 (56.8)	
	예체능	8 (47.1)	9 (52.9)	

주: *p<0.05, **p<0.01, ***p<0.001

374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부표 2-30〉 일을 하면서 경험 유무-6) 약속된 임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뒤늦게 받음
(단위: 명, %)

구분		경험한 적 있음		경험한 적 없음		χ^2
전체		110	(30.0)	257	(70.0)	-
성별	남성	51	(30.9)	114	(69.1)	0.125
	여성	59	(29.2)	143	(70.8)	
연령대 (만 나이)	19~24	66	(30.0)	154	(70.0)	2.159
	25~29	37	(33.0)	75	(67.0)	
	30세 이상	7	(20.0)	28	(80.0)	
국적	중국	25	(16.2)	129	(83.8)	25.461***
	베트남	56	(43.1)	74	(56.9)	
	기타 아시아	29	(34.9)	54	(65.1)	
한국 거주기간	2년 미만	20	(27.0)	54	(73.0)	4.308
	2년~3년 미만	28	(35.4)	51	(64.6)	
	3년~4년 미만	28	(32.2)	59	(67.8)	
	4년~5년 미만	17	(22.1)	60	(77.9)	
	5년 이상	17	(34.0)	33	(66.0)	
거주 지역	수도권	60	(28.0)	154	(72.0)	0.916
	비수도권	50	(32.7)	103	(67.3)	
	서울	42	(27.6)	110	(72.4)	2.853
	경기/광역시	34	(27.6)	89	(72.4)	
	타 시도	34	(37.0)	58	(63.0)	
학교 지역	수도권	60	(27.6)	157	(72.4)	1.365
	비수도권	50	(33.3)	100	(66.7)	
학위 과정	(전문) 학사	73	(31.1)	162	(68.9)	0.371
	대학원	37	(28.0)	95	(72.0)	
전공계열	인문, 사회과학	59	(28.9)	145	(71.1)	1.924
	자연과학, 공학 등	48	(32.9)	98	(67.1)	
	예체능	3	(17.6)	14	(82.4)	

주: *p<0.05, **p<0.01, ***p<0.001

〈부표 2-31〉 일을 하면서 경험 유무-7) 약속된 임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아예 받지 못함
(단위: 명, %)

구분		경험한 적 있음	경험한 적 없음	χ^2
전체		74 (20.2)	293 (79.8)	-
성별	남성	39 (23.6)	126 (76.4)	2.246
	여성	35 (17.3)	167 (82.7)	
연령대 (만 나이)	19~24	44 (20.0)	176 (80.0)	1.079
	25~29	25 (22.3)	87 (77.7)	
	30세 이상	5 (14.3)	30 (85.7)	
국적	중국	23 (14.9)	131 (85.1)	7.418*
	베트남	36 (27.7)	94 (72.3)	
	기타 아시아	15 (18.1)	68 (81.9)	
한국 거주기간	2년 미만	14 (18.9)	60 (81.1)	3.843
	2년~3년 미만	20 (25.3)	59 (74.7)	
	3년~4년 미만	14 (16.1)	73 (83.9)	
	4년~5년 미만	13 (16.9)	64 (83.1)	
	5년 이상	13 (26.0)	37 (74.0)	
거주 지역	수도권	40 (18.7)	174 (81.3)	0.691
	비수도권	34 (22.2)	119 (77.8)	
	서울	30 (19.7)	122 (80.3)	0.033
	경기/광역시	25 (20.3)	98 (79.7)	
	타 시도	19 (20.7)	73 (79.3)	
학교 지역	수도권	41 (18.9)	176 (81.1)	0.532
	비수도권	33 (22.0)	117 (78.0)	
학위 과정	(전문) 학사	46 (19.6)	189 (80.4)	0.141
	대학원	28 (21.2)	104 (78.8)	
전공계열	인문, 사회과학	43 (21.1)	161 (78.9)	0.261
	자연과학, 공학 등	28 (19.2)	118 (80.8)	
	예체능	3 (17.6)	14 (82.4)	

주: *p<0.05, **p<0.01, ***p<0.001

376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부표 2-32> 한국에서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단위: 명, %, 점)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대체로 불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평균	χ^2
전체		17 (4.6)	44 (12.0)	189 (51.5)	100 (27.2)	17 (4.6)	3.15	-
성별	남성	8 (4.8)	21 (12.7)	87 (52.7)	42 (25.5)	7 (4.2)	3.12	0.707
	여성	9 (4.5)	23 (11.4)	102 (50.5)	58 (28.7)	10 (5.0)	3.18	
연령대 (만 나이)	19~24	9 (4.1)	27 (12.3)	113 (51.4)	62 (28.2)	9 (4.1)	3.16	17.759*
	25~29	7 (6.3)	12 (10.7)	66 (58.9)	24 (21.4)	3 (2.7)	3.04	
	30세 이상	1 (2.9)	5 (14.3)	10 (28.6)	14 (40.0)	5 (14.3)	3.49	
국적	중국	4 (2.6)	14 (9.1)	76 (49.4)	52 (33.8)	8 (5.2)	3.30	11.977
	베트남	6 (4.6)	18 (13.8)	73 (56.2)	29 (22.3)	4 (3.1)	3.05	
	기타 아시아	7 (8.4)	12 (14.5)	40 (48.2)	19 (22.9)	5 (6.0)	3.04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1 (1.4)	10 (13.5)	30 (40.5)	30 (40.5)	3 (4.1)	3.32	20.534
	2년~3년 미만	4 (5.1)	9 (11.4)	43 (54.4)	16 (20.3)	7 (8.9)	3.16	
	3년~4년 미만	5 (5.7)	12 (13.8)	45 (51.7)	22 (25.3)	3 (3.4)	3.07	
	4년~5년 미만	5 (6.5)	8 (10.4)	45 (58.4)	15 (19.5)	4 (5.2)	3.06	
	5년 이상	2 (4.0)	5 (10.0)	26 (52.0)	17 (34.0)	0 (0.0)	3.16	
거주 지역	수도권	14 (6.5)	23 (10.7)	112 (52.3)	56 (26.2)	9 (4.2)	3.11	5.193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대체로 불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평균	χ^2
	비수도권	3 (2.0)	21 (13.7)	77 (50.3)	44 (28.8)	8 (5.2)	3.22	6.064
	서울	9 (5.9)	15 (9.9)	79 (52.0)	43 (28.3)	6 (3.9)	3.14	
	경기/ 광역시	5 (4.1)	19 (15.4)	65 (52.8)	30 (24.4)	4 (3.3)	3.07	
	타 시도	3 (3.3)	10 (10.9)	45 (48.9)	27 (29.3)	7 (7.6)	3.27	
학교 지역	수도권	13 (6.0)	30 (13.8)	108 (49.8)	57 (26.3)	9 (4.1)	3.09	4.373
	비수도권	4 (2.7)	14 (9.3)	81 (54.0)	43 (28.7)	8 (5.3)	3.25	
학위 과정	(전문) 학사	11 (4.7)	22 (9.4)	125 (53.2)	68 (28.9)	9 (3.8)	3.18	5.720
	대학원	6 (4.5)	22 (16.7)	64 (48.5)	32 (24.2)	8 (6.1)	3.11	
전공 계열	인문, 사회과학	10 (4.9)	18 (8.8)	105 (51.5)	60 (29.4)	11 (5.4)	3.22	6.512
	자연과학, 공학 등	7 (4.8)	23 (15.8)	76 (52.1)	35 (24.0)	5 (3.4)	3.05	
	예체능	0 (0.0)	3 (17.6)	8 (47.1)	5 (29.4)	1 (5.9)	3.24	

주: *p<0.05, **p<0.01, ***p<0.001

378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부표 2-33> 외국인 유학생이 구직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1순위)

(단위: 명, %)

구분		일자리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한국어 문제로 일자리 잡기가 어려워서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거나 차별해서	전공/적성에 맞는 일자리가 적어서	일자리의 임금 수준이 너무 낮아서	일자리의 노동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준비서류, 절차 등이 어렵고 복잡해서	기타	χ^2
전체		160 (22.9)	242 (34.6)	179 (25.6)	41 (5.9)	24 (3.4)	7 (1.0)	38 (5.4)	9 (1.3)	-
성별	남성	83 (26.8)	110 (35.5)	71 (22.9)	14 (4.5)	7 (2.3)	2 (0.6)	20 (6.5)	3 (1.0)	11.561
	여성	77 (19.7)	132 (33.8)	108 (27.7)	27 (6.9)	17 (4.4)	5 (1.3)	18 (4.6)	6 (1.5)	
연령대 (만 나이)	19~24	83 (19.8)	145 (34.6)	118 (28.2)	25 (6.0)	16 (3.8)	3 (0.7)	27 (6.4)	2 (0.5)	30.095**
	25~29	46 (22.3)	73 (35.4)	53 (25.7)	12 (5.8)	5 (2.4)	3 (1.5)	9 (4.4)	5 (2.4)	
	30세이상	31 (41.3)	24 (32.0)	8 (10.7)	4 (5.3)	3 (4.0)	1 (1.3)	2 (2.7)	2 (2.7)	
국적	중국	79 (22.7)	154 (44.3)	60 (17.2)	20 (5.7)	13 (3.7)	2 (0.6)	14 (4.0)	6 (1.7)	56.824***
	베트남	31 (18.7)	55 (33.1)	48 (28.9)	13 (7.8)	4 (2.4)	2 (1.2)	12 (7.2)	1 (0.6)	
	기타	50 (26.9)	33 (17.7)	71 (38.2)	8 (4.3)	7 (3.8)	3 (1.6)	12 (6.5)	2 (1.1)	
	아시아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48 (23.1)	91 (43.8)	42 (20.2)	12 (5.8)	7 (3.4)	1 (0.5)	5 (2.4)	2 (1.0)	51.825**
	2년~3년 미만	32 (20.9)	52 (34.0)	41 (26.8)	10 (6.5)	5 (3.3)	1 (0.7)	11 (7.2)	1 (0.7)	
	3년~4년 미만	24 (18.0)	44 (33.1)	47 (35.3)	7 (5.3)	3 (2.3)	3 (2.3)	4 (3.0)	1 (0.8)	
	4년~5년 미만	29 (24.2)	41 (34.2)	24 (20.0)	7 (5.8)	6 (5.0)	2 (1.7)	10 (8.3)	1 (0.8)	
	5년 이상	27 (31.4)	14 (16.3)	25 (29.1)	5 (5.8)	3 (3.5)	0 (0.0)	8 (9.3)	4 (4.7)	

구분		일자리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한국어 문제로 일자리 잡기가 어려워서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거나 차별해서	전공/적성에 맞는 일자리가 적어서	일자리 임금 수준이 너무 낮아서	일자리 노동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준비서류, 절차 등이 어렵고 복잡해서	기타	χ^2
거주 지역	수도권	102 (23.2)	149 (33.9)	120 (27.3)	22 (5.0)	15 (3.4)	4 (0.9)	21 (4.8)	6 (1.4)	4.134
	비수도권	58 (22.2)	93 (35.6)	59 (22.6)	19 (7.3)	9 (3.4)	3 (1.1)	17 (6.5)	3 (1.1)	
	서울	72 (23.3)	96 (31.1)	91 (29.4)	14 (4.5)	11 (3.6)	4 (1.3)	15 (4.9)	6 (1.9)	15.669
	경기/광역시	58 (24.1)	90 (37.3)	58 (24.1)	13 (5.4)	8 (3.3)	1 (0.4)	12 (5.0)	1 (0.4)	
	타 시도	30 (20.0)	56 (37.3)	30 (20.0)	14 (9.3)	5 (3.3)	2 (1.3)	11 (7.3)	2 (1.3)	
학교 지역	수도권	105 (23.1)	153 (33.7)	122 (26.9)	21 (4.6)	16 (3.5)	4 (0.9)	26 (5.7)	7 (1.5)	5.613
	비수도권	55 (22.4)	89 (36.2)	57 (23.2)	20 (8.1)	8 (3.3)	3 (1.2)	12 (4.9)	2 (0.8)	
학위 과정	(전문) 학사	89 (20.2)	153 (34.8)	121 (27.5)	25 (5.7)	14 (3.2)	4 (0.9)	31 (7.0)	3 (0.7)	14.757*
	대학원	71 (27.3)	89 (34.2)	58 (22.3)	16 (6.2)	10 (3.8)	3 (1.2)	7 (2.7)	6 (2.3)	
전공 계열	인문, 사회과학	76 (21.0)	118 (32.6)	109 (30.1)	18 (5.0)	13 (3.6)	4 (1.1)	16 (4.4)	8 (2.2)	19.982
	자연과학, 공학 등	73 (24.7)	108 (36.5)	62 (20.9)	20 (6.8)	10 (3.4)	2 (0.7)	21 (7.1)	0 (0.0)	
	예체능	11 (26.2)	16 (38.1)	8 (19.0)	3 (7.1)	1 (2.4)	1 (2.4)	1 (2.4)	1 (2.4)	

주: *p<0.05, **p<0.01, ***p<0.001

380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부표 2-34〉 외국인 유학생이 구직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1+2순위)

(단위: 명, %)

구분		일자리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한국어 문제로 일자리 잡기가 어려워서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거나 차별해서	전공/적성에 맞는 일자리가 적어서	일자리 임금 수준이 너무 낮아서	일자리 노동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준비 서류, 절차 등이 어렵고 복잡해서	기타
전체		278 (39.7)	366 (52.3)	335 (47.9)	134 (19.1)	85 (12.1)	45 (6.4)	141 (20.1)	16 (2.3)
성별	남성	120 (38.7)	172 (55.5)	144 (46.5)	57 (18.4)	36 (11.6)	23 (7.4)	61 (19.7)	7 (2.3)
	여성	158 (40.5)	194 (49.7)	191 (49.0)	77 (19.7)	49 (12.6)	22 (5.6)	80 (20.5)	9 (2.3)
연령대 (만 나이)	19~24	154 (36.8)	219 (52.3)	212 (50.6)	75 (17.9)	49 (11.7)	24 (5.7)	96 (22.9)	9 (2.1)
	25~29	83 (40.3)	105 (51.0)	99 (48.1)	43 (20.9)	28 (13.6)	16 (7.8)	33 (16.0)	5 (2.4)
	30세 이상	41 (54.7)	42 (56.0)	24 (32.0)	16 (21.3)	8 (10.7)	5 (6.7)	12 (16.0)	2 (2.7)
국적	중국	139 (39.9)	202 (58.0)	140 (40.2)	74 (21.3)	44 (12.6)	15 (4.3)	71 (20.4)	11 (3.2)
	베트남	48 (28.9)	90 (54.2)	83 (50.0)	38 (22.9)	22 (13.3)	16 (9.6)	34 (20.5)	1 (0.6)
	기타 아시아	91 (48.9)	74 (39.8)	112 (60.2)	22 (11.8)	19 (10.2)	14 (7.5)	36 (19.4)	4 (2.2)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83 (39.9)	131 (63.0)	85 (40.9)	38 (18.3)	23 (11.1)	12 (5.8)	38 (18.3)	6 (2.9)
	2년~3년 미만	55 (35.9)	88 (57.5)	68 (44.4)	33 (21.6)	22 (14.4)	5 (3.3)	34 (22.2)	1 (0.7)
	3년~4년 미만	40 (30.1)	65 (48.9)	82 (61.7)	24 (18.0)	15 (11.3)	15 (11.3)	21 (15.8)	4 (3.0)
	4년~5년 미만	57 (47.5)	59 (49.2)	56 (46.7)	20 (16.7)	15 (12.5)	8 (6.7)	24 (20.0)	1 (0.8)
	5년 이상	43 (50.0)	23 (26.7)	44 (51.2)	19 (22.1)	10 (11.6)	5 (5.8)	24 (27.9)	4 (4.7)

구분		일자리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한국어 문제로 일자리 잡기가 어렵서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거나 차별해서	전공/ 적성에 맞는 일자리가 적어서	일자리 임금 수준이 너무 낮아서	일자리 노동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준비 서류, 절차 등이 어렵고 복잡해서	기타
거주 지역	수도권	178 (40.5)	221 (50.3)	215 (49.0)	84 (19.1)	49 (11.2)	26 (5.9)	95 (21.6)	10 (2.3)
	비수도권	100 (38.3)	145 (55.6)	120 (46.0)	50 (19.2)	36 (13.8)	19 (7.3)	46 (17.6)	6 (2.3)
	서울	124 (40.1)	148 (47.9)	158 (51.1)	60 (19.4)	32 (10.4)	19 (6.1)	68 (22.0)	9 (2.9)
	경기/광역시	100 (41.5)	137 (56.8)	111 (46.1)	42 (17.4)	31 (12.9)	14 (5.8)	42 (17.4)	5 (2.1)
	타 시도	54 (36.0)	81 (54.0)	66 (44.0)	32 (21.3)	22 (14.7)	12 (8.0)	31 (20.7)	2 (1.3)
학교 지역	수도권	180 (39.6)	231 (50.9)	220 (48.5)	84 (18.5)	52 (11.5)	28 (6.2)	102 (22.5)	11 (2.4)
	비수도권	98 (39.8)	135 (54.9)	115 (46.7)	50 (20.3)	33 (13.4)	17 (6.9)	39 (15.9)	5 (2.0)
학위 과정	(전문) 학사	162 (36.8)	227 (51.6)	221 (50.2)	78 (17.7)	51 (11.6)	32 (7.3)	100 (22.7)	9 (2.0)
	대학원	116 (44.6)	139 (53.5)	114 (43.8)	56 (21.5)	34 (13.1)	13 (5.0)	41 (15.8)	7 (2.7)
전공 계열	인문, 사회과학	143 (39.5)	174 (48.1)	191 (52.8)	72 (19.9)	44 (12.2)	22 (6.1)	69 (19.1)	9 (2.5)
	자연과학, 공학 등	117 (39.5)	172 (58.1)	130 (43.9)	51 (17.2)	37 (12.5)	20 (6.8)	60 (20.3)	5 (1.7)
	예체능	18 (42.9)	20 (47.6)	14 (33.3)	11 (26.2)	4 (9.5)	3 (7.1)	12 (28.6)	2 (4.8)

주: *p<0.05, **p<0.01, ***p<0.001

382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부표 2-35> 외국인 유학생의 일자리 관련 문제점(1순위)

(단위: 명, %)

구분		외국인에 대한 차별 문제	충분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음	원하는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어려움	나이, 성, 학력에 따른 차별 문제	일저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	기타	χ^2
전체		244 (34.9)	85 (12.1)	124 (17.7)	122 (17.4)	25 (3.6)	92 (13.1)	8 (1.1)	-
성별	남성	111 (35.8)	37 (11.9)	57 (18.4)	51 (16.5)	10 (3.2)	40 (12.9)	4 (1.3)	0.927
	여성	133 (34.1)	48 (12.3)	67 (17.2)	71 (18.2)	15 (3.8)	52 (13.3)	4 (1.0)	
연령대 (만 나이)	19~24	154 (36.8)	45 (10.7)	82 (19.6)	73 (17.4)	10 (2.4)	50 (11.9)	5 (1.2)	13.369
	25~29	64 (31.1)	30 (14.6)	28 (13.6)	36 (17.5)	12 (5.8)	33 (16.0)	3 (1.5)	
	30세 이상	26 (34.7)	10 (13.3)	14 (18.7)	13 (17.3)	3 (4.0)	9 (12.0)	0 (0.0)	
국적	중국	98 (28.2)	46 (13.2)	76 (21.8)	73 (21.0)	13 (3.7)	39 (11.2)	3 (0.9)	34.712***
	베트남	75 (45.2)	18 (10.8)	27 (16.3)	19 (11.4)	8 (4.8)	17 (10.2)	2 (1.2)	
	기타 아시아	71 (38.2)	21 (11.3)	21 (11.3)	30 (16.1)	4 (2.2)	36 (19.4)	3 (1.6)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61 (29.3)	27 (13.0)	44 (21.2)	38 (18.3)	4 (1.9)	31 (14.9)	3 (1.4)	25.462
	2년~3년 미만	59 (38.6)	21 (13.7)	21 (13.7)	28 (18.3)	6 (3.9)	18 (11.8)	0 (0.0)	
	3년~4년 미만	53 (39.8)	15 (11.3)	22 (16.5)	18 (13.5)	5 (3.8)	19 (14.3)	1 (0.8)	
	4년~5년 미만	42 (35.0)	13 (10.8)	23 (19.2)	22 (18.3)	9 (7.5)	9 (7.5)	2 (1.7)	
	5년 이상	29 (33.7)	9 (10.5)	14 (16.3)	16 (18.6)	1 (1.2)	15 (17.4)	2 (2.3)	

구분		외국에 대한 차별 문제	충분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	근로시간, 통근시간 등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음	원하는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어려움	나이, 성, 학력에 따른 차별 문제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	기타	χ^2
거주 지역	수도권	153 (34.9)	51 (11.6)	83 (18.9)	67 (15.3)	18 (4.1)	63 (14.4)	4 (0.9)	7.166
	비수도권	91 (34.9)	34 (13.0)	41 (15.7)	55 (21.1)	7 (2.7)	29 (11.1)	4 (1.5)	
	서울	109 (35.3)	36 (11.7)	61 (19.7)	47 (15.2)	15 (4.9)	37 (12.0)	4 (1.3)	12.015
	경기/광역시	81 (33.6)	28 (11.6)	39 (16.2)	43 (17.8)	7 (2.9)	41 (17.0)	2 (0.8)	
	타 시도	54 (36.0)	21 (14.0)	24 (16.0)	32 (21.3)	3 (2.0)	14 (9.3)	2 (1.3)	
학교 지역	수도권	162 (35.7)	56 (12.3)	86 (18.9)	70 (15.4)	18 (4.0)	58 (12.8)	4 (0.9)	5.854
	비수도권	82 (33.3)	29 (11.8)	38 (15.4)	52 (21.1)	7 (2.8)	34 (13.8)	4 (1.6)	
학위 과정	(전문) 학사	161 (36.6)	50 (11.4)	85 (19.3)	76 (17.3)	16 (3.6)	47 (10.7)	5 (1.1)	8.824
	대학원	83 (31.9)	35 (13.5)	39 (15.0)	46 (17.7)	9 (3.5)	45 (17.3)	3 (1.2)	
전공 계열	인문, 사회과학	132 (36.5)	47 (13.0)	54 (14.9)	61 (16.9)	16 (4.4)	47 (13.0)	5 (1.4)	10.781
	자연과학, 공학 등	99 (33.4)	34 (11.5)	57 (19.3)	56 (18.9)	8 (2.7)	39 (13.2)	3 (1.0)	
	예체능	13 (31.0)	4 (9.5)	13 (31.0)	5 (11.9)	1 (2.4)	6 (14.3)	0 (0.0)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384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부표 2-36> 외국인 유학생의 일자리 관련 문제점(1+2순위)

(단위: 명, %)

구분		외국인에 대한 차별 문제	충분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	근로시간, 통근시간 등 근로 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음	원하는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어려움	나이, 성, 학력에 따른 차별 문제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	기타
전체		326 (46.6)	157 (22.4)	257 (36.7)	265 (37.9)	113 (16.1)	262 (37.4)	20 (2.9)
성별	남성	152 (49.0)	78 (25.2)	111 (35.8)	106 (34.2)	51 (16.5)	111 (35.8)	11 (3.5)
	여성	174 (44.6)	79 (20.3)	146 (37.4)	159 (40.8)	62 (15.9)	151 (38.7)	9 (2.3)
연령대 (만 나이)	19~24	198 (47.3)	86 (20.5)	162 (38.7)	171 (40.8)	62 (14.8)	148 (35.3)	11 (2.6)
	25~29	96 (46.6)	52 (25.2)	62 (30.1)	74 (35.9)	39 (18.9)	82 (39.8)	7 (3.4)
	30세 이상	32 (42.7)	19 (25.3)	33 (44.0)	20 (26.7)	12 (16.0)	32 (42.7)	2 (2.7)
국적	중국	136 (39.1)	78 (22.4)	146 (42.0)	148 (42.5)	54 (15.5)	124 (35.6)	10 (2.9)
	베트남	95 (57.2)	37 (22.3)	49 (29.5)	54 (32.5)	38 (22.9)	57 (34.3)	2 (1.2)
	기타 아시아	95 (51.1)	42 (22.6)	62 (33.3)	63 (33.9)	21 (11.3)	81 (43.5)	8 (4.3)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89 (42.8)	45 (21.6)	87 (41.8)	82 (39.4)	24 (11.5)	82 (39.4)	7 (3.4)
	2년~3년 미만	77 (50.3)	32 (20.9)	54 (35.3)	58 (37.9)	31 (20.3)	54 (35.3)	0 (0.0)
	3년~4년 미만	64 (48.1)	31 (23.3)	50 (37.6)	48 (36.1)	21 (15.8)	47 (35.3)	5 (3.8)
	4년~5년 미만	57 (47.5)	29 (24.2)	41 (34.2)	45 (37.5)	23 (19.2)	43 (35.8)	2 (1.7)
	5년 이상	39 (45.3)	20 (23.3)	25 (29.1)	32 (37.2)	14 (16.3)	36 (41.9)	6 (7.0)

구분		외국인에 대한 차별 문제	충분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	근로시간, 통근시간 등 근로 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음	원하는 일자리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어려움	나이, 성, 학력에 따른 차별 문제	일자리 에 대한 정보 부족	기타
거주 지역	수도권	203 (46.2)	95 (21.6)	168 (38.3)	159 (36.2)	72 (16.4)	167 (38.0)	14 (3.2)
	비수도권	123 (47.1)	62 (23.8)	89 (34.1)	106 (40.6)	41 (15.7)	95 (36.4)	6 (2.3)
	서울	150 (48.5)	70 (22.7)	111 (35.9)	108 (35.0)	54 (17.5)	112 (36.2)	13 (4.2)
	경기/광역시	106 (44.0)	51 (21.2)	96 (39.8)	97 (40.2)	34 (14.1)	95 (39.4)	3 (1.2)
	타 시도	70 (46.7)	36 (24.0)	50 (33.3)	60 (40.0)	25 (16.7)	55 (36.7)	4 (2.7)
학교 지역	수도권	211 (46.5)	105 (23.1)	170 (37.4)	168 (37.0)	76 (16.7)	165 (36.3)	13 (2.9)
	비수도권	115 (46.7)	52 (21.1)	87 (35.4)	97 (39.4)	37 (15.0)	97 (39.4)	7 (2.8)
학위 과정	(전문) 학사	209 (47.5)	95 (21.6)	166 (37.7)	169 (38.4)	79 (18.0)	151 (34.3)	11 (2.5)
	대학원	117 (45.0)	62 (23.8)	91 (35.0)	96 (36.9)	34 (13.1)	111 (42.7)	9 (3.5)
전공 계열	인문, 사회과학	174 (48.1)	86 (23.8)	121 (33.4)	138 (38.1)	62 (17.1)	131 (36.2)	12 (3.3)
	자연과학, 공학 등	134 (45.3)	62 (20.9)	116 (39.2)	111 (37.5)	46 (15.5)	115 (38.9)	8 (2.7)
	예체능	18 (42.9)	9 (21.4)	20 (47.6)	16 (38.1)	5 (11.9)	16 (38.1)	0 (0.0)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부표 2-37>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을 위한 절차 인지 여부

(단위: 명, %)

구분		예		아니오		χ^2
전체		564	(80.6)	136	(19.4)	-
성별	남성	244	(78.7)	66	(21.3)	1.232
	여성	320	(82.1)	70	(17.9)	
연령대 (만 나이)	19~24	329	(78.5)	90	(21.5)	4.415
	25~29	176	(85.4)	30	(14.6)	
	30세 이상	59	(78.7)	16	(21.3)	
국적	중국	286	(82.2)	62	(17.8)	1.761
	베트남	134	(80.7)	32	(19.3)	
	기타 아시아	144	(77.4)	42	(22.6)	
한국 거주기간	2년 미만	156	(75.0)	52	(25.0)	12.249*
	2년~3년 미만	122	(79.7)	31	(20.3)	
	3년~4년 미만	106	(79.7)	27	(20.3)	
	4년~5년 미만	101	(84.2)	19	(15.8)	
	5년 이상	79	(91.9)	7	(8.1)	
거주 지역	수도권	356	(81.1)	83	(18.9)	0.205
	비수도권	208	(79.7)	53	(20.3)	
	서울	257	(83.2)	52	(16.8)	2.493
	경기/광역시	188	(78.0)	53	(22.0)	
	타 시도	119	(79.3)	31	(20.7)	
학교 지역	수도권	372	(81.9)	82	(18.1)	1.542
	비수도권	192	(78.0)	54	(22.0)	
학위 과정	(전문) 학사	350	(79.5)	90	(20.5)	0.797
	대학원	214	(82.3)	46	(17.7)	
전공계열	인문, 사회과학	300	(82.9)	62	(17.1)	5.051
	자연과학, 공학 등	235	(79.4)	61	(20.6)	
	예체능	29	(69.0)	13	(31.0)	

주: *p<0.05, **p<0.01, ***p<0.001

〈부표 2-38〉 지난 한 학기(6개월) 기준 비용(만 원)-학비(장학금 포함)

(단위: 만 원)

구분		평균	중위값	표준오차	F
전체		395.1	389	5.207	-
성별	남성	387.1	377	8.433	1.858
	여성	401.4	400	6.505	
연령대 (만 나이)	19~24	381.1	380	6.200	5.708**
	25~29	419.4	400	10.170	
	30세 이상	406.5	385	18.763	
국적	중국	415.5	400	7.779	10.434****
	베트남	357.3	360	9.715	
	기타 아시아	390.7	395	9.319	
한국 거주기간	2년 미만	418.5	407	10.540	3.555**
	2년~3년 미만	392.0	380	10.825	
	3년~4년 미만	378.5	377	11.006	
	4년~5년 미만	366.7	370	10.656	
	5년 이상	409.3	400	15.445	
거주 지역	수도권	436.9	420	5.988	128.249****
	비수도권	324.8	300	7.973	
	서울	430.6	400	6.590	23.441****
	경기/광역시	382.1	360	9.656	
	타 시도	343.0	330	11.400	
학교 지역	수도권	437.6	420	6.102	149.305****
	비수도권	316.6	300	7.368	
학위 과정	(전문) 학사	369.7	380	5.592	42.778****
	대학원	438.1	450	9.795	
전공계열	인문, 사회과학	382.9	380	6.484	6.640**
	자연과학, 공학 등	400.6	389	8.649	
	예체능	461.5	483	24.017	

주: *p<0.05, **p<0.01, ***p<0.001

388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부표 2-39> 지난 한 학기(6개월) 기준 비용(만 원)-필요 생활비(장학금 포함)

(단위: 만 원)

구분		평균	중위값	표준오차	F
전체		535.4	500	9.337	-
성별	남성	527.4	500	13.515	0.578
	여성	541.7	480	12.869	
연령대 (만 나이)	19~24	517.5	470	11.546	4.165*
	25~29	547.4	510	15.146	
	30세 이상	602.7	500	40.532	
국적	중국	559.7	500	13.333	5.407**
	베트남	483.5	420	16.981	
	기타 아시아	536.3	500	19.166	
한국 거주기간	2년 미만	533.7	500	17.874	0.570
	2년~3년 미만	517.6	470	18.719	
	3년~4년 미만	530.2	470	21.207	
	4년~5년 미만	546.0	500	22.578	
	5년 이상	564.6	500	27.273	
거주 지역	수도권	594.1	570	11.997	73.420***
	비수도권	436.6	390	12.688	
	서울	629.7	600	14.883	45.795***
	경기/광역시	468.2	450	12.751	
	타 시도	449.1	395	17.971	
학교 지역	수도권	584.1	550	11.496	53.998***
	비수도권	445.5	387	14.352	
학위 과정	(전문) 학사	507.8	470	11.072	15.110***
	대학원	582.2	580	16.383	
전공계열	인문, 사회과학	547.6	500	12.968	1.657
	자연과학, 공학 등	516.2	470	14.394	
	예체능	566.0	555	37.238	

주: *p<0.05, **p<0.01, ***p<0.001

〈부표 2-40〉 지난 한 학기(6개월) 기준 비용(만 원)-지출 생활비(장학금 포함)

(단위: 만 원)

구분		평균	중위값	표준오차	F
전체		510.4	460	8.735	-
성별	남성	494.2	460	12.466	2.721
	여성	523.2	475	12.125	
연령대 (만 나이)	19~24	489.3	420	10.729	5.988**
	25~29	527.1	500	14.799	
	30세 이상	582.3	500	36.244	
국적	중국	543.3	500	12.655	9.487***
	베트남	450.2	415	15.680	
	기타 아시아	502.6	460	17.276	
한국 거주기간	2년 미만	502.7	460	16.129	0.914
	2년~3년 미만	499.7	460	18.604	
	3년~4년 미만	495.2	434	20.173	
	4년~5년 미만	533.6	500	20.989	
	5년 이상	539.0	500	24.678	
거주 지역	수도권	564.4	500	11.167	70.592***
	비수도권	419.6	370	12.093	
	서울	601.6	550	13.663	49.024***
	경기/광역시	440.6	410	12.304	
	타 시도	434.7	390	16.665	
학교 지역	수도권	554.6	500	10.752	50.620***
	비수도권	428.8	380	13.529	
학위 과정	(전문) 학사	481.4	420	10.295	19.182***
	대학원	559.5	520	15.348	
전공계열	인문, 사회과학	525.0	500	12.015	2.244
	자연과학, 공학 등	489.0	420	13.608	
	예체능	535.6	540	34.573	

주: *p<0.05, **p<0.01, ***p<0.001

390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부표 2-41〉 지난 한 학기(6개월) 동안 사용한 학비/생활비 조달방식 비중 - 부모 혹은 가족

(단위: %)

구분		평균	중위값	표준오차	F
전체		51.2	50	1.386	-
성별	남성	50.3	50	2.139	0.308
	여성	51.8	50	1.817	
연령대 (만 나이)	19~24	55.8	60	1.741	15.364***
	25~29	48.9	50	2.548	
	30세 이상	31.3	10	4.131	
국적	중국	69.2	80	1.624	121.781***
	베트남	25.8	20	2.163	
	기타 아시아	40.0	35	2.693	
한국 거주기간	2년 미만	54.2	60	2.595	1.588
	2년~3년 미만	54.3	60	2.714	
	3년~4년 미만	45.6	50	3.331	
	4년~5년 미만	48.5	50	3.386	
	5년 이상	50.4	50	3.903	
거주 지역	수도권	54.9	60	1.772	12.702***
	비수도권	44.8	50	2.169	
	서울	56.8	70	2.131	9.227***
	경기/광역시	50.0	50	2.380	
	타 시도	41.5	49	2.638	
학교 지역	수도권	54.8	60	1.725	13.273***
	비수도권	44.4	50	2.268	
학위 과정	(전문) 학사	55.9	60	1.693	20.331***
	대학원	43.1	44	2.310	
전공계열	인문, 사회과학	53.6	60	1.871	3.198*
	자연과학, 공학 등	47.2	50	2.191	
	예체능	57.9	73	5.618	

주: *p<0.05, **p<0.01, ***p<0.001

〈부표 2-42〉 지난 한 학기(6개월) 동안 사용한 학비/생활비 조달방식 비중 - 본인의 자금
(단위: %)

구분		평균	중위값	표준오차	F
전체		12.8	3	0.785	-
성별	남성	11.7	0	1.140	1.555
	여성	13.7	5	1.079	
연령대 (만 나이)	19~24	11.5	2	0.905	5.036**
	25~29	13.1	4	1.458	
	30세 이상	19.7	5	3.408	
국적	중국	11.3	0	1.041	4.692**
	베트남	17.1	10	1.805	
	기타 아시아	11.9	0	1.502	
한국 거주기간	2년 미만	11.1	0	1.416	1.283
	2년~3년 미만	11.4	5	1.431	
	3년~4년 미만	15.5	5	2.032	
	4년~5년 미만	14.6	10	1.906	
	5년 이상	13.1	0	2.378	
거주 지역	수도권	11.7	0	0.969	3.719
	비수도권	14.8	5	1.329	
	서울	11.0	0	1.102	4.212*
	경기/광역시	12.6	2	1.334	
	타 시도	17.0	10	1.888	
학교 지역	수도권	11.6	0	0.929	4.950*
	비수도권	15.2	5	1.424	
학위 과정	(전문) 학사	12.6	5	0.947	0.206
	대학원	13.3	0	1.382	
전공계열	인문, 사회과학	14.2	5	1.172	3.163*
	자연과학, 공학 등	10.6	2	1.015	
	예체능	16.6	6	4.150	

주: *p<0.05, **p<0.01, ***p<0.001

392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부표 2-43〉 지난 한 학기(6개월) 동안 사용한 학비/생활비 조달방식 비중 - 한국에서 본인의 근로소득

(단위: %)

구분		평균	중위값	표준오차	F
전체		11.9	0	0.809	-
성별	남성	12.2	0	1.264	0.104
	여성	11.6	0	1.049	
연령대 (만 나이)	19~24	11.7	0	1.020	0.040
	25~29	12.0	0	1.481	
	30세 이상	12.4	0	2.858	
국적	중국	6.8	0	0.813	41.251***
	베트남	24.0	10	2.196	
	기타 아시아	10.5	0	1.469	
한국 거주기간	2년 미만	7.8	0	1.295	4.099**
	2년~3년 미만	10.4	0	1.560	
	3년~4년 미만	15.6	0	2.082	
	4년~5년 미만	15.2	0	2.063	
	5년 이상	14.0	0	2.533	
거주 지역	수도권	9.3	0	0.902	17.093***
	비수도권	16.1	2	1.516	
	서울	8.4	0	1.026	8.691***
	경기/광역시	13.2	0	1.516	
	타 시도	16.8	5	1.883	
학교 지역	수도권	9.7	0	0.910	13.713***
	비수도권	15.9	2	1.543	
학위 과정	(전문) 학사	12.2	0	1.018	0.263
	대학원	11.3	0	1.333	
전공계열	인문, 사회과학	11.5	0	1.091	1.245
	자연과학, 공학 등	12.9	0	1.331	
	예체능	7.6	0	2.223	

주: *p<0.05, **p<0.01, ***p<0.001

〈부표 2-44〉 지난 한 학기(6개월) 동안 사용한 학비/생활비 조달방식 비중 - 장학금

(단위: %)

구분		평균	중위값	표준오차	F
전체		22.5	10	1.067	-
성별	남성	23.7	10	1.763	1.089
	여성	21.5	10	1.306	
연령대 (만 나이)	19~24	19.3	10	1.240	10.410***
	25~29	24.6	10	2.035	
	30세 이상	34.5	20	4.185	
국적	중국	11.3	5	0.844	65.900***
	베트남	30.6	20	2.238	
	기타 아시아	36.1	20	2.671	
한국 거주기간	2년 미만	26.1	10	2.286	1.275
	2년~3년 미만	21.3	10	2.088	
	3년~4년 미만	21.6	10	2.233	
	4년~5년 미만	20.2	10	2.447	
	5년 이상	20.5	10	2.713	
거주 지역	수도권	22.5	10	1.406	0.001
	비수도권	22.4	15	1.616	
	서울	22.5	5	1.821	0.030
	경기/광역시	22.2	15	1.674	
	타 시도	22.9	20	1.889	
학교 지역	수도권	22.3	10	1.348	0.030
	비수도권	22.7	15	1.747	
학위 과정	(전문) 학사	17.9	10	1.116	33.086***
	대학원	30.3	20	2.081	
전공계열	인문, 사회과학	19.3	10	1.244	7.475***
	자연과학, 공학 등	27.2	15	1.921	
	예체능	16.4	10	3.499	

주: *p<0.05, **p<0.01, ***p<0.001

394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부표 2-45> 지난 한 학기(6개월) 동안 사용한 학비/생활비 조달 방식 비중 - 기타

(단위: %)

구분		평균	중위값	표준오차	F
전체		1.7	0	0.217	-
성별	남성	2.1	0	0.386	2.985
	여성	1.3	0	0.238	
연령대 (만 나이)	19~24	1.7	0	0.264	0.545
	25~29	1.3	0	0.397	
	30세 이상	2.1	0	0.855	
국적	중국	1.3	0	0.251	2.297
	베트남	2.5	0	0.532	
	기타 아시아	1.6	0	0.467	
한국 거주기간	2년 미만	.8	0	0.259	2.371
	2년~3년 미만	2.6	0	0.571	
	3년~4년 미만	1.8	0	0.515	
	4년~5년 미만	1.6	0	0.485	
	5년 이상	2.0	0	0.754	
거주 지역	수도권	1.6	0	0.292	0.246
	비수도권	1.8	0	0.312	
	서울	1.3	0	0.303	1.109
	경기/광역시	2.0	0	0.427	
	타 시도	1.8	0	0.401	
학교 지역	수도권	1.6	0	0.287	0.251
	비수도권	1.8	0	0.315	
학위 과정	(전문) 학사	1.5	0	0.227	1.021
	대학원	1.9	0	0.438	
전공계열	인문, 사회과학	1.4	0	0.281	0.982
	자연과학, 공학 등	2.0	0	0.366	
	예체능	1.5	0	0.733	

주: *p<0.05, **p<0.01, ***p<0.001

〈부표 2-46〉 지난 1년 동안 생활비가 부족한 경험 유무

(단위: 명, %)

구분		없음		있음		χ^2
전체		276	(39.4)	424	(60.6)	-
성별	남성	129	(41.6)	181	(58.4)	1.112
	여성	147	(37.7)	243	(62.3)	
연령대 (만 나이)	19~24	156	(37.2)	263	(62.8)	2.782
	25~29	85	(41.3)	121	(58.7)	
	30세 이상	35	(46.7)	40	(53.3)	
국적	중국	146	(42.0)	202	(58.0)	5.983
	베트남	52	(31.3)	114	(68.7)	
	기타 아시아	78	(41.9)	108	(58.1)	
한국 거주기간	2년 미만	86	(41.3)	122	(58.7)	1.480
	2년~3년 미만	56	(36.6)	97	(63.4)	
	3년~4년 미만	55	(41.4)	78	(58.6)	
	4년~5년 미만	44	(36.7)	76	(63.3)	
	5년 이상	35	(40.7)	51	(59.3)	
거주 지역	수도권	174	(39.6)	265	(60.4)	0.021
	비수도권	102	(39.1)	159	(60.9)	
	서울	116	(37.5)	193	(62.5)	3.293
	경기/광역시	106	(44.0)	135	(56.0)	
	타 시도	54	(36.0)	96	(64.0)	
학교 지역	수도권	178	(39.2)	276	(60.8)	0.027
	비수도권	98	(39.8)	148	(60.2)	
학위 과정	(전문) 학사	166	(37.7)	274	(62.3)	1.436
	대학원	110	(42.3)	150	(57.7)	
전공계열	인문, 사회과학	135	(37.3)	227	(62.7)	2.132
	자연과학, 공학 등	121	(40.9)	175	(59.1)	
	예체능	20	(47.6)	22	(52.4)	

주: *p<0.05, **p<0.01, ***p<0.001

396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부표 2-47〉 생활비가 부족했을 때 대처방안(1순위)

(단위: 명, %)

구분		식비를 줄였음	식비 외 다른 생활비를 줄였음	가족에게 돈을 받았음	친구 등 자인에게 돈을 빌렸음	일짜리를 구하거나 하던 일의 양을 늘렸음	장학금을 신청했음	저축한 돈을 썼음	χ^2
전체		162 (38.2)	101 (23.8)	63 (14.9)	49 (11.6)	31 (7.3)	8 (1.9)	10 (2.4)	-
성별	남성	72 (39.8)	41 (22.7)	24 (13.3)	24 (13.3)	13 (7.2)	2 (1.1)	5 (2.8)	2.970
	여성	90 (37.0)	60 (24.7)	39 (16.0)	25 (10.3)	18 (7.4)	6 (2.5)	5 (2.1)	
연령대 (만 나이)	19~24	101 (38.4)	57 (21.7)	42 (16.0)	30 (11.4)	21 (8.0)	7 (2.7)	5 (1.9)	10.545
	25~29	47 (38.8)	31 (25.6)	16 (13.2)	14 (11.6)	10 (8.3)	0 (0.0)	3 (2.5)	
	30세 이상	14 (35.0)	13 (32.5)	5 (12.5)	5 (12.5)	0 (0.0)	1 (2.5)	2 (5.0)	
국적	중국	94 (46.5)	54 (26.7)	33 (16.3)	5 (2.5)	6 (3.0)	4 (2.0)	6 (3.0)	66.564***
	베트남	24 (21.1)	27 (23.7)	14 (12.3)	31 (27.2)	15 (13.2)	2 (1.8)	1 (0.9)	
	기타 아시아	44 (40.7)	20 (18.5)	16 (14.8)	13 (12.0)	10 (9.3)	2 (1.9)	3 (2.8)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50 (41.0)	27 (22.1)	16 (13.1)	14 (11.5)	6 (4.9)	3 (2.5)	6 (4.9)	18.662
	2년~3년 미만	39 (40.2)	22 (22.7)	16 (16.5)	11 (11.3)	7 (7.2)	2 (2.1)	0 (0.0)	
	3년~4년 미만	27 (34.6)	24 (30.8)	12 (15.4)	8 (10.3)	6 (7.7)	1 (1.3)	0 (0.0)	
	4년~5년 미만	27 (35.5)	15 (19.7)	12 (15.8)	11 (14.5)	8 (10.5)	2 (2.6)	1 (1.3)	
	5년 이상	19 (37.3)	13 (25.5)	7 (13.7)	5 (9.8)	4 (7.8)	0 (0.0)	3 (5.9)	

구분		식비를 줄였음	식비 외 다른 생활비를 줄였음	가족 에게 돈을 받았음	친구 등 자 인에게 돈을 빌렸음	일 자 리를 구 하 거나 하 던 일 의 양 을 늘 렸음	장 학 금 을 산 청 했 음	저 축 한 돈 을 썼 음	χ^2
거주 지역	수도권	108 (40.8)	65 (24.5)	40 (15.1)	25 (9.4)	19 (7.2)	5 (1.9)	3 (1.1)	8.656
	비수도권	54 (34.0)	36 (22.6)	23 (14.5)	24 (15.1)	12 (7.5)	3 (1.9)	7 (4.4)	
	서울	82 (42.5)	49 (25.4)	29 (15.0)	14 (7.3)	13 (6.7)	4 (2.1)	2 (1.0)	14.164
	경기/광역시	49 (36.3)	29 (21.5)	22 (16.3)	21 (15.6)	9 (6.7)	1 (0.7)	4 (3.0)	
	타 시도	31 (32.3)	23 (24.0)	12 (12.5)	14 (14.6)	9 (9.4)	3 (3.1)	4 (4.2)	
학교 지역	수도권	111 (40.2)	67 (24.3)	42 (15.2)	28 (10.1)	18 (6.5)	7 (2.5)	3 (1.1)	10.199
	비수도권	51 (34.5)	34 (23.0)	21 (14.2)	21 (14.2)	13 (8.8)	1 (0.7)	7 (4.7)	
학위 과정	(전문) 학사	110 (40.1)	60 (21.9)	36 (13.1)	32 (11.7)	22 (8.0)	7 (2.6)	7 (2.6)	6.020
	대학원	52 (34.7)	41 (27.3)	27 (18.0)	17 (11.3)	9 (6.0)	1 (0.7)	3 (2.0)	
전공 계열	인문, 사회과학	85 (37.4)	54 (23.8)	37 (16.3)	23 (10.1)	18 (7.9)	7 (3.1)	3 (1.3)	15.932
	자연과학, 공학 등	71 (40.6)	39 (22.3)	21 (12.0)	26 (14.9)	11 (6.3)	1 (0.6)	6 (3.4)	
	예체능	6 (27.3)	8 (36.4)	5 (22.7)	0 (0.0)	2 (9.1)	0 (0.0)	1 (4.5)	

주: *p<0.05, **p<0.01, ***p<0.001

398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부표 2-48〉 생활비가 부족했을 때 대처방안(1+2순위)

(단위: 명, %)

구분		식비를 줄였음	식비 외 다른 생활비를 줄였음	가족에게 돈을 받았음	친구 등 지인에게 돈을 빌렸음	일 자리를 구하거나 하던 일의 양을 늘렸음	장학금을 신청했음	저축한 돈을 썼음
전체		193 (45.5)	224 (52.8)	152 (35.8)	103 (24.3)	85 (20.0)	27 (6.4)	64 (15.1)
성별	남성	84 (46.4)	96 (53.0)	65 (35.9)	54 (29.8)	31 (17.1)	7 (3.9)	25 (13.8)
	여성	109 (44.9)	128 (52.7)	87 (35.8)	49 (20.2)	54 (22.2)	20 (8.2)	39 (16.0)
연령대 (만 나이)	19~24	124 (47.1)	130 (49.4)	89 (33.8)	67 (25.5)	58 (22.1)	21 (8.0)	37 (14.1)
	25~29	53 (43.8)	70 (57.9)	52 (43.0)	24 (19.8)	23 (19.0)	3 (2.5)	17 (14.0)
	30세 이상	16 (40.0)	24 (60.0)	11 (27.5)	12 (30.0)	4 (10.0)	3 (7.5)	10 (25.0)
국적	중국	106 (52.5)	135 (66.8)	77 (38.1)	8 (4.0)	29 (14.4)	12 (5.9)	37 (18.3)
	베트남	29 (25.4)	50 (43.9)	39 (34.2)	59 (51.8)	35 (30.7)	7 (6.1)	9 (7.9)
	기타 아시아	58 (53.7)	39 (36.1)	36 (33.3)	36 (33.3)	21 (19.4)	8 (7.4)	18 (16.7)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64 (52.5)	63 (51.6)	49 (40.2)	21 (17.2)	22 (18.0)	7 (5.7)	18 (14.8)
	2년~3년 미만	45 (46.4)	48 (49.5)	32 (33.0)	28 (28.9)	20 (20.6)	7 (7.2)	14 (14.4)
	3년~4년 미만	32 (41.0)	41 (52.6)	28 (35.9)	24 (30.8)	16 (20.5)	5 (6.4)	10 (12.8)
	4년~5년 미만	30 (39.5)	46 (60.5)	26 (34.2)	16 (21.1)	17 (22.4)	6 (7.9)	11 (14.5)
	5년 이상	22 (43.1)	26 (51.0)	17 (33.3)	14 (27.5)	10 (19.6)	2 (3.9)	11 (21.6)

구분		식비를 줄였음	식비 외 다른 생활비를 줄였음	가족에게 돈을 받았음	친구 등 지인에게 돈을 빌렸음	일자리를 구하거나 하던 일을 늘렸음	장학금을 신청했음	저축한 돈을 썼음
거주 지역	수도권	130 (49.1)	141 (53.2)	97 (36.6)	57 (21.5)	48 (18.1)	19 (7.2)	38 (14.3)
	비수도권	63 (39.6)	83 (52.2)	55 (34.6)	46 (28.9)	37 (23.3)	8 (5.0)	26 (16.4)
	서울	101 (52.3)	102 (52.8)	69 (35.8)	37 (19.2)	39 (20.2)	12 (6.2)	26 (13.5)
	경기/광역시	53 (39.3)	76 (56.3)	51 (37.8)	37 (27.4)	22 (16.3)	10 (7.4)	21 (15.6)
	타 시도	39 (40.6)	46 (47.9)	32 (33.3)	29 (30.2)	24 (25.0)	5 (5.2)	17 (17.7)
학교 지역	수도권	133 (48.2)	143 (51.8)	103 (37.3)	63 (22.8)	48 (17.4)	21 (7.6)	41 (14.9)
	비수도권	60 (40.5)	81 (54.7)	49 (33.1)	40 (27.0)	37 (25.0)	6 (4.1)	23 (15.5)
학위 과정	(전문) 학사	130 (47.4)	142 (51.8)	91 (33.2)	69 (25.2)	58 (21.2)	18 (6.6)	40 (14.6)
	대학원	63 (42.0)	82 (54.7)	61 (40.7)	34 (22.7)	27 (18.0)	9 (6.0)	24 (16.0)
전공 계열	인문, 사회과학	102 (44.9)	117 (51.5)	86 (37.9)	50 (22.0)	53 (23.3)	19 (8.4)	27 (11.9)
	자연과학, 공학 등	85 (48.6)	91 (52.0)	57 (32.6)	51 (29.1)	28 (16.0)	7 (4.0)	31 (17.7)
	예체능	6 (27.3)	16 (72.7)	9 (40.9)	2 (9.1)	4 (18.2)	1 (4.5)	6 (27.3)

주: *p<0.05, **p<0.01, ***p<0.001

400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부표 2-49>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주거 형태

(단위: 명, %)

구분		기숙사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자기 집	기타 혹은 잘 모르겠음	χ^2
전체		127 (18.1)	44 (6.3)	466 (66.6)	48 (6.9)	7 (1.0)	8 (1.1)	-
성별	남성	56 (18.1)	16 (5.2)	207 (66.8)	24 (7.7)	6 (1.9)	1 (0.3)	9.905
	여성	71 (18.2)	28 (7.2)	259 (66.4)	24 (6.2)	1 (0.3)	7 (1.8)	
연령대 (만 나이)	19~24	84 (20.0)	30 (7.2)	269 (64.2)	26 (6.2)	5 (1.2)	5 (1.2)	12.769
	25~29	26 (12.6)	8 (3.9)	153 (74.3)	15 (7.3)	2 (1.0)	2 (1.0)	
	30세 이상	17 (22.7)	6 (8.0)	44 (58.7)	7 (9.3)	0 (0.0)	1 (1.3)	
국적	중국	63 (18.1)	24 (6.9)	244 (70.1)	10 (2.9)	5 (1.4)	2 (0.6)	54.937***
	베트남	13 (7.8)	11 (6.6)	123 (74.1)	19 (11.4)	0 (0.0)	0 (0.0)	
	기타 아시아	51 (27.4)	9 (4.8)	99 (53.2)	19 (10.2)	2 (1.1)	6 (3.2)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64 (30.8)	8 (3.8)	122 (58.7)	13 (6.3)	0 (0.0)	1 (0.5)	60.293***
	2년~3년 미만	22 (14.4)	14 (9.2)	100 (65.4)	12 (7.8)	1 (0.7)	4 (2.6)	
	3년~4년 미만	18 (13.5)	9 (6.8)	96 (72.2)	7 (5.3)	1 (0.8)	2 (1.5)	
	4년~5년 미만	15 (12.5)	10 (8.3)	78 (65.0)	11 (9.2)	5 (4.2)	1 (0.8)	
	5년 이상	8 (9.3)	3 (3.5)	70 (81.4)	5 (5.8)	0 (0.0)	0 (0.0)	
거주 지역	수도권	71 (16.2)	13 (3.0)	315 (71.8)	28 (6.4)	5 (1.1)	7 (1.6)	30.693***

구분		기숙사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자기 집	기타 혹은 잘 모르겠음	χ^2
	비수도권	56 (21.5)	31 (11.9)	151 (57.9)	20 (7.7)	2 (0.8)	1 (0.4)	71.819***
	서울	28 (9.1)	9 (2.9)	246 (79.6)	18 (5.8)	4 (1.3)	4 (1.3)	
	경기/ 광역시	69 (28.6)	14 (5.8)	141 (58.5)	12 (5.0)	2 (0.8)	3 (1.2)	
	타 시도	30 (20.0)	21 (14.0)	79 (52.7)	18 (12.0)	1 (0.7)	1 (0.7)	
학교 지역	수도권	67 (14.8)	15 (3.3)	331 (72.9)	29 (6.4)	6 (1.3)	6 (1.3)	36.335***
	비수도권	60 (24.4)	29 (11.8)	135 (54.9)	19 (7.7)	1 (0.4)	2 (0.8)	
학위 과정	(전문) 학사	87 (19.8)	30 (6.8)	285 (64.8)	27 (6.1)	5 (1.1)	6 (1.4)	4.468
	대학원	40 (15.4)	14 (5.4)	181 (69.6)	21 (8.1)	2 (0.8)	2 (0.8)	
전공 계열	인문, 사회과학	56 (15.5)	14 (3.9)	260 (71.8)	25 (6.9)	4 (1.1)	3 (0.8)	20.088*
	자연과학, 공학 등	64 (21.6)	29 (9.8)	176 (59.5)	19 (6.4)	3 (1.0)	5 (1.7)	
	예체능	7 (16.7)	1 (2.4)	30 (71.4)	4 (9.5)	0 (0.0)	0 (0.0)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402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부표 2-50〉 기숙사에 살고 있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구분		기숙사에 배정받지 못해서	기숙사보 다 지금 집의 비용 부담이 적어서	기숙사 시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기숙사 규정이 너무 엄격해서	기타	χ^2
전체		66 (11.5)	158 (27.6)	164 (28.6)	116 (20.2)	69 (12.0)	-
성별	남성	29 (11.4)	66 (26.0)	84 (33.1)	53 (20.9)	22 (8.7)	7.995
	여성	37 (11.6)	92 (28.8)	80 (25.1)	63 (19.7)	47 (14.7)	
연령대 (만 나이)	19~24	39 (11.6)	83 (24.8)	106 (31.6)	70 (20.9)	37 (11.0)	10.114
	25~29	22 (12.2)	56 (31.1)	46 (25.6)	36 (20.0)	20 (11.1)	
	30세 이상	5 (8.6)	19 (32.8)	12 (20.7)	10 (17.2)	12 (20.7)	
국적	중국	45 (15.8)	60 (21.1)	92 (32.3)	50 (17.5)	38 (13.3)	40.332***
	베트남	14 (9.2)	55 (35.9)	32 (20.9)	44 (28.8)	8 (5.2)	
	기타 아시아	7 (5.2)	43 (31.9)	40 (29.6)	22 (16.3)	23 (17.0)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21 (14.6)	35 (24.3)	48 (33.3)	23 (16.0)	17 (11.8)	14.398
	2년~3년 미만	14 (10.7)	45 (34.4)	33 (25.2)	21 (16.0)	18 (13.7)	
	3년~4년 미만	11 (9.6)	35 (30.4)	28 (24.3)	29 (25.2)	12 (10.4)	
	4년~5년 미만	10 (9.5)	26 (24.8)	31 (29.5)	25 (23.8)	13 (12.4)	
	5년 이상	10 (12.8)	17 (21.8)	24 (30.8)	18 (23.1)	9 (11.5)	

구분		기숙사에 배정받지 못해서	기숙사보 다 지금 집의 비용 부담이 적어서	기숙사 시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기숙사 규정이 너무 엄격해서	기타	χ^2
거주 지역	수도권	59 (16.0)	103 (28.0)	101 (27.4)	64 (17.4)	41 (11.1)	23.588***
	비수도권	7 (3.4)	55 (26.8)	63 (30.7)	52 (25.4)	28 (13.7)	
	서울	48 (17.1)	74 (26.3)	75 (26.7)	55 (19.6)	29 (10.3)	18.894*
	경기/평역세	13 (7.6)	49 (28.5)	52 (30.2)	33 (19.2)	25 (14.5)	
	타 시도	5 (4.2)	35 (29.2)	37 (30.8)	28 (23.3)	15 (12.5)	
학교 지역	수도권	61 (15.8)	107 (27.6)	112 (28.9)	69 (17.8)	38 (9.8)	27.013***
	비수도권	5 (2.7)	51 (27.4)	52 (28.0)	47 (25.3)	31 (16.7)	
학위 과정	(전문) 학사	39 (11.0)	90 (25.5)	104 (29.5)	76 (21.5)	44 (12.5)	2.731
	대학원	27 (12.3)	68 (30.9)	60 (27.3)	40 (18.2)	25 (11.4)	
전공 계열	인문, 사회과학	40 (13.1)	89 (29.1)	83 (27.1)	58 (19.0)	36 (11.8)	6.307
	자연과학, 공학 등	23 (9.9)	62 (26.7)	66 (28.4)	51 (22.0)	30 (12.9)	
	예체능	3 (8.6)	7 (20.0)	15 (42.9)	7 (20.0)	3 (8.6)	

주: *p<0.05, **p<0.01, ***p<0.001

404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부표 2-51〉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소개 경로

(단위: 명, %)

구분		학교	친구 등 지인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부동산 앱이나 사이트	기타	x ²
전체		16 (2.8)	204 (35.6)	214 (37.3)	44 (7.7)	86 (15.0)	9 (1.6)	-
성별	남성	8 (3.1)	91 (35.8)	96 (37.8)	15 (5.9)	41 (16.1)	3 (1.2)	2.939
	여성	8 (2.5)	113 (35.4)	118 (37.0)	29 (9.1)	45 (14.1)	6 (1.9)	
연령대 (만 나이)	19~24	12 (3.6)	120 (35.8)	122 (36.4)	27 (8.1)	50 (14.9)	4 (1.2)	21.051*
	25~29	2 (1.1)	54 (30.0)	75 (41.7)	16 (8.9)	31 (17.2)	2 (1.1)	
	30세 이상	2 (3.4)	30 (51.7)	17 (29.3)	1 (1.7)	5 (8.6)	3 (5.2)	
국적	중국	6 (2.1)	95 (33.3)	123 (43.2)	15 (5.3)	40 (14.0)	6 (2.1)	20.171*
	베트남	6 (3.9)	54 (35.3)	58 (37.9)	14 (9.2)	19 (12.4)	2 (1.3)	
	기타 아시아	4 (3.0)	55 (40.7)	33 (24.4)	15 (11.1)	27 (20.0)	1 (0.7)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6 (4.2)	56 (38.9)	51 (35.4)	13 (9.0)	15 (10.4)	3 (2.1)	18.232
	2년~3년 미만	5 (3.8)	48 (36.6)	51 (38.9)	8 (6.1)	19 (14.5)	0 (0.0)	
	3년~4년 미만	2 (1.7)	40 (34.8)	38 (33.0)	13 (11.3)	20 (17.4)	2 (1.7)	
	4년~5년 미만	1 (1.0)	36 (34.3)	45 (42.9)	4 (3.8)	16 (15.2)	3 (2.9)	
	5년 이상	2 (2.6)	24 (30.8)	29 (37.2)	6 (7.7)	16 (20.5)	1 (1.3)	
거주 지역	수도권	9 (2.4)	97 (26.4)	159 (43.2)	36 (9.8)	64 (17.4)	3 (0.8)	48.139***

구분		학교	친구 등 지인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부동산 앱이나 사이트	기타	χ^2
	비수도권	7 (3.4)	107 (52.2)	55 (26.8)	8 (3.9)	22 (10.7)	6 (2.9)	63.271***
	서울	5 (1.8)	73 (26.0)	118 (42.0)	33 (11.7)	52 (18.5)	0 (0.0)	
	경기/광역시	5 (2.9)	64 (37.2)	72 (41.9)	6 (3.5)	21 (12.2)	4 (2.3)	
	타 시도	6 (5.0)	67 (55.8)	24 (20.0)	5 (4.2)	13 (10.8)	5 (4.2)	
학교 지역	수도권	9 (2.3)	107 (27.6)	168 (43.4)	39 (10.1)	61 (15.8)	3 (0.8)	48.037***
	비수도권	7 (3.8)	97 (52.2)	46 (24.7)	5 (2.7)	25 (13.4)	6 (3.2)	
학위 과정	(전문) 학사	10 (2.8)	123 (34.8)	134 (38.0)	30 (8.5)	52 (14.7)	4 (1.1)	2.219
	대학원	6 (2.7)	81 (36.8)	80 (36.4)	14 (6.4)	34 (15.5)	5 (2.3)	
전공 계열	인문, 사회과학	4 (1.3)	100 (32.7)	124 (40.5)	28 (9.2)	47 (15.4)	3 (1.0)	37.013***
	자연과학, 공학 등	10 (4.3)	95 (40.9)	78 (33.6)	15 (6.5)	32 (13.8)	2 (0.9)	
	예체능	2 (5.7)	9 (25.7)	12 (34.3)	1 (2.9)	7 (20.0)	4 (11.4)	

주: *p<0.05, **p<0.01, ***p<0.001

406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부표 2-52〉 집을 찾을 때 가장 큰 어려움

(단위: 명, %)

구분		보증금 마련 어려움	정보의 부족	집주인 (임대인)의 차별	중개업체의 차별	기타	x ²
전체		316 (55.2)	168 (29.4)	44 (7.7)	16 (2.8)	28 (4.9)	-
성별	남성	133 (52.4)	81 (31.9)	24 (9.4)	7 (2.8)	9 (3.5)	5.215
	여성	183 (57.5)	87 (27.4)	20 (6.3)	9 (2.8)	19 (6.0)	
연령대 (만 나이)	19~24	184 (54.9)	99 (29.6)	28 (8.4)	9 (2.7)	15 (4.5)	11.132
	25~29	106 (59.2)	48 (26.8)	8 (4.5)	7 (3.9)	10 (5.6)	
	30세 이상	26 (44.8)	21 (36.2)	8 (13.8)	0 (0.0)	3 (5.2)	
국적	중국	112 (39.3)	117 (41.1)	30 (10.5)	6 (2.1)	20 (7.0)	72.830***
	베트남	119 (78.3)	21 (13.8)	6 (3.9)	5 (3.3)	1 (0.7)	
	기타 아시아	85 (63.0)	30 (22.2)	8 (5.9)	5 (3.7)	7 (5.2)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65 (45.5)	52 (36.4)	15 (10.5)	3 (2.1)	8 (5.6)	32.814**
	2년~3년 미만	78 (59.5)	38 (29.0)	4 (3.1)	2 (1.5)	9 (6.9)	
	3년~4년 미만	68 (59.1)	32 (27.8)	6 (5.2)	6 (5.2)	3 (2.6)	
	4년~5년 미만	65 (61.9)	26 (24.8)	5 (4.8)	4 (3.8)	5 (4.8)	
	5년 이상	40 (51.3)	20 (25.6)	14 (17.9)	1 (1.3)	3 (3.8)	
거주 지역	수도권	212 (57.8)	105 (28.6)	26 (7.1)	7 (1.9)	17 (4.6)	4.915

구분		보증금 마련 어려움	정보의 부족	집주인 (임대인)의 차별	중개업체의 차별	기타	χ^2
	비수도권	104 (50.7)	63 (30.7)	18 (8.8)	9 (4.4)	11 (5.4)	4.595
	서울	162 (57.9)	80 (28.6)	21 (7.5)	5 (1.8)	12 (4.3)	
	경기/생역시	93 (54.1)	52 (30.2)	13 (7.6)	5 (2.9)	9 (5.2)	
	타 시도	61 (50.8)	36 (30.0)	10 (8.3)	6 (5.0)	7 (5.8)	
학교 지역	수도권	220 (57.0)	109 (28.2)	28 (7.3)	10 (2.6)	19 (4.9)	1.656
	비수도권	96 (51.6)	59 (31.7)	16 (8.6)	6 (3.2)	9 (4.8)	
학위 과정	(전문) 학사	201 (56.9)	100 (28.3)	27 (7.6)	8 (2.3)	17 (4.8)	1.764
	대학원	115 (52.5)	68 (31.1)	17 (7.8)	8 (3.7)	11 (5.0)	
전공 계열	인문, 사회과학	176 (57.7)	81 (26.6)	25 (8.2)	7 (2.3)	16 (5.2)	6.534
	자연과학, 공학 등	125 (53.9)	75 (32.3)	15 (6.5)	8 (3.4)	9 (3.9)	
	예체능	15 (42.9)	12 (34.3)	4 (11.4)	1 (2.9)	3 (8.6)	

주: *p<0.05, **p<0.01, ***p<0.001

408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부표 2-53> 한 학기(6개월) 기준 주거비(월세, 공과금, 관리비 등) 부담 비용

(단위: 만 원)

구분		평균	중위값	표준오차	F
전체		232.4	200	4.362	-
성별	남성	233.8	200	6.608	0.088
	여성	231.2	200	5.813	
연령대 (만 나이)	19~24	225.3	200	5.769	2.217
	25~29	245.8	240	7.319	
	30세 이상	234.9	200	14.466	
국적	중국	254.9	240	6.156	19.465***
	베트남	188.9	180	6.505	
	기타 아시아	229.1	202	9.465	
한국 거주기간	2년 미만	228.4	200	8.157	1.123
	2년~3년 미만	237.6	200	10.300	
	3년~4년 미만	221.8	200	9.015	
	4년~5년 미만	229.7	200	9.473	
	5년 이상	252.9	235	12.869	
거주 지역	수도권	264.1	260	5.547	102.067***
	비수도권	179.0	170	5.701	
	서울	284.7	285	6.493	71.739***
	경기/광역시	202.2	180	6.525	
	타 시도	173.2	150	7.465	
학교 지역	수도권	259.2	250	5.340	77.623***
	비수도권	182.8	165	6.460	
학위 과정	(전문) 학사	221.9	200	5.353	9.804**
	대학원	250.0	240	7.360	
전공계열	인문, 사회과학	237.6	210	5.925	2.029
	자연과학, 공학 등	223.0	195	6.893	
	예체능	253.1	245	17.391	

주: *p<0.05, **p<0.01, ***p<0.001

〈부표 2-54〉 최근 1년간 주거비 지출의 경제적인 부담스러움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①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다	② 별로 부담스럽지 않았다	③ 보통 수준이다	④ 약간 부담스러 웠다	⑤ 매우 부담스러 웠다	평균	χ^2
전체		50 (7.1)	57 (8.1)	256 (36.6)	248 (35.4)	89 (12.7)	3.38	-
성별	남성	28 (9.0)	24 (7.7)	115 (37.1)	109 (35.2)	34 (11.0)	3.31	4.279
	여성	22 (5.6)	33 (8.5)	141 (36.2)	139 (35.6)	55 (14.1)	3.44	
연령대 (만 나이)	19~24	36 (8.6)	38 (9.1)	164 (39.1)	131 (31.3)	50 (11.9)	3.29	15.484
	25~29	11 (5.3)	11 (5.3)	66 (32.0)	86 (41.7)	32 (15.5)	3.57	
	30세 이상	3 (4.0)	8 (10.7)	26 (34.7)	31 (41.3)	7 (9.3)	3.41	
국적	중국	33 (9.5)	22 (6.3)	130 (37.4)	132 (37.9)	31 (8.9)	3.30	22.826**
	베트남	7 (4.2)	13 (7.8)	69 (41.6)	52 (31.3)	25 (15.1)	3.45	
	기타 아시아	10 (5.4)	22 (11.8)	57 (30.6)	64 (34.4)	33 (17.7)	3.47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20 (9.6)	20 (9.6)	79 (38.0)	66 (31.7)	23 (11.1)	3.25	10.784
	2년~3년 미만	9 (5.9)	11 (7.2)	57 (37.3)	58 (37.9)	18 (11.8)	3.42	
	3년~4년 미만	9 (6.8)	12 (9.0)	50 (37.6)	48 (36.1)	14 (10.5)	3.35	
	4년~5년 미만	9 (7.5)	8 (6.7)	40 (33.3)	42 (35.0)	21 (17.5)	3.48	
	5년 이상	3 (3.5)	6 (7.0)	30 (34.9)	34 (39.5)	13 (15.1)	3.56	
거주 지역	수도권	35 (8.0)	36 (8.2)	148 (33.7)	165 (37.6)	55 (12.5)	3.38	5.348

410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구분		①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다	② 별로 부담스럽지 않았다	③ 보통 수준이다	④ 약간 부담스러웠다	⑤ 매우 부담스러웠다	평균	χ^2
	비수도권	15 (5.7)	21 (8.0)	108 (41.4)	83 (31.8)	34 (13.0)	3.38	9.372
	서울	18 (5.8)	26 (8.4)	104 (33.7)	117 (37.9)	44 (14.2)	3.46	
	경기/광역시	23 (9.5)	18 (7.5)	91 (37.8)	86 (35.7)	23 (9.5)	3.28	
	타 시도	9 (6.0)	13 (8.7)	61 (40.7)	45 (30.0)	22 (14.7)	3.39	
학교 지역	수도권	33 (7.3)	36 (7.9)	163 (35.9)	164 (36.1)	58 (12.8)	3.39	0.438
	비수도권	17 (6.9)	21 (8.5)	93 (37.8)	84 (34.1)	31 (12.6)	3.37	
학위 과정	(전문) 학사	35 (8.0)	35 (8.0)	173 (39.3)	144 (32.7)	53 (12.0)	3.33	6.445
	대학원	15 (5.8)	22 (8.5)	83 (31.9)	104 (40.0)	36 (13.8)	3.48	
전공 계열	인문, 사회과학	21 (5.8)	24 (6.6)	140 (38.7)	127 (35.1)	50 (13.8)	3.44	19.138*
	자연과학, 공학 등	25 (8.4)	25 (8.4)	106 (35.8)	101 (34.1)	39 (13.2)	3.35	
	예체능	4 (9.5)	8 (19.0)	10 (23.8)	20 (47.6)	0 (0.0)	3.10	

주: *p<0.05, **p<0.01, ***p<0.001

〈부표 2-55〉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단위: 명, %, 점)

구분		①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다	② 별로 부담스럽지 않았다	③ 보통 수준이다	④ 약간 부담스러 웠다	⑤ 매우 부담스 러웠다	평균	χ^2
전체		19 (2.7)	65 (9.3)	361 (51.6)	215 (30.7)	40 (5.7)	3.27	-
성별	남성	10 (3.2)	35 (11.3)	171 (55.2)	76 (24.5)	18 (5.8)	3.18	11.302*
	여성	9 (2.3)	30 (7.7)	190 (48.7)	139 (35.6)	22 (5.6)	3.35	
연령대 (만 나이)	19~24	14 (3.3)	39 (9.3)	205 (48.9)	133 (31.7)	28 (6.7)	3.29	6.229
	25~29	4 (1.9)	18 (8.7)	118 (57.3)	58 (28.2)	8 (3.9)	3.23	
	30세 이상	1 (1.3)	8 (10.7)	38 (50.7)	24 (32.0)	4 (5.3)	3.29	
국적	중국	6 (1.7)	21 (6.0)	190 (54.6)	106 (30.5)	25 (7.2)	3.35	26.322***
	베트남	3 (1.8)	15 (9.0)	89 (53.6)	55 (33.1)	4 (2.4)	3.25	
	기타 아시아	10 (5.4)	29 (15.6)	82 (44.1)	54 (29.0)	11 (5.9)	3.15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3 (1.4)	21 (10.1)	105 (50.5)	72 (34.6)	7 (3.4)	3.28	23.008
	2년~3년 미만	5 (3.3)	17 (11.1)	80 (52.3)	42 (27.5)	9 (5.9)	3.22	
	3년~4년 미만	6 (4.5)	7 (5.3)	70 (52.6)	41 (30.8)	9 (6.8)	3.30	
	4년~5년 미만	2 (1.7)	9 (7.5)	60 (50.0)	35 (29.2)	14 (11.7)	3.42	
	5년 이상	3 (3.5)	11 (12.8)	46 (53.5)	25 (29.1)	1 (1.2)	3.12	
거주 지역	수도권	15 (3.4)	43 (9.8)	230 (52.4)	128 (29.2)	23 (5.2)	3.23	4.018

412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구분		①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다	② 별로 부담스럽지 않았다	③ 보통 수준이다	④ 약간 부담스러 웠다	⑤ 매우 부담스 러웠다	평균	χ^2
	비수도권	4 (1.5)	22 (8.4)	131 (50.2)	87 (33.3)	17 (6.5)	3.35	5.367
	서울	11 (3.6)	29 (9.4)	163 (52.8)	92 (29.8)	14 (4.5)	3.22	
	경기/광역시	5 (2.1)	26 (10.8)	120 (49.8)	73 (30.3)	17 (7.1)	3.29	
	타 시도	3 (2.0)	10 (6.7)	78 (52.0)	50 (33.3)	9 (6.0)	3.35	
학교 지역	수도권	13 (2.9)	43 (9.5)	241 (53.1)	133 (29.3)	24 (5.3)	3.25	1.988
	비수도권	6 (2.4)	22 (8.9)	120 (48.8)	82 (33.3)	16 (6.5)	3.33	
학위 과정	(전문) 학사	16 (3.6)	40 (9.1)	222 (50.5)	133 (30.2)	29 (6.6)	3.27	5.730
	대학원	3 (1.2)	25 (9.6)	139 (53.5)	82 (31.5)	11 (4.2)	3.28	
전공 계열	인문, 사회과학	10 (2.8)	31 (8.6)	193 (53.3)	108 (29.8)	20 (5.5)	3.27	9.811
	자연과학, 공학 등	9 (3.0)	33 (11.1)	150 (50.7)	88 (29.7)	16 (5.4)	3.23	
	예체능	0 (0.0)	1 (2.4)	18 (42.9)	19 (45.2)	4 (9.5)	3.62	

주: *p<0.05, **p<0.01, ***p<0.001

〈부표 2-56〉 전반적인 신체적 건강상태

(단위: 명, %, 점)

구분		① 매우 나쁨	② 약간 나쁨	③ 좋지도 나쁘지도 않음	④ 약간 좋음	⑤ 매우 좋음	평균	χ^2
전체		15 (2.1)	113 (16.1)	277 (39.6)	200 (28.6)	95 (13.6)	3.35	-
성별	남성	9 (2.9)	40 (12.9)	118 (38.1)	94 (30.3)	49 (15.8)	3.43	8.083
	여성	6 (1.5)	73 (18.7)	159 (40.8)	106 (27.2)	46 (11.8)	3.29	
연령대 (만 나이)	19~24	8 (1.9)	63 (15.0)	172 (41.1)	120 (28.6)	56 (13.4)	3.37	4.776
	25~29	6 (2.9)	34 (16.5)	82 (39.8)	57 (27.7)	27 (13.1)	3.32	
	30세 이상	1 (1.3)	16 (21.3)	23 (30.7)	23 (30.7)	12 (16.0)	3.39	
국적	중국	6 (1.7)	58 (16.7)	123 (35.3)	113 (32.5)	48 (13.8)	3.40	22.026**
	베트남	5 (3.0)	27 (16.3)	87 (52.4)	33 (19.9)	14 (8.4)	3.14	
	기타 아시아	4 (2.2)	28 (15.1)	67 (36.0)	54 (29.0)	33 (17.7)	3.45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1 (0.5)	33 (15.9)	68 (32.7)	74 (35.6)	32 (15.4)	3.50	17.857
	2년~3년 미만	6 (3.9)	24 (15.7)	66 (43.1)	41 (26.8)	16 (10.5)	3.24	
	3년~4년 미만	3 (2.3)	22 (16.5)	61 (45.9)	30 (22.6)	17 (12.8)	3.27	
	4년~5년 미만	2 (1.7)	20 (16.7)	49 (40.8)	31 (25.8)	18 (15.0)	3.36	
	5년 이상	3 (3.5)	14 (16.3)	33 (38.4)	24 (27.9)	12 (14.0)	3.33	
거주 지역	수도권	9 (2.1)	71 (16.2)	176 (40.1)	123 (28.0)	60 (13.7)	3.35	0.262

414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구분		① 매우 나쁨	② 약간 나쁨	③ 좋지도 나쁘지도 않음	④ 약간 좋음	⑤ 매우 좋음	평균	χ^2
	비수도권	6 (2.3)	42 (16.1)	101 (38.7)	77 (29.5)	35 (13.4)	3.36	2.375
	서울	4 (1.3)	50 (16.2)	126 (40.8)	86 (27.8)	43 (13.9)	3.37	
	경기/광역시	7 (2.9)	39 (16.2)	93 (38.6)	69 (28.6)	33 (13.7)	3.34	
	타 시도	4 (2.7)	24 (16.0)	58 (38.7)	45 (30.0)	19 (12.7)	3.34	
학교 지역	수도권	10 (2.2)	76 (16.7)	181 (39.9)	127 (28.0)	60 (13.2)	3.33	0.618
	비수도권	5 (2.0)	37 (15.0)	96 (39.0)	73 (29.7)	35 (14.2)	3.39	
학위 과정	(전문) 학사	11 (2.5)	56 (12.7)	192 (43.6)	123 (28.0)	58 (13.2)	3.37	14.503**
	대학원	4 (1.5)	57 (21.9)	85 (32.7)	77 (29.6)	37 (14.2)	3.33	
전공 계열	인문, 사회과학	7 (1.9)	56 (15.5)	159 (43.9)	98 (27.1)	42 (11.6)	3.31	7.526
	자연과학, 공학 등	7 (2.4)	49 (16.6)	104 (35.1)	88 (29.7)	48 (16.2)	3.41	
	예체능	1 (2.4)	8 (19.0)	14 (33.3)	14 (33.3)	5 (11.9)	3.3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부표 2-57〉 지난 1년간 참지 못할 만큼 아프거나 다쳤을 때 주된 대처방안

(단위: 명, %)

구분		병원에 갔다	병/의원 처방 없이 약국에 갔다	본국에서 가져온 약을 먹고 참았다	그냥 참았다	아픈 적이 없었다	기타	χ^2
전체		215 (30.7)	76 (10.9)	155 (22.1)	75 (10.7)	174 (24.9)	5 (0.7)	-
성별	남성	95 (30.6)	26 (8.4)	63 (20.3)	34 (11.0)	91 (29.4)	1 (0.3)	9.717
	여성	120 (30.8)	50 (12.8)	92 (23.6)	41 (10.5)	83 (21.3)	4 (1.0)	
연령대 (만 나이)	19~24	116 (27.7)	39 (9.3)	97 (23.2)	52 (12.4)	115 (27.4)	0 (0.0)	20.046*
	25~29	71 (34.5)	27 (13.1)	41 (19.9)	18 (8.7)	45 (21.8)	4 (1.9)	
	30세 이상	28 (37.3)	10 (13.3)	17 (22.7)	5 (6.7)	14 (18.7)	1 (1.3)	
국적	중국	105 (30.2)	34 (9.8)	79 (22.7)	20 (5.7)	107 (30.7)	3 (0.9)	47.338***
	베트남	47 (28.3)	27 (16.3)	27 (16.3)	35 (21.1)	30 (18.1)	0 (0.0)	
	기타 아시아	63 (33.9)	15 (8.1)	49 (26.3)	20 (10.8)	37 (19.9)	2 (1.1)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47 (22.6)	12 (5.8)	55 (26.4)	20 (9.6)	72 (34.6)	2 (1.0)	45.318***
	2년~3년 미만	50 (32.7)	15 (9.8)	40 (26.1)	19 (12.4)	28 (18.3)	1 (0.7)	
	3년~4년 미만	40 (30.1)	19 (14.3)	26 (19.5)	15 (11.3)	31 (23.3)	2 (1.5)	
	4년~5년 미만	43 (35.8)	13 (10.8)	22 (18.3)	15 (12.5)	27 (22.5)	0 (0.0)	
	5년 이상	35 (40.7)	17 (19.8)	12 (14.0)	6 (7.0)	16 (18.6)	0 (0.0)	

416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구분		병원에 갔다	병/의원 처방 없이 약국에 갔다	본국에서 가져온 약을 먹고 참았다	그냥 참았다	아픈 적이 없었다	기타	χ^2
거주 지역	수도권	127 (28.9)	49 (11.2)	93 (21.2)	54 (12.3)	113 (25.7)	3 (0.7)	4.961
	비수도권	88 (33.7)	27 (10.3)	62 (23.8)	21 (8.0)	61 (23.4)	2 (0.8)	
	서울	88 (28.5)	30 (9.7)	66 (21.4)	39 (12.6)	84 (27.2)	2 (0.6)	8.522
	경기/광역시	79 (32.8)	25 (10.4)	53 (22.0)	20 (8.3)	62 (25.7)	2 (0.8)	
	타 시도	48 (32.0)	21 (14.0)	36 (24.0)	16 (10.7)	28 (18.7)	1 (0.7)	
학교 지역	수도권	137 (30.2)	50 (11.0)	95 (20.9)	53 (11.7)	116 (25.6)	3 (0.7)	2.428
	비수도권	78 (31.7)	26 (10.6)	60 (24.4)	22 (8.9)	58 (23.6)	2 (0.8)	
학위 과정	(전문) 학사	118 (26.8)	40 (9.1)	100 (22.7)	54 (12.3)	127 (28.9)	1 (0.2)	23.710***
	대학원	97 (37.3)	36 (13.8)	55 (21.2)	21 (8.1)	47 (18.1)	4 (1.5)	
전공 계열	인문, 사회과학	118 (32.6)	42 (11.6)	75 (20.7)	38 (10.5)	87 (24.0)	2 (0.6)	17.417
	자연과학, 공학 등	83 (28.0)	27 (9.1)	74 (25.0)	34 (11.5)	77 (26.0)	1 (0.3)	
	예체능	14 (33.3)	7 (16.7)	6 (14.3)	3 (7.1)	10 (23.8)	2 (4.8)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부표 2-58〉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	가까운 데 병원이 없어서	치료비가 부담스러 워서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 몰라서	이름조차 복잡해서	시간이 없어서	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돼서	
전체	113 (36.9)	20 (6.5)	183 (59.8)	110 (35.9)	75 (24.5)	33 (10.8)	8 (2.6)	
성별	남성	50 (40.7)	12 (9.8)	72 (58.5)	39 (31.7)	27 (22.0)	12 (9.8)	3 (2.4)
	여성	63 (34.4)	8 (4.4)	111 (60.7)	71 (38.8)	48 (26.2)	21 (11.5)	5 (2.7)
연령대 (만 나이)	19~24	67 (35.6)	14 (7.4)	105 (55.9)	71 (37.8)	42 (22.3)	17 (9.0)	7 (3.7)
	25~29	33 (38.4)	4 (4.7)	60 (69.8)	30 (34.9)	27 (31.4)	13 (15.1)	0 (0.0)
	30세 이상	13 (40.6)	2 (6.3)	18 (56.3)	9 (28.1)	6 (18.8)	3 (9.4)	1 (3.1)
국적	중국	53 (39.8)	8 (6.0)	84 (63.2)	52 (39.1)	57 (42.9)	16 (12.0)	1 (0.8)
	베트남	34 (38.2)	6 (6.7)	43 (48.3)	26 (29.2)	9 (10.1)	11 (12.4)	5 (5.6)
	기타 아시아	26 (31.0)	6 (7.1)	56 (66.7)	32 (38.1)	9 (10.7)	6 (7.1)	2 (2.4)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43 (49.4)	3 (3.4)	52 (59.8)	35 (40.2)	31 (35.6)	5 (5.7)	1 (1.1)
	2년~3년 미만	30 (40.5)	4 (5.4)	47 (63.5)	26 (35.1)	14 (18.9)	8 (10.8)	1 (1.4)
	3년~4년 미만	20 (33.3)	3 (5.0)	34 (56.7)	20 (33.3)	9 (15.0)	9 (15.0)	3 (5.0)
	4년~5년 미만	14 (28.0)	6 (12.0)	29 (58.0)	20 (40.0)	14 (28.0)	6 (12.0)	2 (4.0)
	5년 이상	6 (17.1)	4 (11.4)	21 (60.0)	9 (25.7)	7 (20.0)	5 (14.3)	1 (2.9)

418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구분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	가까운 데 병원이 없어서	치료비가 부담스러 워서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 몰라서	이용할 수가 복잡해서	시간이 없어서	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돼서
거주 지역	수도권	72 (36.7)	10 (5.1)	120 (61.2)	76 (38.8)	45 (23.0)	20 (10.2)	6 (3.1)
	비수도권	41 (37.3)	10 (9.1)	63 (57.3)	34 (30.9)	30 (27.3)	13 (11.8)	2 (1.8)
	서울	47 (34.8)	6 (4.4)	86 (63.7)	46 (34.1)	32 (23.7)	14 (10.4)	5 (3.7)
	경기/광역시	38 (38.8)	6 (6.1)	60 (61.2)	43 (43.9)	26 (26.5)	12 (12.2)	1 (1.0)
	타 시도	28 (38.4)	8 (11.0)	37 (50.7)	21 (28.8)	17 (23.3)	7 (9.6)	2 (2.7)
학교 지역	수도권	75 (37.9)	11 (5.6)	121 (61.1)	75 (37.9)	49 (24.7)	21 (10.6)	6 (3.0)
	비수도권	38 (35.2)	9 (8.3)	62 (57.4)	35 (32.4)	26 (24.1)	12 (11.1)	2 (1.9)
학위 과정	(전문) 학사	67 (34.5)	14 (7.2)	113 (58.2)	71 (36.6)	51 (26.3)	23 (11.9)	5 (2.6)
	대학원	46 (41.1)	6 (5.4)	70 (62.5)	39 (34.8)	24 (21.4)	10 (8.9)	3 (2.7)
전공 계열	인문, 사회과학	54 (34.8)	14 (9.0)	93 (60.0)	53 (34.2)	40 (25.8)	14 (9.0)	2 (1.3)
	자연과학, 공학 등	54 (40.0)	6 (4.4)	82 (60.7)	48 (35.6)	28 (20.7)	17 (12.6)	6 (4.4)
	예체능	5 (31.3)	0 (0.0)	8 (50.0)	9 (56.3)	7 (43.8)	2 (12.5)	0 (0.0)

주: *p<0.05, **p<0.01, ***p<0.001

〈부표 2-59〉 한국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점)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대체로 불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평균	χ^2
전체		10 (4.7)	14 (6.5)	78 (36.3)	84 (39.1)	29 (13.5)	3.50	-
성별	남성	7 (7.4)	11 (11.6)	30 (31.6)	30 (31.6)	17 (17.9)	3.41	15.345**
	여성	3 (2.5)	3 (2.5)	48 (40.0)	54 (45.0)	12 (10.0)	3.58	
연령대 (만 나이)	19~24	6 (5.2)	5 (4.3)	40 (34.5)	50 (43.1)	15 (12.9)	3.54	6.583
	25~29	4 (5.6)	7 (9.9)	28 (39.4)	24 (33.8)	8 (11.3)	3.35	
	30세 이상	0 (0.0)	2 (7.1)	10 (35.7)	10 (35.7)	6 (21.4)	3.71	
국적	중국	0 (0.0)	2 (1.9)	48 (45.7)	47 (44.8)	8 (7.6)	3.58	37.082** *
	베트남	5 (10.6)	2 (4.3)	17 (36.2)	16 (34.0)	7 (14.9)	3.38	
	기타 아시아	5 (7.9)	10 (15.9)	13 (20.6)	21 (33.3)	14 (22.2)	3.46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6 (12.8)	3 (6.4)	15 (31.9)	15 (31.9)	8 (17.0)	3.34	14.955
	2년~3년 미만	1 (2.0)	5 (10.0)	17 (34.0)	20 (40.0)	7 (14.0)	3.54	
	3년~4년 미만	1 (2.5)	2 (5.0)	19 (47.5)	14 (35.0)	4 (10.0)	3.45	
	4년~5년 미만	2 (4.7)	2 (4.7)	15 (34.9)	19 (44.2)	5 (11.6)	3.53	
	5년 이상	0 (0.0)	2 (5.7)	12 (34.3)	16 (45.7)	5 (14.3)	3.69	
거주 지역	수도권	6 (4.7)	6 (4.7)	50 (39.4)	54 (42.5)	11 (8.7)	3.46	8.648

420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대체로 불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평균	χ^2
	비수도권	4 (4.5)	8 (9.1)	28 (31.8)	30 (34.1)	18 (20.5)	3.57	11.062
	서울	4 (4.5)	2 (2.3)	37 (42.0)	37 (42.0)	8 (9.1)	3.49	
	경기/광역시	4 (5.1)	8 (10.1)	28 (35.4)	29 (36.7)	10 (12.7)	3.42	
	타 시도	2 (4.2)	4 (8.3)	13 (27.1)	18 (37.5)	11 (22.9)	3.67	
학교 지역	수도권	7 (5.1)	7 (5.1)	54 (39.4)	56 (40.9)	13 (9.5)	3.45	7.128
	비수도권	3 (3.8)	7 (9.0)	24 (30.8)	28 (35.9)	16 (20.5)	3.60	
학위 과정	(전문) 학사	6 (5.1)	5 (4.2)	41 (34.7)	50 (42.4)	16 (13.6)	3.55	3.084
	대학원	4 (4.1)	9 (9.3)	37 (38.1)	34 (35.1)	13 (13.4)	3.44	
전공 계열	인문, 사회과학	4 (3.4)	5 (4.2)	42 (35.6)	56 (47.5)	11 (9.3)	3.55	17.887*
	자연과학, 공학 등	5 (6.0)	9 (10.8)	30 (36.1)	26 (31.3)	13 (15.7)	3.40	
	예체능	1 (7.1)	0 (0.0)	6 (42.9)	2 (14.3)	5 (35.7)	3.71	

주: *p<0.05, **p<0.01, ***p<0.001

〈부표 2-60〉 한국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데 힘든 점(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한국어 소통이 어렵다	거리가 멀다	비용이 많이 든다	이용절차가 복잡하다	의료 체계의 문화적 차이가 크다	의료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
전체		120 (55.8)	16 (7.4)	116 (54.0)	33 (15.3)	34 (15.8)	18 (8.4)
성별	남성	58 (61.1)	4 (4.2)	60 (63.2)	15 (15.8)	13 (13.7)	11 (11.6)
	여성	62 (51.7)	12 (10.0)	56 (46.7)	18 (15.0)	21 (17.5)	7 (5.8)
연령대 (만 나이)	19~24	59 (50.9)	11 (9.5)	59 (50.9)	21 (18.1)	20 (17.2)	5 (4.3)
	25~29	40 (56.3)	4 (5.6)	40 (56.3)	10 (14.1)	11 (15.5)	9 (12.7)
	30세 이상	21 (75.0)	1 (3.6)	17 (60.7)	2 (7.1)	3 (10.7)	4 (14.3)
국적	중국	52 (49.5)	10 (9.5)	61 (58.1)	20 (19.0)	25 (23.8)	8 (7.6)
	베트남	32 (68.1)	4 (8.5)	15 (31.9)	3 (6.4)	4 (8.5)	5 (10.6)
	기타 아시아	36 (57.1)	2 (3.2)	40 (63.5)	10 (15.9)	5 (7.9)	5 (7.9)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29 (61.7)	4 (8.5)	24 (51.1)	11 (23.4)	5 (10.6)	4 (8.5)
	2년~3년 미만	29 (58.0)	2 (4.0)	29 (58.0)	4 (8.0)	10 (20.0)	3 (6.0)
	3년~4년 미만	26 (65.0)	4 (10.0)	25 (62.5)	7 (17.5)	7 (17.5)	4 (10.0)
	4년~5년 미만	21 (48.8)	2 (4.7)	21 (48.8)	4 (9.3)	8 (18.6)	5 (11.6)
	5년 이상	15 (42.9)	4 (11.4)	17 (48.6)	7 (20.0)	4 (11.4)	2 (5.7)

422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구분		한국어 소통이 어렵다	거리가 멀다	비용이 많이 든다	이용절차가 복잡하다	의료 체계의 문화적 차이가 크다	의료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
거주 지역	수도권	72 (56.7)	8 (6.3)	72 (56.7)	19 (15.0)	18 (14.2)	12 (9.4)
	비수도권	48 (54.5)	8 (9.1)	44 (50.0)	14 (15.9)	16 (18.2)	6 (6.8)
	서울	51 (58.0)	5 (5.7)	55 (62.5)	14 (15.9)	11 (12.5)	9 (10.2)
	경기/ 광역시	45 (57.0)	7 (8.9)	39 (49.4)	14 (17.7)	15 (19.0)	7 (8.9)
	타 시도	24 (50.0)	4 (8.3)	22 (45.8)	5 (10.4)	8 (16.7)	2 (4.2)
학교 지역	수도권	75 (54.7)	8 (5.8)	79 (57.7)	23 (16.8)	21 (15.3)	13 (9.5)
	비수도권	45 (57.7)	8 (10.3)	37 (47.4)	10 (12.8)	13 (16.7)	5 (6.4)
학위 과정	(전문) 학사	63 (53.4)	9 (7.6)	62 (52.5)	20 (16.9)	20 (16.9)	7 (5.9)
	대학원	57 (58.8)	7 (7.2)	54 (55.7)	13 (13.4)	14 (14.4)	11 (11.3)
전공 계열	인문, 사회과학	61 (51.7)	9 (7.6)	65 (55.1)	20 (16.9)	21 (17.8)	10 (8.5)
	자연과학, 공학 등	53 (63.9)	5 (6.0)	45 (54.2)	9 (10.8)	9 (10.8)	7 (8.4)
	예체능	6 (42.9)	2 (14.3)	6 (42.9)	4 (28.6)	4 (28.6)	1 (7.1)

주: *p<0.05, **p<0.01, ***p<0.001

〈부표 2-61〉 한국에서 건강보험 가입여부

(단위: 명, %)

구분		그렇다		아니다		χ^2
전체		684	(97.7)	16	(2.3)	-
성별	남성	305	(98.4)	5	(1.6)	1.128
	여성	379	(97.2)	11	(2.8)	
연령대 (만 나이)	19~24	406	(96.9)	13	(3.1)	3.641
	25~29	203	(98.5)	3	(1.5)	
	30세 이상	75	(100.0)	0	(0.0)	
국적	중국	340	(97.7)	8	(2.3)	7.266*
	베트남	166	(100.0)	0	(0.0)	
	기타 아시아	178	(95.7)	8	(4.3)	
한국 거주기간	2년 미만	204	(98.1)	4	(1.9)	2.830
	2년~3년 미만	147	(96.1)	6	(3.9)	
	3년~4년 미만	131	(98.5)	2	(1.5)	
	4년~5년 미만	117	(97.5)	3	(2.5)	
	5년 이상	85	(98.8)	1	(1.2)	
거주 지역	수도권	430	(97.9)	9	(2.1)	0.293
	비수도권	254	(97.3)	7	(2.7)	
	서울	302	(97.7)	7	(2.3)	0.100
	경기/광역시	235	(97.5)	6	(2.5)	
	타 시도	147	(98.0)	3	(2.0)	
학교 지역	수도권	445	(98.0)	9	(2.0)	0.532
	비수도권	239	(97.2)	7	(2.8)	
학위 과정	(전문) 학사	427	(97.0)	13	(3.0)	2.373
	대학원	257	(98.8)	3	(1.2)	
전공계열	인문, 사회과학	355	(98.1)	7	(1.9)	1.938
	자연과학, 공학 등	287	(97.0)	9	(3.0)	
	예체능	42	(100.0)	0	(0.0)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424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부표 2-62〉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구분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국민건강보험이 있는지 몰라서	본국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곧 유학 생활이 종료될 거라서	보험 가입 절차가 복잡해서	병원에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서	x ²
전체		6 (37.5)	3 (18.8)	3 (18.8)	2 (12.5)	1 (6.3)	1 (6.3)	-
성별	남성	2 (40.0)	1 (20.0)	0 (0.0)	1 (20.0)	1 (20.0)	0 (0.0)	4.364
	여성	4 (36.4)	2 (18.2)	3 (27.3)	1 (9.1)	0 (0.0)	1 (9.1)	
연령대 (만 나이)	19~24	6 (46.2)	2 (15.4)	3 (23.1)	0 (0.0)	1 (7.7)	1 (7.7)	11.624*
	25~29	0 (0.0)	1 (33.3)	0 (0.0)	2 (66.7)	0 (0.0)	0 (0.0)	
	30세 이상	-	-	-	-	-	-	
국적	중국	3 (37.5)	2 (25.0)	0 (0.0)	1 (12.5)	1 (12.5)	1 (12.5)	5.333
	베트남	-	-	-	-	-	-	
	기타 아시아	3 (37.5)	1 (12.5)	3 (37.5)	1 (12.5)	0 (0.0)	0 (0.0)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2 (50.0)	0 (0.0)	0 (0.0)	0 (0.0)	1 (25.0)	1 (25.0)	17.778
	2년~3년 미만	1 (16.7)	2 (33.3)	2 (33.3)	1 (16.7)	0 (0.0)	0 (0.0)	
	3년~4년 미만	0 (0.0)	1 (50.0)	1 (50.0)	0 (0.0)	0 (0.0)	0 (0.0)	
	4년~5년 미만	2 (66.7)	0 (0.0)	0 (0.0)	1 (33.3)	0 (0.0)	0 (0.0)	
	5년 이상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구분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다해서	국민건강 보험이 있는지 몰라서	본국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곧 유학 생활이 종료될 거라서	보험 가입 절차가 복잡해서	병원에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서	χ^2
거주 지역	수도권	4 (44.4)	3 (33.3)	0 (0.0)	2 (22.2)	0 (0.0)	0 (0.0)	10.582
	비수도권	2 (28.6)	0 (0.0)	3 (42.9)	0 (0.0)	1 (14.3)	1 (14.3)	
	서울	3 (42.9)	2 (28.6)	0 (0.0)	2 (28.6)	0 (0.0)	0 (0.0)	17.270
	경기/광역시	2 (33.3)	1 (16.7)	3 (50.0)	0 (0.0)	0 (0.0)	0 (0.0)	
	타 시도	1 (33.3)	0 (0.0)	0 (0.0)	0 (0.0)	1 (33.3)	1 (33.3)	
학교 지역	수도권	4 (44.4)	3 (33.3)	0 (0.0)	2 (22.2)	0 (0.0)	0 (0.0)	10.582
	비수도권	2 (28.6)	0 (0.0)	3 (42.9)	0 (0.0)	1 (14.3)	1 (14.3)	
학위 과정	(전문) 학사	5 (38.5)	3 (23.1)	3 (23.1)	0 (0.0)	1 (7.7)	1 (7.7)	10.530
	대학원	1 (33.3)	0 (0.0)	0 (0.0)	2 (66.7)	0 (0.0)	0 (0.0)	
전공계 열	인문, 사회과학	2 (28.6)	1 (14.3)	2 (28.6)	2 (28.6)	0 (0.0)	0 (0.0)	5.164
	자연과학, 공학 등	4 (44.4)	2 (22.2)	1 (11.1)	0 (0.0)	1 (11.1)	1 (11.1)	
	예체능	-	-	-	-	-	-	

주: *p<0.05, **p<0.01, ***p<0.001

426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부표 2-63> 국민건강보험이 본인에게 필요한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평균	x ²
전체		62 (8.9)	108 (15.4)	235 (33.6)	169 (24.1)	126 (18.0)	3.27	-
성별	남성	34 (11.0)	45 (14.5)	105 (33.9)	61 (19.7)	65 (21.0)	3.25	10.432*
	여성	28 (7.2)	63 (16.2)	130 (33.3)	108 (27.7)	61 (15.6)	3.28	
연령대 (만 나이)	19~24	37 (8.8)	66 (15.8)	152 (36.3)	99 (23.6)	65 (15.5)	3.21	13.939
	25~29	18 (8.7)	38 (18.4)	60 (29.1)	47 (22.8)	43 (20.9)	3.29	
	30세 이상	7 (9.3)	4 (5.3)	23 (30.7)	23 (30.7)	18 (24.0)	3.55	
국적	중국	41 (11.8)	53 (15.2)	132 (37.9)	80 (23.0)	42 (12.1)	3.08	27.875****
	베트남	8 (4.8)	26 (15.7)	56 (33.7)	40 (24.1)	36 (21.7)	3.42	
	기타 아시아	13 (7.0)	29 (15.6)	47 (25.3)	49 (26.3)	48 (25.8)	3.48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15 (7.2)	33 (15.9)	84 (40.4)	41 (19.7)	35 (16.8)	3.23	22.821
	2년~3년 미만	10 (6.5)	27 (17.6)	43 (28.1)	43 (28.1)	30 (19.6)	3.37	
	3년~4년 미만	15 (11.3)	17 (12.8)	51 (38.3)	35 (26.3)	15 (11.3)	3.14	
	4년~5년 미만	12 (10.0)	20 (16.7)	29 (24.2)	32 (26.7)	27 (22.5)	3.35	
	5년 이상	10 (11.6)	11 (12.8)	28 (32.6)	18 (20.9)	19 (22.1)	3.29	
거주 지역	수도권	39 (8.9)	77 (17.5)	158 (36.0)	99 (22.6)	66 (15.0)	3.17	12.445*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평균	χ^2
	비수도권	23 (8.8)	31 (11.9)	77 (29.5)	70 (26.8)	60 (23.0)	3.43	17.439*
	서울	36 (11.7)	51 (16.5)	109 (35.3)	69 (22.3)	44 (14.2)	3.11	
	경기/ 광역시	14 (5.8)	42 (17.4)	80 (33.2)	61 (25.3)	44 (18.3)	3.33	
	타 시도	12 (8.0)	15 (10.0)	46 (30.7)	39 (26.0)	38 (25.3)	3.51	
학교 지역	수도권	42 (9.3)	76 (16.7)	155 (34.1)	108 (23.8)	73 (16.1)	3.21	4.506
	비수도권	20 (8.1)	32 (13.0)	80 (32.5)	61 (24.8)	53 (21.5)	3.39	
학위 과정	(전문) 학사	42 (9.5)	74 (16.8)	156 (35.5)	99 (22.5)	69 (15.7)	3.18	8.229
	대학원	20 (7.7)	34 (13.1)	79 (30.4)	70 (26.9)	57 (21.9)	3.42	
전공 계열	인문, 사회 과학	31 (8.6)	57 (15.7)	131 (36.2)	84 (23.2)	59 (16.3)	3.23	5.037
	자연과학, 공학 등	29 (9.8)	46 (15.5)	90 (30.4)	74 (25.0)	57 (19.3)	3.28	
	예체능	2 (4.8)	5 (11.9)	14 (33.3)	11 (26.2)	10 (23.8)	3.52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428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부표 2-64> 현재 및 향후 지불하는 건강보험료의 부담스러움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① 전혀 부담되지 않음	② 거의 부담되지 않음	③ 보통	④ 다소 부담됨	⑤ 많이 부담됨	평균	χ^2
전체		60 (8.6)	21 (3.0)	89 (12.7)	195 (27.9)	335 (47.9)	4.03	-
성별	남성	27 (8.7)	12 (3.9)	45 (14.5)	80 (25.8)	146 (47.1)	3.99	3.747
	여성	33 (8.5)	9 (2.3)	44 (11.3)	115 (29.5)	189 (48.5)	4.07	
연령대 (만 나이)	19~24	40 (9.5)	14 (3.3)	49 (11.7)	107 (25.5)	209 (49.9)	4.03	10.975
	25~29	14 (6.8)	7 (3.4)	28 (13.6)	59 (28.6)	98 (47.6)	4.07	
	30세 이상	6 (8.0)	0 (0.0)	12 (16.0)	29 (38.7)	28 (37.3)	3.97	
국적	중국	54 (15.5)	4 (1.1)	40 (11.5)	100 (28.7)	150 (43.1)	3.83	54.334***
	베트남	3 (1.8)	10 (6.0)	23 (13.9)	39 (23.5)	91 (54.8)	4.23	
	기타 아시아	3 (1.6)	7 (3.8)	26 (14.0)	56 (30.1)	94 (50.5)	4.24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25 (12.0)	5 (2.4)	23 (11.1)	61 (29.3)	94 (45.2)	3.93	16.258
	2년~3년 미만	10 (6.5)	7 (4.6)	19 (12.4)	49 (32.0)	68 (44.4)	4.03	
	3년~4년 미만	10 (7.5)	3 (2.3)	19 (14.3)	34 (25.6)	67 (50.4)	4.09	
	4년~5년 미만	7 (5.8)	6 (5.0)	14 (11.7)	29 (24.2)	64 (53.3)	4.14	
	5년 이상	8 (9.3)	0 (0.0)	14 (16.3)	22 (25.6)	42 (48.8)	4.05	
거주 지역	수도권	41 (9.3)	13 (3.0)	54 (12.3)	120 (27.3)	211 (48.1)	4.02	1.100

구분		① 전혀 부담되지 않음	② 거의 부담되지 않음	③ 보통	④ 다소 부담됨	⑤ 많이 부담됨	평균	χ^2
	비수도권	19 (7.3)	8 (3.1)	35 (13.4)	75 (28.7)	124 (47.5)	4.06	5.135
	서울	33 (10.7)	9 (2.9)	37 (12.0)	79 (25.6)	151 (48.9)	3.99	
	경기/ 광역시	18 (7.5)	8 (3.3)	30 (12.4)	73 (30.3)	112 (46.5)	4.05	
	타 시도	9 (6.0)	4 (2.7)	22 (14.7)	43 (28.7)	72 (48.0)	4.10	
학교 지역	수도권	43 (9.5)	15 (3.3)	58 (12.8)	126 (27.8)	212 (46.7)	3.99	1.991
	비수도권	17 (6.9)	6 (2.4)	31 (12.6)	69 (28.0)	123 (50.0)	4.12	
학위 과정	(전문) 학사	38 (8.6)	14 (3.2)	50 (11.4)	111 (25.2)	227 (51.6)	4.08	8.228
	대학원	22 (8.5)	7 (2.7)	39 (15.0)	84 (32.3)	108 (41.5)	3.96	
전공 계열	인문, 사회과학	37 (10.2)	8 (2.2)	39 (10.8)	98 (27.1)	180 (49.7)	4.04	16.559*
	자연과학, 공학 등	17 (5.7)	12 (4.1)	49 (16.6)	83 (28.0)	135 (45.6)	4.04	
	예체능	6 (14.3)	1 (2.4)	1 (2.4)	14 (33.3)	20 (47.6)	3.98	

주: * $p<0.05$, ** $p<0.01$, *** $p<0.001$

430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부표 2-65〉 지난 1주일간 경험 빈도-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단위: 명, %)

구분		극히 드물다 (일주일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일주일 1~2일)	종종 있었다 (일주일 3~4일)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 5일 이상)	χ^2
전체		301 (43.0)	293 (41.9)	83 (11.9)	23 (3.3)	-
성별	남성	141 (45.5)	123 (39.7)	36 (11.6)	10 (3.2)	1.464
	여성	160 (41.0)	170 (43.6)	47 (12.1)	13 (3.3)	
연령대 (만 나이)	19~24	173 (41.3)	178 (42.5)	54 (12.9)	14 (3.3)	5.507
	25~29	94 (45.6)	81 (39.3)	22 (10.7)	9 (4.4)	
	30세 이상	34 (45.3)	34 (45.3)	7 (9.3)	0 (0.0)	
국적	중국	152 (43.7)	149 (42.8)	38 (10.9)	9 (2.6)	21.601**
	베트남	51 (30.7)	78 (47.0)	27 (16.3)	10 (6.0)	
	기타 아시아	98 (52.7)	66 (35.5)	18 (9.7)	4 (2.2)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98 (47.1)	79 (38.0)	27 (13.0)	4 (1.9)	11.266
	2년~3년 미만	58 (37.9)	68 (44.4)	22 (14.4)	5 (3.3)	
	3년~4년 미만	55 (41.4)	64 (48.1)	10 (7.5)	4 (3.0)	
	4년~5년 미만	49 (40.8)	51 (42.5)	14 (11.7)	6 (5.0)	
	5년 이상	41 (47.7)	31 (36.0)	10 (11.6)	4 (4.7)	
거주 지역	수도권	201 (45.8)	177 (40.3)	48 (10.9)	13 (3.0)	4.014
	비수도권	100 (38.3)	116 (44.4)	35 (13.4)	10 (3.8)	
	서울	140 (45.3)	124 (40.1)	32 (10.4)	13 (4.2)	12.347
	경기/광역시	113 (46.9)	92 (38.2)	30 (12.4)	6 (2.5)	
	타 시도	48 (32.0)	77 (51.3)	21 (14.0)	4 (2.7)	
학교 지역	수도권	201 (44.3)	189 (41.6)	48 (10.6)	16 (3.5)	2.524
	비수도권	100 (40.7)	104 (42.3)	35 (14.2)	7 (2.8)	
학위 과정	(전문) 학사	190 (43.2)	184 (41.8)	52 (11.8)	14 (3.2)	0.050
	대학원	111 (42.7)	109 (41.9)	31 (11.9)	9 (3.5)	
전공 계열	인문, 사회과학	161 (44.5)	148 (40.9)	38 (10.5)	15 (4.1)	6.091
	자연과학, 공학 등	124 (41.9)	123 (41.6)	42 (14.2)	7 (2.4)	
	예체능	16 (38.1)	22 (52.4)	3 (7.1)	1 (2.4)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부표 2-66〉 지난 1주일간 경험 빈도-2) 비교적 잘 지냈다

(단위: 명, %)

구분		극히 드물다 (일주일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일주일 1~2일)	종종 있었다 (일주일 3~4일)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 5일 이상)	χ^2
전체		69 (9.9)	217 (31.0)	276 (39.4)	138 (19.7)	-
성별	남성	29 (9.4)	92 (29.7)	131 (42.3)	58 (18.7)	1.871
	여성	40 (10.3)	125 (32.1)	145 (37.2)	80 (20.5)	
연령대 (만 나이)	19~24	43 (10.3)	125 (29.8)	170 (40.6)	81 (19.3)	4.062
	25~29	22 (10.7)	67 (32.5)	79 (38.3)	38 (18.4)	
	30세 이상	4 (5.3)	25 (33.3)	27 (36.0)	19 (25.3)	
국적	중국	28 (8.0)	101 (29.0)	154 (44.3)	65 (18.7)	17.885**
	베트남	27 (16.3)	59 (35.5)	50 (30.1)	30 (18.1)	
	기타 아시아	14 (7.5)	57 (30.6)	72 (38.7)	43 (23.1)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20 (9.6)	63 (30.3)	86 (41.3)	39 (18.8)	3.961
	2년~3년 미만	12 (7.8)	51 (33.3)	59 (38.6)	31 (20.3)	
	3년~4년 미만	15 (11.3)	43 (32.3)	53 (39.8)	22 (16.5)	
	4년~5년 미만	13 (10.8)	36 (30.0)	46 (38.3)	25 (20.8)	
	5년 이상	9 (10.5)	24 (27.9)	32 (37.2)	21 (24.4)	
거주 지역	수도권	44 (10.0)	137 (31.2)	176 (40.1)	82 (18.7)	0.821
	비수도권	25 (9.6)	80 (30.7)	100 (38.3)	56 (21.5)	
	서울	25 (8.1)	90 (29.1)	133 (43.0)	61 (19.7)	6.072
	경기/광역시	31 (12.9)	77 (32.0)	87 (36.1)	46 (19.1)	
	타 시도	13 (8.7)	50 (33.3)	56 (37.3)	31 (20.7)	
학교 지역	수도권	47 (10.4)	146 (32.2)	176 (38.8)	85 (18.7)	1.669
	비수도권	22 (8.9)	71 (28.9)	100 (40.7)	53 (21.5)	
학위 과정	(전문) 학사	43 (9.8)	139 (31.6)	177 (40.2)	81 (18.4)	1.357
	대학원	26 (10.0)	78 (30.0)	99 (38.1)	57 (21.9)	
전공 계열	인문, 사회과학	32 (8.8)	111 (30.7)	143 (39.5)	76 (21.0)	5.969
	자연과학, 공학 등	36 (12.2)	92 (31.1)	113 (38.2)	55 (18.6)	
	예체능	1 (2.4)	14 (33.3)	20 (47.6)	7 (16.7)	

주: *p<0.05, **p<0.01, ***p<0.001

432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부표 2-67> 지난 1주일간 경험 빈도-3) 상당히 우울했다

(단위: 명, %)

구분		극히 드물다 (일주일애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일주일애 1~2일)	종종 있었다 (일주일애 3~4일)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애 5일 이상)	χ^2
전체		247 (35.3)	288 (41.1)	127 (18.1)	38 (5.4)	-
성별	남성	116 (37.4)	122 (39.4)	54 (17.4)	18 (5.8)	1.457
	여성	131 (33.6)	166 (42.6)	73 (18.7)	20 (5.1)	
연령대 (만 나이)	19~24	143 (34.1)	166 (39.6)	83 (19.8)	27 (6.4)	8.065
	25~29	75 (36.4)	85 (41.3)	37 (18.0)	9 (4.4)	
	30세 이상	29 (38.7)	37 (49.3)	7 (9.3)	2 (2.7)	
국적	중국	116 (33.3)	159 (45.7)	57 (16.4)	16 (4.6)	7.978
	베트남	56 (33.7)	64 (38.6)	35 (21.1)	11 (6.6)	
	기타 아시아	75 (40.3)	65 (34.9)	35 (18.8)	11 (5.9)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77 (37.0)	92 (44.2)	31 (14.9)	8 (3.8)	11.498
	2년 ~ 3년 미만	46 (30.1)	67 (43.8)	31 (20.3)	9 (5.9)	
	3년 ~ 4년 미만	50 (37.6)	49 (36.8)	27 (20.3)	7 (5.3)	
	4년 ~ 5년 미만	43 (35.8)	44 (36.7)	27 (22.5)	6 (5.0)	
	5년 이상	31 (36.0)	36 (41.9)	11 (12.8)	8 (9.3)	
거주 지역	수도권	150 (34.2)	182 (41.5)	80 (18.2)	27 (6.2)	1.579
	비수도권	97 (37.2)	106 (40.6)	47 (18.0)	11 (4.2)	
	서울	102 (33.0)	127 (41.1)	56 (18.1)	24 (7.8)	10.285
	경기/광역시	93 (38.6)	91 (37.8)	49 (20.3)	8 (3.3)	
	타 시도	52 (34.7)	70 (46.7)	22 (14.7)	6 (4.0)	
학교 지역	수도권	149 (32.8)	188 (41.4)	89 (19.6)	28 (6.2)	5.068
	비수도권	98 (39.8)	100 (40.7)	38 (15.4)	10 (4.1)	
학위 과정	(전문) 학사	144 (32.7)	184 (41.8)	87 (19.8)	25 (5.7)	4.203
	대학원	103 (39.6)	104 (40.0)	40 (15.4)	13 (5.0)	
전공 계열	인문, 사회과학	128 (35.4)	151 (41.7)	64 (17.7)	19 (5.2)	4.535
	자연과학, 공학 등	104 (35.1)	116 (39.2)	57 (19.3)	19 (6.4)	
	예체능	15 (35.7)	21 (50.0)	6 (14.3)	0 (0.0)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부표 2-68〉 지난 1주일간 경험 빈도-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단위: 명, %)

구분		극히 드물다 (일주일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일주일 1~2일)	종종 있었다 (일주일 3~4일)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 5일 이상)	χ^2
전체		178 (25.4)	328 (46.9)	135 (19.3)	59 (8.4)	-
성별	남성	76 (24.5)	141 (45.5)	75 (24.2)	18 (5.8)	11.894**
	여성	102 (26.2)	187 (47.9)	60 (15.4)	41 (10.5)	
연령대 (만 나이)	19~24	98 (23.4)	204 (48.7)	76 (18.1)	41 (9.8)	9.829
	25~29	52 (25.2)	94 (45.6)	46 (22.3)	14 (6.8)	
	30세 이상	28 (37.3)	30 (40.0)	13 (17.3)	4 (5.3)	
국적	중국	76 (21.8)	175 (50.3)	65 (18.7)	32 (9.2)	16.768*
	베트남	38 (22.9)	70 (42.2)	42 (25.3)	16 (9.6)	
	기타 아시아	64 (34.4)	83 (44.6)	28 (15.1)	11 (5.9)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61 (29.3)	104 (50.0)	30 (14.4)	13 (6.3)	13.373
	2년~3년 미만	41 (26.8)	69 (45.1)	33 (21.6)	10 (6.5)	
	3년~4년 미만	30 (22.6)	60 (45.1)	31 (23.3)	12 (9.0)	
	4년~5년 미만	23 (19.2)	57 (47.5)	25 (20.8)	15 (12.5)	
	5년 이상	23 (26.7)	38 (44.2)	16 (18.6)	9 (10.5)	
거주 지역	수도권	117 (26.7)	189 (43.1)	93 (21.2)	40 (9.1)	7.183
	비수도권	61 (23.4)	139 (53.3)	42 (16.1)	19 (7.3)	
	서울	83 (26.9)	126 (40.8)	68 (22.0)	32 (10.4)	10.505
	경기/광역시	63 (26.1)	122 (50.6)	40 (16.6)	16 (6.6)	
	타 시도	32 (21.3)	80 (53.3)	27 (18.0)	11 (7.3)	
학교 지역	수도권	112 (24.7)	203 (44.7)	95 (20.9)	44 (9.7)	5.805
	비수도권	66 (26.8)	125 (50.8)	40 (16.3)	15 (6.1)	
학위 과정	(전문) 학사	98 (22.3)	217 (49.3)	82 (18.6)	43 (9.8)	8.969*
	대학원	80 (30.8)	111 (42.7)	53 (20.4)	16 (6.2)	
전공 계열	인문, 사회과학	90 (24.9)	169 (46.7)	68 (18.8)	35 (9.7)	2.827
	자연과학, 공학 등	78 (26.4)	136 (45.9)	60 (20.3)	22 (7.4)	
	예체능	10 (23.8)	23 (54.8)	7 (16.7)	2 (4.8)	

주: *p<0.05, **p<0.01, ***p<0.001

434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부표 2-69〉 지난 1주일간 경험 빈도-5)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단위: 명, %)

구분		극히 드물다 (일주일에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일주일에 1~2일)	종종 있었다 (일주일에 3~4일)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에 5일 이상)	χ^2
전체		186 (26.6)	263 (37.6)	160 (22.9)	91 (13.0)	-
성별	남성	77 (24.8)	119 (38.4)	74 (23.9)	40 (12.9)	0.981
	여성	109 (27.9)	144 (36.9)	86 (22.1)	51 (13.1)	
연령대 (만 나이)	19~24	108 (25.8)	152 (36.3)	105 (25.1)	54 (12.9)	4.944
	25~29	60 (29.1)	80 (38.8)	37 (18.0)	29 (14.1)	
	30세 이상	18 (24.0)	31 (41.3)	18 (24.0)	8 (10.7)	
국적	중국	82 (23.6)	130 (37.4)	81 (23.3)	55 (15.8)	9.283
	베트남	43 (25.9)	66 (39.8)	41 (24.7)	16 (9.6)	
	기타 아시아	61 (32.8)	67 (36.0)	38 (20.4)	20 (10.8)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62 (29.8)	71 (34.1)	47 (22.6)	28 (13.5)	12647
	2년~3년 미만	38 (24.8)	60 (39.2)	35 (22.9)	20 (13.1)	
	3년~4년 미만	33 (24.8)	57 (42.9)	26 (19.5)	17 (12.8)	
	4년~5년 미만	22 (18.3)	50 (41.7)	32 (26.7)	16 (13.3)	
	5년 이상	31 (36.0)	25 (29.1)	20 (23.3)	10 (11.6)	
거주 지역	수도권	122 (27.8)	154 (35.1)	101 (23.0)	62 (14.1)	3.758
	비수도권	64 (24.5)	109 (41.8)	59 (22.6)	29 (11.1)	
	서울	90 (29.1)	105 (34.0)	66 (21.4)	48 (15.5)	8.894
	경기/광역시 타 시도	63 (26.1)	99 (41.1)	52 (21.6)	27 (11.2)	
학교 지역	수도권	123 (27.1)	165 (36.3)	104 (22.9)	62 (13.7)	1.080
	비수도권	63 (25.6)	98 (39.8)	56 (22.8)	29 (11.8)	
학위 과정	(전문) 학사	109 (24.8)	165 (37.5)	111 (25.2)	55 (12.5)	4.583
	대학원	77 (29.6)	98 (37.7)	49 (18.8)	36 (13.8)	
전공 계열	인문, 사회과학	92 (25.4)	139 (38.4)	77 (21.3)	54 (14.9)	6.000
	자연과학, 공학 등	85 (28.7)	104 (35.1)	74 (25.0)	33 (11.1)	
	예체능	9 (21.4)	20 (47.6)	9 (21.4)	4 (9.5)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부표 2-70〉 지난 1주일간 경험 빈도-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단위: 명, %)

구분		극히 드물다 (일주일에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일주일에 1~2일)	종종 있었다 (일주일에 3~4일)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에 5일 이상)	χ^2
전체		278 (39.7)	251 (35.9)	113 (16.1)	58 (8.3)	-
성별	남성	125 (40.3)	112 (36.1)	45 (14.5)	28 (9.0)	1.350
	여성	153 (39.2)	139 (35.6)	68 (17.4)	30 (7.7)	
연령대 (만 나이)	19~24	160 (38.2)	152 (36.3)	69 (16.5)	38 (9.1)	9.601
	25~29	82 (39.8)	77 (37.4)	28 (13.6)	19 (9.2)	
	30세 이상	36 (48.0)	22 (29.3)	16 (21.3)	1 (1.3)	
국적	중국	144 (41.4)	125 (35.9)	52 (14.9)	27 (7.8)	14.626*
	베트남	48 (28.9)	67 (40.4)	37 (22.3)	14 (8.4)	
	기타 아시아	86 (46.2)	59 (31.7)	24 (12.9)	17 (9.1)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90 (43.3)	72 (34.6)	32 (15.4)	14 (6.7)	6.366
	2년~3년 미만	59 (38.6)	59 (38.6)	23 (15.0)	12 (7.8)	
	3년~4년 미만	48 (36.1)	47 (35.3)	24 (18.0)	14 (10.5)	
	4년~5년 미만	44 (36.7)	45 (37.5)	18 (15.0)	13 (10.8)	
	5년 이상	37 (43.0)	28 (32.6)	16 (18.6)	5 (5.8)	
거주 지역	수도권	172 (39.2)	147 (33.5)	77 (17.5)	43 (9.8)	6.592
	비수도권	106 (40.6)	104 (39.8)	36 (13.8)	15 (5.7)	
	서울	118 (38.2)	105 (34.0)	55 (17.8)	31 (10.0)	6.352
	경기/광역시	104 (43.2)	83 (34.4)	36 (14.9)	18 (7.5)	
	타 시도	56 (37.3)	63 (42.0)	22 (14.7)	9 (6.0)	
학교 지역	수도권	171 (37.7)	157 (34.6)	81 (17.8)	45 (9.9)	8.384*
	비수도권	107 (43.5)	94 (38.2)	32 (13.0)	13 (5.3)	
학위 과정	(전문) 학사	163 (37.0)	166 (37.7)	69 (15.7)	42 (9.5)	5.705
	대학원	115 (44.2)	85 (32.7)	44 (16.9)	16 (6.2)	
전공 계열	인문, 사회과학	137 (37.8)	132 (36.5)	62 (17.1)	31 (8.6)	5.112
	자연과학, 공학 등	119 (40.2)	107 (36.1)	44 (14.9)	26 (8.8)	
	예체능	22 (52.4)	12 (28.6)	7 (16.7)	1 (2.4)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436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부표 2-71> 지난 1주일간 경험 빈도-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단위: 명, %)

구분		극히 드물다 (일주일애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일주일애 1~2일)	종종 있었다 (일주일애 3~4일)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애 5일 이상)	χ^2
전체		165 (23.6)	259 (37.0)	175 (25.0)	101 (14.4)	-
성별	남성	79 (25.5)	115 (37.1)	75 (24.2)	41 (13.2)	1.567
	여성	86 (22.1)	144 (36.9)	100 (25.6)	60 (15.4)	
연령대 (만 나이)	19~24	90 (21.5)	155 (37.0)	113 (27.0)	61 (14.6)	5.971
	25~29	55 (26.7)	72 (35.0)	50 (24.3)	29 (14.1)	
	30세 이상	20 (26.7)	32 (42.7)	12 (16.0)	11 (14.7)	
국적	중국	81 (23.3)	130 (37.4)	94 (27.0)	43 (12.4)	6.124
	베트남	40 (24.1)	67 (40.4)	36 (21.7)	23 (13.9)	
	기타 아시아	44 (23.7)	62 (33.3)	45 (24.2)	35 (18.8)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50 (24.0)	70 (33.7)	54 (26.0)	34 (16.3)	9.525
	2년~3년 미만	30 (19.6)	59 (38.6)	40 (26.1)	24 (15.7)	
	3년~4년 미만	31 (23.3)	48 (36.1)	39 (29.3)	15 (11.3)	
	4년~5년 미만	32 (26.7)	48 (40.0)	27 (22.5)	13 (10.8)	
	5년 이상	22 (25.6)	34 (39.5)	15 (17.4)	15 (17.4)	
거주 지역	수도권	99 (22.6)	163 (37.1)	120 (27.3)	57 (13.0)	4.795
	비수도권	66 (25.3)	96 (36.8)	55 (21.1)	44 (16.9)	
	서울	62 (20.1)	113 (36.6)	91 (29.4)	43 (13.9)	8.221
	경기/광역시	66 (27.4)	86 (35.7)	53 (22.0)	36 (14.9)	
	타 시도	37 (24.7)	60 (40.0)	31 (20.7)	22 (14.7)	
학교 지역	수도권	110 (24.2)	167 (36.8)	121 (26.7)	56 (12.3)	5.589
	비수도권	55 (22.4)	92 (37.4)	54 (22.0)	45 (18.3)	
학위 과정	(전문) 학사	100 (22.7)	161 (36.6)	115 (26.1)	64 (14.5)	1.035
	대학원	65 (25.0)	98 (37.7)	60 (23.1)	37 (14.2)	
전공 계열	인문, 사회과학	74 (20.4)	135 (37.3)	102 (28.2)	51 (14.1)	9.067
	자연과학, 공학 등	84 (28.4)	107 (36.1)	62 (20.9)	43 (14.5)	
	예체능	7 (16.7)	17 (40.5)	11 (26.2)	7 (16.7)	

주: *p<0.05, **p<0.01, ***p<0.001

〈부표 2-72〉 지난 1주일간 경험 빈도-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단위: 명, %)

구분		극히 드물다 (일주일애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일주일애 1~2일)	종종 있었다 (일주일애 3~4일)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애 5일 이상)	χ^2
전체		347 (49.6)	248 (35.4)	84 (12.0)	21 (3.0)	-
성별	남성	142 (45.8)	117 (37.7)	38 (12.3)	13 (4.2)	5.105
	여성	205 (52.6)	131 (33.6)	46 (11.8)	8 (2.1)	
연령대 (만 나이)	19~24	204 (48.7)	154 (36.8)	50 (11.9)	11 (2.6)	1.936
	25~29	107 (51.9)	67 (32.5)	24 (11.7)	8 (3.9)	
	30세 이상	36 (48.0)	27 (36.0)	10 (13.3)	2 (2.7)	
국적	중국	179 (51.4)	123 (35.3)	36 (10.3)	10 (2.9)	8.296
	베트남	70 (42.2)	61 (36.7)	29 (17.5)	6 (3.6)	
	기타 아시아	98 (52.7)	64 (34.4)	19 (10.2)	5 (2.7)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115 (55.3)	70 (33.7)	20 (9.6)	3 (1.4)	15.131
	2년~3년 미만	80 (52.3)	47 (30.7)	23 (15.0)	3 (2.0)	
	3년~4년 미만	61 (45.9)	52 (39.1)	15 (11.3)	5 (3.8)	
	4년~5년 미만	49 (40.8)	48 (40.0)	18 (15.0)	5 (4.2)	
	5년 이상	42 (48.8)	31 (36.0)	8 (9.3)	5 (5.8)	
거주 지역	수도권	225 (51.3)	145 (33.0)	56 (12.8)	13 (3.0)	3.151
	비수도권	122 (46.7)	103 (39.5)	28 (10.7)	8 (3.1)	
	서울	157 (50.8)	98 (31.7)	47 (15.2)	7 (2.3)	15.609*
	경기/광역시	124 (51.5)	85 (35.3)	20 (8.3)	12 (5.0)	
	타 시도	66 (44.0)	65 (43.3)	17 (11.3)	2 (1.3)	
학교 지역	수도권	228 (50.2)	154 (33.9)	57 (12.6)	15 (3.3)	1.668
	비수도권	119 (48.4)	94 (38.2)	27 (11.0)	6 (2.4)	
학위 과정	(전문) 학사	210 (47.7)	159 (36.1)	57 (13.0)	14 (3.2)	2.010
	대학원	137 (52.7)	89 (34.2)	27 (10.4)	7 (2.7)	
전공 계열	인문, 사회과학	174 (48.1)	131 (36.2)	46 (12.7)	11 (3.0)	8.495
	자연과학, 공학 등	149 (50.3)	99 (33.4)	38 (12.8)	10 (3.4)	
	예체능	24 (57.1)	18 (42.9)	0 (0.0)	0 (0.0)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438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부표 2-73> 지난 1주일간 경험 빈도-9) 마음이 슬펐다

(단위: 명, %)

구분		극히 드물다 (일주일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일주일 1~2일)	종종 있었다 (일주일 3~4일)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 5일 이상)	χ^2
전체		258 (36.9)	295 (42.1)	109 (15.6)	38 (5.4)	-
성별	남성	117 (37.7)	131 (42.3)	48 (15.5)	14 (4.5)	0.976
	여성	141 (36.2)	164 (42.1)	61 (15.6)	24 (6.2)	
연령대 (만 나이)	19~24	139 (33.2)	189 (45.1)	66 (15.8)	25 (6.0)	8.685
	25~29	89 (43.2)	73 (35.4)	33 (16.0)	11 (5.3)	
	30세 이상	30 (40.0)	33 (44.0)	10 (13.3)	2 (2.7)	
국적	중국	132 (37.9)	149 (42.8)	51 (14.7)	16 (4.6)	4.466
	베트남	52 (31.3)	73 (44.0)	29 (17.5)	12 (7.2)	
	기타 아시아	74 (39.8)	73 (39.2)	29 (15.6)	10 (5.4)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80 (38.5)	86 (41.3)	31 (14.9)	11 (5.3)	5.070
	2년~3년 미만	55 (35.9)	71 (46.4)	19 (12.4)	8 (5.2)	
	3년~4년 미만	43 (32.3)	59 (44.4)	24 (18.0)	7 (5.3)	
	4년~5년 미만	45 (37.5)	46 (38.3)	22 (18.3)	7 (5.8)	
	5년 이상	35 (40.7)	33 (38.4)	13 (15.1)	5 (5.8)	
거주 지역	수도권	163 (37.1)	172 (39.2)	79 (18.0)	25 (5.7)	7.073
	비수도권	95 (36.4)	123 (47.1)	30 (11.5)	13 (5.0)	
	서울	111 (35.9)	117 (37.9)	63 (20.4)	18 (5.8)	12.053
	경기/광역시	95 (39.4)	107 (44.4)	28 (11.6)	11 (4.6)	
	타 시도	52 (34.7)	71 (47.3)	18 (12.0)	9 (6.0)	
학교 지역	수도권	164 (36.1)	180 (39.6)	85 (18.7)	25 (5.5)	10.349*
	비수도권	94 (38.2)	115 (46.7)	24 (9.8)	13 (5.3)	
학위 과정	(전문) 학사	151 (34.3)	192 (43.6)	69 (15.7)	28 (6.4)	4.616
	대학원	107 (41.2)	103 (39.6)	40 (15.4)	10 (3.8)	
전공 계열	인문, 사회과학	131 (36.2)	149 (41.2)	60 (16.6)	22 (6.1)	5.384
	자연과학, 공학 등	107 (36.1)	128 (43.2)	45 (15.2)	16 (5.4)	
	예체능	20 (47.6)	18 (42.9)	4 (9.5)	0 (0.0)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부표 2-74〉 지난 1주일간 경험 빈도-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단위: 명, %)

구분		극히 드물다 (일주일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일주일 1~2일)	종종 있었다 (일주일 3~4일)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 5일 이상)	χ^2
전체		432 (61.7)	192 (27.4)	65 (9.3)	11 (1.6)	-
성별	남성	187 (60.3)	91 (29.4)	30 (9.7)	2 (0.6)	4.057
	여성	245 (62.8)	101 (25.9)	35 (9.0)	9 (2.3)	
연령대 (만 나이)	19~24	251 (59.9)	120 (28.6)	41 (9.8)	7 (1.7)	7.999
	25~29	139 (67.5)	45 (21.8)	18 (8.7)	4 (1.9)	
	30세 이상	42 (56.0)	27 (36.0)	6 (8.0)	0 (0.0)	
국적	중국	233 (67.0)	88 (25.3)	25 (7.2)	2 (0.6)	18.997**
	베트남	87 (52.4)	51 (30.7)	21 (12.7)	7 (4.2)	
	기타 아시아	112 (60.2)	53 (28.5)	19 (10.2)	2 (1.1)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131 (63.0)	59 (28.4)	16 (7.7)	2 (1.0)	8.696
	2년~3년 미만	97 (63.4)	35 (22.9)	18 (11.8)	3 (2.0)	
	3년~4년 미만	84 (63.2)	35 (26.3)	11 (8.3)	3 (2.3)	
	4년~5년 미만	68 (56.7)	36 (30.0)	15 (12.5)	1 (0.8)	
	5년 이상	52 (60.5)	27 (31.4)	5 (5.8)	2 (2.3)	
거주 지역	수도권	276 (62.9)	115 (26.2)	41 (9.3)	7 (1.6)	0.915
	비수도권	156 (59.8)	77 (29.5)	24 (9.2)	4 (1.5)	
	서울	191 (61.8)	83 (26.9)	30 (9.7)	5 (1.6)	3.518
	경기/광역시	155 (64.3)	60 (24.9)	23 (9.5)	3 (1.2)	
	타 시도	86 (57.3)	49 (32.7)	12 (8.0)	3 (2.0)	
학교 지역	수도권	280 (61.7)	124 (27.3)	43 (9.5)	7 (1.5)	0.062
	비수도권	152 (61.8)	68 (27.6)	22 (8.9)	4 (1.6)	
학위 과정	(전문) 학사	261 (59.3)	126 (28.6)	44 (10.0)	9 (2.0)	4.077
	대학원	171 (65.8)	66 (25.4)	21 (8.1)	2 (0.8)	
전공 계열	인문, 사회과학	223 (61.6)	98 (27.1)	35 (9.7)	6 (1.7)	2.182
	자연과학, 공학 등	180 (60.8)	83 (28.0)	28 (9.5)	5 (1.7)	
	예체능	29 (69.0)	11 (26.2)	2 (4.8)	0 (0.0)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440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부표 2-75> 지난 1주일간 경험 빈도-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단위: 명, %)

구분		극히 드물다 (일주일애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일주일애 1~2일)	종종 있었다 (일주일애 3~4일)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애 5일 이상)	χ^2
전체		315 (45.0)	232 (33.1)	116 (16.6)	37 (5.3)	-
성별	남성	145 (46.8)	101 (32.6)	52 (16.8)	12 (3.9)	2.563
	여성	170 (43.6)	131 (33.6)	64 (16.4)	25 (6.4)	
연령대 (만 나이)	19~24	183 (43.7)	136 (32.5)	75 (17.9)	25 (6.0)	4.579
	25~29	95 (46.1)	69 (33.5)	31 (15.0)	11 (5.3)	
	30세 이상	37 (49.3)	27 (36.0)	10 (13.3)	1 (1.3)	
국적	중국	167 (48.0)	113 (32.5)	51 (14.7)	17 (4.9)	7.385
	베트남	61 (36.7)	64 (38.6)	31 (18.7)	10 (6.0)	
	기타 아시아	87 (46.8)	55 (29.6)	34 (18.3)	10 (5.4)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108 (51.9)	64 (30.8)	25 (12.0)	11 (5.3)	16.010
	2년~3년 미만	57 (37.3)	59 (38.6)	30 (19.6)	7 (4.6)	
	3년~4년 미만	57 (42.9)	39 (29.3)	30 (22.6)	7 (5.3)	
	4년~5년 미만	51 (42.5)	43 (35.8)	17 (14.2)	9 (7.5)	
	5년 이상	42 (48.8)	27 (31.4)	14 (16.3)	3 (3.5)	
거주 지역	수도권	206 (46.9)	129 (29.4)	78 (17.8)	26 (5.9)	7.906*
	비수도권	109 (41.8)	103 (39.5)	38 (14.6)	11 (4.2)	
	서울	145 (46.9)	90 (29.1)	53 (17.2)	21 (6.8)	13.981*
	경기/광역시 타 시도	110 (45.6)	77 (32.0)	46 (19.1)	8 (3.3)	
학교 지역	수도권	204 (44.9)	144 (31.7)	80 (17.6)	26 (5.7)	2.127
	비수도권	111 (45.1)	88 (35.8)	36 (14.6)	11 (4.5)	
학위 과정	(전문) 학사	195 (44.3)	146 (33.2)	72 (16.4)	27 (6.1)	1.776
	대학원	120 (46.2)	86 (33.1)	44 (16.9)	10 (3.8)	
전공 계열	인문, 사회 과학	161 (44.5)	124 (34.3)	57 (15.7)	20 (5.5)	9.897
	자연과학, 공학 등	134 (45.3)	89 (30.1)	58 (19.6)	15 (5.1)	
	예체능	20 (47.6)	19 (45.2)	1 (2.4)	2 (4.8)	

주: *p<0.05, **p<0.01, ***p<0.001

〈부표 2-76〉 최근 1년간 심리적/정신적 어려움으로 관련 전문가를 찾아가 경험 유무

(단위: 명, %)

구분		예	아니요		χ^2
전체		92 (13.1)	608 (86.9)		-
성별	남성	34 (11.0)	276 (89.0)	2.306	
	여성	58 (14.9)	332 (85.1)		
연령대 (만 나이)	19~24	59 (14.1)	360 (85.9)	0.909	
	25~29	25 (12.1)	181 (87.9)		
	30세 이상	8 (10.7)	67 (89.3)		
국적	중국	32 (9.2)	316 (90.8)	20.890***	
	베트남	39 (23.5)	127 (76.5)		
	기타 아시아	21 (11.3)	165 (88.7)		
한국 거주기간	2년 미만	28 (13.5)	180 (86.5)	4.969	
	2년~3년 미만	20 (13.1)	133 (86.9)		
	3년~4년 미만	24 (18.0)	109 (82.0)		
	4년~5년 미만	12 (10.0)	108 (90.0)		
	5년 이상	8 (9.3)	78 (90.7)		
거주 지역	수도권	55 (12.5)	384 (87.5)	0.389	
	비수도권	37 (14.2)	224 (85.8)		
	서울	38 (12.3)	271 (87.7)	0.354	
	경기/광역시	33 (13.7)	208 (86.3)		
	타 시도	21 (14.0)	129 (86.0)		
학교 지역	수도권	57 (12.6)	397 (87.4)	0.391	
	비수도권	35 (14.2)	211 (85.8)		
학위 과정	(전문) 학사	62 (14.1)	378 (85.9)	0.933	
	대학원	30 (11.5)	230 (88.5)		
전공계열	인문, 사회과학	48 (13.3)	314 (86.7)	4.762	
	자연과학, 공학 등	43 (14.5)	253 (85.5)		
	예체능	1 (2.4)	41 (97.6)		

주: *p<0.05, **p<0.01, ***p<0.001

442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부표 2-77> 한국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 주된 상담자

(단위: 명, %)

구분	한국인 친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국적이 같은 친구	학과 조교, 교수 등	학교 내 외국인 유학생 담당 부서 (국제 교류처, 상담센터 등)	본국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친구 등	대사관	기타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x ²
전체	71 (10.1)	281 (40.1)	23 (3.3)	49 (7.0)	259 (37.0)	3 (0.4)	14 (2.0)	-
성별	남성	127 (41.0)	14 (4.5)	30 (9.7)	102 (32.9)	2 (0.6)	8 (2.6)	13.554*
	여성	44 (11.3)	154 (39.5)	9 (2.3)	19 (4.9)	157 (40.3)	1 (0.3)	
연령대 (만 나이)	19~24	166 (39.6)	12 (2.9)	37 (8.8)	153 (36.5)	2 (0.5)	8 (1.9)	16.270
	25~29	85 (41.3)	5 (2.4)	7 (3.4)	77 (37.4)	1 (0.5)	6 (2.9)	
	30세 이상	30 (40.0)	6 (8.0)	5 (6.7)	29 (38.7)	0 (0.0)	0 (0.0)	
국적	중국	145 (41.7)	5 (1.4)	18 (5.2)	138 (39.7)	1 (0.3)	5 (1.4)	38.651***
	베트남	52 (31.3)	14 (8.4)	20 (12.0)	53 (31.9)	1 (0.6)	7 (4.2)	
	기타 아시아	84 (45.2)	4 (2.2)	11 (5.9)	68 (36.6)	1 (0.5)	2 (1.1)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79 (38.0)	3 (1.4)	12 (5.8)	87 (41.8)	1 (0.5)	7 (3.4)	28.475
	2년~3년 미만	54 (35.3)	8 (5.2)	14 (9.2)	60 (39.2)	1 (0.7)	1 (0.7)	
	3년~4년 미만	50 (37.6)	4 (3.0)	11 (8.3)	49 (36.8)	0 (0.0)	2 (1.5)	
	4년~5년 미만	58 (48.3)	3 (2.5)	3 (2.5)	38 (31.7)	1 (0.8)	3 (2.5)	

구분		한국인 친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국적이 같은 친구	학과 조교, 교수 등	학교 내 외국인 유학생 담당 부서 (국제 교류처, 상담센터 등)	본국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친구 등	대사관	기타 (시민 단체, 종교 단체 등)	χ^2
	5년 이상	6 (7.0)	40 (46.5)	5 (5.8)	9 (10.5)	25 (29.1)	0 (0.0)	1 (1.2)	
거주 지역	수도권	47 (10.7)	187 (42.6)	8 (1.8)	26 (5.9)	159 (36.2)	2 (0.5)	10 (2.3)	12.430
	비수도권	24 (9.2)	94 (36.0)	15 (5.7)	23 (8.8)	100 (38.3)	1 (0.4)	4 (1.5)	
	서울	30 (9.7)	141 (45.6)	5 (1.6)	15 (4.9)	110 (35.6)	2 (0.6)	6 (1.9)	24.600*
	경기/쌍역시	31 (12.9)	88 (36.5)	7 (2.9)	21 (8.7)	88 (36.5)	0 (0.0)	6 (2.5)	
	타 시도	10 (6.7)	52 (34.7)	11 (7.3)	13 (8.7)	61 (40.7)	1 (0.7)	2 (1.3)	
학교 지역	수도권	47 (10.4)	195 (43.0)	9 (2.0)	29 (6.4)	161 (35.5)	2 (0.4)	11 (2.4)	11.950
	비수도권	24 (9.8)	86 (35.0)	14 (5.7)	20 (8.1)	98 (39.8)	1 (0.4)	3 (1.2)	
학위 과정	(전문) 학사	45 (10.2)	169 (38.4)	14 (3.2)	39 (8.9)	162 (36.8)	2 (0.5)	9 (2.0)	6.853
	대학원	26 (10.0)	112 (43.1)	9 (3.5)	10 (3.8)	97 (37.3)	1 (0.4)	5 (1.9)	
전공 계열	인문, 사회과학	40 (11.0)	160 (44.2)	7 (1.9)	28 (7.7)	118 (32.6)	2 (0.6)	7 (1.9)	17.612
	자연과학, 공학 등	27 (9.1)	109 (36.8)	14 (4.7)	20 (6.8)	118 (39.9)	1 (0.3)	7 (2.4)	
	예체능	4 (9.5)	12 (28.6)	2 (4.8)	1 (2.4)	23 (54.8)	0 (0.0)	0 (0.0)	

주: *p<0.05, **p<0.01, ***p<0.001

444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부표 2-78〉 해당되는 사람 수-1)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단위: 명, %)

구분		없다	1-2명	3-4명	5-9명	10명 이상	χ^2
전체		118 (16.9)	385 (55.0)	148 (21.1)	26 (3.7)	23 (3.3)	-
성별	남성	59 (19.0)	149 (48.1)	72 (23.2)	16 (5.2)	14 (4.5)	13.270*
	여성	59 (15.1)	236 (60.5)	76 (19.5)	10 (2.6)	9 (2.3)	
연령대 (만 나이)	19~24	75 (17.9)	233 (55.6)	85 (20.3)	13 (3.1)	13 (3.1)	10.080
	25~29	31 (15.0)	117 (56.8)	44 (21.4)	6 (2.9)	8 (3.9)	
	30세 이상	12 (16.0)	35 (46.7)	19 (25.3)	7 (9.3)	2 (2.7)	
국적	중국	63 (18.1)	182 (52.3)	73 (21.0)	19 (5.5)	11 (3.2)	9.588
	베트남	21 (12.7)	99 (59.6)	37 (22.3)	4 (2.4)	5 (3.0)	
	기타 아시아	34 (18.3)	104 (55.9)	38 (20.4)	3 (1.6)	7 (3.8)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30 (14.4)	126 (60.6)	39 (18.8)	8 (3.8)	5 (2.4)	11.926
	2년~3년 미만	28 (18.3)	88 (57.5)	28 (18.3)	4 (2.6)	5 (3.3)	
	3년~4년 미만	21 (15.8)	69 (51.9)	33 (24.8)	4 (3.0)	6 (4.5)	
	4년~5년 미만	21 (17.5)	60 (50.0)	27 (22.5)	6 (5.0)	6 (5.0)	
	5년 이상	18 (20.9)	42 (48.8)	21 (24.4)	4 (4.7)	1 (1.2)	
거주 지역	수도권	77 (17.5)	244 (55.6)	88 (20.0)	11 (2.5)	19 (4.3)	9.592*
	비수도권	41 (15.7)	141 (54.0)	60 (23.0)	15 (5.7)	4 (1.5)	

구분		없다	1-2명	3-4명	5-9명	10명 이상	χ^2
	서울	58 (18.8)	168 (54.4)	61 (19.7)	9 (2.9)	13 (4.2)	11.035
	경기/광역시	41 (17.0)	134 (55.6)	54 (22.4)	6 (2.5)	6 (2.5)	
	타 시도	19 (12.7)	83 (55.3)	33 (22.0)	11 (7.3)	4 (2.7)	
학교 지역	수도권	73 (16.1)	264 (58.1)	89 (19.6)	10 (2.2)	18 (4.0)	14.002**
	비수도권	45 (18.3)	121 (49.2)	59 (24.0)	16 (6.5)	5 (2.0)	
학위 과정	(전문) 학사	83 (18.9)	242 (55.0)	85 (19.3)	13 (3.0)	17 (3.9)	7.740
	대학원	35 (13.5)	143 (55.0)	63 (24.2)	13 (5.0)	6 (2.3)	
전공 계열	인문, 사회과학	62 (17.1)	194 (53.6)	82 (22.7)	13 (3.6)	11 (3.0)	5.417
	자연과학, 공학 등	51 (17.2)	169 (57.1)	57 (19.3)	10 (3.4)	9 (3.0)	
	예체능	5 (11.9)	22 (52.4)	9 (21.4)	3 (7.1)	3 (7.1)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446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부표 2-79〉 해당되는 사람 수-2)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단위: 명, %)

구분		없다	1-2명	3-4명	5-9명	10명 이상	χ^2
전체		95 (13.6)	399 (57.0)	158 (22.6)	26 (3.7)	22 (3.1)	-
성별	남성	49 (15.8)	160 (51.6)	73 (23.5)	14 (4.5)	14 (4.5)	9.418
	여성	46 (11.8)	239 (61.3)	85 (21.8)	12 (3.1)	8 (2.1)	
연령대 (만 나이)	19~24	52 (12.4)	245 (58.5)	97 (23.2)	12 (2.9)	13 (3.1)	9.680
	25~29	34 (16.5)	116 (56.3)	43 (20.9)	9 (4.4)	4 (1.9)	
	30세 이상	9 (12.0)	38 (50.7)	18 (24.0)	5 (6.7)	5 (6.7)	
국적	중국	50 (14.4)	206 (59.2)	70 (20.1)	12 (3.4)	10 (2.9)	8.916
	베트남	25 (15.1)	97 (58.4)	34 (20.5)	6 (3.6)	4 (2.4)	
	기타 아시아	20 (10.8)	96 (51.6)	54 (29.0)	8 (4.3)	8 (4.3)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30 (14.4)	127 (61.1)	41 (19.7)	6 (2.9)	4 (1.9)	20.800
	2년~3년 미만	24 (15.7)	78 (51.0)	37 (24.2)	8 (5.2)	6 (3.9)	
	3년~4년 미만	7 (5.3)	80 (60.2)	38 (28.6)	3 (2.3)	5 (3.8)	
	4년~5년 미만	19 (15.8)	63 (52.5)	26 (21.7)	7 (5.8)	5 (4.2)	
	5년 이상	15 (17.4)	51 (59.3)	16 (18.6)	2 (2.3)	2 (2.3)	
거주 지역	수도권	64 (14.6)	248 (56.5)	97 (22.1)	13 (3.0)	17 (3.9)	4.843
	비수도권	31 (11.9)	151 (57.9)	61 (23.4)	13 (5.0)	5 (1.9)	

구분		없다	1-2명	3-4명	5-9명	10명 이상	χ^2
	서울	50 (16.2)	183 (59.2)	54 (17.5)	10 (3.2)	12 (3.9)	20.150**
	경기/광역시	25 (10.4)	132 (54.8)	73 (30.3)	6 (2.5)	5 (2.1)	
	타 시도	20 (13.3)	84 (56.0)	31 (20.7)	10 (6.7)	5 (3.3)	
학교 지역	수도권	66 (14.5)	264 (58.1)	95 (20.9)	13 (2.9)	16 (3.5)	5.855
	비수도권	29 (11.8)	135 (54.9)	63 (25.6)	13 (5.3)	6 (2.4)	
학위 과정	(전문) 학사	61 (13.9)	249 (56.6)	101 (23.0)	14 (3.2)	15 (3.4)	1.358
	대학원	34 (13.1)	150 (57.7)	57 (21.9)	12 (4.6)	7 (2.7)	
전공 계열	인문, 사회과학	57 (15.7)	210 (58.0)	75 (20.7)	10 (2.8)	10 (2.8)	8.664
	자연과학, 공학 등	32 (10.8)	168 (56.8)	73 (24.7)	14 (4.7)	9 (3.0)	
	예체능	6 (14.3)	21 (50.0)	10 (23.8)	2 (4.8)	3 (7.1)	

주: *p<0.05, **p<0.01, ***p<0.001

448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부표 2-80〉 해당되는 사람 수-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단위: 명, %)

구분		없다	1-2명	3-4명	5-9명	10명 이상	χ^2
전체		76 (10.9)	386 (55.1)	169 (24.1)	44 (6.3)	25 (3.6)	-
성별	남성	41 (13.2)	162 (52.3)	78 (25.2)	15 (4.8)	14 (4.5)	7.198
	여성	35 (9.0)	224 (57.4)	91 (23.3)	29 (7.4)	11 (2.8)	
연령대 (만 나이)	19~24	39 (9.3)	234 (55.8)	111 (26.5)	25 (6.0)	10 (2.4)	12.116
	25~29	28 (13.6)	115 (55.8)	40 (19.4)	14 (6.8)	9 (4.4)	
	30세 이상	9 (12.0)	37 (49.3)	18 (24.0)	5 (6.7)	6 (8.0)	
국적	중국	35 (10.1)	192 (55.2)	83 (23.9)	28 (8.0)	10 (2.9)	10.547
	베트남	25 (15.1)	94 (56.6)	35 (21.1)	6 (3.6)	6 (3.6)	
	기타 아시아	16 (8.6)	100 (53.8)	51 (27.4)	10 (5.4)	9 (4.8)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22 (10.6)	110 (52.9)	54 (26.0)	17 (8.2)	5 (2.4)	10.436
	2년~3년 미만	19 (12.4)	82 (53.6)	36 (23.5)	9 (5.9)	7 (4.6)	
	3년~4년 미만	13 (9.8)	75 (56.4)	36 (27.1)	4 (3.0)	5 (3.8)	
	4년~5년 미만	12 (10.0)	74 (61.7)	23 (19.2)	8 (6.7)	3 (2.5)	
	5년 이상	10 (11.6)	45 (52.3)	20 (23.3)	6 (7.0)	5 (5.8)	
거주 지역	수도권	48 (10.9)	246 (56.0)	99 (22.6)	28 (6.4)	18 (4.1)	2.350
	비수도권	28 (10.7)	140 (53.6)	70 (26.8)	16 (6.1)	7 (2.7)	

구분		없다	1-2명	3-4명	5-9명	10명 이상	χ^2
	서울	31 (10.0)	178 (57.6)	67 (21.7)	22 (7.1)	11 (3.6)	6.364
	경기/광역시	29 (12.0)	130 (53.9)	65 (27.0)	10 (4.1)	7 (2.9)	
	타 시도	16 (10.7)	78 (52.0)	37 (24.7)	12 (8.0)	7 (4.7)	
학교 지역	수도권	51 (11.2)	257 (56.6)	102 (22.5)	28 (6.2)	16 (3.5)	2.211
	비수도권	25 (10.2)	129 (52.4)	67 (27.2)	16 (6.5)	9 (3.7)	
학위 과정	(전문) 학사	45 (10.2)	252 (57.3)	107 (24.3)	24 (5.5)	12 (2.7)	5.088
	대학원	31 (11.9)	134 (51.5)	62 (23.8)	20 (7.7)	13 (5.0)	
전공 계열	인문, 사회과학	40 (11.0)	204 (56.4)	79 (21.8)	26 (7.2)	13 (3.6)	7.713
	자연과학, 공학 등	33 (11.1)	158 (53.4)	82 (27.7)	14 (4.7)	9 (3.0)	
	예체능	3 (7.1)	24 (57.1)	8 (19.0)	4 (9.5)	3 (7.1)	

주: *p<0.05, **p<0.01, ***p<0.001

간행물 회원제 안내

회원제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국제사회보장리뷰」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120,000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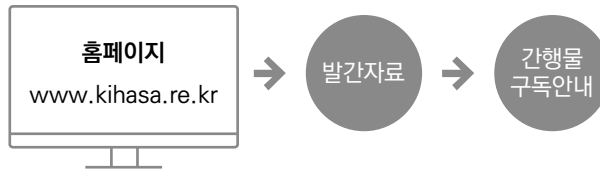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정기 간행물 회원

35,000원

가입방법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02-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02-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